

능한사물들과그렇지않은사물들에대해서는침묵을지키고있으며, <상거래의대상이되는> 물건들에대해말할때에도어떤규정이나정의를부여하지않는다. 그러나밝힌것이전혀없지는않다. 다음과같은변변찮은 격률이있다. 왕은모든권리와관계하며, 개개인은특수한일과관계한다. 모든권능은왕에게속하고소유권은개인들에게속한다. 왕은모든지배권을가지며개개인들은소유권을가진다 (Ad reges potestas omnium pertinet, ad singulos proprietates. Omnia rex imperio possidet, singula domino). 개인적소유와대립하는사회적중추권! 이것은평등의예언, 공화제의신탁神託을말하고있는것은아닐까? 사례는아주많이 나타났다. 옛날에교회의재산, 왕의영지, 귀족의봉토는양도불가능했으며시효취득에의해소멸되지않았다. 제헌의회 Constituante 가이특권을제거해버릴것이아니라시민모두에게확대했다면, 제헌의회가자유와 마찬가지로노동권도결코상실할수없는것이라고선언했다면, 바로그때부터혁명은성취되었을것이고우리는그것을마무리만하면되었을것이다.

소유란무엇인가?

권리와통치의원리에대한연구 - 첫번째연구

피에르조제프프루동

제 2 절보편적동의는소유를정당화하지않는다.

앞에서인용한세의문장에는저자가소유권을땅의비유동성에서찾고있는지아니면모든사람이이전유에동의했다는사실에서찾고있는지가 명확하지않다. 문장의구성을보면그두가지중어느하나일수도있고두가지다일수도있을듯하다. 따라서우리는저자가말하려는것을다음과같이 정리할수있을것이다. 즉, 소유권은원천적으로의지의발현에서나오는 것이고, 땅의비유동성으로인해소유권이토지에적용되었으며, 그러고 나서보편적동의에의해서이러한적용이재가되었다고.

어떻든간에사람들은그들상호간의동의에의해서소유를정당화할수있었는가? 나는그렇지않다고생각한다. 그러한계약은설령그로티우스, 몽테스키외, 루소등에의해작성되었다고할지라도, 그리고전인류의날인을받았다고할지라도, 아무런법적효력이없으며거기에명기된규약은모두정당성이없는것이다. 인간은이제자유와마찬가지로노동도포기할수없다. 그런데토지의소유권을인정하는것은노동을포기하는것이다. 그것은노동의수단을버리는일이고자연권에관해양보하고인간의품성을박탈하는일이니말이다.

그러나나는사람들이내세우는이동의가암묵적인것이든공식적인것이든존재했기를바란다. 그결과는무엇이겠는가? 포기가상호적이었다는것은명백하다. 사람들은그대가노동한것을얻지않으면권리를포기

1840 년

차례

서문	7
제 1 장이책에서사용하는방법, 혁명의이념	16
제 2 장자연권으로간주되는소유에대하여. 소유의동인動因으로서의선점과민법에대하여	36
제 1 절자연권으로서의소유에대하여	38
제 2 절소유의토대로서의선점에대하여	44
제 3 절소유의근거이자재가로서의민법에대하여	56
제 3 장소유권의동인으로서의노동에대하여	66
제 1 절토지는전유될수없다.	69
제 2 절보편적되는소유를정당화하지않는다.	72
제 3 절시효취득은결코소유를낳을수없다.	73
제 4 절노동에대하여. 노동은그자체로는자연의사물들에대하여어떠한전유능력이질수없다.	79
제 5 절노동은소유물의평등에귀착된다.	83
제 6 절사회에서모든임금은평등하다.	90
제 7 절능력의불평등은재산의평등의필요조건이다.	95
제 8 절정의의질서안에서는노동은소유를파괴한다.	109
제 4 장소유는불가능하다	112
첫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그것은무無에대해무엇인가를요구하기때문이다.	117
두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소유가용인되는곳에서생산은효용가치이상의비용이들기때문이다.	123
세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자본이일정한경우생산은소유가아니라노동에비례하기때문이다.	126
네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그것은살인행위이기때문이다.	129
다섯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사회는소유에의해자기자신을먹어치우기때문이다.	133

도해를끼치지않는다면, 요구하는대로필요한만큼자기것으로할수있다. 이러한유형에속하는사물들은말하자면인류의공동재산이다. 이점에서각자에게요구되는유일한의무는타인의향유를조금도방해하지않는다는것이다.>

샤를콩트씨가열거한목록을완성해보자. 큰길을거닐고, 들판에머무어서고, 동굴로몸을피하고, 불을지피고, 야생잡풀을모으고, 목초를따고, 구운흙안에서목초를끓이는일이금지된다면, 인간은살수없을것이다. 이렇게토지는물과공기와빛과함께타인의향유를해치지않는한누구나자유롭게사용해야하는첫번째필수품이다. 그런데토지는왜형령되었는가? 콩트씨의대답은기묘하다. 세는토지가 <옮겨다닐수있는> 것이아니기때문이라고주장한데비해서, 콩트씨는토지가 <무진장> 이아니기때문이라고확언한다. 콩트씨에따르면, 토지는유한하다. 그러므로토지는전유될수밖에없다. 그는아마도정반대로말해야만했을것이다. 즉, 그러므로토지는전유되어서는안된다고말이다. 사람들이상당한분량의공기나빛을자기의것으로한다고해도항상충분히남아있기때문에누구에게도손해를끼치지않는다. 그러나땅의경우문제는다르다. 원하는사람이나능력이있는사람은누구나태양광선, 스치는산들바람, 바다의파도를차지할수있다. 나는그것을허용하며그의못된의도가있더라도용서한다. 그러나살아있는인간이땅에대한점유권을소유권으로바꾸려한다면, 나는그에게전쟁을선포하고끝까지싸울것이다.

샤를콩트씨의추론은자신의논지와와어긋나는것이다. 그는말한다. <우리의생명을보존하기위해필요한사물들중에는무진장존재하며고갈되지않는것들이있다. 다른것들은소량만존재하며일정수의사람들의필요만을충족시킬뿐이다. 전자는‘공동의것’후자는‘개인의것’이라불린다.>

이것은결코정확한추론이아니다. 물, 공기, 빛은 <무진장> 이기때문이아니라 <필수불가결> 하기때문에 <공동의> 사물인것이며, 그렇기때문에자연은이것들을거의무한정으로창조해서온갖형령으로부터지켜냈던것이다. 마찬가지로토지는우리생명의보존에필수불가결한사물이며, 따라서공통의사물이고, 따라서전유될수없는것이다. 토지는다른요소들보다훨씬그양이적으므로, 토지의이용은특정인의이익을위해서가아니라모두의이익과안전을위해서규제되어야한다. 달리말하자면, 권리의평등은욕구의평등에의해정당성을갖는다. 그런데만약사물이유한하다면, 권리의평등은점유의평등에의해실현될수밖에없다. 콩트씨의논지의근거에있는것은바로농지법류의사고방식이다. 이소유권의문제를어떤측면에서고찰하든깊이파고들기만하면곧평등에이르게된다. 나는전유될수있는사물과전유될수없는사물사이의구별에대해서더이상재론하지않겠다. 이문제에대해서경제학자들과법률학자들은서로누가더명청한가를겨루고있다. 민법전은소유에대한정의를내린후, 전유가

희망봉을돌아인도로가는길을발견한포르투갈인들은그들만이항로의소유권을가진다고주장했다. 이권리에이의를제기한네덜란드인들이이에대해자문을구하자그로티우스는바다는전유될수없다는것을증명하기위해특별히 『해양의자유에대하여 De Mari libero』 를썼던것이다.

수렵및어로권은언제나영주나소유자들에게만주어졌다. 오늘날정부나시市당국은허가료와임대료를무는사람은누구에게나수렵권과어로권을허용하고있다. 수렵과어로규제하는것은더할나위없이좋은일이다. 그러나경매로그것을나누는것은공기나물에대한독점권을설립하는일이다.

여권이란무엇인가? 여행자의인격을모두에게소개하는것이며여행자와여행자의소지품에대한안전을보장하는것이다. 가장좋은물품이라도변질시키고자혈안이된세리稅吏들은여권을밀정행위와징세의수단으로삼았다. 이것은여행하거나돌아다닐권리를파는일이아닌가?

소유자의허가없이그토지에있는샘에서물을길는일은금지되어있다. 왜냐하면중물취득권에의해샘물은그것에서축하는점유가없는한그땅의소유자에게속하기때문이다. 또세금을내지않고소유자의집에서하루를머무는것도, 소유자의동의를얻지않고정원이나뜰, 과수원을쳐다보는것도, 주인의뜻을어기고뜰과울타리안을거니는것도금지되어있다. 그런데누구나자기집에들어박혀있는것은허용된다. 이러한모든금지는토지에대해서뿐만아니라물과공기따위에도해당하는온갖종류의신성시된금기들이다. 프롤레타리아인우리모두는소유로부터파문당한다. 땅과물, 공기와불로부터우리들은유배되었도다 (Terra, et aqua, et acre, et igne interdicti sumus).

여러요소들가운데가장견고한것을자기의것으로하기위해서는다른세가지를자기의것으로해야만했다. 그러기에프랑스의법과로마의법은지표의소유는지상과지하의소유를포함한다 (Cujus est solum, ejus est usque ad coelum) 라고명기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만일물과공기와불의사용에대한소유권을배제한다면, 땅의사용도마찬가지여야할것이다. 이러한논리적연결을샤를콩트씨는 『소유론 Traité de la propriété』 (제 5 장) 에서이미예견한듯이보인다.

〈인간은몇분만이라도대기를빼앗기면살수없을것이고, 공기를조금만없애도심한고통을느낄것이다. 식량의일부또는전부를빼앗기면그다지즉각적이지는않지만결과는마찬가지일것이다. 어떤기후조건아래에서는몇몇옷가지나신처를빼앗겨도마찬가지일것이다. 자기몸을보존하기위해서인간은항상온갖종류의사물들을자기몫으로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이러한사물들이같은비율로존재하지는않는다. 어떤것들은, 가령별빛, 대기, 바닷물과같이엄청난분량으로존재하는것들은사람들이그증감을전혀의식하지못한다. 누구나타인의향유를해치거나조금이라

다섯번째명제에대한보론	141
여섯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소유는압제의어머니이기때문이다.	149
일곱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소유는자신이취득한것을소비함으로써잃어버리고, 저축함으로써폐기해버리며, 자본화함으로써생산에적대하기때문이다.	151
여덟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소유의축적력은무한대인반면소유가작용을미치는수량은제한되어있기때문이다.	155
아홉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소유는소유에대해무기력하기때문이다.	157
열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소유는평등을부정하기때문이다.	160

제 5 장정의와불의의관념에대한심리학적설명, 그리고통치와권리의원리에대한규정 162

제 1 부	163
제 1 절인간과동물의도덕감각에관하여	163
제 2 절사회성의첫번째및두번째단계에대하여	167
제 3 절사회성의세번째단계에대하여	173

제 2 부	181
제 1 절우리의오류의원인들에대하여: 소유의기원	181
제 2 절공유제와소유의특징들	187
제 3 절제 3 의사회형태의결정 — 결론	201

적앞에서우리의요구는끝이었다.

Adversus hostem oeterna auctoritas esto

「12 표법」

제 1 절 토지는 전유될 수 없다.

〈경작지는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인간에게 무상으로 준 것이므로 천부적인 부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는 공기나 물처럼 옮겨다니는 것이 아니고 밭처럼 고정되고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들이 다른 모든 이들을 배제하고 이 부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었으며 다른 이들이 이러한 전유행위에 동의했기 때문에, 하늘이 준 무상의 재산이었던 토지는 사회적인 부가 되었고, 따라서 그것을 이용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세 H. Say, 『정치경제학』).

경제학자들은 법률과 철학에 관한 한 최악의 부류에 속하는 권위자들이라고 말한다면 잘못일까? 자연의 재산들, 즉 신이 창조한 부가 어떻게 사유 재산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제기한 이는 바로 이학파의 비조이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아주 모호한 답을 주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것이 저자의 무지에서 나온 것인지 악의에서 나온 것인지 더 이상 알지 못할 정도이다. 내가 묻건대, 도대체 무엇이 토지의 비유동성을 전유의 권리와 관련시켰는가? 토지와 같이 〈제한적이고〉 〈옮겨다닐 수 없는〉 사물이 물이나 빛보다는 더 쉽게 명령의 손길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공기보다는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하기가 더 쉬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더 쉬우나 더 어려우나 가아닌데, 세는 가능성을 권리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땅이 바다나 공기보다 더 많이 전유되었는가를 묻지 않는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권리에 의해서 인간이 〈스스로 창조하지도 않고 자연이 무상으로 준〉 이 부를 자기의 것으로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세는 자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전혀 답을 주지 못한다. 설령 그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들, 설령 그가 우리에게 준 설명이 논리가 궁색하기는 하지만 그럭저럭 만족스럽다고 한들, 누가 이 땅 - 인간이 전혀 만들지 않은 재산 - 에 대해서 사용료를 거둘 권리가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토지의 차지료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물론 토지를 만든 이에 게다. 토지는 누가 만들었는가? 신이다. 그러면 소유자여, 뒤로 물러서라.

그러나 토지를 만든 이는 그것을 팔지 않고 그냥 주었으며 어떤 이의 승낙도 받지 않았다. 어떻게 조물주의 모든 자식들 가운데 누구는 장자로 누구는 서자로 취급당할 수 있겠는가? 원래는 할당된 몫이 공평했는데, 어떻게나 중에 조건이 불평등해졌는가? 세는 공기와 물도 〈옮겨다닐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면 마찬가지로 명령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말이 난감에 이러한 추정은 단순한 가설 이상의 것이며 하나의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자. 공기나 물은 자주 명령당했다. 물론 가능할 때마다 가아니라 허용될 때마다 그렇기는 했지만 말이다.

신의 격언을 반복하고, 자신의 눈을 가렸던 덮개를 벗어 진땀위로 고통스럽게 끌어내린다. 그런데 사회철학의 이러한 진보가 이루어진 것은 단지 어제의 일이다. 거짓말을 물리치는데 50 세기라니! 이탄식의 나날 동안 얼마나 많은 강탈이 정당화되고 얼마나 많은 침략이 영예를 얻었으며 얼마나 많은 정복이 축성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방심한 이들이 재산을 빼앗겼고 얼마나 많은 가난한 이들이 쫓겨났으며 얼마나 많은 굶주린 이들이 부로부터 배제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반목과 전쟁! 국민들 사이의 방화와 살육! 마침내, 시간이 흐르고 이성에게 도된 덕분에 이제 토지는 결코 경쟁의 전리품이 될 수 없으며, 달리 장애요인이 없는 한 태양 아래 모든 이들에게 각자의 몫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한다. 각자는 자기의 산양을 울타리에 맴돌 수 있고, 암소를 풀밭에 끌고 갈 수 있으며, 땅의 한 모퉁이에 씨를 뿌릴 수 있고, 화덕에서 빵을 구울 수 있다.

천만에,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도처에서 〈노동과 근면에 영광 있으라!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몫을, 각자의 성취에 따라 각자의 능력을〉 이라는 외침을 듣는다. 그런데 나는 인류의 대부분이 다시 무일푼이 되는 것을 본다. 마치 어떤 이들의 노동이 다른 이들의 노동 위에 우박처럼 내리퍼붓듯이 말이다.

〈문제는 해결되었다〉 고 엔느캥씨는 외친다. 〈노동의 딸인 소유는 법률의 후견 아래에서만 현재와 미래를 향유한다. 소유의 기원은 자연권에서 나오며 그 권한은 민법에서 나온다. 실정법들은 〈노동〉 과 〈보호〉 라는 두 가지 이념의 결합에서부터 유래한다. ...〉

아! 〈문제가 해결되었다니! 소유가 노동의 딸이라니!〉 그러면 중물 취득권, 상속권, 증여권 따위는 단순한 선점에 의해서 소유자가 될 권리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성년成年, 친권, 후견, 금치산 등에 대한 당신네의 법률은 이미 노동하는 자가 선점권, 즉 소유를 취득하거나 상실하게 될 여러 조건들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서 법전에 대한 세세한 논의에 빠져 들 수는 없으므로 나는 소유를 옹호하는 가장 통상적인 편견 세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① 〈전유 appropriation〉, 즉 점유에 의한 소유의 형성, ② 〈사람들의 동의〉, ③ 〈시효 취득〉. 그리고 나서 나는 노동이 일하는 자개 개인의 조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소유 자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에 빠지며, 인정사정없는 판사의 해들 짐승처럼 내몰리고 온갖 가정(假定)으로 추궁을 당한 나머지, 그는 고집하고, 고쳐말하고, 앞의 말을 뒤집고, 모순된 말을 늘어놓는다. 그는 삼단논법의 72 가지 형식을 고안해 낸 사람보다 천배나 더 미묘하고 정교한 변증술의 온갖 책략을 다 동원한다. 자기 권리를 정당화하려는 소유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식이다. 그는 처음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항의하고 도전한다. 다음으로 그는 논쟁을 피할 수 없으면 궤변으로 무장하고, 무시무시한 포병대를 주위에 배치하고, 포화를 터트리면서 선점, 점유, 시효 취득, 계약, 오랜 관례, 보편적 동의 따위를 차례로 그리고 동시에 내세운다. 여기서 지게 되면 소유자는 상처 입은 멧돼지처럼 방향을 바꾸고 격렬하게 부르짖는다. 나는 선점이 상의 것을 했다. 나는 노동했고, 생산했고, 개량하고 변형시켰으며, 〈창조했다〉. 이 집, 이 밭, 이 나무는 모두 내 손으로 만든 것이다. 가시덤불을 포도밭으로, 잡목을 무화과 숲으로 바꾼 것은 바로 나다. 기근의 땅에서 오늘날 수확을 거두는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나의 땀방울로 이 땅을 기름지게 했으며, 나에게서 일당을 받지 못했으면 굶어 죽었을 이들에게 대가를 지불했다. 누구도 나만큼 노동과 비용을 들이지 않았으니 누구도 나와 나 누어가 질 수 없다.

그대는 노동을 했다. 소유자여! 그런데 그대는 원초적 선점에 대해 무엇이 라고 말했는가? 뭐라고! 그대는 그대의 권리에 대해 확신이 없었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속이고 정의를 우롱하길 원했는가? 어서 그대의 변론 수단을 내놓아라. 판결은 항소가 허용되지 않으며 변상을 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그대는 알지 않는가.

그대는 노동을 했다! 그러나 그대가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하는 것과 그대가 공유물을 차지하는 것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땅에 대한 권리는 공기나 빛에 대한 권리와 마찬가지로 시효 취득에 의해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그대는 모르는가?

그대는 노동을 했다! 그러면 그대는 한번도 다른 이들에게 노동을 시킨 적이 없는가? 그런데 그대가 이들을 위해 노동하지 않으면서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을 이들은 어찌해서 그대를 위해서 노동하면서도 잃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대는 노동을 했다! 아주 이른 때부터, 그러나 그대가 한 일을 보자. 우리는 수를 세고, 무게를 달고, 분량을 헤아릴 것이다. 이는 벨사살(Balthazar, 구약 「다니엘서」 5 장에 나오는 바빌론의 마지막 왕자-율긴이)에 대한 심판이리라. 왜냐하면 내가 이 저울, 이 수준기(水準器, 이 잣대)에 의해 맹세코 판단하건대, 만일 그대가 어떤 방식으로 타인의 노동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면 그대는 마지막 카르테롱(quarteron, 4분의 1 파운드-율긴이) 까지도 반환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선점의 원리는 포기된 지 오래이다. 이제 더 이상 〈땅은 맨먼저 차지한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소유권은 처음의 참호 속으로 기어들어가서 자신의 오랜 금언을 저버린다. 정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

제 3 장 소유권의 동인으로서의 노동에 대하여

현대법률학자들은너나할것없이경제학자들이말한것을근거로원초적선점의이론은너무파괴적이라고폐기하고나서소유는노동에서나온다는이론에전적으로매달렸다. 우선, 이는순환논법에의한망상이었다. 쿠쟁씨는노동하기위해서는선점해야만한다고말했다. 따라서나로서는선점권은모두에게평등하므로노동하기위해서는평등에따라야만한다고말했다. 장-자크루소는외쳤다. <‘이벽은내가지었다. 나는이땅을나의노동에의해얻었다’라고부자들이말하는것은허사이다. 우리는이들에게‘누가당신에게벽을지을건축선建築線을허가했소? 우리가당신에게억지로시키지않는노동을가지고무슨근거로보상받기를원한다는말이요?’라고반문할수있다.> 이추론앞에서모든궤변들이무너질것이다.

그러나노동설을내세우는이들은자신들의체계가법전과완전히모순되며법전의모든조항과규정들은원초적선점이라는행위에근거한소유를상정하고있다는사실을깨닫지못한다. 만일노동만이그결과로나타나는전유專有에의해서소유를낳는다고하면, 민법전은거짓말이고헌장憲章은허위이며우리의모든사회제도는권리의침해일것이다. 노동권에대해서뿐만아니라소유행위자체에대해우리가이장章과다음장에서벌여야할토의에서아주명쾌하게도출될결론이바로이것이다. 앞으로우리는한편으로우리의입법이자가당착이라는것을, 그리고다른한편으로새로운법규는그자체의원리나현재의입법과어긋난다는것을알수있을것이다.

나는, 소유권을노동에서찾는학설이소유권을선점에서찾는학설과 마찬가지로재산의평등을함축한다고주장했다. 따라서독자는내가어떻게재산과능력의불평등에서이평등의법칙을도출해낼수있을까무척궁금할것이다. 곧만족스러운답을얻을수있을것이다. 그러나우선소유의원리로서선점대신노동이들어선이놀라운과정에대해독자들의관심을환기시키고나서, 소유자들이상투적으로내세우는몇가지편견들 - 입법에의해재가되긴했지만노동을내세우는학설에의해완전히뒤집혀진편견들 - 을검토해보는것이 좋을듯하다.

독자여, 당신은피고인에대한심문을방청한적이있는가? 그의술책, 농간, 핑계, 둘러대는짓을보았는가? 진술할때마다반격을당하고혼동

서문¹

브장송 Besançon 아카데미의회원여러분께

파리, 1840 년 6 월 30 일

여러분,

쉬아르 Suard 부인이창설한 3 개년연구지원금과관련된회합에서, 여러분은다음과같은희망을표명했습니다.

<본아카데미는그수혜자에게자신이지난한해동안수행한여러연구들에대한간결하고명료한보고서를제출할것을요구한다.>

여러분, 나는이제이의무를다하고자합니다.

여러분의동의를청원할때, 나는 <가장수가많고가장가난한계급의물질적·도덕적및지적조건을개선할> 수단을위한연구를수행하고자하는나의의도를분명히밝혔습니다. 이생각이자격신청요건으로서는아주 엉뚱해보였음에도불구하고여러분은흔쾌히그것을받아들여주었습니다. 그리고여러분이나에게기꺼이베풀어준남다른배려에의해서여러분은이엄중한약속을하나의꺾수없는신성한의무로만들었습니다. 이후로나는내가얼마나훌륭하고존경할만한분들을상대하고있는지를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학식에대한나의존중, 여러분의은혜에대한나의감사, 여러분의영예에대한나의열의는실로무한한것입니다.

우선, 온갖의견과체계들로다져진상궤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인간및사회에대한연구에과학적습성과엄밀한방법을도입하지않으면안된다고확신하고있기에, 나는한해를문헌학과문법학에바쳤습니다. 언어학, 즉말의박물학은모든과학들중에서도나의기질특성에가장알맞은 것이었으며, 또내가하고자하는연구와가장관계가깊은것으로보였습니다. 비교문법학의가장흥미로운문제들중하나에대해그당시내가작성한 논문²은놀라운성과를거두지는못했는지라도나의연구의견실함을보여주기에는충분했습니다.

¹ 다음에게재한편지는이연구논문초판의서문역할을한다.

² P.-J. Proudhon, 『문법적법주들에대한연구』, 고고문헌학아카데미에서호평을 얻은글, 1839 년 5 월 4 일, 미간행.

그후에는형이상학과도덕론이나의유일한관심사였습니다. 이학문들은여전히그대상과경계가제대로규정되어있지는않지만그래도자연과학들과마찬가지로는증과확실성을받아들일여지가있다는것을알게된나의경험은이미나의노고를보상하는것이었습니다.

그러나여러분, 내가따르는모든스승들중에서내가가장큰빚을진이는바로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협조, 여러분의계획, 여러분의지침은나의내밀한소원이거나나의가장소중한희망과합치하였으며끊임없이나를계도해주고내게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소유에관한이연구는바로여러분의사유에서나온것입니다.

1838년에브장송아카데미는다음과같은문제를제시했습니다. <자살의수가줄곧늘어나는것은어떤원인으로둘려야하며, 이정신적감염의효과를막을적절한수단은무엇인가?>

이것은, 덜막연한말로표현하자면, 사회악의원인은무엇이며그해결책은무엇인가를묻는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위원회가응모자들이자살의직접적이고개별적인원인들뿐만아니라그원인들하나하나를방지할수단도빠짐없이열거했다고공표했을때, 여러분스스로가그원인과해결책을인정했습니다. 그러나다소재치있게열거된것중어느하나도악의제일원인에대해서든그치유책에대해서든어떤적극적인교훈을끌어낼만한것은없었습니다.

1839년에, 학문적으로표현될때에는늘신랄하고다채로운여러분의계획안이한층더정교해졌습니다. 1838년의콩쿠르는사회적질병의원인들로서, 아니좀더정확히말하자면사회적질병의증후군으로서중교적및도덕적원칙의망각, 부에대한야욕, 향락에대한탐닉, 정치적선동들을지적했습니다. 이모든요소들을여러분은다음과같은하나의명제로묶었습니다. 「위생, 도덕, 가족적·사회적관계와관련된일요예배의효용에대하여.」

여러분, 당신들은그리스도교의언어로사회의참된체계가무엇인가를묻고있습니다. 한응모자³는일요휴식제도는조건들의평등을토대로하는정치제도와필연적으로결부되어있다는것, 이제도는평등없이변칙이요불가능이라는것, 평등만이고대로부터내려온이신비한일곱째날의휴식을다시꽃피울수있다는것을감히주장하고또논증했습니다. 이주장은여러분의동의를얻지못했습니다. 그이유는여러분이응모자가지적한관련성을부정하지는않으면서도조건들의평등이라는원리는그자체로입증되어있지않기때문에, 저자의생각은가정의영역을벗어나지않는다고정당하게판단한데있었습니다.

³ P.-J. Proudhon, 『일요예배의효용에대하여』, Besançon, 1839: 제 2 판, Paris, 1841.

가없다. 한마디로말하자면, 용익권자는사회의감시아래있으며노동의조건과평등의법칙에종속되어있는것이다.

따라서 <사용하고남용할권리> 라는, 소유에대한로마인의정의는무효화된다. 이러한정의는폭력이낳은배덕이며, 여태껏민법이재가한것가운데가장기괴한주장이다. 인간은자신의용익권을사회로부터받는것이며, 사회만이항구적인방식으로점유권을행사하는것이다. 개인은사라지지만사회는죽지않는다.

이너무나당연한진실을토론하느라나의영혼은얼마나깊은혐오에서로잡히는가! 우리는오늘날이러한진실들을의심하는가? 이진실들이승리하도록하기위해서또다시싸워야할것인가? 이성으로되지않는다면완력으로이진실들을우리의법률속에도입할수있는가?

<선점권은만인에게평등하다.>

<선점의척도는의지意志에있는것이아니라, 공간과수의가변적조건들에있다. 따라서소유는성립할수없다.>

어떤법전도일찍이표명한적이없는것, 어떤헌법도일찍이허용한적이없었던것이바로이것이다! 민법이나만민법이모두반대한것이바로이러한공리이다!

그러나다른체제를내세우는이들의향의또한들린다. <노동! 소유를구성하는것은노동이다.>

독자여, 속지말기를. 소유의이새로운토대는첫번째것보다더못한것이다. 나는이제독자들의양해를구하면서, 사태를한층더명쾌하게펼쳐보이고나서독자들이여태껏들어온어떤것보다더부당한주장을논박할것이다.

왜냐하면사람들이마치정의를소유의원리인양생각하기때문에.
〈…소유는인간이품은야망의정당한목적, 그의생존의희망, 그의가족의안식처, 즉한마디로말하자면가정과도시와정치적공동체의초석이되었다.〉

점유만이이모든것을낳는다.

〈모든사회제도와모든시민적제도의영원한원리이자…〉

그렇다, 소유란영원하다. 일체의부정否定이그러하듯이. 자, 이것이소유에도대를둔모든제도와법이사멸하게될이유이다.

〈자유만큼값진재산이고…〉

돈많은소유자에게는말이다.

〈사실상, 거주할수있는땅의경작을가져다주며…〉

경작하는이가소작인이아니라고해서땅이더형편없이경작되겠는가?

〈노동의보장과기품을주며…〉

소유로말미암아노동은하나의조건이아니라하나의특전이된다.

〈정의의적용이다…〉

재산의평등이없는정의란도대체무엇인가? 거것분동分銅을가진저울이아닌가.

〈모든도덕과〉

흙주린배는하등도덕을모른다.

〈모든공공질서는〉

그렇다, 소유의보존은말이다.

〈소유권에의거한다.〉

존재하는모든것의버팀목, 존재해야하는모든것의걸림돌, 이것이바로소유이다.

이제요약해서결론을이끌어내자.

선점은평등에이를뿐만아니라소유를〈가로막는〉 것이다. 왜냐하면인간은누구나자신이존재한다는사실만으로선점권을가지기때문이며살기위해서는경작하고노동할재료가필요하기때문이다. 또다른한편으로는선점자의수가출생과사망에의해계속변하므로일손이요구하는자재의분량도선점자의수에따라달라진다. 따라서선점은항상인구에종속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점유란법적으로결코고정될수없으며, 점유가소유로변모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따라서선점자는누구나당연히점유자또는용익권자가되나, 소유권자로서의자격은가질수없다. 용익권자의권리란다음과같은것이다. 그는자신에게맡겨진사물에대한책임이있다. 그는사물의보존과개발을염두에두면서일반적인용도에따라서그것을이용해야만한다. 그는결코사물을변형시키거나축소하거나망가트릴권리가없다. 그는자신이결과물을거두는동안에다른이가사물을이용할수있도록그용익권을나눌권리

마침내, 여러분은평등이라는이기본적인원리를다음과같은용어로쿵쿠르에내걸었습니다. 「자녀들간의평등한재산분할에대해법률이지금까지프랑스에서초래한, 또앞으로프랑스에서낳을경제적·도덕적결과들」

무게도함축도없는상투적문구에구애되지않는다면, 내가보기에여러분의문제를이해하는방식은다음과같은것입니다.

만일법률이한아버지의자식들모두에게공동상속권을줄수있다면, 그의손자와증손자들모두에게도평등하게상속권을줄수있지않겠는가?

만일법률이가족의경우에차남들의권리를인정하지않는다고할지라도, 상속권에의해종족, 부족또는국민의경우에는그것을인정할수는없는가?

상속권에의해서평등이사촌이나형제들사이에서와마찬가지로시민들사이에서도유지될수는없는가? 한마디로말하자면, 상속의원리가곧평등의원리로될수있을까?

이모든논점들은일반적인표현으로요약하자면다음과같습니다. 즉상속의원리는무엇인가? 불평등의토대는무엇인가? 소유란무엇인가?

여러분, 오늘내가여러분에게제출하는연구의목적이바로이것입니다. 만일내가여러분이생각하는취지를제대로포착했다면, 만일내가명백함에도불구하고앞에서설명한여러이유들에의해오랫동안무시되어온진실을밝혀낸다면, 만일내가확실한탐구방법에의해서조건들의평등이라는학설을확립한다면, 만일내가민법의원리, 정의의본질및사회의형태를확정한다면, 만일내가소유를영원히부정한다면, 여러분, 이모든영예는바로여러분의몫이며여러분의도움과고취덕분입니다.

이작업의취지는철학의문제들에체계적인방법을적용하고자하는것이며, 그밖의모든의도는모두나와는무관한것이며심지어유해하기조차합니다.

나는법률학에대해이렇다할신뢰를두지않고말했습니다. 나는그렇게할권리가있습니다. 그러나만일내가이른바이과학적학문이라는것과그것을연마하는사람들을구별하지않는다면, 나는정당하지않을것입니다. 우리법학자들은힘들고엄격한연구에몰을바치고있으며지식과능변에의해서동료시민들로부터여러모로존경을받을만합니다. 이들은다만한가지비난, 즉자의적인법률들을지나치게존중한다는비난만을감당하면될뿐입니다.

나는경제학자들에게가차없는비난을가했습니다. 나는솔직히말해대체로이들을좋아하지않습니다. 그들이쓴글귀의도도함과공허함, 그들의무례한교만과그들의형언하기힘든오류들이나를격분시켰습니다. 그들을인정하고또용인해주는자가있다면그들의글을읽어보아야만합니다.

나는 가르치려드는 그리스도교 교회 또한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나로서는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 교회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 심판을 내렸을까요? 이 비난은 내가 입증하는 사실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와 도덕에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물리학과 수학의 논증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라는 점은 확실하기독교 세계에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교회를 비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은 내가 방법과 논증에 마음을 쏟은 나머지 형식과 문체를 너무 소홀히 했다고 유감으로 여길 것입니다. 나도 더 잘해보려고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내가 보기에 19 세기는 생성生成의 시대여서, 여기에서는 새로운 원리들이 고안되기는 하나 쓰인 것 중 어느 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프랑스가 이렇게 많은 재주꾼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단 한 명의 위대한 저술가도 손꼽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 문학적 인영예를 추구한다는 것은 내게는 시대착오로 여겨집니다. 여신이 탄생하려는데 늙은 무녀를 내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종막에 다가선 비극의 가련한 배우들이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파국을 앞당기는 일입니다. 우리들 중에서 가장 값진 자는 이 역할을 가장 잘 해내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는 이 슬픈 성공을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 내가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현존하는 모든 것을 증오하고 그것을 파괴할 계획을 품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찬동을 갈구하고 여러분에게 장학생 자격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냉정하고 정제된 철학 정신으로 이 연구 과정을 마칠 것입니다. 압박의 감정이나를 화나게 한 것이상으로 진리의 통찰이나를 냉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연구에서 거두고자 하는 가장 값진 결실은 악과 그 근원에 대한 명쾌한 인식 - 이것은 열정이나 흥분보다 더 옥함이 있습니다 - 이 가져다주는 이 평정심을 독자들에게 불어넣는 것입니다. 인간의 특권과 권위에 대한 나의 증오는 끝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나는 이따금 나의 분노 속에 인간과 사물을 뒤섞는 잘못을 저질렀겠지요. 지금 으로서는 그저 경멸하거나 불평할 따름입니다. 증오하기를 그만두기 위해서 나로서는 깨닫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천명하는 일을 사명이자 기개로 삼는 여러분, 인민을 훈육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할지를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자신들에게 옳은 일인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는 인민은 귀에 솔깃한 소리를 듣기만 하면 전혀 어긋나는 생각에도 당장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능성의 한계이자 사고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물리학자와 마술사를 구별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자와 꾀변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소문도 정말 진짜처럼 여겨서 아무 이야기나 쉽게 믿고, 받아들이고, 굽어모으지요. 신기한 회파

한 원리들 중 하나에 의해 속속들이 침탈당해서 풍요와 빈곤 속에서 저절로 소멸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다.¹

이들 법학자는 또 이런 저런 따위를 예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이 점을 자꾸 들추어낼 필요가 있을까? 결과들은 저절로 드러날 것이며, 또 지금은 법전 전부를 통째로 비판할 때 도 아니다.

고대 민족들의 소유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미 고증과 호기심의 대상의 애무 것도 아니다. 사실이 권리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법 해석의 준칙이며, 소유역시 이러한 준칙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권의 보편적인정이 소유권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유성의 기원과 천체의 운행에 대해 잘못 생각했듯이, 사회의 구성, 권리의 성격, 정의의 적용 등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 인간의 해묵은 견해들을 신조로 받아들이는 수 없다. 인도인들이 네 개의 카스트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 나일강과 갠지스강 연안에서는 토지가 혈통과 직책의 존귀성에 비례해서 분배되었다는 것,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소유를 신들의 가호 아래 두었으며 경계표지와 토지 대장작성이 그들에게는 종교적 의식들을 동반했다는 것,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무슨 중요성이 있는가? 특권의 형태들이 다양했다는 사실이 불의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음탕한 비너스 신의 신비가 부부 사이의 정결에 반하는 어떤 것도 증명하지 않듯이, 소유의 신주피터의 숭배가 시민들 사이의 평등에 반하는 어떤 것도 증명해주지 않는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인간의 권위는 무효이다. 왜냐하면 소유권은 필연적으로 평등에 의존하는 만큼 그 자체의 원리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소유권을 재가해 준 종교의 동의는 무효이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에나 사제는 군주에게 봉사했으며, 신들은 항상 정치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말해왔기 때문이다. 흔히 소유의 덕으로 둘러지는 여러 사회적이익들은 소유를 변호하기 위해 동원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익들은 모두 점유의 평등이라는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점유와 소유를 잘 구별해 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소유에 대한 아래와 같은 장광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소유권의 설정은 인간의 제도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²

그렇다, 군주제가 가장 영예로운 제도이듯이 말이다.

<대지에서의 인간의 변영의 첫째 원인이요...>

¹ 바로 여기에서 우리 조상들의 단순함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 조상들은 친자식이 없을 경우 사촌형제들로 하여금 유산을 상속하게 했다. 그러나 한가문 안에서 부와 가난의 양극단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촌들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두 가계 사이에 유산을 균등하게 나누는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보자.

² 지라드 Girad, 『로마인의 소유권에 대한 연구』

람의 상속인만을 인정하는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관습이 생겼고, 나중에는 평등의 원리를 이와는 정반대로 적용함으로써 자식들 모두에게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우리 시대와서는 장자 상속권이 결정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본능에 따른 조직의 이조야한 형태들과 참된 사회과학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말인가? 통계, 토지대장, 정치경제 등에 대해 조금도 식견이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입법의 원리를 전수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

현대의 어느 법학자는 말한다. 법률이란 사회적 필요의 표현이자 사실의 선언이며, 입법자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술할 뿐이라고. 이러한 정의는 전혀 정확하지 않다. 법률이란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는데 따라야 하는 준칙인 것이다. 인민이 법률을 표결하는 것도 입법자가 법률을 표명하는 것도 아니며, 학자가 법률을 발견하고 명문화할 뿐이다. 그러나 사실상 법률은 애초에는 <필요의 표현> 이자 그 필요를 충족하는 수단들에 대한 지침일 수밖에 없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외에 달리 아무것도 아니었다. 샤를콩트(Ch. Comte, 1782~1837, 프랑스의 경제학자, 『소유론』의 저자-옴진)이 씨가 자신의 책의 절반이나 할애해서 입증하고자 했던 바가 바로 이것이다. 법률학자들은 기계처럼 충직하고, 완고하고, 철학적 사고와는 거리가 멀고, 자구字句의 의미에 얽매어나며 지선의는 있으나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사려깊지 못한 회구에 불과했던 것을 마치 과학의 결정판인 양 간주했다.

소유권의 옛 창시자였던 이 법률학자들은 세습 재산을 보존하는 영속적이고 절대적인 권리, 두루 통용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는 공평하게 보였던 이 권리가 그 재산을 양도하고 매각하고 증여하고 획득하고 상실할 권리조차 배한다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그 권리를 통해 확립하고자 했던 목적이었던 평등 자체가 바로 그 권리에 의해 파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다. 실령이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들은 그것을 고려로 놓지 않았을 것이다. 목전의 필요가 우선이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흔히 일어나기 마련이듯이, 곤란한 점들이 우선은 너무 사소해 보여서 그냥 지나쳐 버렸던 것이다.

순진한 입법자였던 이 법률학자들은, 비록 소유란의 향만으로 보존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소유가 세를 놓고 임대하고 이자를 빌려주고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남기고 지대를 설정하고 농지에 세금을 매길 권리들처럼 의향으로 보존되더라도 그 실체는 다른 곳에서 점유되는 권리들을 수반한다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

우리의 법률을 만든 족장들이 법률학자들은 만일 상속권이 할당의 평등을 보존하도록 자연적으로 주어진 방식과는 다른 것이었다면, 가정들은 곧 가장 파국적인 배제의 희생물이 될 것이고 사회는 자신의 가장 신성

람 소리나 방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파리떼가 양푼 소리를 듣고 모이듯 모여듭니다.>⁴

여러분, 내가 평등을 희망하듯 여러분도 평등을 희망하시기! 우리 조국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평등의 전도사이자 선구자가 되시기! 내가 여러분의 마지막 연구비수혜자이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내가 품을 수 있는 모든 소망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값지고 내게 가장 영예로운 것입니다.

심심한 경의와 두터운 감사의 마음으로.

귀아카데미 연구비수혜자

피에르조제프프루동

이 편지를 전달받은 지 두 달 후, 아카데미는 8월 24일에 심의회를 열고 그 수혜자에게 다음과 같이 회답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회원이 스위스 아르 연구비수혜자가 지난 6월에 『소유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여 본 아카데미에 헌정한 소책자에 대해 아카데미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동 회원은 아카데미가 출판물에 포함된 반사회적 교설들에 대한 책임을 정의와 귀감과 스스로의 권위를 걸고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아카데미는 스위스 아르 연구비수혜자의 저서를, 아카데미의 승인 없이 출판한 점과 또 회원 각자의 원칙들에 정반대되는 견해를 아카데미의 견해인 양 돌린 점을 들어 서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비난한다.

2. 수혜자에 대해, 만일 이 책의 제 2 판이 출판될 경우 거기에서 헌사를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3. 아카데미의 이 판단은 간행물에 기록되어야 한다.

이 3개 조항은 표결에 붙여 채택되었다.

이렇게 단호한 부인이란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더욱 단단해졌다고 그 당사자들이 생각한 이 가소로운 판결이 나온 후에, 나는 독자에게 우리 동포들의 지성을 우리 아카데미 회원들의 지성으로 측정하지 않도록 촉구하기만 하면 되었다.

사회과학이나 정치학에서의 나의 후원자들이나 <소책자>에 대해 파문을 선포하고 있을 때, 프랑수아-콩테에 살지도 않고 나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내가 경제학자들에게 한 너무도 격한 비난에의 해 개인적으로 공격 받았다고 여길지도 모를 어느 한 사람, 인민의 모든 고통을 감지하고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권력에 아첨하지도 권력을 폄하하지도 않고 그 저 권력을 계도하기에 힘쓰면서 그 권력으로부터 영예를 부여받은 박식하고 겸손한 한 저술가, 아카데미 회원이자 경제학교수이고 소유의 옹호자인 블랑키

⁴ Charron, 『지혜에 대하여』, 제 18 장.

Blanqui 씨가 동료들이나 장관앞에서 나를 변호해주었으며, 늘 무지한 만큼 늘 논문 사법의 횡포로부터 나를 구해주었다.

나는 내가 두 번째 연구를 출판했을 때 블랑키 씨가 영광스럽게 나에게 쓴 편지를 독자도 기쁘게 읽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것은 받는 이를 들뜨게 하는 동시에 쓴 이를 영예롭게 하는 편지였다.

귀하

소유에 대한 당신의 두 번째 연구를 기꺼이 내게 보내 주신 데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것을 첫 번째 연구를 접하고 당연히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나는 이처럼 중요한 저작에 일종의 선전적자와 같은 모양새를 주는 투박한 형식을 당신이 어느 정도 바로잡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 대해 반신반의한 나로서는 당신의 의도에 대해 안심하는 데는 당신의 재능 외에 달리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나라에 불을 붙이는데는 참다운 지식을 그리 많이 소모할 필요가 없는 모양입니다. <소유란 독질이다!> 이 거친 명제는, 만일 당신이 그 난폭한 솔직성을 계속 고집했다면, 부대속에서 그것을 결상표만 가지고는 판단하지 않는 진지한 정신의 소유자들에게 마저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형식을 다소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당신 학설의 기본에는 변함없이 충실하겠지요.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나를 이 위험한 예언에 적잖이 참여시켜 주셨지만, 나는 당신의 재능에 대해서는 물론 경의를 표하면서도 그 밖의 모든 점에서 나를 끌어들이는 그러한 연대를 수락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만 한 가지 점에서 당신과의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종류의 소유가 너무도 자주 남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남용에서 폐지를 결론짓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든 질병을 단숨에 없애는 죽음과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나는 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물론 나도 모든 남용 중에서 소유권의 남용이야말로 가장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당신에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를 침해한다거나 더군다나 파괴하지 않고 도이 질병에 대한 치유책이여 전히 있습니다. 만일 현행 법률들이 소유권의 행사를 제대로 규제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법률들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민법은 꾸란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리낌없이 민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행사를 규제하는 법률들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배척하는 데는 신중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완벽하게 순결한 손을 가진 정직한 인간이란 있을 수 없으니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알지도 원하지도 않으며 눈치 채지도 못하면서도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현사회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온갖 종류의 미덕과 악행을 그 구조 안에 지니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보기에, 소유가 다시 고쳐만들 수 있고 또 굳이

어날 지에 견해 보지도 않고, 그에 따른 애로점들을 고민해 보지도 않은 채, 심지어 바람직한 일인가 아닌가를 따져 보지도 않은 채 말이다. 법률은 이 기주의를 재가했으며, 기괴한 주장들을 늘어놓았다. 법률은 마치 밀빔진 독을 메우고 지옥을 채울 힘을 가지기나 한 듯이 불경한 희구들을 끌어모았다. 맹목적인 법률, 무자비한 인간의 법률, 법률이 아닌 법률, 이것이 사회의 수호신인 양 줄곧 부활되고 복권되고 갱신되고 강화되면서 민중의 의식을 혼란케 하고 지배자들의 정신을 어지럽히고 국민들에게 온갖 재앙을 몰고왔다. 그리스도교가 비난했던, 그러나 성서를 읽을 능력이 없었던 만큼이나 자연과 인간을 연구할 열의도 거의 없었던 무지한 성직자들이 신격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법률이다.

그런데 법률은 소유권을 창출하면서 어떤 지침을 따랐는가? 어떤 원리가 법률을 인도했는가? 법률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너무나 놀랍게도 평등이었다.

농업은 토지 점유의 토대이자 소유의 우연적 원인이었다. 이것은 농사짓는 이에게 생산수단을 동시에 보장해주지 않는 한, 그에게 그의 노동의 결실을 결코 보장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강자의 침탈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약탈과 사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점유자들은 그들 사이에 항구적인 구획선과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쌓을 필요를 느꼈다. 해마다 인구는 늘어나고 경작자들의 탐욕도 한터해갔다. 사람들은 야망이 넘지 못한 표식을 세움으로써 그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리하여 공공의 안전과 각자의 평온한 향유에 필요한 평등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물론 할당된 몫이 결코 지리적으로 평등한 것은 아니었다. 절대적인 평등을 가로막는 많은 권리들이 있었다. 이들 권리란 한편으로는 상속, 증여, 교환 등(어떤 것들은 자연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잘못 해석되고 심지어 잘못 적용되었다)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생과 지위의 특권들처럼 무지와 폭력에 따른 비합법적인 창안물들이었다. 그러나 원리는 어느 경우에나 항상 동일했다. 요컨대 평등이 점유를 재가했듯이, 또한 평등이 소유를 재가한 것이다.

농사짓는 이에게는 해마다 씨를 뿌릴 발이 필요했다. 미개인들에게 있어서, 해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을 되풀이하거나 이곳에서 저곳으로 끌고 이 그들의 집과 가족과 기구를 실어나르는 대신,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세습 재산을 각자에게 할당하는 것보다 더 편하고 더 간단한 방책이 있겠는가?

원정에서 돌아온 병사는 그가 조국에 바친 봉사 때문에 무일푼이 되는 일이 없어야 했으며 그의 유산을 되찾아야만 했다. 따라서 소유는 의향만으로(nudo animo) 보존되고 소유자의 동의와 행위에 의해서만 상실된다는 것이 관례로 되었다.

한 가족이 사멸했을 때 토지의 분배를 다시 하는 일이 없어야 했으며 할당의 평등은 세대가 바뀌어도 그대로 보존되어야만 했다. 따라서 자식들과 친척들이 망자(亡者)와 맺고 있는 혈족 및 인척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의 조상을 계승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당하게 보였다. 여기에서 우선, 단한사

〈선점에의해취득되는이우선권이어떻게해서줄곧존속할수있으며 또최초의선점자가점유를그만둔이후에도요구될수있는, 안정적이고항구적인소유로될수있는가?〉

〈농업은인류의번식의자연적인결과였다. 그리고역으로농업은인류의번식을촉진했으며항구적인소유권의확립을필요로했다. 수확에대한확신이없었다면, 누가밭을갈고씨를뿌리는노고를다했겠는가?〉

밭을가는이를안심시키기위해서는그에게수확에대한점유를보장하는것으로충분했다. 스스로경작하는한, 토지에대한그의선점권을인정해주었던것이다. 이것이그가권리로서바랄수있는모든것이였으며, 이것이문명의진보가요구하는모든것이였다. 그러나, 소유! 소유! 선점하지도경작하지도않은땅에대한횡령권, 그누가이권리를부여할권위를지녔단말인가? 그누가이권리를요구할수있는가?

〈농업만으로는항구적인소유를확립하기에충분하지않았다. 실정법이필요했으며, 그법을집행하기위해서는사법관들이필요했다. 요컨대민법상의상태 état civil 가필요했다. 인류의증가는농업을필요하게만들었다. 농사짓는이에게자기노동의결실을보장해주자는요구가항구적인소유권과그것을보호하는법률들의필요를느끼게했다. 따라서민법상의상태의성립을가져온것은바로소유의덕이다.〉

그렇다, 여러분이만들어놓은바와같은우리의민법적상태의성립, 전제정에서군주정과귀족정을거쳐서오늘날민주정에이른, 그러나항상압제적인민법적상태의성립을말이다.

〈소유의끈이없었다면사람들을법이라는유익한속박에묶어두는일이불가능했을것이다. 그리고항구적인소유가없었다면땅은줄곧광대한삼림으로남아있었을것이다. 따라서명쾌한저술가들의뒤를쫓아다음과같이말하자. 만일일시적소유, 즉선점에의한우선권이시민사회의성립에앞서는것이라면, 우리가오늘날알고있는바와같은항구적인소유는민법의소산이라고. 일단획득되고나면소유는소유자의행위에의하지않고는결코소멸하지않는다는점, 소유자가사물에대한점유나보유를상실한이후에도소유는보존된다는점, 그리고소유는제 3 자의수중에들어갈수있다는점을격률으로써확립해준것이바로민법이다.〉

〈따라서원시상태에서는뒤섞여있었던소유와점유는민법에의해서뚜렷하고독자적인두가지사실로되었다. 이두가지사실은법률용어의어법에따르면어떠한공통점도없다. 여기서우리는어떤엄청난변화가소유에일어났는가를, 그리고시민들이소유의성격을어떻게변화시켰는가를알수있다.〉

따라서법률이란소유권을제정함에있어서결코심리적사실의표현도, 자연법칙의전개도, 도덕원리의적용도아니었다. 법률은그단어가갖는모든효력에있어서그권한들을넘어선어떤권리를창출했던것이다. 법률은하나의추상, 은유, 허구를실현했다. 그것도, 그로인해어떤일이일

말하자면형이상학이라는압연기에넣어서평준화시킬수있을만큼단순하고추상적인것입니까? 당신은이두개의멋지고도역설적인즉흥저술에서단지순박하고고집불통의몽상이일수없을만큼뛰어난실제적인사항들을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선동조의거친말들을가지고장난을친다고보기에는경제용어와학술용어를너무나잘구사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당신은『소유란무엇인가?』에서 80 년전에루소가〈달랑베르에게보내는서한〉에서보여준바와같이정신과학문을옹장한시적표현으로드러낸것이라고나는믿습니다. 아무튼이것이나의견해입니다.

이것이내가당신의책에대해보고한날, 아카데미에서말한내용입니다. 나는사람들이그책을법적으로기소하려한다는것을알고있었습니다. 당신은내가어떤요행으로다행히그것을막을수있었는지알수없을것입니다.⁵ 만일검사가즉지적사건의사형집행인이뒤쫓아와서나를앞질러당신의책을공격하고당신의신상을괴롭혔다면, 그것은나에게얼마나큰영겁의고통이었겠습니까? 솔직히말하건대나는정말끔찍스러운이틀밤을보냈습니다. 그리고나는당신의책이하나의학술논문일뿐어떤선동조의선언문도아니라는것을납득시키고나서야비로소세속적인완력을저지할수있었습니다. 당신의문제는너무도숭고해서우리의사회질서에대한중요문제들을거리에서돌을던지면서논하는무분별한자들에게는전혀쓸모가없습니다. 그러나조심하십시오. 그들이갑자기당신도모르는사이에이막강한병기창에들어와자료를뒤져내거나당신의힘찬형이상학을손에넣은어떤거리의궤변가가그것을굶주린청중앞에서마구잡이로해설하지않는지말입니다. 그것은결론적으로표절행위일것입니다.

당신이지적한바와같은소유권의남용에대해서는나도당신만큼심정의동요를느낍니다. 그러나나는질서에대해, 경찰관에게나모나족을줄진부하고성가신질서가아니라인간사회의장엄하고숭고한질서에대해아주깊은애착을지니고있기때문에, 어떤남용들을공경하는데때로는망설이곤합니다. 나는한손으로뒤흔들어놓아야만했던것을다른한손으로다시일으켜세우고자했습니다. 노목의가지를자를대어열매를맺을봉오리를다치지않도록조심해야만합니다! 당신은이것을어느누구보다도잘

⁵ 법무장관비비앵 Vivien 씨는『소유에관한연구』에대한기소를명하기전에블랑키씨의의견을얻고자했다. 이미검사국의격노를산이저작을법무장관이그냥넘어간것은이존경할만한아카데미회원의진술덕이었다. 비비앵씨가책이처음출판된이후내가도움과보호를받은유일한권력자였던것은아니다. 그러나이러한관용은정계에서는아주드문일이니만큼사람들은그것에정중하고한없이감사하는것이다. 나로서는어떤단체들의비겁과위선이단기간단체들을지배하는사람들의정신에서유래하는것과마찬가지로나쁜제도는나쁜행정관을만들기마련이라고늘생각해왔다. 예컨대, 아카데미들은그안에서빛을발하는덕망가와재사들에게불구하고왜일만적으로지적탄압과어리석음과비열한음모의온상인가? 이문제는아마도아카데미가한번쯤거론해볼가치가있을것이다. 옹모자들이있을것이다.

알고있습니다. 당신은 신중하고 교육받은 사람이며 사려깊은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도에 대해 의혹을 품을 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우리 시대의 광신자들에게 애주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당신은 소유의 폐지 (!) 로 결론지었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지성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역동적인 지렛대를 파괴하고자 하며, 가부장적 온정을 가장 달콤한 환각이라고 공격하고, 단한마디로 자본의 형성을 저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화강암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책을, 몇 친구 절들로 가득 차고 영광과 지식으로 빛나는 당신의 책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영광스럽게도 당신이 내게 공적으로 사적으로 전해준 연구 논문은 나빠진 내 건강을 회복해 당신과 함께 한 장한 장씩 연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력한 소견을 당신에게 전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선은 당신이 내게 보내 준 호의에 찬말씀에 대해 당신에게 감사사를 표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우리는 둘 다 진지하다는 미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신중이라는 미덕이 더 필요합니다. 당신은 노동계급이 얼마나 뿌리깊은 곤궁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격조 높은 심장들이 남루한 옷속에서 고동치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나는 저렇게 도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의 힘을 키우는 저 수많은 충직한 사람들에게 누를 길없는 우애의 공감을 느낍니다. 그들을 현혹시키려 하는 자도 있으나, 나는 그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계도하고자 애쓸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 다. 당신은 두 개의 멋진 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 것이 첫 번째 것보다 훨씬 절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것은 두 번째 것보다 훨씬 절제된 것으로만 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평정과 불편 부당을 그 첫 번째 사명으로 하는 과학의 반열에 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만, 내가 품은 가장 높은 평가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파리, 1841 년 5 월 1 일

블랑키

물론, 이 품위와 호소력을 지닌 서한에 대해서 나로서는 몇 가지 유보하고 싶은 점이 있다. 그러나 나는 고백하건 대적 대자의 수를 불필요하게 늘리기보다는 서한의 말미에 담긴 예언 같은 것을 실현하고자 더 애썼다. 나는 많은 논쟁으로 이 제지치고 피로하다. 언쟁에 소비되는 지성은 전쟁에 쓰이는 지성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지성의 낭비이다. 블랑키씨는 소유권에 많은 남용이, 그것도 가장 증스러운 남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로서는 이러한 남용의 총체를 <소유> 라고 부른다. 우리 두 사람에게 소유란 그모서리

부여하면서 소유의 양도에도 동의하였는가? 어떻게 법률은 이러한 권리의 남용을 재가하였는가?

독일인 안킬론 (F. Ancillon, 1767~1837, 저술가, 정치철학자-윌킨이) 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몇몇 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인간이 자연의 대상, 이를테면 밭, 나무 따위에 자신의 힘을 쏟음으로써 그가 얻게 되는 권리는 그 대상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거기에 가져다 준 변화 및 그가 거기에 부여한 형태에 대해서 일뿐이라는 것이다. 공연한 구별이다! 만일 형태가 대상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거의 언젠가 불가능하므로, 인간의 힘을 가시적인 세계의 여러 부분에 적용하는 것은 소유권의 첫 번째 기초이며 재산의 최초의 기원이다.>

공연한 구실이다! 만일 형태가 대상에서 분리될 수 없고 소유가 점유에서 분리될 수 없다면, 점유는 분할되어야 한다. 즉 소유의 조건들을 부과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나 사회가 쥐고 있는 것이다. 차지한 영지가 1 만 프랑의 총 수입을 낳고 이 영지가 분할될 수 없다고 가정하자 (이는 정말 이상한 경우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경제적인 계산에 따라 각각 가정의 연평균 소비가 3,000 프랑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영지의 점유자는 가족의 부양에 필요한 3,000 프랑과 운영비 일체를 제외하고도 1 만 프랑에 맞먹는 보상을 사회에 지불하고서 그것을 이용해야만 훌륭한 장으로서 처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수는 지대가 아니라 차라리 배상금이라 할 만하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법규를 제정한 이 정의의正義란 과연 무엇인가?

<노동에 의해서 물은 형태를 바꾸는 것이며, 따라서 형태와 질료는 대상이 파괴되지 않는 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가 상속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노동하는 자가 자신의 노동의 결실을 포기해야만 한다.>

<다른 모든 경우에는, 질료의 소유가 중물 취득(從物取得)의 규정의 해에서 그 질료에 부가된 것들의 소유를 수반하지만 (손실에 대한 배상을 공제하고), 이때에 원래의 물에 대한 소유를 수반하는 것은 중물에 대한 소유라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에 의한 전유권은 개개인에 맞서는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사회에 맞서서만 허용될 것이다.>

법률학자들이 소유에 대해서 추론하는 방식은 늘 이런 식이다. 법률은 인간들 사이의 권리를, 각인에 대한 각인의 권리와 모두에 대한 각인의 권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제정된다. 요컨대, 비례식이 항이 네 개지만 일 때도 성립한다는 듯이, 법률학자들은 마지막 항을 고려로 넣지 않는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 말하는 한, 소유는 소유에 대해 균형추가 되고 이 두 힘은 서로 평형을 이룬다. 인간이 고립되자마자, 법률학은 오류에 빠지고, 테미스 (Themis, 법의 여신-윌킨이) 는 저울판을 놓쳐 버렸다.

렌의 교수님, 현명한 신틸리에의 말을 들어 보자.

은편익을제공한다는점을인정한다. 그러나이러한분할이어떻게누구나 양도불가의점유권을가진어떤사물에대한이전가능한소유권을각자에게보장해줄수있을것인가? 법률적용어로표현하자면, 점유자에게서소유자로의이러한변용은법률적으로불가능하다. 그것은점유권반환소송과소유권확인소송이초심재판의심급審級에서겹쳐지는것을의미하며, 나아가서땅을함께나누고있는공동분할자들사이의아마도상호적일양도행위가자연권에기반을둔동의라는것을의미한다. 확실히건대, 처음으로법률을만든자들이기도한최초의농민들은지금의법학자들만큼학식을갖추지못했던모양이다. 그들은사적점유권을절대적소유권으로변형시키는데서오는결과들을전혀예상하지못했다. 그들이조금이라도학식이있었다면, 이처럼큰실수를저지르지는않았을것이다. 그러나나중에〈물안에서의권리〉와〈물에대한권리〉사이의차이를준별해낼이들이왜이차이점을소유권의원리자체에는적용하지않았는가?

여기서법학자들에게그들자신의금언을환기시켜보자.

소유권에기원이있다면, 그것은단한가지일뿐이다. 소유권은오직하나의원인으로부터만생겨날수있다 (Dominium non potest nisi ex una causa contingere). 나는여러가지자격으로점유할수있다. 그러나나는단한가지자격으로만소유자가될수있다. 그것이여러원인들에의해우리에게주어질수있다고해도바로그여러가지원인들때문에그것이우리의것이될수는없다 (Non, ut ex pluribus causis idem nobis deberi potest, ita ex pluribus causis idem potest nostrum esse). 여기에내가개간했고, 경작하고있으며, 그위에집을지은, 나와나의가족과가축을먹여살리는땅이있다고하자. 나는이땅을 ① 최초의선점자의자격으로, ② 노동하는자의자격으로, ③ 나에게그땅을할당해준사회계약의덕으로점유할수있다. 그러나이자격요건들중어느것도나에게소유권을주지는않는다. 만일내가중요한것은선점권이라고우긴다면, 내쪽이당신보다먼저선점했다고사회는응수할것이다. 만일중요한것은내가노동했다는사실이라고우긴다면, 그것은단지당신이점유한다는바로그조건에서일뿐이라고사회는응수할것이다. 만일내가중요한것은계약이라고우긴다면, 그계약은엄밀히말하자면용익권자로서의자격확립해주었을뿐이라고사회는응수할것이다. 그럼에도소유자들이내세우는것은단지이러한자격들일뿐이다. 그들은결코다른자격들을찾아내지못했다. 물론어떤권리든그발생적기원은그권리를누리는인간안에있다 (포티에가우리에게가르쳐준바가바로이것이다). 그러나태어나서죽어가는인간안에, 그림자같이스쳐지나가는이대지의자식들안에는, 외부의사물들에관한한소유의권리가아니라점유의자격만이존재할뿐이다. 그렇다면그발생적기원이존재하지않는곳에서어떻게사회가자기자신에맞서는권리를용납할수있었는가? 어떻게사회는점유를

들을다듬어야한다면체이며, 그작업은이미진행중이다. 블랑키씨는그형태가여전히다각형일것 (입증할수는없으나수학적으로허용되는가정) 으로주장하는반면, 나로서는그형태가원형이될것으로생각한다. 성실한사람들이라면누구나서로를인정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현상상에서는사람들이소유의폐지에대해응당주저하리라고나는인정한다. 실제로논쟁에서이기기위해서는, 우리의정치적신념들을능히집약하고있으며또널리수용되고있는한원리를뒤집기만하는것으로는충분하지않다. 대항할수있는원리를세우고그원리에의거한체제를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 나아가서이새로운체제가그에앞선체제를확립시켜주었던모든도덕적, 정치적요구사항들을어떻게충족시킬것인가를보여주지않으면안된다. 따라서내가이미입증해온것들이확실한지아닌지를알려면우선다음과같은조건들이갖추어져야하리라.

소유또는모든소유의남용을제외한기준제도들이자리를찾을수있을뿐만아니라그것들자체가평등의수단이될수있는어떤절대적인평등의체제를찾는것, 즉개인적자유, 권력의분할, 공적관료조직, 배심원, 행정·사법제도, 교육, 결혼, 가족, 상속에서의균등과통일성, 직계빛방계의상속, 판매및교환의권리, 유언권그리고심지어장자長子의권리등의체제, 소유권보다더잘자본의형성을보장하고만인의열의를유지하는체제, 즉플라톤과피타고라스에서부터바뵈프, 생시몽및푸리에에이르기까지지금까지제기된모든결사의이론들을더욱높은관점에서설명하고보충하는체제. 그리고마지막으로, 과도기적인수단으로이용될수있으며당장적용될수있는체제.

이와같은방대한과업은몽테스키외와같은사람 20 명정도의노력을요구한다는사실을나는잘알고있다. 물론단한사람에게그모든것을끝까지다해내도록말길수는없겠지만, 그사람이그러한작업을시작할수는있다. 그가밧아나갈길은목표를발견하고결과를확보하기에는충분할것이다.

제 1 장이책에서사용하는방법, 혁명의이념

만일내가 <노예제란무엇인가?> 라는물음에답해야만한다면, 그래서내가한마디로 <그것은살인이다> 라고답한다면, 나의생각은당장에이해될것이다. 인간에게서사상, 의지그리고인성을빼앗을수있는권력은곧생사여탈의권력이며, 한인간을노예로만드는것은그를살해하는것과다름없다는사실을보여주기위해서굳이군말이필요없을것이다. 그런데나는왜 <소유란무엇인가?> 라는또하나의질문에대해 <그것은도둑질이다> 라고마찬가지로답할때마다, 내답변이잘전달되지못했다는노파심에시달려야하는것일까? 두번째명제는사실상첫번째명제가모양을바꾼것에불과한데모말이다.

나는우리의정부와제도들의원리그자체, 즉소유의문제를논하려고한다. 이것은나의권리이다. 나의연구에서도출되는결론이틀릴수도있다. 이것도나의권리이다. 이책의끝에가서도달한사유를나는책의첫머리에놓고자한다. 이역시나의권리이다.

어떤저자는소유란점유占有에서나오며, 법률로재가된민법상의권리라고가르친다. 또어떤저자는소유란노동에그원천을두는자연권이라고주장한다. 그리고이학설들은서로이율배반적임에도불구하고격려받고갈채를받는다. 나는노동도점유도법률도소유를창출할수없다는것을, 그리고소유란원인없는결과라고주장한다. 내가비난받아마땅한가?

얼마나많은불만의목소리가터져나오는가!

<소유, 그것은도둑질이다!> 93 년 (프랑스대혁명의공포정치시기를뜻한다-옌킨이) 의구호일세! 혁명의나팔일세!...

독자여, 안심하시라. 나는결코불화의주모자도아니며폭동의선동꾼도아니다. 나는며칠앞질러역사를내다볼뿐이다. 나는우리가헛되이감추고자애쓰는진실을드러낼뿐이다. 나는미래의우리정체政體에머리말을쓸뿐이다. 당신에게신성모독으로보이는이정의定義 <소유, 그것은도둑질이다> 는만일우리의고정관념이그것을이해할수있도록허용하기만한다면, 번개를막는피뢰침이될것이다. 그러나얼마나많은이해관계와편견이그것을가로막고있는가! ...아아, 슬프도다! 철학은사건들의흐름을바꾸지못할것이며, 운명은예언과는무관하게실행될것이다. 그렇다면해도정의가실현되고우리의교육이완성되어야하지않겠는가?

지않겠는가? 그러나신이여! 형제들은서로싸우지않는가! 아버들은자식을저버리지않는가! 자식들은탕아가아닌가!

<신은인간에게땅을하사하셨다> -그런데어찌해서나는아무것도얻지못했는가? <신은자연을내발아래두셨다> -그런데나는내머리를돌장소도없구나! <변성하라> 고, 신은그의통역자포티에의입을빌어우리에게말씀하신다. 아! 현명한포티에여, 그일은말처럼그렇게쉬운일이다. 그러나포티에여, 새에게둥지를지을이끼를주어야할것아닌가.

<인류가번성함에따라인간들은땅과그땅에서나는많은것들을서로나누었다. 각자에게돌아온몫은이때부터배타적으로각자에게속하게되었다. 이것이소유권의기원이다.>

점유권이라고말하는것이낮지않은가. 사람들은공동체안에서살았다 (그공동체가적극적인것이든소극적인것이든그것은중요치않다). 그때는사적점유조차없었으므로, 소유란결코있을수없었다. 인구의증대는생필품을불리기위해서노동을점차로강화했으며, 사람들은노동하는자가자기노동의산물의유일한소유자라는것에합의했다 (이합의가공식적인것이냐암묵적인것이냐는중요하지않다). 이것은사람들이앞으로노동하지않고살수없다는바로그사실에대해순전히선언적인합의를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평등한생필품을얻기위해서는노동의평등을제공해야만하고, 노동이평등하기위해서는평등한노동수단을제공해야한다는것이필연적이었다. 노동하지않고힘이나책략으로타인의생필품을침탈한자는누구든평등을파괴한자이며스스로를범위에그리고바깥에둔자였다. 더많은활동을한다는구실로생산수단을독점한자는누구나마찬가지로평등을파괴한자였다. 이렇게평등이란권리의표현이었으므로, 평등을침해한자는누구나 <정의를어긴> 자였다.

이리하여, 노동과더불어사적점유즉 <물물안에서의권리> 가탄생했다. 그러나어떤물안에서인가? 그것은명백히땅안에서가아니라생산물안에서였다. 옛날에아랍인이늘이해했던방식그리고카이사르 Caesar 나타키투스 (Tacitus, 로마의역사가, 『게르마니아』를남겼다-옌킨이) 가남긴문헌에따르자면일찍이게르만족이이해했던방식이바로그것이다. 시스몽디씨는말한다. <기른가축에대하기른이의소유권을인정하고있던아랍인은하물며밭에씨를뿌린자와수확물을놓고다투지않았다. 오히려그들은왜평등하든인간이마찬가지로씨를뿌릴권리를갖지 못하는지를이해할수없었다. 이른바선점자의권리에서나오는불평등은어떠한정의의원리에도입각해있지않다고그들은보았다. 그런데땅이일정수의주민들사이에완전히분할되면, 이주민들만이나머지국민들에맞서서독점권을갖게된다. 아랍인들은이러한독점에결코순응하려하지않았다. ...>

도처에서사람들은땅을분할했다. 물론나는그결과노동하는자들사이에더욱강고한조직이생겼으며, 확고하고지속적인이분배수단이더많

의사상과나의바람이무엇과관련된것인지를누구나알수있도록하기위해서아주간결하고단호하게적어나갔다. 이보다더진솔하고더대담하게쓰기는어려우리라고사람들은인정해줄것이다. 따라서철학자들의경탄할절제력과도덕학및정치학박사님들이그토록권장하는중용이라는것이, 사실원리없는과학의부끄러운특성이자변명의낙인에불과할날도멀지않다고확언한다고해서도가 지나치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 기하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률과도덕에서도공리公理는절대적이고, 정의定議는확실한것이며, 가장극단적인결론도그것이엄밀하게연역된것이기만하면법칙이된다. 이얼마나가없는교만인가! 우리는우리의천성에대해아무것도알지못하고, 우리의천성을모순된사변들로가득채우며, 순진한무지속에서감히다음과같이외친다. <진리는의심안에있다. 최선의정의는아무것도정의하지않는것이다.> 법학의이유감천만한불확실성이법학의대상자체에서오는것인지아니면우리의편견에서오는것인지를, 그리고사회적사실들을설명하기위해서는마치코페르니쿠스가프톨레마이오스의체계를뒤집었듯이우리의가설을바꾸는것으로충분한지아닌지를우리는언젠가알게될것이다.

그러나만약내가지금당장이법학자체가소유의영역을정당화하기위해서끊임없이평등을논하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면, 사람들은무엇이라고말할것인가? 사람들은이에대해무엇이라고답할것인가?

제 3 절소유의근거이자재가로서의민법에대하여

포티에 (R. Pothier, 1699~1772, 프랑스의법학자, 『점유권과소유권에대하여』를 썼다-옮긴이) 는소유권이왕권과마찬가지로신의권리에서나온것으로믿는듯하다. 그는소유권의기원을신에게까지소급한다. <제우스로거슬러올라가서 (Ab Jove principium)> 라는식이다. 그는우선다음과같이말한다.

<신은우주및우주안의만물에대한최고의지배권을가진다 (Domini est terra et plenitudo ejus, orbis terrarum et universi qui habitant in eo). 신이땅과땅에서사는온갖피조물들을창조한것은인간을위해서이며, 신은자신에종속하는지배권을인간에게주셨다. ‘주의손으로만드신것을다스리게하시고, 만물을그발아래두셨으니’라고다윗은말한다. 신은자신이만든최초의우리조상들에게다음과같은말씀을은총으로남기셨다. ‘생육하고번성하며땅에충만하라.’>

이거창한서설을듣다보면, 인류는하나의거대한가족과도같고형제다운결합안에서살며존경할만한아버지의보호아래있다고누구인들

〈소유, 그것은도둑질이다!...〉 이얼마나인간사유가본말전도된것인가! 〈소유자〉와 〈도둑〉은그것이지칭하는존재들이서로적대적인한늘모순되는표현이었다. 모든어법들이이모순관계를축성했다. 당신은어떤권위를믿고이보편적합의를공격하고세상사람들의말을부인하는가? 여러족속들과여러시대의이성을부인하다니당신은도대체누구인가?

독자여, 내보잘것없는개성이당신에게무에그리중요한가? 당신처럼나도이성이사실과증거에만몸을굽히는시대에살고있다. 나의이름은당신과마찬가지로 <진리의탐구자> ¹이다. 나의사명은 <중오도두려움도없이말하라. 네가아는것을말하라> 는율법의말씀에기록된대이다. 우리인류의과업은과학의신전을짓는것이며, 이과학은인간과자연을포괄한다. 그런데진리는모두에게, 오늘은뉴턴 Newton 과파스칼 Pascal 에게, 내일은골짜기의목동과작업장의장인에게드러날것이다. 각자는건물에자기몫의돌을쌓을것이며일이끝나면사라질것이다. 영원성이우리들의앞에있고또우리의뒤를따른다. 이두무한사이에서, 지금시대가알고자하는인간의위치란무엇인가?

그러므로독자여, 나의직함과나의성격을개의치말고나의추론에만몰두하라. 내가보편적오류를시정하려하는것은보편적동의에따라서이다. 내가사람들의의견에맞서는것은사람들을신뢰하기때문이다. 용기를가지고나를따라오라. 그리고당신의의지가솔직하고당신의의식이자유롭다면, 당신의영혼이두명제를중합해서제 3 의명제를꼬집어낼줄안다면, 나의사상은틀림없이당신의사상이될것이다. 당신에게나의마지막결론을먼저내놓으면서이책을시작하는것은당신에게예고하기를원했기때문이지당신에게대항하고자함이아니었다. 왜냐하면당신이내책을읽는다면, 당신은틀림없이동의하지않을수없으리라고확신하기때문이다. 내가당신에게말하고자하는바는아주단순하고아주명백하기때문에당신은왜진작그것을몰랐을까하고놀랄것이며, <나는그것을생각조차해보지못했다> 라고중얼거릴것이다. 다른사람들이라면당신에게자연의비밀을캐내고송고한신탁을전하는천재의광경을보여줄것이다. 그러나당신은여기서 <정의>와 <권리>에대한일련의실험들만을발견할것이고, 당신이지니고있는양식의저울추와자대를검증하게될것이다. 실험은당신눈앞에서펼쳐질것이고, 그결과를평가하는것은바로당신자신이다.

게다가, 나는어떤체계 système 도세우지않는다. 나는특권의종언, 노예제의폐지, 권리의평등그리고법의지배를요구한다. 정의正義, 오로지정의, 이논문의요체는바로이것이다. 세계를규율하는노고일량남들에게말긴다.

¹ 그리스어로 Sheptikos, 즉진리의탐구를직업으로삼는철학자를말한다.

나는언젠가〈왜사회에그토록고통과빈곤이만연해있는가?〉하고 자문한적이있다. 인간은영원히불행한존재인가? 나는개혁을부르짖는 자들의만병통치식설명에만족하지않는다. 만연된공공에대해서혹자는 권력의비굴함과무능을, 혹자는음모론자들과폭동을, 또다른혹자는일반적인무지와부패를고발한다. 연단과지면에서의이러한끝없는공방에 지친나머지, 나는스스로문제를파해쳐보길원했다. 나는학문의대가들을참조했으며, 철학, 법학, 정치경제학, 역사에관한백여권에달하는책들을독파했다. 이많은독서가불필요한시대에살았더라면얼마나좋았을까! 학설들을비교하면서, 반대의견에답변하면서, 논증들을끊임없이등식화하고환원하면서, 수많은삼단논법을가장치밀한논리의그물로거르면서, 나는정확한정보를얻기위해최선을다했다. 이힘난한노정에서나는여러가지흥미있는사실들을수집했는데, 틈이날때마다그것을친구들이나공중공중과나눌것이다. 그러나먼저말해둘것이다. 요컨대우리는결코〈정의, 형평, 자유〉라는통속적이고도신성한단어들의뜻을이해하지못했다는것을, 이들각각에대한우리의관념은아주모호했다는것을, 그리고이러한무지가마침내우리를값아먹는빈곤과인류를괴롭히는온갖재앙의유일한근원이었다는것을나는우선확실히깨닫게되었다.

이묘한결론에나의영혼은전율했다. 나는나의이성을의심했다. 나는스스로되물곤했다. 눈이본적도귀가들어본적도지력이깨닿아본적도없는것을내가발견했다니! 가련한이여, 너의병든두뇌에서나온환영幻影을과학의명정성으로착각하고전율하다니! 위대한철학자들이말한것처럼, 실천도덕률에관한한보편적오류란있을수없다는것을너는모르는가?

따라서나는내판단을검증해보기로마음먹었다. 내가이새로운작업에스스로던져본질문은다음과같은것들이다. 인류가그토록오랫동안그리고그토록널리잘못생각하는것은가능한일인가? 인류는왜그리고어떻게잘못생각하게되었는가? 인류의오류가보편적인것이라면어떻게치유할수있는가?

이러한문제들 - 내관찰의확실성여부는이들문제의해결에달려있다 - 은나의분석에그리오랫동안버티지못했다. 인식의대상일반과마찬가지로도덕에서도우리에게가장심각한오류는과학의도그마라는점을, 심지어정의의 justice 의문제에서도오류를범한다는것은인간을숭고하게만드는특전이라는점을, 그리고내게돌아올철학적공로란아주사소한것이라는점을나는이글의제 5 장에서보여줄것이다. 사물을명명하는일은 별것이아니다. 중요한일은그사물들이나타나기전에깨닫는것이다. 끝물에서이른사상, 즉누구나깨닫고있으며설령내가오늘공표하지않으면내일다른누군가가선언할그러한사상을표방함으로써, 나는정식定式을먼저내놓은것에불과하다. 떠오르는해를처음본이에게모든찬사를바칠것인가?

소유의옹호자들중에서쿠쟁씨는가장멀리나아갔다. 경제학자들에맞서서그는선점이먼저이루어질경우에만노동이소유권을날을수있다고주장했다. 그리고법학자들에맞서서그는민법은자연법을규정하고적용할수는있으나자연법을창출할수는없다고주장했다. 그러나〈소유권은소유가존재한다는사실에의해서만입증된다. 이점에있어서민법은단지선언적인가치를지닐뿐이다〉라고말하는것으로는충분하지않다. 이는사실의정당성자체에이의의를제기하는이들에게는아무런답변도주지못한다는것을자인하는일에불과하다. 무릇권리란스스로정당화되거나아니면그에앞선어떤권리에의해정당화되어야한다. 소유도이러한양자택일에서예외가아니다. 그렇기때문에쿠쟁씨는소유의토대를그가인성의〈신성함〉이라고부른것속에서아니면의지가사물을자신의일부로만드는행위속에서찾으려했던것이다. 〈일단인간의손에닿으면, 사물들은자신을변화시키고인격화시키는어떤특성을인간에게서받아들인다〉고쿠쟁씨의제자들중하나가말했다. 나로서는이같은마술을조금도믿지않으며, 인간의의지보다덜신성한그어떤것도알지못한다고밝혀두는바이다. 그러나이이론은비록심리학으로서나법학으로서나아주빈약한것이지만, 법의권위나노동만을토대로한이론들보다는훨씬철학적이고훨씬심오한어떤성격을띠고있다. 지금까지우리는우리가논하고있는이론이무엇에귀착되는지를, 즉어떻게평등 - 그이론이자신의온갖용어들을통하여표현한바가바로이것이다 - 에귀착하는지를살펴보았다.

그러나아마도철학은사물을너무높은데서바라보기때문에그만큼이나현실적이지못한듯하다. 사변의높은정점에서면인간들은너무나왜소해보여서형이상학자로서는인간들사이의차이점을식별하지 못하는모양이다. 그리고조건의평등은숭고한일반론의관점에서는참된금언들중하나이지만, 사회생활및거래의일상사에서그것을엄밀하게적용한다는것은우스꽝스럽고심지어위험한일일것이다. 물론사물을극단으로몰고가거나지나치게규정짓지말라고우리에게충고하는도덕군자나법률학자들의현명한절제력은본받을만하다. 그들이말한것처럼, 어떤논리라할지라도거기에서치명적인결론들을끄집어내어그논리를완전히뒤집어엎는일이전혀불가능하지는않을터이니말이다. 민법상의모든정의는위험하다. 왜냐하면그것이파기될수없다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기때문이다 (Omnis definitio in jure civili periculosa est: parum est enim ut non subverti possit). 조건의평등. 소유자의귀에는끔찍스러운도그마요, 죽어가는가난한이의침상에서는위안을주는진실이요, 해부학자의메스아래서는소름끼치는현실인이조건의평등은정치적, 시민적, 산업적질서안에서는단지사람을우롱하는불가능성이자근사한미끼요악마의거짓말에불과하다.

독자들의의표를찌르는것이결코나의방침이아니다. 말과행동을둘러대는이들을나는주검만큼이나혐오한다. 이글의첫장에서부터나는나

은 옳고저것은 그르다는 식으로 선언을 한다. 그리고 그는 〈자,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이미 밝혔듯이, 나는 여기서 논박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는, 소유를 옹호하기 위해 고안해 낸 모든 가설들 속에서 소유에 역행하는 평등의 원리를 찾아낼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모든 논증은 다음의 한 가지로 귀결할 것이다. 즉 모든 추론의 근저에는 이 불가피한 대전제, 즉 평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유의 원리가 경제학, 법학, 통치론 등을 그 모든 요소에서 훼손시키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점을 언젠가 내가 보여주길 원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만약 인간의 자유가 신성한 것이라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자격으로 신성하다는 점, 인간의 자유가 외적인 행위를 위해서 즉 생활을 위해서 소유를 필요로 한다면, 이러한 물질의 전유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필수적이라는 점, 만일 내가 이러한 전유의 권리에서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나 역시 타인의 전유권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점, 그리고 결론적으로 설혹 무한의 영역에서는 자유의 전유하는 힘이 그 자체 외에는 한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유한의 영역에서는 바로 이 힘이 자유들의 수효와 그것들이 차지하는 공간과의 수학적 관계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점 등은 쿠쟁씨의 견해에 따르면 진실이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만일 한 사람의 자유가, 그와 동시대의 다른 사람의 자유가 자신과 같은 몫의 재료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한 자유는 더욱 미래의 어떤이의 자유로부터도 이러한 능력을 갖아갈 수 없는 일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개체는 사라져도 보편은 존속하며, 영원한 전체의 법칙은 그 현상적인 일부분의 변동에 좌우되지 않으니 말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부여받은 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상호의 무에 의해서) 서로 조밀하게 군집해야 하고, 만일 그 신참자가 결국 상속인이 된다면 그의 상속권이란 (전임자와 자기 자신의) 누적된 권리가 아니라 선택의 권리일뿐이라고 결론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쿠쟁씨의 설명을 그 문체까지 흉내 내며 따라왔는데, 사실 나는 이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렇게 단순한 것들을 말하기 위해 그렇게 도거창한 용어들과 그렇게 도요란한 구절들이 필요하단 말인가? 인간은 살기 위해 노동한다. 따라서 인간은 생산의 도구와 재료들을 필요로 한다. 이 생산의 필요에서 인간의 권리가 나온다. 즉 이 권리는 인간이 그와 유사한 형질을 맺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보장받는 것이다. 10 만명 가량의 사람들이 프랑스라는 커다란, 그러나 주민이 모자라는 지역에 자리잡는다. 이때 토지 자본에 대해 각자가 가지는 권리는 10 만분의 1 에 해당한다. 점유자의 수가 늘면 그에 반비례해서 각자의 몫은 줄어든다. 따라서 주민의 수가 3,400 만에 달한다면, 각자의 권리는 3,400 만분의 1 이 될 것이다. 자, 이제 경찰, 정부, 노동, 교환, 상속 따위를 배열하자. 그러면 노동수단은 늘 평등할 것이고, 각자는 자유로울 것이며, 사회는 완벽해질 것이다.

그렇다. 조건의 평등은 권리의 평등과 같다고, 〈소유〉와 〈도둑질〉은 동의어라고, 재능과 봉사의 우월성이라는 구실 아래 얻은, 아니 차라리 빼앗은 사회적 탁월성이란 불의이며 강탈 행위라고 누구나 믿고 있으며 즐겨 말하고 있다. 내가 말하건대, 이러한 진실은 모든 이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다. 내가 할 일이라곤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따라갈 방도에 대해 한 마디 할 필요가 있다. 파스칼이 기하학의 문제를 다룰 때 그 해결 방법 역시 스스로 고안했듯이, 철학의 문제를 푸는데도 방법이 필요하다. 철학이 다루는 문제들이 그 결과면에서 어찌 기하학의 문제보다 덜 중요하겠는가! 따라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찌 더 깊이 있고 엄밀한 분석이 요청되지 않겠는가?

현대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신에 받아들여진 일체의 인식은 바로 이 정신의 어떤 일반 법칙들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오성(悟性) 안에 이미 존재하며 그 형식 조건을 이루는 어떤 유형들에 맞추어 형성된다는 것은 이제의 심할 나위가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심리학자들은 정신이 어떤 생득적 〈관념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생득적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체의 현상은 〈시간〉과 〈공간〉속에서 우리에게 인식되기 마련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 결과물을 낳은 어떤 〈원인〉을 상정하게끔 하는 모든 사물,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체 substance〉, 〈양식〉, 〈수량〉, 〈관계〉 따위의 관념을 내포하고 있는 법이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이성의 일반 원칙들 - 일반 원칙들을 넘어서면 무(無)의 세계가 있을 뿐이다 - 중 어느 하나와 관련을 맺지 않는 어떠한 생각도 품을 수 없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판단과 관념은 불가피하게 이 기본 유형들로 회귀되기 마련이며, 우리의 감각은 이들 유형을 드러내 주지만 할 뿐이다. 이러한 오성의 공리들은 학교에서는 〈범주들〉이라고 가르친다. 이들 범주가 정신 속에 본원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오늘날 입증되고 있다. 남은 일은 그것들에 체계를 부여하고 그것들의 수를 헤아리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를 10 개로, 칸트는 15 개로 구분했다. 쿠쟁(V. Cousin, 1792~1867, 프랑스의 철학자, 『철학강의』를 남겼다. 옮긴이)씨는 범주를 세 개로, 두 개로 그리고 마침내는 한 개로 축소시켰는데, 이 교수님의 논박할 여지 없는 영예는 범주들에 대한 참된 이론을 발견하지는 못했을 지라도 적어도 이 문제 - 모든 형이상학의 가장 중요하고 아마도 유일한 문제 - 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다는 점일 것이다.

고백컨대, 나는 우리 오성의 〈관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형태들〉이나 〈법칙들〉의 생득성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레이드(T. Reid, 1710~1796,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공동감각에 따른 인간 오성론』의 저자. 옮긴이)나 칸트의 형이상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보다 진실에서 훨씬 더 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성에 대한 비판론 - 이는 오랜 작업을 요하는 일이며 일반인은 거의 관심이 없는 문제이다 -

을개진하는것은나의의도가아니므로, 나는우리의가장일반적이고가장
긴요한관념들, 즉시간, 공간, 실체, 원인따위가정신속에본원적으로존
재하는것이거나적어도정신의구성에서직접유래하는것이라는가정을
받아들일것이다.

그러나이에못지않게참된, 그런데도철학자들이너무도연구를등한
시해온하나의심리학적사실은제 2 의천성으로서의습관이새로운범주
적형태들을오성에각인시킬힘을지니고있다는점이다. 이형태들은우리
의눈을사로잡는외양에근거한것인만큼대개의경우개관적현실과는거
리가먼것이나우리의판단작용에미치는영향력에있어서는앞에서열거
한일차적범주들만큼이나결정적인역할을한다. 따라서우리는한꺼번
에, 즉우리의성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법칙에의거하는동시에, 사
물에대한불완전한관찰에서비롯하는대개는오류투성이인부수적규칙
들에의거해서추론하게된다. 이것이야말로거짓된편의가장비옥한원
천이며, 대개는수많은오류들에늘따라다니는불가항력적인원인이다.
이러한편견에서생긴강박관념이우리를아주무겁게짓누르기때문에, 우
리는때때로우리의이성과정신이배척하고우리의양심이거부하는어떤
원리와싸우고있을때에도우리도모르게그원리를옹호하고, 그원리에따
라추론하고, 심지어그원리를공방하면서도사실은그에복종하고있는것
이다. 우리의정신은말하자면어떤테두리에갇힌채그저자신의위를뻗들
뿐이다. 새로운관찰에의해우리가새로운관념을얻고, 우리의상상력에
붙어다니는환상에서우리를벗어나게해주는어떤외부의원리를우리가
발견할때까지말이다.

오늘날우리는자기장磁氣場의법칙 - 그연원은아직밝혀지지않았지
만 - 이라는것을알고있다. 요컨대외부의간섭을받지않을경우두물체는
<중력> 이라고불리는어떤가속화된추동력에의해서로결합하는경향이
있다. 버팀목이없는물체들을땅에떨어지게하고, 그것들에무게를주고,
우리자신을우리가살고있는땅에붙들어매주는것이바로중력의작용이
다. 고대인들이극지極地の존재를믿지않았던유일한이유는바로이러한
원리에대한무지였다. <어찌하여그대들은보지못하는가.> 락탄티우스
(Lactantius, 260~325, 그리스의철학자-율건이) 의뒤를이어성아
우구스티누스는말했다. <만약우리발밑에사람들이있다면, 그들은하
늘로곤두박질치지않겠는가?> 자신의눈에보이는대로지구가평면이라
고믿은이히포 Hippo 의주교는만약여러장소에서천정점과천저점을직
선으로잇는다면이선들은서로평행이될것이며위에서아래로향하는모
든운동들은바로이직선들의방향이될것이라고생각했다. 따라서아우구
스티누스는별들이하늘의천장에회전하는햇불처럼매달려있으며만일
그냥내버려둔다면불의비가오듯땅에떨어질것이고, 땅은세계의아랫부
분을이루는거대한타자와같다는식으로당연히결론지었다. 만일누군가
가땅은무엇으로지탱되고있느냐고묻는다면, 그는자신은답을모르지만

<③ 나의자유는외적인행위를위해서는어떤무대나어떤재료가, 달
리말하자면어떤재산이나어떤사물이필요하다. 따라서이러한사물또는
재산은마땅히나의인성처럼불가침한것이다. 예컨대, 나의자유의외적
인발현을위해필요하고유용한도구가되어버린어떤물건을내가획득해
서, 이물건은누구에게도속하지않으므로나의것이라고말한다고하자.
그때부터나는그물건을정당하게점유하게된다. 따라서점유의정당성은
두가지조건에의존한다. 첫째, 나는자유롭다는조건에서만점유한다. 행
동의자유를أت아가면, 당신은내게서노동의원리를파괴하는것이다. 따
라서노동에의해서만나는재산이나사물을나의것으로가질수있다. 내가
그것을점유하는것은내가그것을나의일부로만들어서이다. 따라서행
위의자유가소유권의원천이된다. 그러나이것만으로는점유를정당화하
기에충분하지않다. 모든인간은자유롭고누구나노동에의해재산을자기
것으로가질수있다. 이것은인간은누구나소유에대한권리를갖는다는것
을의미하는가? 전혀그렇지않다. 정당하게점유하기위해서는자유로운
존재로서노동하고생산할수있는것만으로는불충분하고, 재산을남보다
먼저차지하는것이필요하다. 요컨대, 노동과생산이소유권의원리라면,
가장먼저선점한다는사실이그필수불가결한조건인것이다.>

<④ 나는정당하게점유한다. 따라서나는나의재산을내뜻대로사용
할권리가있다. 따라서나는그재산을양도하거나변형시킬권리가있다.
왜냐하면자유행위가일단나의양도행위를허용한이상, 나의양도행위
는내가살아있을때나마찬가지로내가죽은뒤에도신성한것으로남기때
문이다.>

결론적으로, 쿠쟁씨에따르면, 소유자가되기위해서는선점이나노동
에의해서점유를해야한다는것이다. 나는여기에이러한행위가적시에이
루어져야만한다고덧붙이고싶다. 이유는명확하다. 만일제일먼저온자
가모든것을다선점한다면, 제일나중에온자는무엇을차지하겠는가? 외
적행위를위한수단을가지고있다고할지라도그자료들을얻지못한다면,
그러한자유들은어떻게될것인가? 서로가서로를잡어삼킬수밖에없지않
겠는가? 이는참으로끔찍스러운극한상황이다. 위대한천재성은작은것
들을무시하기때문에, 이신중한철학자께서도도무지에견하지못한결론
이바로이러한것이다.

쿠쟁씨가선점과노동이각각소유권을창출할수있는능력이있다는점
을부정하고는소유권을그두가지가마치혼인관계처럼결합한데서나오
는것으로간주한다는사실을또한지적해두자. 쿠쟁씨에게자주나타나
는, 그러나그누구보다도쿠쟁씨가조심해야만하는절충주의적곡예술가
운데하나가바로여기에서발견된다. 사고의혼동과견해의변덕을넘어서
진실을발견할수있게해주는유일한수단인분석, 비교, 소거消去, 환원
등의방법을취하는대신, 그는모든체계들을하나로뭉뚱그린다음에이것

란 어떤 물건이 고유하게 어떤이에게속하는권리이다.〉 이는글자그대로 해석해보면, 소유란소유의권리라는뜻이다.

의지, 자유, 인성따위에대해미사여구를늘어놓고, 그리고 〈자연의 빔물질적인〉 소유물과 〈자연의물질적인〉 소유물을구별하고 (이구별은데스튀트드트라시의생득적소유물과획득적소유물의구분을연상시킨다) 나서, 조제프뒤팡씨는다음두가지의일반명제로결론을맺는다. ① 소유는인간모두에게있어자연적이고양도할수없는권리이다. ② 소유물에있어서의불평등은자연의필연적인결과이다. 그리고이두명제는 다음과같은더단순한명제로바뀐다. 즉모든인간은불평등한소유에대한평등한권리가있다.

그는시스몽디 (Sismondi, 1773~1842, 스위스의경제학자, 『정치경제학연구』를썼다-옮긴이) 씨가토지의소유는법이나협약외에는결코다른근거를갖지않는다고썼다고비난한다. 그리고나서그는소유에대한인민의존중심에대해언급하면서, 〈양식을지닌인민은사회와소유자들사이에체결된‘원초적계약’의성격을알고있다〉 고말한다.

그는소유를점유와, 공동체를평등과, 정의로운것을자연적인것과, 자연적인것을가능한것과혼동한다. 그는어떤때는이다른관념들을서로 같은것으로취급하고, 어떤때는그것들을구별한다. 사정이이러하니그를이해하는것보다그를논박하는것이몇백배더쉬울정도이다. 처음에는『정치경제의철학』이라는그책의제목에끌렸지만, 나는저자의모호한장광설속에서아주진부한관념들만을발견했을뿐이다. 이것이내가이책에대해더이상말하려하지않는이유이다.

쿠쟁씨는자신의『도덕철학』(15 쪽) 에서우리에게모든도덕, 법률, 권리는 〈자유롭기위해서는자유롭게남으라〉 는계명속에주어져있다고 가르친다. 브라보! 선생, 나도될수만있다면자유롭고싶나이다. 그는계속한다.

〈우리의원리는참되고선하며사회적이다. 거기에서모든결론을끌어내는일을망설이지말자.〉

〈① 만일인성이신성한것이라면, 그것은인간의전반적인성품에서, 특히인간의내적행위에서, 인간의감정과사고와의지적결단에서그러하다. 여기에서철학, 종교, 예술, 산업, 상업에대한존중이그리고자유와 모든산물들에대한존중이나온다. 나는단순히관용이아니라존중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권리를관용하는것이아니라권리를존중하기때문이다.〉

나는이철학앞에머리를조아리는바이다.

〈② 나의자유는신성한것으로서외적인행위를위해서는육체라불리는도구를필요로한다. 따라서육체는신성함을지니며그자체신성불가침한것이다. 여기서개인적자유의원리가나온다.〉

신에게불가능이란없지않느냐고답했을것이다. 공간과운동에관한성아우구스티누스의관념은바로이런식이었다. 그관념은피상적인관찰에서나온어떤편견에의해주어진것이며, 그에게는판단의일반적이고정언적인규칙이된것이다. 물체가낙하하는원인에대해서말하자면그의정신은 텅빈공간이나다름없었다. 그는물체는떨어지기때문에떨어진다고대답하는것외에달리할말이없었다.

우리의경우, 낙하의관념은더복잡하다. 낙하가내포하는, 공간과운동이라는일반관념들에, 원인이라는상위관념에속하는, 중심을향하는인력引力도는방향이라는관념이더해진다. 그러나물리학이이점에관한우리의판단을완전히정정했다고할지라도, 우리는성아우구스티누스의편견을여전히일상에서간직하고있다. 예컨대우리가한물체가떨어졌다고말할때, 우리는중력의효과가나타났다고단순하고일반적으로이해하는것이아니라, 그운동이땅을향하여그리고 〈위에서아래로〉 이루어졌다고특수하고개별적으로이해하는것이다. 우리의이성은계몽되었으나 여전히상상력에의해놀락당하고있으며, 우리의언어는언제까지나교정불가능해보인다. 〈하늘에서내려오다〉 는 〈하늘로올라가다〉 만큼이나옳은표현이아니다. 그러나이러한표현은인간이언어를사용하는한줄곧남을것이다.

〈위에서아래로〉, 〈하늘에서내려오다〉, 〈구름에서떨어지다〉 따위와같이말하는이모든방식이위험한것은아니다. 왜냐하면우리는일상생활에서그것을고칠줄을알기때문이다. 그러나그것이과학의진보를얼마나늦추었는지를잠시라도생각해보자. 물체가낙하하는진짜원인을아는것이나공간의일반적방향에대한관념이적확한가하는것은사실상통계학, 기계학, 유체역학도는탄도학에있어서는별로중요하지않을지모르나, 세계의체계, 조수의원인, 지구의형태와천체에서의위치따위를설명하는데에는전혀그렇지않다. 이러한문제들을설명하려면, 가상의테두리에서벗어나야만한다. 아주오랜옛날부터숨씨좋은기술자, 탁월한건축사, 능란한포병이있었다. 그들이지구의모양새나중력에대해서잘못된생각을가지고있다고해서그들의기예의발전이저해되는것은아니었다. 그러나조만간지표면에세운수직선들의평행상태라는가정으로는설명할수없는현상들이나타났다. 그리고그무렵에, 수백년동안일상생활에서통용되어온편견들과, 눈에보이는증거들에어긋나는새로운견해들사이에투쟁이시작되었다.

이렇게한편으로는, 아주그릇된판단일지라도그것이고립된사실들에기초한것이든단지외양에기초한것이든항상일정한현실성 réalités 을내포하고있다. 물론이현실성이라는다소넓은영역은상당수의추론을허용해주고, 이현실성들을넘어설경우우리는부조리에빠지고말겠지만 말이다. 예컨대성아우구스티누스의관념들속에는옳은점이있다. 물체는땅으로떨어진다거나, 물체의낙하는일직선이라거나, 태양이나지구

가움직이고있다거나, 하늘이나땅이돈다는따위가바로그것이다. 이일 반적사실들은변함없는진실이며과학은여기에덧붙일것이없다. 그러나 다른한편으로, 모든것을설명해야할필요성은우리로하여금더욱더포괄 적인원리를찾아나서게한다. 따라서처음에는지구가평평하다는견해 가, 다음에는지구가세상의중심이라는학설이있따라폐기되어야만했 다.

우리가이제물리적자연에서도덕세계로넘어가면, 여기에서도우리 는마찬가지로겉모습의기만및자발성과습관의영향력에종속되어있다. 그러나우리인식체계의이두번째부분을특정짓는것은한편으로는우리 의견해에서나오는선과악의문제이고, 다른한편으로는우리를괴롭히고 질식시키는편견들을고집하는완고함이다.

중력의원인이나지구의형태에대해우리가어떤학설을믿든, 지구물 리학은그로인해별로순상을받지않는다. 우리의사회경제는그로인해이 익도손해도보지않는다. 그러나도덕적자연의법칙들이관철되는것은우리 들안에서그리고우리들에의해서이다. 그러므로이들법칙은우리의사 려깊은참여없이, 다시말하자면우리가그것들을이해하지않고서는실 행될수없다. 따라서도덕률에관한우리의탐구에잘못이있다면, 우리가 선을원하면서도악을행할것은자명하다. 그탐구가단지미흡할뿐이라 면, 일정기간동안은우리사회의진보를가로막지않을지도모른다. 그러 나장기적으로는우리를잘못된길로접어들게할것이며, 마침내우리는재 앙의심연에빠지게될것이다.

가장숭고한인식이우리에게요청되는것은바로이때이다 (그리고자 랑스럽게말하건대, 이러한인식은늘어짐없이나타났다). 그러나낡은편 견들과새로운관념들사이의뜨거운투쟁이시작되는것도바로이때이다. 격변과고뇌의나날들! 같은신념들과같은제도들을가지고온세상이행복 했던시절을사람들은기억한다. 어찌이신념들을비난하고어찌이제도들 을거부할수있었겠는가? 사람들은이복에겨운시기가사회에잠재되어있 는악의원리를발전시키는데바지했다는사실을인정하고싶어하지않 는다. 사람들은인간과신들을비난하고지상의강자들과자연의힘타으로 돌린다. 악의원인을자신의이성과자신의마음속에서찾는것이아니라자 신의주인을, 경쟁상대를, 이웃을그리고심지어자기자신을공격한다. 그 리고국가들은서로싸우고서로혈투고서로를말살하려한다. 전면적인인 구감소의해서평형이회복되고병사들의시체더미위에서평화가다시 도래할때까지말이다. 이토록, 조상의관습을건드린다거나창시자들에게서하사받아수백년동안고스란히지켜온법률들을바꾼다는것은인류 에게는아주불경스러운일이었다.

오랜과거에서나오지않는것치고칭찬할만한것이없다 (Nihil mo- tum ex antiquo probabile est): 모든새로운것들의심하라고티투스 리비우스 (Titus Livius, 고대로마의역사가-유킨이) 는 썼다. 물론바꿀

그러나이섬세한공론가가어째서인간은자기재능의소유자조차도아 니라는사실을깨닫지못했는가? 인간은힘과덕성과능력을가지고있다. 이힘과덕성과능력은인간이살고깨닫고사랑하도록자연이부여해준것 이다. 인간은이것들에대한절대적인지배권을갖고있지않으며단지용익 권자用益權者에불과하다. 그리고인간은이용익권을자연의규칙에순종 하면서만행사할수있다. 만일인간이자신의재능의소유자라면, 굶주림 과추위에시달리지않을것이다. 인간은원없이먹고, 불길속을걸어다닐 것이며, 산을들어올리고, 1 분안에수백리를갈것이며, 치료받지않아도 의지의힘만으로나고, 불사의존재가될것이다. 만일인간이나는무엇인 가알고싶다고말한다면그는알게될것이고, 사랑하고있다고말하면사랑 을누릴것이다. 뭐라고! 인간은결코자기자신의주인이아닐진대, 하물며 자기소유도아닌것들의주인이되고자하니! 인간은자연의산물들이 용할수있다. 그는그것들을이용해야만살아갈수있으니말이다. 그러나 인간은그것들에대한소유자로서의특권은가질수없다. 소유자라는칭호 는단지비유에의해서그에게붙여진것일뿐이니말이다.

요약해보자. 한편에는자연과기예에서나오는외적인 <재산들> 이, 다른한편에는인간의 <힘> 과 <재능들> 이있다. 그런데데스튀트트트 라시는이두가지모두를 <소유물> 이라고부르면서하나의공동된표현 으로몽똥그린다. 그가소유권을마치불변의법칙인양확립하고자하는것 은바로이러한모호함을이용해서이다. 그러나모든소유물들가운데에는 기억, 상상력, 힘, 아름다움등과같이 <생득적인> 것이있는반면, 발, 물, 숲등과같이 <획득적인> 것이있다. 자연상태나고립상태에서는가 장수완이 좋고가장힘이센사람들, 즉생득적소유의측면에서가장우월한 이들이획득적인소유물을배타적으로취득할수있는기회를가장많이갖 게마련이다. 그런데인간이균형과정의를발명하고암묵적이든공식적이 든여러계약을맺는것은바로이러한침탈행위와그로부터연유하는전쟁 을미연에막기위해서이다. 이는말하자면생득적소유물들의불평등을가 능한범위에서획득적소유물들의평등으로치유하는일이다. 분배가평등 하지않는한, 공동분배자들은서로적으로남으며, 계약은다시시작될것 이다. 이렇게, 한편에는고립과불평등과적대감과전쟁의약탈과학살이, 다른한편에는사회와평등과우애와평화와사랑이있다. 어느한편을선택 하자.

『정치경제의철학』의저자인조제프뒤탕 (J. Dutens, 1765~1848, 중농주의경제학의옹호자-유킨이) 씨는물리학자요기술자이자기하학 자이자만, 법학자로서는이류급이고, 철학자로서는삼류급인물이다. 자 신의책속에서그는소유를옹호하기위해서총대를매고나서야한다고민 었다. 그는형이상학은데스튀트트트라시에게서빌려온듯하다. 그는스 가나렐 (Sganarelle, 몰리에르의희극에나오는작중인물-유킨이) 을연 상시키는어조로, 다음과같이소유를정의하는것으로시작한다. <소유

유하는 것'이다. 그것들 모두가 그토록 다양한 소유물이다. 가장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이들 자체가 우리에게 속하는 사물들인 것이다.>

일반화해서 표현된 말이라고 치더라도 이는 아주 부끄럽고 애매한 주장이다. **propriété** 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갖는다. ① 그것은 사물을 사물답게 하는 어떤 성질, 그 사물만의 고유하고 다른 것과 구별되는 어떤 특성을 가리킨다. 삼각형의 속성들 **propriétés**, 수의 속성들, 자석의 속성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다. ② 그것은 지력이 있고 자유로운 존재가 어떤 사물에 대해 행사하는 지배적인 권리를 가리킨다. 법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철은 자석의 **propriété**(속성)을 갖고 있다> 라는 구절에서 쓰이는 **propriété** 라는 단어는 <나는 이 자석에 대한 **propriété**(소유)를 갖고 있다> 라는 구절에서 쓰이는 **propriété** 라는 단어와 동일한 관념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불쌍한 나에게, 너는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유 **propriété** 를 <가지고 있다> 라거나, 너를 억누르는 고통이나 내가 노천에서 잠을 잘권한역시 소유물 **propriétés** 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말장난에 불과할 것이며 물인정 한 정도가 아니라 우롱에 가까울 것이다.

<소유의 관념은 인격의 관념에만 기반을 둔 것이다. 소유의 관념이 탄생하자마자,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인격이라는 관념의 전체성 안에서 사라진다. 한 개인이 자신의 '자아 moi'를, 즉 자신의 인신 및 향유하고 고뇌하고 활동할 자신의 능력을 깨닫자마자, 그는 필연적으로 이 '자아'야말로 그가 움직이는 신체들 즉 기관, 힘, 기능 따위의 배타적인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인위적인 소유, 협약에 따른 소유가 존재하므로,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소유도 존재해야 할 것이다. 인위 속에는, 자연 속에 그 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철학자들의 선의와 추론은 경탄을 금할 수 없다. 인간은 **propriété** 를 가진다. 즉 이 용어의 첫 번째 의미에서 인간은 속성을 가진다. 인간은 그것에 대한 **propriété** 를 가진다. 즉 이 용어의 두 번째 의미에서 인간은 지배력을 가진다. 따라서 인간은 소유자 **propriétaire** 라고 하는 속성 **propriété** 을 소유 **propriété** 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위 있는 데스튀트 드 트라시만을 염두에 둔다면, 내가 여기 서어찌와 같은 엉터리 말에 낚을 뻔히겠는가! 그러나 사회 및 언어의 기원에 관한 이러한 유치한 혼동은, 최초의 관념들 및 최초의 언어들과 더불어 형이상학과 변증법이 탄생했을 때, 누구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이었다. 인간이 <나의 것> 이라고 부른 모든 것은 그의 정신 속에서 그의 인신과 동일시되었다. 인간은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부로, 자기 자신의 일부분으로, 자기 육체의 한 조각으로, 자기 영혼의 한 기능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사물을 점유한다는 것은 육체와 정신의 재능에 대한 소유와 동일시되었고, 바로 이것인 비유에 토대를 두고 소유권이, 즉 데스튀트 드 트라시가 그토록 우아하게 말한 <기에 技藝에 의한 자연의 모방> 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필요가 없는 것이 인간에게는 더 좋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인가! 설령 인간이 날 때부터 무지하고, 아주 조금씩 교화되기 마련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인간은 빛을 거부하고 이성을 저버리며 운명에 자신의 몸을 내맡겨야만 하는가? 흠없는 건강이 병에서의 회복보다 더 낫다. 그러나 그것이 병자가 치료받기를 거부할 이유가 되는가? 개혁! 개혁! 아주 오랜 옛날에 세례자 요한과 예수는 외쳤다. 개혁! 개혁! 50 년 전에 우리의 사제들은 외쳤다. 그리고 우리도 오랫동안 외칠 것이다. 개혁! 개혁!

우리 시대의 고통을 목격하면서 나는 자문했다. 즉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여러 원리들 중에 그 사회가 깨닫지 못하고 사회의 무지로 인해 더욱 더럽혀지고 온갖 악의 근원이 되어 버린 한 가지 원리가 있다. 이 원리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현대적인 원리들은 아아가 가장 오래된 원리들은 존중하는 것이 혁명들의 본질이며, 우리를 괴롭히는 악은 어떤 혁명들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무지 탓에 자라난 이 원리는 존중과 회구의 대상이 된 듯하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 원리가 어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어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면 이 원리, 그 목적에서는 옳으나 우리의 이해 방식에 따르면 거짓인이 원리, 인류만큼이나 오래된 이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종교일까?

인간은 누구나 신을 믿는다. 이 도그마는 인간의 의식과 동시에 이성에 각인되어 있다. 인류에게 신이란 시원적인 사실이 근본적인 관념이며 필연적인 원리이다. 마치 원인, 실체, 시간, 공간 따위의 범주적 관념들이 우리의 오성에서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 마치 태양이 물리학의 모든 추론에 앞서서 감각 작용에 의해 우리에게 그 존재가 입증되듯이, 신은 우리 정신의 모든 추론에 앞서서 의식에 의해 우리에게 입증된다. 관찰과 경험에 의해 우리는 현상들이나 법칙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며 내밀한 감각만이 우리에게 존재들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인간은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런데 인간은 신의 존재를 믿음으로써 무엇을 믿는 것인가? 달리 말하자면 신이란 무엇인가?

이신성 **divinité** 이라는 개념, 시원적이고 보편적이며 우리 인간에게 고유한 이 개념이 무엇인지를 인간의 이성은 아직 규정짓지 못하고 있다. 자연과 인과성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신의 관념은 확대되고 고양된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신은 커지는 듯하다. 신인 동형론과 우상 숭배는 유아기 정신의 필연적 결과이자 어린이와 시인들의 신학이었다. 만일 그것들을 행동의 준칙으로 삼지만 않았다면 그리고 의견의 자유를 존중할 줄 알았다면, 이는 순진 무구한 오류에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모습대로 신을 만들고는 자기 것인 양 차지하려 했다. 위대한 존재를 망가트린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은 그것을 자신의 세습 재산인 양, 자신의 부인양, 자신의 물건인 양 취급했다. 이렇게 괴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 신은 어디에서나 인간과 국가의 소유물이 되었다. 종교에 의한 심성의 타락의 기원, 그리고 신앙에서 나오는 증오와 신성 전쟁 神聖戰爭들의 원천이

바로이것이였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신앙을 각자에게 맡기는 법을 배웠으며, 심성의 규범을 신앙의 바깥에서 찾고 있다. 신의 본질과 속성, 신학의 교설, 영혼의 운명 따위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현명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과 믿어야 할 것을 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신, 영혼, 종교, 우리의 지칠 줄 모르는 성찰과 가장 불길한 방향의 변함 없는 대상들, 늘 해결책을 못 찾는 치명적인 문제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여전히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오류는 적어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분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종교적 관념들이 사회의 진전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소극적인 것이 되었으며 어떠한 법이나 정치적, 시민적 제도도 종교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종교적 의무의 망각은 부패의 만연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만연된 부패의 필연적인 원인은 아니며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다. 특히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에 관한 이러한 관찰은 결정적이다. 인간들 사이의 조건의 불평등, 빈곤, 만연된 참상, 정부의 곤경 따위를 더 이상 종교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가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인간에게 종교적 감성보다 더 오래되고 더 심원한 것은 무엇인가?

인간 자신, 즉 영원한 대립 관계 속에서 서로 맞서는 의지와 양심, 자유의지와 법이 있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 전쟁 중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신학자들은 말한다. <태초에 인간은 죄를 범했다. 우리 인간은 아주 오래된 배반의 죄를 지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신의 은총을 잃었으며 오류와 무지가 늘 그를 따라다녔다. 옛글들을 읽어 보라. 당신은 어디 서나, 여러 민족들의 끝없는 비참 속에서 악의 필연성에 대한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인간은 고통받고 있으며 늘 고통받을 것이다. 인간의 병은 물려받은 것이며 타고난 것이다. 진통제나 완화제를 써 보라. 치유책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연사는 신학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는 유물론 철학자들, 이무한 완결성의 신봉자들에게서도 유사한 말을 찾아볼 수 있다. 데스튀트트트라시 (Destutt de Tracy, 1754~1836, 철학자, 『정치경제학논고』를 남겼다-웁긴이) 는 빈곤, 질병, 전쟁 따위는 우리의 사회 상태의 피할 수 없는 조건이자 거역할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요컨대, <악의 필연성> 이라 말하든 <원죄> 라 말하든 그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철학인 것이다.

<최초의 인간은 죄를 범했다.> 만일 성서 주석자들이 이 말을 충실하게 해석했다면,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이다. <인간은 처음에는 죄를 범한다>, 즉 인간은 잘못 생각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죄를 짓다 pécher>, <오류를 범하다 faillir>, <잘못 생각하다 se tromper> 따위는 모두 같은 말인 것이다.

른 사람의 권리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모두가 저마다 욕구만큼의 권리를, 그리고 어떤 외부의 간섭도 없이 욕구를 충족시킬 의무를 느낀다.>

이 체계를 받아들여야. 그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튼 데스튀트트트라시의 의도는 평등을 말하려는 것이다. 이 가정에서라면 인간은 고립 상태에 있는 한 서로에게 아무 것도 빚지지 않고 있지 않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욕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충족시킬 권리를, 그 결과 자신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자연에 대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론은 개인들 사이에서의 부의 가장 커다란 불평등이다. 따라서 조건의 불평등은 여기서 고립과야 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이는 말하자면 정확히 루소 Rousseau 의 체계와 정반대인 것이다. 계속해보자.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계약이 맺어질 때야 비로소 이 권리와 의무에 제약이 가해지기 시작한다. 바로 이때에 만정의와 부정의가, 즉 그때까지는 필연적으로 평등했던 갑의 권리와 을의 권리 사이의 균형이 탄생하는 것이다.>

<권리는 평등했었다> 라고 그는 말하는가. 이 말은 사실 누구나 타인의 욕구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킬 권리가 있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달리 말하자면 누구나 평등하게 서로를 해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그리고 간계와 무력 이외에는 다른 권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사람들은 전쟁과 약탈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강탈과 횡령에 의해서 서로를 해친다. 그런데 사람들이 <암묵적이든 또는 명시적인 계약들> 을 맺기 시작하고 일종의 균형을 수립했던 것은 바로 무력과 간계를 사용하는 이 평등한 권리를, 즉 서로를 해칠 수 있는 이 평등한 권리 - 이야말로 부의 불평등과 악의 유일한 원천이다 - 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이 계약들과 이 균형은 모두에게 행복의 평등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모순의 법칙에 따르면, 고립이 불평등을 낳는다면, 사회는 필연적 결과로 평등을 낳을 것이다. 사회에서의 균형이란 강자와 약자의 평준화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서로 평등하지 않은 한, 이들은 서로에게 이방인이고 어떠한 결합도 이루지 못한 채적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건의 불평등이 필요악이라면, 이는 고립 상태에서 그러하다. 왜냐하면 사회와 불평등은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사회를 만들게 되어 있다면, 인간은 평등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다. 이준엄한 결론은 결코 물리칠 수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어째서 균형이 확립된 이후에도 줄곧 불평등이 증대되는가? 정의의 지배라는 것이 어째서 늘 고립의 지배에 불과한가? 데스튀트트트라시는 이에 대해 뭐라고 답하는가?

‘욕구’와 ‘수단’, ‘권리’와 ‘의무’, 이 모든 것은 의지력에서 유래한다. 인간이 아무 것도 원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욕구와 수단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이고 ‘점

우리는지금까지유심론자의말을들었다. 이제유물론자의말을, 그리고다음에절충론자의말을들어보자. 이렇게철학계를일주하고나서우리는법학쪽으로넘어갈것이다.

데스튀트드트라시에따르면소유는천성에서나오는필연이다. 이러한필연에서나오는곤란한결과들을부정한다는것은어리석은일이리라. 그러나이결과들은일종의불가피한악이기는하지만원리자체를무효화하지는않는다. 따라서소유에서파생하는폐해들때문에소유자체를거역하는것은삶을불평하는것만큼이나슬기롭지못한일이다. 왜냐하면삶을부정하는데서오는가장확실한결과는곧죽음이기때문이다. 이거칠고냉혹한철학은적어도하나의솔직하고엄정한논리를약속한다. 이약속이채워질것인지살펴보자.

〈우리는소유의조건에대해아주진지하게따져보았다. …마치이세상에서무엇이소유이며무엇이소유가아닌지를판정하는일이우리에게달린듯이말이다.… 어떤철학자들과입법자들의말을들어보면, 사람들이마치주어진어떤순간에자발적으로그리고아무런동기도없이‘너의것’, ‘나의것’이라고말할생각이든것처럼보인다. 그러나‘너의것’, ‘나의것’은결코발명된것이아니다.〉

철학자여, 당신은너무나도현실론자이다. 〈너의것〉, 〈나의것〉이라는말은내가 〈너의〉 철학, 〈나의〉 평등이라고말할때처럼반드시주체의확인이나타내는것은아니다. 〈너의〉 철학이라는표현은철학하는너라는뜻이며, 〈나의〉 평등이라는표현은평등을공언하는나라는뜻이다. 그러나 〈너의것〉, 〈나의것〉이라는표현은대개의경우관계를지칭한다. 〈너의〉 나라, 〈너의〉 교구, 〈너의〉 재산사, 〈너의〉 우유배달인, 〈나의〉 호텔방, 〈나의〉 극장좌석, 〈나의〉 동료, 국민방위군안에서의 〈나의〉 대대등등이다. 첫번째의미에서우리는 〈나의〉 노동, 〈나의〉 재능을, 그리고때로는 〈나의〉 미덕을말할수있지만결코 〈나의〉 위대함, 〈나의〉 위엄이라고말할수없다. 두번째의미에서만우리는 〈나의〉 발, 〈나의〉 집, 〈나의〉 포도밭, 〈나의〉 자본금이라고말할수있다. 마치는행접원이 〈나의〉 금고라고말하는것처럼말이다. 한마디로말해서 〈너의것〉 과 〈나의것〉 은개인적인, 그러나평등한권리의표식이고표현이다. 우리의외부에있는사물들에적용될때, 이표현들은소유가아니라점유, 기능, 용익用益등을나타낸다.

우리저자님 (드트라시-웁긴이) 의이론전체가이가련한애매성에기반을두고있다는사실을사람들은결코민지않을것이다. 설령내가그것을아주명료한텍스트로입증한다고할지라도말이다.

〈계약이라는것이있기이전에사람들은, 홉스 Hobbes 가말하는것처럼, ‘전쟁’상태에있었던것이아니라‘고립’상태에있었다. 이상태에서는고유한의미에서의정당한것, 부당한것이없었다. 한사람의권리는다

〈아담의죄는인간에게세습되었다. 그죄란우선무지였다.〉 사실무지란개인에게나인류에게나내재적인것이다. 그러나도덕과정치까지포함하는많은문제들에있어서이러한인류의무지는치유되었다. 누가우리에게그무지는끝나지않을것이라고말하는가? 인간은진리를향해줄곧진보했으며빛은어둠을줄기차게물리쳤다. 따라서우리의악은치유불가능한것이결코아니다. 그런데신학자들의설명엔미흡한정도를넘어서우스꽝스럽게조차하다. 왜냐하면그것은결국 〈인간은잘못생각하기때문에잘못생각한다〉 라고설명해야하는데말이다. 그러므로인간이자신이알아야할모든것을알게되면, 이제인간은잘못생각하지않으면서고통받지도않을것이라고믿을만한이유가있다.

만약우리가인간의심장에새겨져있다는이법칙에대해박사님들의 의견을묻는다면, 우리는곧다음과같은사실을깨달을수있다. 즉이들은그법칙이무엇인지조차모르면서서로논쟁을벌였다는것, 가장중요한문제들에대해서는머릿수만큼이나의견이각양각색이었다는것, 최선의통치형태, 권위의원리, 법의성격등에대해서는어느두사람도의견을같이하지않았다는것, 모두가자신의개인적감각 - 각자는자신의개인감각을옳은이성인양간주한다 - 이가리키는것에몸을맡긴채말도끝도없는바다의풍랑에떠밀리고있다는것따위를말이다. 그리하여서로어긋나는이뒤죽박죽의견해들을보고우리는말할것이다. 〈우리연구의목적은법칙, 즉사회원리를규정하는것이다. 그런데정치인들, 즉사회과학자들은서로견해가일치하지않는다. 따라서오류는바로이들에게있다. 그러나모든오류가현실을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 이들이스스로도모르는사이에가져다놓은진리가발견되는곳은바로이들의책속에서이다.〉

그런데법학과정치논객들은무엇에대해서로이야기하는가? 〈정의〉, 〈형평〉, 〈자유〉, 〈자연법〉, 〈민법〉 등등에대해서. 그러면정의란무엇인가? 그원리와성격과형식은어떠한가? 이문제에대해서우리의박사님들은아무런답변도내놓지못하고있음에틀림없다. 만일그렇지않다면, 이들의학문은명료한원리에서출발해서, 끝없는개연론蓋然論에서벗어났을것이며, 논쟁은막을내렸을것이아니겠는가.

정의란무엇인가? 신학자들은모든정의는신에게서나온다고답한다. 이런식의답은진실이이지만아무것도가르쳐주지않는다.

철학자들은아마도좀더잘알고있을것이다. 정의와불의에대해서그토록많은논의했으니말이다! 불행하게도, 검토해보면그들의학식은정말아무것도아니라는것을알수있다. 그들은태양을향해오오 (!) 하며빌고있는야만인들과비슷하다. 오오 (!) 는찬미, 사랑, 열정의부르짖음이다. 그러나태양이무엇인가를알고자하는사람이라면오오 (!) 라는감탄사에서어떤빛을얻을수있겠는가. 정의의문제에관해서우리의철학자들이처한상태가바로이것이다. 그들은말한다. 〈정의는천상의딸이요, 세상의모든인간을비추는빛이요, 우리천성의가장아름다운특전이요, 우

리를집승과구별시켜주고신에다가게하는것이다.〉 내가묻건대, 이경건한죽도는무엇에귀착하는가? 야만인들의기도소리오오 (!) 에.

정의에대해인간의지혜가가르쳐온가장합당한말은다음과같은유명한경구속에담겨있다. 〈남이네게해주길원하는것을남에게행하라. 남이네게하기를원치않는것을남에게행하지말라.〉 그러나실천도덕의이러한규칙은과학에는아무런의미가없다. 남이나에게해줄것또는하지않을것을내가선택할권리가있는가? 나의권리는나의의무와동등하다고말한들, 이러한권리가무엇인가를동시에설명하지않는다면아무런의미가없는것이다.

더정확하고더실증적인그무엇에도달하도록노력해보자.

정의는사회를바로잡는중심별자리요, 정치세계가움직이는축이며, 모든거래의규칙이자원리이다. 〈권리〉 의이름을빌리지○넣고인간들사이에는아무것도이루어질수없으며, 정의에호소하지않고아무것도이루어질수없다. 정의는법의산물이아니다. 이와는반대로법이란이해관계를가운데두고사람들이만날수있는각각의상황마다 〈정당함〉 을선언하고적용하는일에불과하다. 따라서정당함이나권리에대한우리의관념이바로서지못하고불완전하거나심지어거짓일경우, 우리의모든입법조항들은그릇될것이며제도들은타락하고정치는길을잃을것이라는사실, 즉무질서와사회악이도래할것이라는사실은명백하다.

우리의오성에서의, 그리고그필연적결과로서우리의행위에서의정의의왜곡이라는이가정은, 만약정의의개념과그적용에대한사람들의견해가고정불변이아니고시대가변함에따라바뀌는것이라면, 달리말해서우리의관념들이진보한다면, 이미증명이끝난사실일것이다. 아주현란한증거들을통해서역사가우리에게입증해주는것이바로이것이다.

1,800 년전에세계는황제의통치아래서노예제와미신과탐욕속에소진되어가고있었다. 사람들은마치오랜향연에취한것처럼망연자실한채권리와의무의개념조차잊어버렸다. 전쟁과방탕에의해그들은차례로죽어갔으며, 고리대와기계(즉노예) 의노동은그들에게서생계수단을앗아갔다. 이만연한퇴폐속에서가공할야만상태가다시나타나서문둥병이번지듯폐허가된지방들로번져나갔다. 현자들은제국의멸망을내다보았으나치유책을알지못했다. 사실그들인들무엇을생각할수있었겠는가? 이노쇠한사회를구하려면공적인존중과송배의대상들을모두바꾸고 1,000 년이상이어져온정의에의해축성된권리들을모두폐기해야만했을것이다. 사람들은이렇게말하곤했다. 〈로마는정치와신들에의해정복을완수했다. 예배나공공정신을개혁하려는어떤시도도어리석은짓이고신성모독일것이다. 자신이정복한민족들에관대한로마는그들을쇠사슬로 묶어놓으면서도생명은살려주었다. 노예는로마의부의가장비옥한원천이었던것이다. 따라서민족들을해방시킨다면, 이는로마의권리를부정하는일이자로마의재정과탄을의미하는것이였다. 결국향연에빠지고세상

1. 각자가차지한부분이타인에게손해가되지않기위해서는, 그부분이, 나누어가져야할재산의총량을공동분배자들의수로나눈몫과같아야한다.

2. 자리의수는항상관객의수와같아야만한다. 어느한관객도두자리를차지할수없으며, 한배우가여러가지배역을맡아서도안된다.

3. 관객이들어오고나감에따라자리의수는모두에게같은비율로줄어들거나늘어난다. 왜냐하면 〈소유권이란결코자생적인것이아니라획득된것〉 이기때문이라고레이드는설명한다. 따라서절대적인것은없다. 따라서소유권의구성요소를이루는취득행위는우연적인사실일뿐이며, 우연적인취득행위자체는그것이진지도않은불변성을소유의권리에전이해주지못한다. 에든버러 Edinbourg 의교수님께서아래와같이덧붙일때, 아마도그가이해한바가바로이사실일것이다.

〈생존의권리는생존의수단을확보할권리를포함한다. 말하자면죄없는자의생명이존중되어야한다는정의의준칙은그에게서생명을보존할수단을빼앗지말아야한다는준칙을포함한다. 이두가지는마찬가지로신성한것이다. ...타인의노동을방해하는행위는그에게쇠사슬을채우거나그를감옥에가두는것과같은성격의부당행위를저지르는것이다. 결과는같은종류이며같은분노를유발시킬것이다.〉

이리하여이스코틀랜드학파의시조는재능과근로의불평등을전혀고려하지않은채, 노동수단의평등을선험적으로상정하며, 나아가 〈잘하는자는잘대접받으리라〉 라는늘상같은금언에따라개인의복리에대한배려를노동자각자에게내맡겨버린다.

철학자레이드에게결여된것은원리에대한이해가아니라그결과를따르는용기이다. 만일생존권이평등하다면, 노동권도평등하며마찬가지로선점권도평등하다. 만일소유를구실로해서섬의주민들이, 그섬에정박하려는가련한난민들을갈고리로쫓아버린다면그것은범죄행위가아닌가? 이러한야만행위는생각만해도몸서리가쳐진다. 소유자들은자기섬에터잡은로빈슨크루소처럼, 문명의파고에휩쓸려서소유의바위에매달리려는프롤레타리아들을창과총으로몰아내고있다. 〈내게일거리를주시오, 나를내쫓지마시오, 얼마든지당신이주는봉급대로일을하리다〉 라고프롤레타리아는절망적으로소유자에게외친다. 〈네수고는이제필요없어〉 라고소유자는창끝과총신을내보이면서답한다. 〈그러면집세라도깎아주시오. 먹고살려면수입이있어야합니다. 일거리가없는데어떻게당신에게집세를내겠소?〉 라고하소연한다. 그러면 〈그건내알바아니야〉 라는답이따른다. 이렇게이가련한프롤레타리아는격랑에휩쓸려버리거나행여소유의나라에들어서려하면소유자들이그를향해방아쇠를당긴다.

는왜이후에평등이소멸되었는가하는문제로표현된다. 아니면이조약과 계약들이무력에의해약자들에게강제된것인가? 만일그렇다면이는무효이다. 후대사람들의암묵적인동의는결코이를정당화하지못한다. 우리는항구적인불공평과사기의상태에살고있을뿐이다.

사람들은조건의평등이처음에는자연안에있었는데, 어떻게해서자연밖의상태로되었는지를결코깨닫지못할것이다. 이러한일탈이왜일어났는가? 동물의본능은종種의차이만큼이나변하지않는것이다. 따라서인간사회에서의원시적이고자연적인평등을가정하는것은현재의불평등이란이사회의자연상태에가해진외부의침해라는사실(소유의옹호자에게는납득될수없는사실)을암묵적으로인정하는것이다. 그러나나로서는다음과같이결론을내린다. 만일신이최초의인간들을평등한조건들안에놓았다면, 그것은신이이들에게준하나의지침, 즉인간들이다른차원에서실현하길신이바라는모델이라는것이다. 마치신이인간의영혼에불어넣어준종교적감성을인간이여러가지형태로게발하고표현하는것처럼말이다. 인간은항구적이고변함없는한가지본성만을가지고있다. 인간은본능에의해그본성을따르고, 반성에의해그것에서멀어지며, 이성에의해다시그리로돌아온다. 우리가지금귀로에서있지않다고감히말할자가누구인가? 그로티우스는인간이평등에서나왔다고말한다. 나는인간이평등안으로다시돌아갈것이라고말할것이다. 인간은어떻게평등에서나왔는가? 인간은어떻게다시평등으로돌아갈것인가? 나중에살펴볼것이다.

레이드는다음과같이말한다 (주프루아 Jouffroy 씨의번역본, 제 4권, 363 쪽).

〈소유권은결코자생적인것이아니라획득된것이다. 그것은인간의품성그자체에서나오는것이아니라인간의행위에서나오는것이다. 법률학자들은양식을가진인간이면누구나만족할만한방식으로소유의기원을설명했다. 토지는자비로운하늘이인간들에게생활에쓰도록준공통재산이다. 그러나이재산및거기서나오는생산물을나누는일은인간들이할몫이다. 누구나‘다른이들을해치지않으면서’그중‘일부’를차지할수있도록필요한힘과지성을하늘로부터부여받았다.〉

〈고대의도덕론자들은, 토지가선점되어다른이의소유가되기이전에그토지의산물들에대해인간이가지는공통의권리를극장에서이권리에적절히비교했다. 누구나극장에들어서면서비어있는자리를차지할수있으며, 상연시간내내그자리를지킬수있는권리가있다. 아무도이미자리를자은관객들을내쫓을권리는없는것이다. 토지는전능하신하느님께서인류전체의노동과안락을위해한없는배려와선의로하사하신거대한극장과도같은것이다. 누구나, 다른이들에게해를끼치지않는한, 관객으로거기에자리잡을권리가있으며배우로서역할을맡을권리가있다.〉

레이드의학설의결론은다음과같다.

의전리품으로배를채운로마는승리와지배로연명해갔다. 로마의사치와 방탕은정복의대가였으며로마는몰려설수도그만둘수도없었다. > 이렇게로마는사실들과권리들을자신의편에두었다. 로마의권리주장들은모든인습들에의해그리고만민법에의해정당화되었다. 종교에서의우상숭배, 국가내의노예제, 사생활에서의쾌락주의, 이런것들이제도의토대를 이루었다. 그제도를건드리는것은사회의근저를흔드는일이었으며, 오늘날우리식의표현으로말하자면, 혁명의심연을여는일이었다. 아무도그러한생각을품지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류는피와사치속에죽어갔다.

돌연히한사람이나타나서자신을 <신의말씀>이라칭했다. 오늘날우리는아직도그가누구인지, 어디서왔는지, 누가그에게말씀을심어주었는지를알지못한다. 그는가는곳마다, 사회는때가다했다는것을, 세상은다시태어나야한다는것을, 사제들은독사이고변호사는무식쟁이이며철학자는위선자요거짓말쟁이라고, 주인과노예는평등하다고, 고리대나그와유사한모든것은도둑질이라고, 마음이가난한자와순박한자는안식의쉼터에거할것이나돈많은자와쾌락을일삼는자는불에타죽으리라고알리고다녔다. 그리고그는더놀라운말들을덧붙였다.

이사람, 곧 <신의말씀>을사제들과율법의집행자들이공공의적으로몰아잡아들었다. 이들은인민이그의죽음을요구하도록비밀리에공모했다. 그러나이들이저지른범죄의절정이라할이법률적살인행위도 <신의말씀>이뿌린사상을막지못했다. 그의뒤를이어사도들이방방곡곡으로퍼졌으며이른바 <복음>을전파하고수백만의전도사를길러냈다. 이들은자신의과업을완수한다음로마식의정의의칼에죽임을당했다. 이불굴의포교, 학살자들과순교자들사이의전쟁은거의 300 년동안계속되었으며, 마침내세상은개종했다. 우상은파괴되고, 노예는해방되었으며, 절제된풍속이방탕을대신하고, 부에대한경멸은어떤경우적빈赤貧에까지이르렀다. 사회는자신의원리를부정함으로써, 종교를전복함으로써, 가장신성한권리들을침해함으로써구제된것이다. 이혁명에서정의의관념은지금까지누구도꿈꿔보지못한그리고다시는돌이킬수없는어떤영역으로들어섰다. 정의는주인에게만존재했었다.² 이제부터정의는하인들을위해서도존재할것이었다.

그럼에도새로운종교가모든결실을거두어들인것은결코아니었다. 공공의풍속은어느정도개선되었고, 압제도어느정도완화되었다. 그러나 <사람의아들이뿌린씨앗>은우상숭배자들의가슴속에떨어져서거의의시적인신화와수많은화근을낳았을뿐이다. 사람들은 <신의말씀>이

² 종교, 법률, 결혼은자유인들의특전이었으며, 애초에는귀족들만의특전이였다. 명문씨족의신들 Dii majorum gentium 이나만민법 jus gentium, 즉가문또는귀족들의법이바로그것이다. 노예와평민은가문을형성하지못했다. 그들의자식들은동물의새끼처럼취급되었다. 그들은 <집승>으로태어나서 <집승>으로살아야만했다.

가져다준도덕률과통치원리의실질적인결과에관심을두기는커녕, 〈신의말씀〉의출생, 신분, 위격位格그리고행적따위에대한사변에몰두했다. 사람들은그가남긴잠언을꼬치꼬치따지고들었으며, 풀수없는문제들, 이해할수없는경전들에대한기상천외한논쟁으로부터 〈신학〉이탄생했는데, 이는차라리 〈절대적불합리의학문〉이라할만한것이였다.

〈기독교적〉진리는사도의시대를넘어서지못했다. 그리스인들과로마인들이주석을달고상징으로장식한 〈복음서〉는이교도의우화로가득차고글자그대로모순의징표가되였다. 오늘날까지도 〈무오류의교회〉의지배가오랜무지몽매만을보여주었듯이말이다. 〈지옥의문〉은항상우세할수만은없으며, 〈신의말씀〉은재림할것이고, 마침내인간은진리와정의를깨닫게될것이라고들말한다. 그러나그때가되면그리스와로마식의기독교는종언을고할것이고마찬가지로과학의빛앞에서몽상적인견해는사라질것이다.

사도들의후예가타파하고자했던괴물들은한때는겁을집어먹는듯했으나사제와신학자들의어리석은광신덕에그리고때로는계획적인공모덕에조금씩다시모습을드러냈다. 프랑스에서코뮌들이해방되어가는역사는국왕, 귀족, 성직자의공모에도불구하고인민들에게서정의와자유가줄기차게확립되고있음을보여준다. 서기 1789 년에프랑스국민은신분으로조개지고혈벗고고통받으면서, 절대왕정, 영주와고등법원의압제및성직자의불관용이라는삼중의그물밑에서분투했다. 왕의권리, 사제의권리, 귀족의권리그리고평민의권리가있었으며, 출생의특권, 지방의특권, 코뮌의특권, 길드의특권그리고직종의특권이있었다. 그리고이모든것의근저에는폭력과부도덕과곤경이있었다. 언제부터인가사람들은개혁을말했다. 그러나겉으로개혁을가장크게외치던이들은단지이익을얻을심사에서그것을추구했으며, 개혁에서더많은것을얻어야할인민은한마디말도못한채별로기대를걸지않았다. 오랫동안이가련한인민들은더러는의심에서더러는불신에서더러는절망때문에, 자신들의권리에대해머뭇거렸다. 복종하는오랜관습이, 중세에그토록자부심에넘쳤던이노쇠한코뮌들에게서용기를앗아간것이리라.

마침내한권의책이출판되었으며모든것은다음과같은두명제로요약되였다. 〈제 3 신분은무엇인가? 아무것도아니다. 그들은무엇이되려하는가? 모든것이다.〉 어떤이는논평하는형태를벌어다음과같이덧붙였다. 〈국왕은무엇인가? 인민의수입자이다.〉

이는마치돌연한계시와도같았다. 거대한장막이찢겨져나가고두터운가리개가눈에서떨어져나갔다. 인민은추론하기시작했다.

만일왕이우리들의수입자라면, 그는보고를해야한다.

만일그가보고를해야한다면, 그는통제를받아야한다.

만일그가통제를받는다면, 그는책임을져야한다.

만일그가책임을져야한다면, 그는처벌을받을수있다.

키케로 Cicero 는땅을거대한극장에비유하고있다. 〈극장이공공의재산인것처럼실은각자가차지한자리가마땅히그의것이라고말할수있다 (Quemadmodum theatrum cum commune sit, recte tamen dici potest ejus esse eum locum quem quisque occuparit)〉. 이구절은고대가소유의기원에대해우리에게남긴가장철학적인사유의전부이다. 키케로의말을들어보자. 극장은모두에게공유된것이다. 각자가거기에서선점한자리는 〈자기의것〉이라고말해진다. 즉명백히그자리는 〈횡령된〉자리가아니라 〈점유된〉자리이다. 이러한비유는소유를무효화하며더나아가서평등을함축한다. 나는극장에서아래층입석에한자리, 위층좌석에한자리, 천장층에한자리를모두차지할수있는가? 아니다. 그것은게리온 (Geryon, 그리스신화에나오는거인으로헤라클레스에의해죽임을당함-옮김) 처럼동시에여러장소에존재할수없는한불가능하다. 키케로에따르면, 누구나자기에게필요한것이상을가질수없다. 이것이야말로 〈무엇이든각자에게속한것이그의것 (suum quidque cujusque sit)〉 이라는그의유명한금언, 그러나지금까지아주이상하게적용되곤했던바로그금언의참된해석이다. 각자에게속한것은각자가점유할 〈능력〉이있는것이아니라각자가점유할 〈권리〉가있는것이다. 그런데우리는무엇을점유할권리가있는가? 우리의노동과우리의소비에필요한것만큼이다. 땅과극장에대한키케로의비유가바로이것을입증한다. 이에따르면누구나마음대로자기자리를차지할수있고그것을아름답게꾸밀수있으며그것을좋게고칠수도있다. 그러나그의행위는결코그와타인을갈라놓는선을넘어서는안된다. 키케로의교의는평등권으로귀결된다. 왜냐하면선점한다는것은용납한다는것을의미하는만큼, 그용납이상호적이고또반드시그래야만하는것이라면점유란평등해지기때문이다.

그로티우스 (H. Grotius, 1583~1645, 네덜란드의역사가, 법학자-옮김) 는역사에서설명을찾는다. 그런데사람들이자연적이라고말하는권리의기원을자연이아닌다른곳에서찾는것은어떤추론방법인가? 그것은곧고대인들의방식이다. 요컨대사실이존재한다, 따라서그것은필연적이다, 따라서그것은정당하다, 따라서선례들역시정당하다는식이다. 그러나살펴보자.

〈태초에는모든것이공유였으며, 나뉘어있지않았다. 모든것이모두의재산이었다.〉 이것으로충분하다. 그로티우스는어떻게해서이원시공동체가결국은야망과탐욕으로끝났는가를, 그리고왜황금시대가철의시대에자리를내주었는지등등을우리에게이야기하고있다. 따라서소유는우선전쟁과정복에, 다음에는조약과계약등에그기원을가진것처럼보인다. 그러나이조약과계약들이, 최초의공동체의의사에따라서, 즉첫인간들이동의할수있었던유일한분배규칙과그들이알고있는유일한정의의형태에따라서, 부를평등하게나누었는가? 만일그렇다면기원의문제

원의진실성여부에도대를두고있다는사실이다. 그러나이러한일치는그들모두가비판을면할길이없다는것을의미할따름이다. 왜이들은기원의문제를완전히해결하기전에그권리를인정했는가?

어떤이들은소유권의정당성문제에조금이라도이의를제기하길꺼려하며, 터무니없고말썽을일으킬소지가있는소유권의역사를돌이켜보려하지않는다. 그들은소유란이미하나의사실이며, 항상그러했으며또앞으로도줄곧그러하리라고말하는것으로만족하려한다. 현학자프루동(J.-B.-V. Proudhon, 1758~1838, 저자프루동의사촌형으로디종대학법학교수-옮김이) 이자신의『용익권논고』에서소유의기원이라는문제를현학적인무용지물인양취급하면서논의를시작한것도바로이때문이다. 만일내가나의동료시민들이충분한소유를누리는것을보았다면, 나역시평화에대한에착심에고무되어이러한바람에기꺼이동조했을것이다. 그러나...절대아니다. ...나는거기에절대동의하지않는다.

소유권이가진정당성의토대는두가지, 즉 <선점(先占, occupation)> 과 <노동> 으로귀결된다. 나는이두가지에대해차례로그모든측면을아주자세하게검토할것이다. 사람들이어떤논거를내세우든지간에, 나는그것으로부터, 소유가정당하고가능하려면평등을필요조건으로가져야만한다는논박할수없는증거를끌어낼것이라는점을독자들에게환기시키고자한다.

제 2 절소유의토대로서의선점에대하여

나폴레옹법전에대한심의를위해국가참사회가소집한회합들에서소유의기원과원리에대한어떤논쟁도제기되지않았다는사실은주목할만하다. 소유및종물從物취득권에관한제 2 편, 제 2 권의모든조항들은아무런토의도수정도없이통과되었다. 다른문제들에대해서는법률고문관들을그토록힘들게했던보나파르트가소유에대해서는덧붙일말이없었다. 그러나놀랄일은아니다. 일찍이이세상에서가장독자적이고가장제멋대로였던그사람의눈에는, 권위에대한복종이가장신성한의무이듯이소유는제일의권리여야만했다.

<선점> 의권리, 즉 <최초점유자> 의권리는사물에대한현실적, 물리적, 효과적인점유에서나오는권리이다. 내가어떤땅을선점했다고치자. 그러면그것에반하는것이입증되지않는한, 나는그땅의소유자로간주된다. 원래이러한권리는상호적일경우에만정당성을얻을수있는것으로인정된다. 이는법학자들도모두동의하는바이다.

만일그가처벌을받을수있다면, 그의공과에따라서이루어져야한다.

시이에스(Emmanuel Joseph Sieyès, 1748~1836, 『제 3 신분이란무엇인가』(1789) 라는소책자를썼다-옮김이) 의소책자가출판된지 5 년뒤에제 3 신분은모든것이되었으며, 국왕, 귀족, 성직자는더이상존재하지않았다. 1793 년에인민은주권자의불가침성이라는헌법상의허구에만족하지않고루이 16 세를단두대로보냈다. 1830 년에인민은샤를 10 세를셰르부르 Cherbourg 로몰아냈다. 이두경우에인민은범죄행위를판별하는데는잘못을저질렀을지도모르나, - 이는사실상의오류이리라 - 인민을움직이게한논리는법적으로비난의여지가없는것이였다. 주권자를정벌함으로써인민은, 나중에 7 월왕정의정부가스트라스부르 Strasbourg 사건때루이보나파르트 Louis Bonaparte 에대해취하지않음으로써도진비난을사게될바로그일을해낸것이다. 요컨대인민은죄값을치러야할진짜장본인을공격한것이다. 이것이야말로공통법 droit commun 의적용이며, 형법제도에서의정의의엄숙한적용인것이다.³

89 년의운동을낳은정신은모순으로가득찬정신이였다. 그것은, 옛것을대체한새로운질서가그자체로는체계적이고계획적인어떤것도가지고있지않다는점을, 이질서는분노와증오에서탄생한것으로서관찰과연구에근거한과학의효과를발휘할수없다는점을, 한마디로말해서그근본토대가자연과사회의법칙에대한심오한인식에서나온것이아니라는점을보여주기에충분하다. 따라서우리는사람들이맞서싸웠던바로그원리들과되치하고자했던모든편견의영향력을공화국이만든이른바새로운제도들속에서다시찾아볼수있는것이다. 사람들은즉흥적인기분에서영광스런프랑스혁명에대해, 1789 년의갱생에대해, 제도의변화가가져온위대한개혁들에대해말을늘어놓는다. 거짓말! 거짓말!

물리적, 지적, 사회적사실에대한우리의관념이우리가행한여러시도의결과로완전히달라졌을때, 우리는이정신운동을 <혁명> 이라부른다. 우리의관념속에서단지어떤확장이나수정만이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진보> 일따름이다. 말하자면, 프톨레마이오스의천동설이진보였다면, 코페르니쿠스의지동설은혁명을이룩했다. 마찬가지로, 1789 년에는투쟁과진보가있었으나어떠한혁명도없었다. 당시도입된개혁들을살펴보면이를잘알수있다.

그토록오랫동안군주의이기심에희생당했던인민은이제자신만이주권자라고선언함으로써영원히군주로부터해방될것이라고믿었다. 그러나왕정이란무엇이었나? 한사람이주권자이다. 민주정이란무엇인가?

³ 행정부의수반이책임을진다면, 대의원들도역시책임을져야만한다. 이러한발상이아무에게도떠오르지않았다니놀라운일이다. 이는흥미로운논문의주제가될것이다. 그러나나는누구에게도이논문을제출하지않을것이다. 인민은여전히웬만한논리학자뺀치는터라내가이들에게결론을도출할자료를제공할필요조차없으니말이다.

인민, 달리말하자면국민다수가주권자이다. 그러나늘인간의주권이법의주권을대신했으며, 의지의주권이이성의주권을대신했다. 말하자면열정이권리를대신했것이다. 의심할나위없이만일한국민이군주국가에서민주국가로넘어간다면, 그것은하나의진보이다. 왜냐하면주권자의수를늘림으로써이성의지를대체할더많은기회를갖게되기때문이다. 그러나아무튼원리는예나지금이나동일하다는점에서통치에서는어떠한혁명도찾아볼수없다. 그런데오늘날우리는가장완벽한민주주의에서도사람들이자유롭지못할수있다는증거를가지고있다.⁴

이것이다가아니다. 군주로서의인민은스스로는주권을행사할수없다. 그는주권을권력의수임자들에게위임할수밖에없다. 인민의총애를얻어내고자하는이들이조심스럽게열심히되풀이해서말하는바가바로이것이다. 이권력의수임자들이다섯이든열이든백이든천이든그수효나칭호가무슨의미가있는가? 그것은변함없이인간의통치이자지의와자의의지배인것이다. 이른바혁명이라는것이과연무엇을혁명했는지나는묻지않을수없다.

더구나우리는이주권이처음에는국민공회 Convention 에의해, 다음에는총재정부 Directoire 에의해어떻게행사되었으며, 나중에는통령 Consul 에의해어떻게침탈되었는지를알고있다. 황제, 인민의경탄과흠모를한몸에받던이전능자는결코인민에의지하려하지않았다. 그는마치인민의주권을우롱하려는의도라도있는듯이감히인민에게선거를, 달리말해서인민의양도를, 이양도할수없는주권의포기를요구했으며, 결국그것을얻어냈다.

그러면주권이란무엇인가? 말하자면그것은 <법을만드는힘> ⁵이다. 그러나이는사실또다른부조리이며전제주의의유물이다. 인민은국왕들이자신들의칙령을 <집의뜻이이러하므로> 라는식의문구로합리화하는것을보아왔다. 인민은이제자기차례가온듯법을만드는즐거움을만끽하고자했다. 지난 50 여년동안인민은무수한법을생산했다 (물론어느경우에나그대표자들을통해서). 이러한흥취는끝날줄을모른다.

그런데주권의정의는법의정의자체에서나온다. 말하자면법이란 <주권자의의지의표현> 이다. 따라서군주정아래서법은국왕의의지의표현이며, 공화국에서법은인민의의지의표현이다. 의지의수효만이다를뿐, 두체제는완전히같은것이다. 어느쪽이나마찬가지의오류를범하고있

⁴ 토크빌 Tocqueville 의『미국의민주주의』와미셸슈발리에 Michel Chevalier 의『북아메리카에대한단상』을보라. 플루타크가쓴『페리클레스의생애』에따르면, 아테네에서어엿한사람들은자신이참주정을바라는것처럼보이지나않을까두려워한 나머지, 학문에몰두하는일로도피처를삼지않을수없었다고한다.

⁵ 툴리에 Toullier 에의하면, <주권이란인간의전능성全能性이다> . 이것은유물론적정의定義이다. 만일주권이그무엇이라면, 그것은 <힘> 이나 <능력> 이아니라 <권리> 이다. 그러면인간의전능성이란무엇인가?

자. 100 명의머리를적에게내줌으로써 10 만명을구할수있는데도, 이들 10 만명모두의목숨을위험에노출시키는것이정당한가? 독자여, 여러분이판단하시라.

이모든것을현상유지를원하는자들은완벽하게이해하고있다. 그럼에도조만간공채이자율의인하가단행될것이다. 그러면소유권은침해당하는것이다. 왜냐하면달리해볼방도가없기때문이며, 권리로간주되면서도사실상권리가아닌소유권은법적으로소멸될것이기때문이며, 현실의불가피성, 양심의규범, 물리적·수학적필연성등이결국은우리사법부의이러한환상을깨부술것이기때문이다.

요약해보자. 자유란, 마치삼투불가능성이물체의속성이듯이, 인간의속성이라는점에서절대적권리이며, 존재의필수조건이다. 평등이란평등없는사회가있을수없다는점에서절대적권리이다. 안전이란, 모든인간에게자신의자유와생명이타인의그것만큼귀중하다는점에서절대적권리이다. 이세가지는, 사회에서각구성원은그가준것만큼받는다 - 즉자유에는자유로, 평등에는평등으로, 안전에는안전으로, 육체에는육체로, 영혼에는영혼으로 - 는점에서말하자면더보탬수도더뺄수도없는절대적인것이다.

그러나소유란, 그어원학적추론이나법리상의정의에따르자면, 사회의외부에있는권리이다. 왜냐하면만일개인의재산이사회적인것이라면조건은분명히모두에게평등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소유란인간이사회적재산을절대적인방식으로처분할수있는권리이다> 라고말하는것은모순이다. 소유를위해서는그렇지않다. 따라서소유가 <자연적> 권리라고할지라도, 이자연권은 <사회적인> 것이아니라 <반사회적인> 것이다. 소유와사회는불가항력적으로서로를거부한다. 두소유자를서로결합시키는것은자석을같은극끼리맞붙이는것만큼이나불가능하다. 사회가사라져야하거나아니면사회가소유를말살해야하거나둘중의하나이다.

소유가자연적이고, 절대적이며, 소멸될수없고, 양도할수없는권리라면, 왜사람들은어느시대에나소유의기원에대해그토록큰관심을가졌는가? 소유를특정짓는특성들중의하나가바로그점에있기때문이야인가. 자연권의기원이라니! 도대체누가자유권, 안전권및평등권의기원을탐구했겠는가? 그권리들은우리가존재하는것과마찬가지이유에서존재하는것이다. 그것들은우리처럼태어나고, 살고, 죽는다. 그러나소유란정말로이와는다른것이다. 마치주체가없어도기능은존재하듯이, 법률에의해서소유는소유자없어도존재하는것이다. 소유는아직잉태되지않은인간에게도이미세상을뜬 80 대의사람에게도존재한다. 그러나영원성및무한성과연결된듯이보이는이놀라운특전에도불구하고, 우리는소유가어디서유래하는지를알수없다. 박사님들은서로어긋나는말만을우겨대고있다. 이들의견해가일치하는한가지점은소유권의확실성은그기

은시역죄이다. 누구도위험에서빠져나올권리가없으며, 누구도희생양이될수없다. <한사람이백성을위하여죽는것은유익하다> 라는가야바의금언 (「요한복음」 18 장 14 절-옝긴이) 은하층민과참주들에게서, 즉사회의양극단에서나온말이다.

영구채권 rente perpétuelle 은그본질상되사기가가능하다고말한다. 이민법상의금언은, 국정에적용될경우, 노동과부의자연적평등으로돌아가기를원하는자들에게는바람직하다. 그러나소유자의관점에서볼때그리고공채전환론자들의입을빌려말하자면, 그것은지불불능자의언어이다. 국가는단순한차용자가아니라소유의보증인이며수호자이다. 국가는가능한최고의안전을제공함으로써, 가장견고하고아무도침해할수없는항유를보장한다. 어떻게국가가자신을신뢰하고있는채권자들의희생을강요하면서, 이들에게소유의보장과공공질서에대해말할수있다는말인가? 이러한경우에국가는빚을갚아야하는채무자가아니라, 말하자면주주들을궁지에몰아넣어서원래약속과는달리이들로하여금원래자본금에서나오는이자 20,30, 40% 를손해보게만드는주식회사와같다.

이것이다가아니다. 국가란사회의약정에의해서공통의법률아래결합된시민들의총체이다. 이약정은모든이들이자신의재산을, 즉갑은밭을, 을은포도원을, 병은임차지를가질수있도록보장해주며, 이와마찬가지로부동산을사들일수도있었지만국가재정을원조하려고그돈으로채권을사들인공채소유자에게는금리를보장해준다. 국가는정당환보상금없이한에이커의발도, 한모통이의포도원도요구할수없으며, 하물며지대를내리게할권한도없다. 어떻게국가가공채이자를인하할권리를갖겠는가? 이권리가정당성을얻으려면공채소유자가자신의자산을다른어딘가에마찬가지로유리하게투자할수있어야만한다. 그러나공채소유자가국가로부터벗어날수없는이상, 그리고공채이율인하의원인즉좀더값싸게차용할수있는능력이국가에있는이상, 어떻게공채소유자가원하는유리한투자처를발견할수있겠는가? 이것이소유의원리에기반을둔정부가공채소유자의동의없이공채를되살수없어야하는이유이다. 공화국에대부해준기금은다른유형의재산들이존중되는한에는누구도손덜수없는재산이다. 강제적으로되사기를하는것은공채소유자에게는사회적협약을파기하는일이며, 이들을법의테두리바깥에두는일이다.

공채이자율인하에대한모든논쟁은다음과같이요약된다.

질 의 | 100 프랑정도의공채증서를가진 4 만 5,000 의가정을빈곤에빠트리는일은정당한가?

답 변 | 700~800 만의납세자들에게, 이들이 3 프랑만내면되는데, 5 프랑을내게하는일은정당한가?

우선, 이런식의답변이질의에대한좋은답이되지않는다는것은명백하다. 그러나그해점이더잘드러나게하기위해서답변을다음과같이바꾸

다. 즉법은사실의표현이어야만하는데도의지의표현으로남아있는것이다. 하지만인민은홀륭한인도자들을따랐다. 인민은제네바의시민을선지자로모셨고『사회계약론』을경전으로삼은것이다.

새로운입법자들의수사학하나하나에는어김없이선입관과편견이드러난다. 인민은수많은배제와특권때문에고통받아왔다. 따라서그대표자들은인민을위해다음과같은선언을했다. <모든인간은날때부터그리고법앞에서평등하다> 실로애매하고허풍섞인선언이다. <인간은날때부터평등하다> 이말은인간은누구나신장과미모와재능과성품이같은의미인가? 아니다. 따라서여기서말하고자한것은정치적·시민적평등이다. 따라서 <모든인간은법앞에서평등하다> 고말하는것으로충분했다.

그러면법앞에서의평등이란무엇인가? 1790 년헌법도, 1793 년헌법도, 국왕이하사한헌장 (Charte, 1814 년의헌장을말한다-옝긴이) 도, 의회가의한헌장 (1830 년의헌장을말한다-옝긴이) 도그것을정의할줄을몰랐다. 어느것이나재산과서열의불평등을가정하고있으며권리의평등이란그림자도찾아볼수없다. 이점에대해우리는우리의모든헌법이인민의지의충실한표현이었다고말할수있다. 다음에서그증거를보여주겠다.

일찍이인민은행정이나군대의관직에서배제되어있었다. 그런데사람들은인권선언에다음과같이자못강압한조항을끼워넣고는경탄할만한일을했다고믿었다. <모든시민은평등하게공직에응용될수있다. 자유로운인민은자신들이선출되는데있어서미덕과재능외에다른특권적배려를인정하지않는다.>

확실히사람들은이멋진일에찬사를보냈음에틀림이없다. 그러나사람들은어리석은것에찬사를보낸셈이리라. 뭐야! 입법자이자개혁자인주권자인민은공직에서보수만을, 잘라말하자면금전적행운만을보지않는가! 그리고인민이시민의공직담임권에대해입법화한것은그공직을이윤의원천으로보았기때문이야닌가! 거기서언을것이없었다면이러한규정이왜필요했겠는가? 사람들은천문학자나지리학자가아니면비행사가될수없다고규정하지는않으며, 병어리가비극이나오페라에출연하는것을막지는않는다. 이점에서인민은여전히왕들의본을따르고있다. 국왕들과마찬가지로인민은잇속이있는자리를자기친지나아침꾼에게주려한다. 그런데이익을챙기는자는인민이아니고바로인민의위임자, 대표자들이다 (여기서왕들과인민사이의유사점은절정에달한다). 그래서위임자들은양순해빠진자신의주권자의의지를거스르지않으려고조심한것이다.

인권선언의이모범적인조항은 1814 년과 1830 년의헌장들에서도재확인되었는데, 몇가지유형의시민적불평등을, 달리말해서법앞에서의불평등을전제하고있다. 공직은그것이가져다주는평판과보수에의해

서만그값이매겨진다는점에서열의불평등이며, 재산의평등을바라다면공직은보상이아니라무가되어야한다는점에서부의불평등이며, 법은〈재능과덕성〉을말하면서도정작그것이무엇인지를규정하지는않았다는점에서배려의불평등이다. 제정기에덕성과재능이란황제에대한충성과군사적용맹이외에아무것도아니었다. 이는나폴레옹이신흥귀족을만들어옛귀족과결합시켰을때명백해졌다. 오늘날 200 프랑의세금을내는이는덕성이있는자이며, 재능이있는자는점잖은소매치기이다. 이것은이제평범한진실이되었다.

마침내인민은소유권을신성한것으로만들었다. …신이며, 용소하소서. 저들은자신이하하는일을모르나이다. 보라, 지난 50 년동안인민은이가련한어리석음의대가를치르고있다. 그런데, 인민이, 그들의목소리는신의목소리이며그들의의식은오류를모른다던바로그인민이어찌하여잘못생각했는가? 어떻게자유와평등을찾으면서도저들은특권과예속에다시빠졌는가? 늘그렇듯이옛제도를흉내냈기때문이야닌가.

예전에, 귀족과성직자는자발적부조나무상증여의형태로만국가의재정에기여했다. 이들의재산은설령채무변제를위해서라도차압할수없었다. 반면에평민은타이유 taille 稅와부역에짓눌렸으며, 때로는국왕의세리들에게때로는영주와교회세리들에게끝없이시달렸다. 가장열악한이들은물건처럼취급되었으며유언을남길수도상속인이될수도없었다. 이들은중물취득법에의해노역과산출이주인에게귀속되는동물과다를바가없었다. 인민은〈소유자〉의조건이모두에게갈기를, 누구나〈자신의재산을, 자신의수입을, 자기노동과근면의결실을자유롭게향유하고처분할수있기〉를원했다. 인민이소유를발명하지는않았다. 그러나그소유가귀족이나성직자에게주어진것과같은자격으로자신들에게주어져있지않았기때문에인민은이권리의균등을법제화했다. 가혹한소유형태들, 부역, 상속불능, 지배권, 공직에서의배제따위는사라졌으며향유의형태가변경되었다. 그러나근본은변하지않고남았다. 권리의할당에서진보가있었으나, 혁명은없었던것이다. 1789 년의운동과 1830 년의운동이차례로공인한, 현대사회의세가지근본원리가있다. 그것은 (1) 〈인간의지의중주권〉, 바꿔말하자면 〈전제주의〉, (2) 〈부와서열의불평등〉, (3) 〈소유권〉이다. 이것은정의를, 즉주권자들과귀족과소유자들의수호천사라고항상모든사람들이말하는바의정의, 사회전체의일반적, 시원적, 정언적법칙으로서의정의를훨씬넘어서는것이다.

〈전제주의〉, 〈시원적불평등〉, 〈소유〉 따위의개념들이정의라는시원적관념에부합되는것인지아닌지를, 즉그개념들이비록사례와장소와인간관계에따라다양하게표출되기는하지만, 정의의관념에서나오는필연적산물인지아니면차라리여러사물들이뒤섞이고관념들이하릴없이결합된데서생긴사생아인지를알필요가있다. 그런데정의란특히통치에서, 사람들의지위에서그리고사물의소유에서구체적인모습을드러

여기서우리는절대적이고양도불가능한소유권으로부터아주멀리있다. 그리하여부자와빈자는서로간에불신과전쟁의상태에놓인다! 그러면그들은왜서로싸우는가? 소유때문에. 소유란필연적으로소유에대한전쟁을부르지않는가! 부자의자유와안전은빈자의자유와안전으로인해해를입지않는다. 오히려이들은서로를복돋우며서로를지탱한다. 이와는반대로부자의소유권은빈자의소유본능에맞서설틈없이보호되어야한다. 이얼마나모순인가!

영국에는구빈세가있다. 누군가나에게도이런종류의세금을내라고한다. 그러나내가진짜자연적이고소멸될수없는소유권과 1,000 만에달하는비참한자들을괴롭히는기근사이에어떤관계가있는가? 종교는, 우리에게형제들을도우라고요구할때, 입법의원리를내세우는것이아니라자선이라는걸치레를내세운다. 기독교윤리가내게지운선행의의무는, 어느누구를위해서하물며구빈시설을위해서내뺏고상관없이요구되는일종의정치적납세가되어서는안된다. 나는, 만약내마음에서우러난다면그리고이웃의고통을보고어떤동정심을느낀다면, 자선을행할것이다. 철학자들이즐거말하는이동정심이라는것을나는거의믿지않지만말이다. 요컨대나는사람들로부터강요당하는것을원치않는다. 어떤이도다음과같은격언, 즉자유에대한원래의정의라할이금언을넘어서까지정의롭도록강요당해서는안된다: 〈타인의권리를해치지않는한에서너의권리를즐기라〉. 요컨대나의재산은내것일뿐아무에게도속하지않는다. 나로서는신학상의제 3 의덕이개입하는것을원치않는다.

프랑스에서는누구나 5% 의저리低利공채 전환 conversion 을요구한다. 이는소유자들중일부의희생을요구하는것이다. 공적필요가있을경우사람들은그렇게할권리가있다. 그러나이경우정의는어디에있으며, 1815 년의현장이약속한〈사전보상〉은어디에있는가? 사전보상은없을뿐더러아예불가능하기조차하다. 왜냐하면만일희생된소유에도보상금이주어진다면, 공채전환은아무런의미가없기때문이다.

오늘날국가는공채소유자에대하여, 에드워드 3 세에게포위된칼레 Calais 市市가그도시의명사들에대해취했던것과비슷한태도를취하고있다 (백년전쟁당시칼레시는영국군에의해포위되었다-윙간이). 승리한영국은칼레시의유력인사들을넘겨받는조건으로주민들의목숨을살려주겠다고약속했고, 외스타슈 Eustache 를비롯한몇명이희생되었다. 이들로서는승고한일을한것이며, 우리의장관님들은공채소유자들에게이일화를들려주어야할것이다. 그러나시당국은이들을적군에게넘겨줄권리가있는가? 아니절대로그렇지않다. 안전권은절대적인것이고조국은누구에게도희생을요구할수없다. 적의사정권안에서보초를서는병사도이원칙에서예외가되지않는다. 한시민이보초를서고있을때, 조국역시그와더불어위험에노출되는것이다. 오늘은이사람이, 내일은저사람이당번병이다. 위험과희생은모두에게갈치는것이며, 도주하는것

우리는왜세금을내는가? 각인에게자유, 평등, 안전, 소유와같은자연권의행사를보장해주기위해서, 국가의질서를유지하기위해서, 그리고유용하고쾌적한공공시설물을설치하기위해서이다.

그런데부자들의생명과자유를지키는것은가난한자들의생명과자유를지키는것보다비용이더많이드는가? 침략과기근과역병이판치는시기에, 국가의구호를기다리지않고위험을피한대지주와온갖재앙들에무방비상태인초가집에남아있는날품팔이농민중에서어느누가더걱정거리인가?

질서는수공업자나도제에의해서보다유복한부르주아에의해서더위협받는가? 그런데정찰은돈많은유권자 20 만명보다일자리없는노동자수백명에더신경을쓰지않는가.

고액금리생활자는국경일을, 청결한거리를, 멋진기념물을가난한자들보다더많이즐기는가? 그런데부자는대중적인위락시설어떤곳보다자신의전원주택을더좋아하고, 오락을즐기고자할때도보물따먹기기동같은것은바라지않지않는가.

결국둘중의하나이다. 즉누진과세라고액납세자들의특권을보장해주고공고히해주는제도이거나아니면그자체일종의부당행위인것이다. 왜냐하면 93 년의헌법이선언한것처럼소유가자연권에속한다면, 이권리에의해나에게속한것은나의신체만큼이나신성한것이기때문이다. 그것은나의피요, 나의생명이고나자신이며, 그것을건드리는자는누구나나의노동자를찌르는셈이다. 내수입 10 만프랑은점원아가씨의일단 75 상티파마찬가지로신성한것이며, 나의아파트도그녀의다락방도중요하기는마찬가지이다. 세금은개인의힘과신장과재능에비례해서할당되는것이아니다. 더구나재산에비례해서할당될수는없는것이다.

따라서국가가나에게서많이가져간다면, 국가는나에게더많이돌려주거나아니면더이상나에게권리의평등을운운하지말아야한다. 왜냐하면그렇지않다면사회는소유를지키기위해서만들어진것이아니라소유를조직적으로파괴하기위해서만들어진셈이기때문이다. 국가는누진과세정책에의해스스로도당의수령이된다. 정기적인약탈행위의모범을보이는것은바로국가이다. 따라서끔찍한강도들, 즉직업적시기심에사로잡힌국가가말살하겠다고공언하는바로그험오스런도당의우두머리로서, 중죄재판소의피고인석에앉아야하는것은바로국가자신이다.

그러나우리가재판소나병사들을필요로하는것은바로이도당들을제압하기위해서이다. 정부는보험회사라기보다는(왜냐하면정부는보장을해주지는않는다), 차라리보복과응징을위한회사이다. 이회사가요구하는가입금, 즉세금은소유에비례해서, 달리말해서정부에게서급료를받는보복꾼과응징꾼들에게개개소유자가요구하는노고에비례해서할당된다.

내는것이므로, 우리는모든사람들의합의와인간정신의진보를판단기준으로삼아다음과같은점을밝혀야한다. 우선어떤조건아래통치가, 시민들의지위가, 사물의소유가정당한가를. 다음에는, 위의조건을만족시키지못하는사항들을배제하고나면한꺼번에드러날것, 즉정당한통치, 정당한시민의조건, 사물의정당한소유란무엇인가를. 그리고마지막으로, 정의란무엇인가를.

인간의인간에대한권위란정당한가?

모든사람은답한다, 아니라고. 인간이지닌권위는법의권위일따름이며, 법은정의와진실의표현이어야한다. 통치행위에서중요한것은개인이익이지아니다. 통치란한편으로옳은것과정당한것을발견해서법을만드는일이며, 다른한편으로이법의집행을감독하는일이다. 나는여기서우리의입헌정부형태가이조건을만족시키는지아닌지를따져보려는것이아니다. 예컨대장관들의의지가법의선언및해석과관련이있는지를, 우리의원님들이수적우위보다이성의힘에의해서토론에서이기고자하는지를따져보려는것이아니다. 훌륭한통치에대해서내건관념이내가정의한바와같다면나는그것으로족하다. 이러한생각은옳다. 그러나동양사람들이보기에자신들의군주들의전제주의만큼정당한것이없었다는사실을, 고대인들은심지어철학자들까지도노예제를정당하다고여겼다는사실을, 중세에귀족, 수도원장및주교들은노예를갖는것을정당하다고생각했다는사실을, 루이 14 세는 <짐이곧국가다> 라고말하면서자신이옳다고생각했다는사실을, 나폴레옹은자신의뜻을거역하는자를국사범으로취급했다는사실을우리는잘알고있다. 정의의관념이군주나통치문제에적용될경우, 항상오늘날의관념과같았던것은아니었다. 정의의관념은줄기차게발전하고점점더정교해지면서마침내지금의상태에이르렀다. 그러면정의의관념은이제막바지단계에이르렀는가? 나는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거기에도달하기위해넘어야할최후의장애물은우리가여태고이간직해온소유권이라는제도에서유래하는것이다. 따라서통치의개혁을완수하고혁명을이룩하기위해서우리가공격해야하는것은바로이제도이다.

정치적, 시민적불평등은정당한가?

어떤이는그렇다고, 어떤이는아니라고대답한다. 그렇다고답하는이들에게나는다음과같은사실을환기시킬것이다. 즉인민이출생과신분의모든특권을폐지했을때당신네들이그것을좋은일로여긴것은아마도당신네들이그로인해이득을얻었기때문이라는사실을말이다. 그러면이들은왜서열과인종의특권과더불어부의특권도폐기되는것을원하지않았는가? 이들은말하기를, 정치적불평등이란소유에서연원하는것인데소유제도없이어떤사회도존속할수없기때문이라는것이다. 따라서우리가막거론한문제는결국소유의문제로환원된다. 한편, 아니라고답한이들에게나는다음과같은물음을던지는것으로그칠것이다. 정치적평등을

누리기를원한다면소유를폐지하시오, 그리하지않을것이면왜불평하는가?

소유는정당한가?

모든사람이아무주저없이답할것이다. 그렇다, 소유는정당하다고. 내가여기서모든사람이라고말하는것은문제를완전히해하고아니오라고답한사람이여태껏한사람도없었기때문이다. 물론근거있는답변이쉬운것은아니었다. 시간이지나야만그리고경험이쌓여야만해결책을얻을수있었다. 오늘날에는이러한해결책이주어져있으며, 그것을이해하는일은우리의몫이다. 나는그해결책을입증하려는것이다.

우리가논증을진행하는방식은다음과같다.

I. 우리는누구와도논쟁하지않고누구도반박하지않으며어떤것에도이의를달지않는다. 우리는소유를옹호하는모든추론을근거가있는것으로받아들이며, 단지소유의원리를탐구하고그원리가소유에의해충실하게표현되어있는가를입증하는것으로만족할것이다. 사실소유란정당성여부에의해서만변론될수있는것이기때문에, 정의의관념 - 아니면적어도정의에대한의향 - 이반드시소유에대한모든논증의한가운데에자리잡고있어야한다. 그리고다른편으로소유란물질적으로감지되는사물들을대상으로한것이므로, 정의는저절로, 달리말하자면은연중에객체화되어서대수학공식의형태로나타나야만한다. 이러한검토방식에의해서우리는소유를옹호하기위하여태껏동원된모든추론방식은〈그것이무엇이든간에〉항상그리고필연적으로소유의평등에, 즉소유의부정에이르게된다는깨달음에즉시이르게된다.

이책의첫부분은두장章으로이루어져있다. 하나는점유占有, 즉우리의권리의토대에관한것이고, 다른하나는소유와사회적불평등의원인으로간주되는노동과재능에관한것이다.

이두장의결론은한편으로점유권은소유를〈금지한다〉는것이고, 다른한편으로노동권은소유를〈파괴한다〉는것이다.

II. 따라서소유란필연적으로평등이라는정언명제아래서우리의머릿속에구상되는것이기때문에, 우리는이러한논리의필연성에도불구하고왜평등이존재하지않으면안되는가를물어야만한다. 이새로운연구역시두개의장으로이루어진다. 첫번째장에서우리는소유라는사실을그자체로고려하면서, 이사실의현실성과가능성을여부를탐지해볼것이다 (왜냐하면소유라는것은상반되는두가지사회주의적형태, 즉평등과불평등이모두가능하다는모순을내포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면우리는기묘하게도소유란마치우연한사건처럼나타나는것이어서수학적인견지에서불매제로나원리로는불가능하다는사실을발견할것이다. 따라서학교에서사용되는공리 - 즉〈현실태에서가능태로의추론은유효하다 (ab actu ad posse valet consecutio)〉라는명제 - 는소유에관한한허구임이드러난다.

마찬가지로, 법앞에서의평등은어떠한제한도어떠한예외도갖지않는다. 프랑스인은누구나평등하게공직에진출할수있다. 바로이것이이러한평등이이루어진곳에서는많은경우에출신이나연륜이특혜의사유가되지않는이유이다. 가장가난한시민도가장고귀한자를법정에불러세울수있으며재판에이길수있다. 백만장자아합 Achab 이나봇 Naboth 의포도밭에성을세웠을때, 법정은경우에따라서엄청난비용이들더라도이성을파괴하도록명령할수있으며, 포도밭을원상태로돌려놓도록할수도있고, 나아가서침탈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법에따르면정당하게취득한모든소유는그값어치나소유자의수락여부와관계없이존중되어야하는것이다.

1815 년의현장에몇몇정치적권리들을행사하기위해서는재산과능력에서의일정한조건이요구된다고규정되어있다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정치는객들은누구나입법자의의도가특권을확립하려는것이아니라보장책을취하려는것이라는점을알고있다. 법이정한조건을충족시키기만하면, 시민은누구나유권자가될수있고유권자는누구나피선거권자가될수있다. 일단확정한권리는만민에게평등한것이다. 법은사람도투표권도차별하지않는다. 여기서내의도는이체계가최선인가를검토하는것이아니다. 현장의정신에비추어볼때그리고모든사람이보기에, 법앞에서의평등이란절대적인것이고자유와마찬가지로어떤거래의대상도되지않는다는사실을지적하는것으로내게는충분하다.

안전권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사회는그구성원들에게어떤어중간한보호나반쪽짜리방어를약속한것이아니다. 사회의구성원들이사회에대해책임지지고있듯이, 사회는사회구성원들에대해온전히책임을진다. 내게별부담이안된다면당신의보증을서겠다든지, 아니면내게위험이되지않는다면당신을보호해주겠다는식으로사회가그구성원들에게말하지는않는다. 만났고초를무릅쓰고당신을지킬것이고, 당신의목숨을구할것이며, 당신의복수를해주고나는죽을것이라는식으로사회는말하는법이다. 국가는개개시민의이익을위해온힘을다한다. 국가와시민을서로잇는의무는절대적인것이다.

소유의경우는이와얼마나다른가! 소유는모두에게송배받으면서도아무에게도인정받지못한다. 법률, 습속, 관습, 공적및사적의식등이모두가소유의죽음과소유의파탄에공조하고있다.

군대를유지하고공사를집행하며공무원들을먹여살리는데어드는비용을마련하기위해서정부는세금을거두어야한다. 모든사람이이러한지출에각자제몫을부담한다면더바랄나위가없으리라. 그런데왜부자는가난한자보다더지불하여야하는가? 그것은정당하다, 왜냐하면부자는더많이가졌기때문이라고사람들은말한다. 분명히말하거니와이런식의정의를나로서는이해할수가없다.

반환소송과 소유권확인소송은 결코 중첩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두 소송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

소송의 핵심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선결적인 몇 가지 견해들을 소개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까 한다.

제 1 절 자연권으로서의 소유에 대하여

인권 선언은 소유에 대하여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라고 말한다. 이들 권리는 <자유>, <평등>, <소유>, <안전> 이라는 네 가지로 축약된다. 93 년의 입법자들은 어떤 방법에 따라 이렇게 나누었는가? 그들은 아무것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주권이나 법률을 논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좇아 원리를 세웠을 뿐이다. 그들은 만사를 손으로 더듬으면서 단숨에 해치웠다.

만일 우리가 툴리에의 견해를 따른다면, <절대적 권리는 다음의 세 가지로, 즉 '안전', '자유', '소유'로 환원된다> . 이렇게 이렌스 Rennes 의 교수님은 평등을 제외시켰다. 어떤 이유에서인가? <자유> 가 평등을 포함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소유> 가 평등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인가? 『민법해설』의 저자는 이 점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할 뿐, 여기에 토론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조차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의 권리를 서로 비교해보면, 소유는 다른 권리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대다수 시민들에게 있어서 소유란 가능태로서만, 즉 잠재되어 있을 뿐 발휘되지는 않는 능력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소유를 누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소유는 자연권의 이념과는 결맞지 않게 도 어떤 거래와 변용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정부나 법원이나 법률은 소유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발적이지만 장일치로 소유를 몽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 나는 자유를 팔 수도 양도할 수도 없다. 자유의 양도나 자유의 정지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계약이나 계약 조건도 무효이다.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 노예는 그 즉시 자유인이 된다. 사회가 치한을 잡아서 그에게서 자유를 빼앗을 때, 이는 사회의 정당방위이다. 범죄에 의해서 사회적 협약을 깨트린 자는 누구나 자신이 사회의 공적이라고 선언한 셈이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 사람은 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자유를 빼앗아가라고 강요한 셈이다. 자유는 인간 상태의 첫 번째 조건이며,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자격을 부정하는 일이다. 그러고서 도 어찌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끝으로, 마지막장에서 우리는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 인간 본성의 근저에까지 뚫고 들어감으로써 <정의> 의 원리와 형식 그리고 특성을 밝혀낼 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유기적 법칙을 명확히 설명할 것이며, 소유의 기원, 소유가 확립된 이유와 오래 지속된 이유,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소유권이 소멸될 이유를 밝힐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마침내 소유란 도둑질과 같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종주권, 조건의 불평등, 소유라는 이 세 가지 편견은 사실은 하나일 뿐이며 서로 대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우리는 모순의 원리에 따라 이 사실로부터 별 어려움 없이 통치와 권리의 토대를 추론할 것이다. 우리의 연구는 여기서 멈출 것이며, 나머지는 새로운 저작의 몫으로 넘길 것이다.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이 주제의 중요성은 모든 이의 시선을 끈다. 엔느 캥 (Hennequin, 1780~1840, 프랑스의 변호사, 정치인, 『입법 및 판례 논고』를 썼다. 옮긴이)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유는 시민 사회를 창출하고 보존하는 원리이다. ... 소유는, 새롭다고 뽐내는 그 어떤 설명들도 즉각적으로 해명되기 힘든 근본적인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도덕성은, 따라서 인간 제도의 모든 권위는, 만일 소유를 원리나 결과라는 측면에서 고찰할 때 소유가 사회 질서의 원인이거나 아니면 결과인 가라는 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문필가든 정치인이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말은 희망과 신념을 가진 모든 인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대의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누구도 소유의 옹호자들이던 진도전을 받아 내지 않았으며 아무도 싸움을 벌일 단호한 용기를 품지 못했다. 거만한 법률학의 거짓 지식과 소유가 빛어 낸 바정치 경제학의 엉터리 경구가 가장 고결한 지성가 지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평등은 환상이다!> 라는 말이 인민의 자유와 이익의 가장 유력한 벗들 사이에 합의된 일종의 군호軍號인 것이다. 이토록 가장 거짓된 이론들과 가장 황당한 유추들이, 다른 점에서는 탁월했을지 모르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중적 편견에 굴복한 정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평등은 날마다 전진한다 (fit oequalitas). 자유의 병사들이여, 승리의 전야에 우리의 깃발을 버릴 것인가?

평등의 옹호자로서 나는 증오도 분노도 없이 철학자에게 어울리는 독립심과 자유인으로서의 평상심과 단호함을 지니고 말할 것이다. 이 장엄한 투쟁에서 나의 몸을 비취 주는 빛을 내가 모든 이의 마음 속에 비출 수 있기를, 그리고 나의 성공적인 논증에 의해서 설령 평등이 칼로써 승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펜으로써 승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를!

제 2 장 자연권으로 간주되는 소유에 대하여. 소유의 동인 動因으로서의 선점과 민법에 대하여

정의 定義들

로마법은 소유를 <법의 이치가 허용하는 한에서 사물을 사용하고 남용하는 권리 (jus utendi et abutendi re sua, quatenus juris ratio patitur)> 라고 정의한다. 어떤 이는 여기서 <남용하다 abuser> 라는 단어는 무절제하고 비도덕적인 남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의 절대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소유를 신성화하기 위해 꾸며낸 헛된 구별에 불과하며, 예측하기도 억제하기도 힘든 향유의 광기에 맞서기에는 무기력한 구별일 따름이다. 소유자는 자기의 과일을 밭에서 썩게 내버려둘 수 있고, 자기 밭에 소금을 뿌릴 수 있으며, 모래 위에서 소뿔을 짜고, 포도밭을 황무지로 바꿀 수 있으며, 채소밭을 공원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모든 일은 남용인가, 아닌가? 소유의 영역에서는 사용과 남용이 어쩔 수 없이 뒤섞인다.

93 년 헌법의 모두冒頭에 실린 인권 선언에 따르면, 소유란 <자신의 부, 자신의 소득, 자신의 노동과 근면의 결실을 마음대로 향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다. 나폴레옹 법전 제 544 조에 따르면, 소유란 <법률과 규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사물을 가장 절대적인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다.

이 두 정의는 로마법의 정의에 귀착된다. 말하자면 소유자에게 사물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모든 정의가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폴레옹 법전에 명시된 제한 규정 즉 <법률과 규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이라는 구절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소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소유자의 권한이 다른 소유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요컨대 그것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소유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즉 (1) 무조건적 소유, 사물에 대한 지배자나 영주의 권리 따위, 흔히 말하는 <허유 (虛有, nue-propriété)> 와 (2) <점유 possession> 이다. 뒤랑통 (A. Duranton, 1782~1866, 프

랑스 법학자, 『프랑스 법강의』를 썼다-옮긴이) 에 의하면 <점유는 사실적 상황이지 법적 상황이다> . 툴리에 (C. Toullier, 1752~1835, 프랑스 법학자, 『민법론』으로 유명-옮긴이) 는 <소유는 권리, 즉 법적 능력이고 점유는 사실事實이다> 라고 말한다. 주택임차인, 차지농, 주식보유자, 용익권자 등은 점유자인 반면, 빌려주고 사물을 허락하는 주인, 용익권자의 사망에 의해서만 향유권을 되찾는 상속인은 소유자이다. 굳이 이런 식의 비유를 이용한다면, 연인은 점유자이고 남편은 소유자이다.

소유에 대한 이러한 이중의 정의 - 권한으로서의 소유와 점유로서의 소유 - 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이야기할 바를 이해하려면 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점유와 소유의 구별에서 두 종류의 권리가 나온다. 첫째, <물物 안에서 의 권리 (jus in re)> 이다. 이는 내가 획득한 소유를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든 관계없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내가 소유자가 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이를테면, 배우자들이 서로의 인신이 대해가지는 권리는 물 안에서 의 권리이며, 두 약혼자의 권리는 아직 물에 대한 권리에 불과하다. 첫 번째 경우에는 점유와 소유가 결합되어 있으나, 두 번째 경우에는 허유 虛有만을 포함한다. 노동자라는 자격으로 나는 자연과 근면이 가져다 준 부에 대한 점유권을 가진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로서의 나는 아무 것도 향유하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나는 물에 대한 권리를 근거로 물 안에서 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 안에서 의 권리와 물에 대한 권리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아주 방대한 범위에 걸쳐 모든 것을 포괄하는 중요한 두 사법적 범주, 즉 <점유권 반환 소송 possessoire> 과 <소유권 확인 소송 pétitoire> 사이의 유명한 구분의 토대이다. <소유권 확인 소송> 은 소유에 관련된 모든 것에 걸쳐 이루어지는 반면, <점유권 반환 소송> 은 점유에 관련된 것이다. 소유에 대한 고발장을 씌으로써 나는 사회 전체에 대해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격으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소유는 모두에게 분할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공 안전이라는 이유에서 소유는 모두를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 내가 이 소송에서 진다면 우리에게, 즉 여러분 프롤레타리아 모두와 나에게 목을 매다는 일밖에 남아 있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 국민들의 정의에 대해 요구할 것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송 법제 26 조의 험찬 문체가 말하듯이,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소송을 취하당한 청구인은 더 이상 점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내가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그때 우리는 소유가 우리에게서 갖아 간 재산에 대한 향유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점유권 반환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나는 우리가 이러한 극단에까지 이르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소송 법이 <점유권

노동을보상할수없을것이고, 노동자들은자신의생산물을되살수없을것이며, 우리는소유가야기한온갖곤경에다시빠져들것이다. 나는혈뱀은노동자에대해저질러진부당행위, 적대감, 치솟는야욕, 불타는증오심따위에대해서는말하지않겠다. 이모든것이다나름대로중요성을가지고있지만본론과는직접부합하지않으니말이다.

한편으로, 개개노동자의과업이짧은시간을요하고수월하며, 그것을성공리에해낼수단도평등하다면, 어떻게훌륭한생산자와시시한생산자가있을수있겠는가? 다른한편, 재능과능력의실질적동등성에의해서든사회적협동에의해서든기능이모두동등하다면, 어떻게그기능을수행하는자가자신의탁월한천재성을구실로그에결맞은임금을요구할수있겠는가?

그러면나는무엇을말하는가? 평등안에서임금은항상능력에비례한다는것이다. 경제학에서임금이란무엇인가? 그것은노동자가자신을재생산하는데드는소비로구성되는것이다. 따라서노동자가생산에임하는활동자체가그의소비를이루는것이며, 이소비는우리가요구하는바그의생산과정확히일치하는것이다. 천문학자가관측을생산하고, 시인이시를생산하고, 학자가경험을생산할때, 이들은관측도구를소비하고, 책을소비하며, 여행등등을소비한다. 그러므로사회가이소비를충당해준다면, 천문학자와시인과학자가자신에게결맞은어떤사례금을달리또요구한다는말인가? 그러므로결론을맺자. <각자의능력에따라각자의몫을, 각자의성취에따라각자의능력을> 이라는생시몽의격률은평등안에서, 아니평등안에서만완벽하게적용될수있다.

III. 소유가초래하는가장큰해악, 가장끔찍스럽고늘따라다니는해악은소유가존재하는한, 인구가아무리줄더라도늘필연적으로포화상태라는것이다. 어느시대에나사람들은인구과잉을불평했다. 어느시대에나소유는바로자신이유일한원인제공자라는사실을깨닫지못한채만연한빈곤을거복살스러워했다. 더욱이소유가빈곤을퇴치할요량으로궁리해낸여러수단들만큼기묘한것도없다. 흉폭한일과터무니없는일이우열을다투듯벌어졌다.

유아유기遺棄는고대에늘있어온관행이었다. 크고작은노예살육, 내란과전쟁역시여기에동원되었다. 소유권이강고하게자리잡은로마에서는이세가지수단이아주오랫동안효과적으로사용되어온결과, 제국말기에는주민들의씨가말라버릴정도였다. 야만족들이쳐들어왔을때, 이들은아무도찾아볼수없었다. 농촌은버려지고도시들은거리마다잡풀이무성했다.

중국에서는아주오랜옛날부터기아가빈민을일소하는역할을떠맡았다. 쌀이가난한이들의유일한호구책이었기때문에변란이일어나서수확이모자라면단며칠만에수만명씩굶어죽었다. 중국의연대기를기록한사관들은어떤황제가재위한어떤해에기근이일어나 2 만, 3 만, 5 만, 10

하지않는다. 따라서우리는모든전유의필수조건인평등에다시봉착하게된다. 요컨대사람들은보편적동의의즉평등에의해소유권을정당화한후에, 소유권에의해조건들의불평등을정당화하지않을수없게된다. 이순환논법에서결코벗어날수없으리라. 사실상사회계약을맺을때소유가평등을조건으로한다면, 이평등이더이상존재할수없을때계약은파기되고모든소유는강탈에불과할것이다. 따라서이른바모든사람의동의라는것에서얻을수있는것은아무것도없다.

제 3 절시효취득은결코소유를날을수없다.

소유권은지상에존재하는악의시초이며인류가탄생이후질질끌고다니는범죄와비참이라는이긴쇠사슬의첫고리이다. 시효취득이라고하는거짓말은정신에던져진불길한주술이며, 진리를향한인간의진보를저해하고오류의송배를조장하기위해양심에불어넣은죽음의말이다.

법전은시효취득을 <시간의경과에의해획득되고또면제되는수단>이라고정의한다. 이정의를관념및신념에적용함으로써우리는 <시효취득> 이라는말을그대상이무엇이건낚은미신들에결부된부단한편애 - 어느시대에나새로운빛을받아들이고현자를순교자로만드는이격렬하고피를부르는대립을낚는바로그편애 - 를표현하는데사용할수있다. 세상에나타나자마자온갖낚은편견들이공모한듯한기성의견들의거대한장벽에부딪히지않은원리, 발견, 고결한사상은하나도없다. 이성에어긋나는시효취득, 사실에어긋나는시효취득, 지금까지밝혀지지않은진리전체에어긋나는시효취득, 현상유지철학의개요화모든세계의보수론자들이상정한것이바로이것이다.

개신교가세상에나타났을때, 폭력과방탕과이기심을옹호하기위해시효취득이존재했다. 갈릴레이, 데카르트, 파스칼과그사도들이철학과과학들을혁신했을때, 아리스토텔레스의철학을옹호하기위해시효취득이존재했다. 89 년 (1789 년의프랑스대혁명-옮김) 우리의조상들이자유와평등을요구했을때, 압제와특권을옹호하기위해시효취득이존재했다. <소유자는항상존재해왔고또항상존재할것이다.> 사회적불평등을편드는박사님들은궁지에빠진이기심의최후의발현인이심원한격언에의탁해서반대파들의공세를막을수있을것으로생각하며, 관념들도재산처럼시효취득을가진다고믿어의심치않는다.

오늘날우리는과학의진보에의해계도되고, 과학의가장빛나는성공에이끌려우리자신의견해를돌아켜본다. 우리는, 수많은실험을거치면서가장심원한분석의도움을받아지금까지알려지지않은새로운원리와

법칙들을 찾아내는 자연의 관찰자들을 열정과 갈채로 맞이한다. 우리는 우리보다 유능한 이들이 아주 옛날에 살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들이 같은 현상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유추를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구실로, 어떤 사실이 나관념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한다. 그런데 정치와 철학에서는 왜 마찬가지로의 조심성을 보여주지 않는가? 모든 것이 다 말해졌다고, 즉 지성과 도덕의 사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밝혀졌다고 확언하려는 이 우스꽝스러운 집착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잠언은 왜 형이상학의 연구에만 적용되는가?

우리는 여전히 관찰과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가지고 철학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추론과 사실대신에 어디에서나 공상과 자의를 심판자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사기꾼과 철학자를, 현자와 험잡꾼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솔로몬에서 피타고라스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법칙이나 심리적 법칙을 파악하는 데 상상력이 너무나 많이 동원되었다. 온갖 체계가 다 제시되었다. 이 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말해졌다〉라는 말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 역시 진실이다. 정치(여기서 철학의 한 분야인 정치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보자)의 경우,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열정과 이해관계에 따라 관여하며 정신은 의지가 요구하는 대로 따른다. 아무런 과학도 없으며, 아무런 확실성의 단초도 없다. 이리하여 전면적인 무지는 전면적인 압제를 낳는다.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현장에 명기되어 있지만, 사상의 예종이 〈다수자의 우월성〉이라는 이름 아래 현장에 의해서 선포된다.

법전이 말하는 민사상의 시효취득에만 한정하기 위하여, 나는 소유자들이 내세우는 이 비공소권 非公訴權의 사유에 대한 논의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무나도 지루하고 허식적인 일이다. 시효취득에 의해서 멸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는 사물들에 관한 한 시효취득은 그 중 하나만이라도 빠질 경우 시효취득 자체가 무효화되는 일정한 조건들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예컨대, 소유자의 점유가 〈민사에 관한〉 것이고, 〈공적이며〉, 〈이의제기〉도 〈중단〉도 없었다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 점유가 〈정당한 자격〉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왜냐하면 점유가 내세우는 유일한 자격인 선점과 노동은 피고인 소유자에게와 마찬가지로 원고인 무산자에게도 증거능력을 갖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로 이 점유는 법률상의 오류에도 대를 두고 있으며 또 법률의 오류는 시효취득을 방해하기 때문에, 〈선의 bonne foi〉를 상실한다 [파울루스 (Paulus, 로마의 법학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안에 참여-옮긴이)의 의견에 따르면, 법 적용의 권에 관한 한, 법률상의 오류는 결코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Nunquam in usucapionibus juris error possessori prodest)]. 이 경우 법률상의 오류는 보유자가 용익권자의 자격으로 점유할 뿐인데도

차별을 좋아했으며 고위관직 없는 국가나 사령부 없는 군대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자유, 평등, 우애를 사랑했거나 아니면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옛 사회의 좋은 점과 나쁜 점들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서 이것으로 헌법을 구성했다. 경탄할 평등-페레라여! 수동적 복종에까지 이르는 자유, 언어의 통합에까지 이르는 우애, 재판과 단두대에서 의 평등, 이것이 그의 공화국의 이상이었다. 평가받지 못할 천재여. 금세기는 그들 받아들이지 못하나 다음 세기는 그의 양값음을 하리라.

들어라, 소유자여. 사실 능력의 불평등은 존재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승인되지도, 허용되지도, 가정되지도 않는다. 3,000 만명의 사람 드레 대해 뉴턴 같은 인물은 한 세기에 하나로 족하다. 심리학자는 이토록 멋진 천재성에 감탄하지만, 입법가는 기능의 희소성만을 본다. 그런데 기능의 희소성이 그 기능을 맡은 사람에게 남다른 특권을 주지는 않는바, 이는 한결같이 중요한 다음의 여러 이유들 때문이다.

(1) 조물주가 원래의 도한바에 따르면, 천재의 희소성이란 결코 탁월한 재능을 부여받은 인간 안에 사회가 무릎을 꿇게 하는 동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각자의 기능이 모두에게 널리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섭리의 수단일 뿐이다.

(2) 재능은 자연의 선물인 것이 상으로 자연의 창조물이다. 그것은 축적된 자본이며, 그것을 받은 자는 수입자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가 없다면 그리고 그 사회가 배편 교육과 든든한 도움이 없다면, 가장 훌륭한 천성도 그 영예를 빛내야 할 영역에서 조차 범상한 능력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한 인간의 지식이 방대하면 할수록, 그의 상상력이 탁월하면 할수록, 그의 재능이 풍부하면 할수록, 그를 교육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고, 그에 앞선 자들과 그가 닮고자 한 자들이 더욱 탁월하고 더욱 수가 많았을 것이며, 따라서 그가 사회에 대해 지는 부채는 더 큰 것이다. 농사꾼은 요람에서 태어나서 관에 들어갈 때까지 일일한다. 반면에 예술과 과학은 뒤늦게 그것도 드물게 만 열매를 맺는 법이며, 때로는 그 열매가 채익기도 전에 나무가 죽어버리기도 한다. 사회는 장래성을 믿고 재능을 길러냄으로써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다.

(3)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척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능의 불평등은 대등한 발전 조건 아래에서라면 재능의 특수성에 지나지 않는다.

(4) 급여의 불평등은 불로소득권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장 유리할 경우, 즉 모든 노동자가 최대치의 생산을 제공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생산물이 이들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몫이, 생산을 노동자의 수로 나눈 값과 같아야만 한다.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얼마가 남아서 더 높은 급여를 지불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노동자들 모두에게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말할 것인가? 그러나 노동자들의 소비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산과 대등하지 않을 때, 임금은 생산적

팔랑스테르경제학의영동함이너무두드러지다보니많은사람들이소유자에대한푸리에의온갖존경심에도불구하고그가소유의숨은적이나니었나오히려옳다. 이러한견해는몇가지그럴듯한이유에의해지될수도있다. 그러나나는이러한견해동의하지않는다. 이인물에게협잡꾼기질은너무많고성실성은너무적다. 나로서는푸리에의속내가달랐다기보다는차라리어디서나드러날정도로무지했다고믿고싶다. 그의제자들은어떠한가. 사람들이이들에대해어떤의견을가지려면, 우선이들 스스로가단호하게그리고심정적주저없이자신들이소유의보전을원하는지아닌지를밝혀야만하며, <각자의자본, 각자의노동, 각자의재능에따라각자의몫> 이라는이들의유명한격률이무엇을의미하는가를확실히밝혀야만한다.

II. 그러나반쯤개종한어떤소유자는말할것이다. 은행, 지대, 소작료, 집세, 온갖고리대를그리고마침내는소유를폐지함으로써생산물을각자의재능에맞게분배하는것이가능하겠느냐고말이다. 이것이바로생시몽의생각이었으며, 이것이바로푸리에의생각이었다. 사실이것은인간의의식에내재한욕구인바, 장관더러농민처럼살라고응당요구할수는없는일인것이다.

아, 미다스 (Midas, 그리스신화에나오는프리기아의왕. 들의정령판 Pan 이자신의피리소리를음악의신아폴론의수금소리와겨루었을때심판관토몰로스는아폴론의승리를선언했다. 미다스가이에이의를제기하자아폴론은미다스의귀를길게늘여서당나귀귀로만들어버렸다. 옮긴이) 여! 그대의귀는길기도하다! 뭐라고! 더나은대우란실상불로소득권과같은것이라는사실을그대는절대이해하지못하리라! 물론불평등과공동체적삶을한몫음으로보려했다든가불평등과소유를한몫음으로보려했다는것은생시몽이나푸리에또는그들의추종자들에게서흔히발견되는오류였다. 그러나그대, 수치에 밝고, 경제학에능하고, 몸소만든대수표를몽땅외우고다니는그대가어떻게이토록엄청난오류를범할수있는가? 경제학의관점에서볼때인간의생산물은그의개인적능력여부와는상관없이한인간의노동으로서의가치밖에없으며, 한인간의노동은마찬가지로한인간의소비로서의가치밖에없다는사실을그대는이제기억하지못하는가? 그대는내게 19 세기의시이예스 (Emmanuel Joseph Sieyès, 1748~1836, 프랑스의로마가톨릭성직자, 정치작가. 프랑스혁명의최고정치이론가중한사람이었으며프랑스영사관과제 1 프랑스제국에서도두드러진역할을했다-편집자) 라할만한가련한팽에로-페레라 (S. Pinheiro-Ferreira, 포르투갈의정치인, 법학자-옮긴이), 이위대한헌법의초안자를연상시킨다. 그는국민을 12 개의계급또는등급으로나누어각각 10 만프랑, 8 만프랑, 2 만 5,000 프랑, 1 만 5,000 프랑, 1 만프랑등의봉급을책정했으며, 가장낮은등급에는시민이받을수있는최저치봉급인 1,500 프랑과 1,000 프랑을책정했다. 팽에로-페레라는

소유자의자격으로점유하거나, 그누구도양도하거나매각할권리가없는물건을보유자가구입할경우에성립한다.

시효취득이소유를옹호하기위해원용될수없는또다른이유 (가장정교한법리학에서끌어낸이유) 는부동산의점유권이인류의가장저참했던시기에도결코완전히소멸되지않은보편적권리의일부를이룬다는사실, 그리고무산자로서는그들이전체의일원으로받아들여지기위해서는자신들이항상이권리의일부를행사해왔다는것을증명하기만하면된다는사실에서찾을수있다. 예컨대, 어떤물건을점유하고, 증여하고, 교환하고, 빌려주고, 임대하고, 매각하고, 변형하거나파손할보편적권리를지닌이는비록그가이모든방식으로자신의권리를표현하지않았다고할지라도빌려준다는단한가지행위만으로도이권리전체를보유하는것이다. 마찬가지로우리는, <재산의평등>, <권리의평등>, <자유>, <의지>, 법인격등은한가지동일한사물, 즉 <보존과발전의권리> 의여러가지표현에불과하다는점을알고있다. 달리말하면이는곧생존권인것이며, 이삶의권리에맞서서시효취득은당사자가죽은이후에만개시될수있는것이다.

마지막으로시효취득에필요한시간에대해말하자면, 소유권일반은 10 년, 20 년, 100 년, 1000 년, 10 만년에걸친점유로도취득될수없으며, 소유권을이해하고거기에이의를제기하는사람이단한명이라도남아있다면이권리는결코시효취득에의해서취득될수없으리라는사실을굳이지적할필요가없을것이다. 왜냐하면그것은법률의원리나이성의격률이아니라우연적이고우발적인사실과도같은것이기때문이다. 한사람의점유는다른사람의점유에맞서서시효취득을주장할수있다. 그러나점유자가자기자신에맞서서시효취득을주장할수는없듯이, 이성은항상스스로를정정하고고칠능력이있으며과거의잘못이미래까지를구속하지는않는것이다. 이성은영원하고항상동일하다. 그러나무지한이성의소산인소유제도는더잘계명된이성의해폐기될수있으며, 따라서소유는시효취득에의해서확립될수없다. 이모든것은아주확실하고또진실이기때문에, 시효취득의문제에관한한법해석의오류는이득이되지않는다는금언은바로이러한토대에근거한것이다.

그러나내가시효취득에대해서이이상더말하지않는다면, 나는나의방법에충실하지못한셈이며독자는나의협잡꾼기질과거짓말을비난할권리가있을것이다. 나는앞에서토지의전유專有는불법이며, 그렇지않다고가정하면그결과는단하나즉소유의평등이될것이라고논증했다. 그러고나서나는보편적동등의소유를지지하는어떤것도입증하지못하며, 설사무엇인가입증한다면그것은마찬가지로소유의평등이리라는것을보여주었다. 이제나에게는만일시효취득이인정될수있다면그것은역시소유의평등을전제로한다는사실을논증하는일이남아있다.

이러한논증은길지도어렵지도않다. 시효취득을받아들이는동기를 상상해보는것만으로충분하다.

뒤노드 (Dunod, 1678~1752, 프랑스의법률가, 역사가. 『시효론』을썼다-옮긴이) 는말한다. <시효취득은, 자신의뜻에반하여또는자신도모르는사이에부를빼앗기거나다른사람에게손해를끼치면서부를모으는일을금지하고자하는자연의형평성에어긋나는것처럼보일수있다. 그러나만약시효취득이없다면선의의재산취득자가오랫동안점유한다음에도그것을빼앗기는일이자주일어날것이다. 또정당한소유자로부터무엇이든취득한자나또는합법적인방법으로채무에서해방된자도자신의자격을잃고다시재산을빼앗기거나중속될수밖에없을것이다. 따라서일정한기간을정해서, 그기간이지난후에는점유자들을불안하게한다거나아주오랫동안방기해온권리등등을다시찾는일은공공의이익을위해허용하지않게된것이다. 이리하여, 민법은그것이시효취득을규정하는방식에따라서자연권을완성하고만민법을보충할따름이다. 시효취득이란개개의권리에반드시우선하는공공의이익에도대를둔것이므로 (bono publico usucapio introducta est), 법률이요구하는조건들을갖추고있는한호의적으로취급되어야만한다.>

툴리에는『민법론 Droit civil』에서다음과같이말한다. <소유의문제를너무오랫동안불확실한상태로방치해둔다면가정의평화와상거래의안전을해칠것이기때문에, 법률은일정한기간을설정하고, 그것이 지나면소유권회복의청구를받아들이기를거부하고점유를소유에합치시킴으로써점유의오랜특전을유지하게해주었다.>

카시오도루스 (F. M. A. Cassiodorus, 480~575, 로마말기의작가. 법률학자-옮긴이) 는이렇게말했다. <소유란개변의폭풍우와탐욕의분화구의한가운데에확고하게남아있는유일한항구이다 (Hic unus inter humanas procellas portus, quem si homines fervida voluntate praeterierint; in undosis semper jurgils errabunt)> .

이렇게, 이저자들에게따르면시효취득은공공질서의한수단이고, 어떤 경우에는원초적인취득방법의회복이며, 달리해결방안이없는분규들을종결해야할필요성에서그존재근거를찾을수있는, 민법상의허구이다. 왜냐하면그로티우스가말한것처럼, 시간은그자체로는아무런유효한효과도갖지못하기때문이다. 민사는시간안에서이루어지나, 어떤것도시간에의해서이루어지지않는다. 시효취득, 즉시간의경과에의해무엇인가취득할권리란, 따라서관례적으로수용되는법률의허구이다.

그러나모든소유가다필연적으로시효취득으로부터, 달리말해서라틴인들이말하는 <유스카피온 usucapion> , 즉지속적인점유로부터 시작되는것은아니다. 따라서나는우선다음과같이묻는다. 어떻게점유가시간의경과에의해소유로될수있는가? 당신이원하는만큼오랫동안점유를지속하라. 몇해든몇세기든썩아가라. 그러나당신은결코시간지속

다섯번째명제에대한보론

I. 몇몇개척가들, 심지어어떤학파에도속하지않으며, 가장수가많고가장가난한계급의운명을개선하고자몰두하는대다수저술가들역시오늘날더나은노동의조직에기대를걸고있다. 특히푸리에의사도들은우리에게줄곧 <팔랑스테르로! Au phalanstère!> 라고외치면서그와동시에다른파벌들의어리석음과우스꽝스러움에대해분노를터트리고있다. 이들은 <5 와 4 를더하면 9 가되고, 2 를빼면 9 가남는다> 는계산을고안해낸, 여섯명남짓의유래없는천재들로서, 이놀라운산술을믿으려하지않는프랑스의아둔함을개탄한다.¹

사실푸리에주의자들은한편으로그들이만들어낸 <각자의자본, 각자의노동, 각자의재능에따라각자의몫> 이라는공식에서알수있듯이소유와불로수득권의옹호자임을자임하고있으며, 다른한편으로노동자가사회의모든부를향유하기를, 간단히말하자면자기가생산한생산물을완전히자기가향유하기를바라고있다. 이것은마치노동자에게다음과같이말하는것에다름아니지않을까? : 일하라, 너는하루에 3 프랑을받으리라. 너는 55 수로살것이며나머지는소유자에게줄것이다. 그러면너는 3 프랑을쓴셈이다.

만일이말이샤를푸리에의체계를가장정확히요약한것이아니라면, 나는팔랑스테르주의자들의어리석음을나의피로써보증할것이다.

만일소유가유지된다면, 그리고노동이지출을절대로메울수없다면, 산업과농업을개혁하는일이, 한마디로말해서노동을한다는것이무슨소용이있겠는가? 소유를폐지하지않는다면, 노동의조직은또하나의기만일뿐이다. 생산을 4 배로늘린다해도, 이는불가능한일은아니라고생각하지만쓸데없는것에불과하다. 생산물의증가분은만일그것이소비되지않는다면아무가치도없는것이며소유자는그것을이자로서받아들이기를거부할것이니말이다. 설령생산물의증가분이소비된다고해도소유에수반되는온갖애로사항들이다시나타날것이다. 정념情念의인력引力이라는이론이여기서는거짓이라는사실, 그리고나쁜정념, 즉소유의 <정념> 을조화시키려했다는것은푸리에가무엇이라말하든간에그가자기마차의바퀴에빗장을질러놓은셈이라는사실은인정해야만한다.

¹ 푸리에에는정수整數를분수分數로곱해야만했기때문에피승수 (곱해지는수) 보다 훨씬큰값을찾는데결코실패하지않았다고말할수있다. 그는조화로운상태에서는수온이영도보다높은온도에서굴을것이라고확실했다. 이것은마치조화론자들이불붙는얼음을만들었다고말하는것과마찬가지이다. 나는학식이깊은어떤푸리에주의자에게이러한물리학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고물은적이있다. <나는잘모른다. 하지만나는믿는다> 고그는내게대답했다. 그런데바로이사람은화체설 présence réelle(로마가톨릭에서성체성사중빵과포도주가예수의몸과피로변한다고하는믿음-편집자주) 을믿지않았다.

양과그이자의법정이율에대해문의하라. 벌어진사건들이란일련의파산에다름아닐것이며그파산의건수와강도는자본의활동력자체에비례할것이니말이다.

1893년에기록된파산은파리한지역에서만 1,064 건이었다. 이비율은 1840 년초몇달동안줄곧유지되었으며내가이글을쓸무렵에도위기는 여전히끝나지않은듯이보인다. 게다가스스로문을닫은상사의수가파산이선고된상사의수보다훨씬많은것으로확인된다. 이대홍수에의해우리는회오리바람의파괴력을확인해볼수있는것이다.

사회의파탄은때로는은밀하고상시적일수있으며, 때로는간헐적이고격렬할수있다. 이것은소유가움직이는여러가지양태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소유가분할되어있고소규모산업이많은나라에서는각자의권리와주장은상대방의권리와주장에의해균형을이루게되며따라서소유의침탈력은서로상쇄된다. 여기에서는사실상소유가존재하지않는다. 그도그렇것이불로수득권이거의행사되지않기때문이다. 삶의안정성에관한노동자들의처지는그들사이에절대적인평등이존재하는것과거의마찬가지이다. 그들은자유롭고완벽한결사체가주는모든이점을박탈당하고있지만, 그렇다고해서그들의생존이위협받는것은아니다. 소유권, 즉누구도그근원을알지못하는이불행에의한몇몇개별적인희생자들을제외한다면, 사회는이러한유형의평등속에평온을유지하는듯이보인다. 그러나눈여겨보라. 사회는칼날위에서겨우균형을잡고있는데불과하다. 아주작은충격으로도사회는쓰러지고죽음에이르게될것이다.

대개소유의회오리바람은국지화되어있다. 한편으로지대는일정한수준에서머물며, 다른한편으로경쟁및과잉생산의효과에의해공산품가격이더이상오르지않는다. 따라서농민의처지는크게달라지지않으며계절에의해좌우될뿐이다. 따라서소유의탐욕이주로미치는것은공업에서이다. 통상적으로문제가되는것은 <상업공황> 이지 <농업공황> 이아니다. 왜냐하면소작농은불로수득권에의해조금씩먹혀들어가는데반해서, 제조업자는단숨에먹혀버리기때문이다. 여기서공장의휴업, 재산의파탄, 노동자계급의축출이생기며, 이들중일부는거리에서, 병원에서, 감옥에서, 도형장에서죽어간다.

이명제를요약해보자.

소유자는그가노동자에게지불한것보다더비싼값으로생산물을노동자에게판다. 따라서소유는불가능하다.

에의해용익권자를소유자로변형시킬수는없다. 시간지속은그자체로는아무것도창출하지도, 바꾸지도, 변형시키지도못한다. 오랫동안자기권리를누려온선의의점유자는갑자기나타난불청객에게모든것을박탈당하지않을권리를민법에서인정받고있다. 이렇게함으로써민법은이미준수되고있는권리를확인하는것일뿐이며, 이런식으로적용된시효취득은단순히 20 년, 30 년, 또는 100 년전에시작도니점유가선점자에게유지된다는것을의미할뿐이다. 그러나시간의경과가점유자를소유자로바꾼다고법률이선언한다면, 이는권리가그것을낳은원인이없이창출될수있다고가정하는것이다. 즉법률은아무런동기도없이주체의자격을바꾸고, 논쟁점이아닌문제에대해규정을내리고, 자신의권한의범위를넘어서게되는것이다. 공공질서와시민의안전은점유물의보장만을요구할뿐이다. 그런데법률은왜소유권을창출했는가? 시효취득이란미래에대한보험과같은것이다. 그런데법률은왜시효취득을특권의원리로만들었는가?

이렇게하여, 시효취득의기원은소유자체의기원과동일하다. 그리고소유가평등의공식적인조건아래에서만정당화될수있었던듯이, 시효취득역시이귀중한평등을보존해야할필요가취한수많은형식들중의하나이다. 이것은결코허된유추이거나맹목적으로취한결론이아니다. 그증거는모든법전에명기되어있다.

그런데모든국민들이정의와보존의본능에의해서시효취득의유용성과필요성을인정했다면, 그리고그렇게함으로써그들의의도가점유자의이익을지켜주고자하는것이였다면, 그들은, 통상이나전쟁에의해또는포로신세서가죽이나조국으로부터멀리떨어져있어어떤점유행위도행사할수없게된부재不在시민에대해서아무것도할수없었는가? 그렇지않다. 시효취득이법률에도입된바로그시기에사람들은소유가의향만으로(undo animo) 보존된다고인정했다. 그런데, 만일시효취득의의향만으로도보존되고소유자의행위에의해서만상실되는것이라면, 시효취득의유용성은도대체무엇이란말인가? 어떻게법률은, 의향만으로도무엇인가보존하고있는소유자가자신이시효취득을적용하도록허용한것을포기할의사를가졌다고추정하는것인가? 얼마의시간적경과가이러한억측을허용할수있다는말인가? 어떤권리로법률은소유자의재산을박탈함으로써그의부재를별할수있다는말인가? 그렇다면무엇인가! 우리는조금전에시효취득과소유는동일하다는것을발견했는데, 이제보니그것들은서로상대방을파괴하고있지않은가.

이러한난점을느낀그로티우스는아주독특한방식으로여기에답을하고있는데, 이는인용해볼가치가있다. <하찮은일로점유자의죄를영구화하려는, 전혀그리스도교인답지않은영혼을지닌자가어디에있겠는가? 그러나이는점유자가자신의권리를포기하지않는한, 틀림없이일어날일이다 (Bene sperandum de hominibus, ac

propterea non putandum eos hoc esse animo ut, rei caduca causa, hominem alterum velint in perpetuo peccato versari, quod evitari soepe non poterit sine tali derelictione).> 오, 하느님! 내가바로그자이다. 설령 100 만명의소유자들이심판대에서타죽는다고할지라도, 나는그들이이세상의부가운데내게서빼앗아간몫에대해그들의양심을고발한다. 그로티우스는이유력한사유事由에다른하나를덧붙인다. 그것은소송을걸어서국민들의평화를교란시키고내전의불을지피는것보다는논란이되는권리를포기하는것이더안전하다는생각이다. 보상을해주기만한다면, 나는이러한논리를받아들이겠다. 그러나이러한보상이주어지지않는다면, 부자들의후식과안전따위가무산자인나에게무슨소용이있겠는가? 나는〈공공질서〉를소유자의안전과마찬가지로별로개의치않는다. 나는노동하면서살고자하나, 그렇지못할경우, 싸우면서죽을것이다.

그이론이아무리섬세하다할지라도, 시효취득은소유와모순된다. 아니차라리시효취득과소유는하나의원리에서나온두가지형태, 그러나서로상대방을정정하는두가지형태이다. 이두가지를화해시켰다고자부한것은고대와현대법률학의가장큰오류중하나이다. 사실우리가소유에서각자에게토지의몫과노동의권리를보장하려는소망만을보고, 허유(虛有, nue-propriété)와점유의구별에서부재자나고아들및자기의권리도알지도지키지도못하는모든이들에게열려있는안식처만을본다면, 시효취득이라는것에서는부당한요구나침해를물리치거나점유자의이주에의해초래된분규를끝내는수단만을보게된다. 그러나실사그렇다고할지라도, 인류의정의의이다양한형태속에서우리는사회적분능을구출하러나선이성의자발적인노력을인정한다. 우리는모든권리에대한이러한유보장치속에서평등의감정과평등화를향한부단한추세를본다. 그리고깊이성찰하고그진의를살펴봄으로써우리는우리의학설에대한확증을얻을수있다. 조건의평등과보편적협동이더빨리실현되지않은것은입법자들의기지와재판관들의거짓지식이일정기간동안인민의양식良識을가로막는방해물구실을했고, 한줄기진리의빛이원시사회들을비추었는데도족장들의최초의사색이무지몽매만을낳았기때문이다.

최초의계약이이루어진후에, 최초의욕구의표현이었던법률과국가조직의희미한운곽이마련된후에, 법률가들의사명은입법에서잘못된것을고치고, 결함이있는것을보충하며, 모순되어보이는것을최선의규정에의해일치시키는일이었다. 그러나그렇게하는대신그들은법률의자구적의미에매달리고주석자나고전주해자들의판에박은역할에만족하였다. 그들은틀림없이허약하고허구에가까운이성에서나온영감을영원불변의진리인양받아들였다. 여론에질질끌려다니고경전의송배에현혹된나머지, 그들은언제어디서나보편적으로수용되는것(quod ab omnibus, quod ubique, quod semper)은의심할나위가없는진실

이장례식화환을장식하는데쓰일뿐이다. 노동자는일하면서자신의무덤을파고있다.

공장이멈출때도자본은이자가붙는다. 따라서생산업자는당연히생산경비를줄임으로써생산을유지하려한다. 여기에서임금의인하, 기계의도입, 여성또는아동노동에의한남성노동의대체, 숙련도의저하, 불량제품등이생긴다. 생산은계속된다. 왜냐하면생산비의저하가관로의확대를가능하게하기때문이다. 그러나언제까지나생산이계속될수는없다. 왜냐하면원가의하락이생산의양과속도에토대를두는것인만큼, 생산능력이그어느때보다도소비를초과하게되기때문이다. 소유의원리가끔찍스러운결과를낳는것은바로이때, 즉생산이노동자들앞에멈추어서고노동자들이임금으로그날의생계를겨우때우기도힘겨울때이다. 이때에는저축도검약도있을수없고하루라도더살게해줄조금의자본축적도있을수없다. 오늘공장문이닫히고, 내일광장에는굶주림이넘친다. 모레는병원에서죽거나아니면감옥에서끼니를때울것이다.

새로운사건들이일어나서이끔찍한상황을한층더복잡하게만든다. 상품이넘치고가격이너무떨어진결과, 기업가는곧자기가빌린자본의이자도갚지못하게된다. 그러면겉먹은주주들은서둘러자금을회수하고생산은정지되며노동은중단된다. 그러고나서사람들은자본이산업에서빠져나가증권거래소에물리는것을보고깜짝놀란다. 나는일전에블랑키(A. Blanqui, 1798~1854, 프랑스의경제학자-유킨이) 씨가자본가들의무지와어리석음을개탄하는것을본적이있다. 이자본이동의원인은실로단순하다. 그러나바로그이유때문에어떤경제학자도그것을알아차릴수없었거나, 좀더정확히말하면그에대한언급을회피해야만했다. 그원인이란바로〈경쟁〉이라는것이다.

내가경쟁이라고부르는것은동종의두산업사이의대립뿐만아니라모든산업들이서로상대방을이기고자별이는동시다발적인분투를가리킨다. 오늘날이분투는너무나엄청나서상품가격이생산비나판매비를건지도못할정도이다. 따라서노동자들의임금을제하고나면, 자본가에게는이자는커녕아무것도남지않게된다.

따라서상업및산업침체의첫번째원인은자본의이자인데, 이이자라는것은아주옛날에그것이돈을빌려쓴대가를지불하는데쓰일때마다그리대라는이름으로이구동성으로비난을받았으나, 이제지대, 소작료, 이익따위의명칭으로사용되자사람들은굳이비난하려들지않는다. 마치빌려쓴물건의종류가사실상〈도둑질〉에불과한대부의대가를응당정당화할수도있다는듯이말이다.

자본가가얻는불로수득이란바로이런것이며, 상업공황의빈도와강도가바로이런것이라. 첫번째것이주어진다면우리는언제나다른두가지를알수있으며그역도마찬가지이다. 당신은사회를규율하는요인이무엇인지알고자하는가? 그러면가용자본의양, 즉이자를가져오는자본의

노동자대중은그들이잔피복도, 그들이만든가구도, 그들이버린쇠붙이도, 그들이다듬은보석도, 그들이새긴판화도살수없다. 그들은자기가 씨를뿌린밀도, 자기가재배한포도로담근포도주도, 자기가기른가축의 고기도손에넣을수없다. 그들에게는자기가지은집에살권리도, 자기가 소재를제공한연극을구경할권리도, 자기육체에필요한휴식을즐길권리도허용되지않는다. 왜그런가? 이모든것을즐기기위해서는요구하는값을치르고그것을사야만하는데, 불로수득권이이를허용하지않기때문이다. 노동자들은굶주린채넋을잃고쳐다보는휘황찬란한상점들의간판위에서굶은글씨로새겨진문구를읽는다. <이것은그대가만든것이나그대가가지지못하리라 (Sic vos non vobis!)>

노동자 1,000 명을고용하고이들각자에게서하루당 1 수 sou 씩버는공장주는노동자 1,000 명을도탄에빠트리려고준비하는자이다. 이익을보는자는누구나기아계약을맺었다. 그런데인민은소유가자신을굶주리게만드는수단이되는그노동마저도언지못한다. 왜그런가? 임금이불충분한까닭에노동자들은노동을독점하지않을수없으며굶주림으로죽기전에경쟁으로인해서로가서로죽이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진리를들추어내자면끝이없다.

만일노동자가자신의봉급으로자신의생산품을살수없다면, 생산품은생산자를위해만들어진것이아닌셈이다. 그러면누구를위한것인가? 가장돈많은소비자를위해서, 달리말하자면사회의일부집단을위해서일뿐이다. 그러나사회전체가일을한다면, 사회는사회전체를위해생산하는것이다. 따라서사회의일부만이소비한다면, 조만간사회의일부가일을쉬어야만한다. 그런데일을신다는것은노동자에게나소유자에게나죽는일이다. 여러분은결코여기에서벗어날수없으리라.

상상할수있는가장개탄할광경은생산자들이자신들의편견탓에깨닫지못한이수학적필연성에, 이수의힘에저항하여싸우고있는장면이다.

인쇄공 10 만명이 3,400 만명에게충분히읽을거리를제공할수있다면, 그리고이들중 1/3 정도만이그책값을감당할수있다면, 이 10 만의노동자는서점에서팔릴수있는양보다 3 배나더생산하게되리라는것은명백하다. 노동자의생산이소비의필요를초과하지않기위해서는노동자가 3 일중이틀은일을쉬든지아니면매주, 매달또는매 4 분기마다 1/3 씩서로교대해야만한다. 즉그들생애의 2/3 동안살지않아야한다는말이다. 그러나산업이란소유자의영향력에의해서, 이런식의규칙을따르지않기 마련이다. 생산물의양이많으면많을수록, 생산공정이빠르면빠를수록, 책한권당원가가낮아지기때문에, 적은시간안에더많이생산하고자하는것이산업의본질이다. 매진될징조가보이는즉시공장은일꾼들로꽂차고모두일에달라붙는다. 이때거래는번창하며지배하는자도지배받는자도서로즐거워한다. 그러나사람들이일을하면할수록그만큼휴업을준비하는셈이다. 많이웃는만큼많이울게되리라. 소유제도아래서는근면의꽃

이라는원리를항상들고나온다. 마치일반적이기는하지만자생적으로나타난신앙은일반적인가상假想이상의어떤것을증명한다고신학자들이주장하듯이말이다. 그러나우리는속지않는다. 모든사람의의견이라는것은어떤사실에대한인식, 어떤법률에대한막연한감정을입증하는데는소용이될수있으나, 사실그자체나법률그자체에대해서는우리에게아무것도가르쳐주지못한다. 인류의동의라는것은자연의지침일뿐, 키케로가말하듯이자연의법칙은아닌것이다. 진리는가상假想의밑에숨어있다. 신앙은그것을믿을수있을뿐이며, 오직성찰만이그것을인식할수있다. 물리현상이나천재의창작물들에관련된모든것에서인간정신의진보란바로이와같은것이다. 우리의의식과우리의행위가어찌이와다르겠는가?

제 4 절노동에대하여. 노동은그자체로는자연의사물들에대하여어떠한전유능력도가질수없다.

우리는정치경제학과법학자체의금언들에의해서, 달리말하자면소유가한층그럴싸하게반대의근거로내세울수있는모든논거들로써아래의사실들을논증할것이다.

1. 노동은그자체로는자연물들에대하여어떠한전유능력도갖지못한다.

2. 그러나노동의이러한능력을인정해줌으로써사람들은노동의유형, 생산물의희소성, 생산능력의불균등여부에관계없이소유의평등으로인도된다.

3. 정의의질서안에서는노동은소유를 <파괴한다> .

우리에게반박하는이들을본떠서그리고우리의통행로에가시나덤불을남기지않기위해서, 가능한한가장높은차원에서문제를제기하기로하자.

샤를콩트씨는『소유론』에서 <국민 nation 으로서의프랑스는자신의고유한영토를가진다> 라고말한다.

프랑스는단한명의사람과마찬가지로자신이경작하는땅을점유하나, 그땅의소유자는아니다. 이는개인들사이에서그러한것처럼국민들사이에서도마찬가지이다. 국민들은용익권자요, 노동하는자이므로이들에게땅에대한지배권을부여하는것은언어도단이다. 사용할권리라든가남용할권리가개인에게속하지않은것처럼국민에게도속하지않는다. 그리하여언젠가땅을남용하는일을막기위한전쟁이, 곧성전聖戰이되는날이올것이다.

이리하여, 소유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규명하려고 국민이 소유자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콩트씨는 이른바 〈부당전제不當前提〉의 궤변에 빠지고만다. 이 순간부터 그의 모든 논거는 붕괴된다.

만일 어떤 독자가 땅에 대한 국민의 소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국민적 소유라는 이 허구의 권리로부터 시작을 막론하고 종주권의 주장, 공납, 왕의 권한, 부역, 인신과 금전의 징발, 상품의 조달 따위가 생기고 급기야는 납세 거부, 봉기, 전쟁, 인구 감소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할 것이다.

〈이 땅의 한 가운데에 개인적 소유로 전환되지 않은 아주 넓은 토지가 존재한다. 대부분 삼림인 이 토지는 국민 대중에게 속하며, 여기서 수입을 얻는 정부는 그 수입을 모두의 이익에 맞게 사용하고 또 사용해야만 한다.〉

〈사용해야만 한다〉는 말은 제대로 된 표현이다. 허언虛言을 피할 수 있으니 말이다.

〈토지가 매각되어야 한다.〉

왜 매각되어야 하는가? 누가 그것을 팔 권리를 가졌는가? 설령 국민이 그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오늘의 세대가 내일의 세대의 몫을 앗아갈 수 있는가? 인민은 용익권자의 자격으로 점유하며, 정부는 지배하고, 감독하고, 보호하고, 분배의 정의를 시행한다. 따라서 국민이 토지를 양도한다면, 이는 단지 그 사용만을 양도한 것이다. 국민은 그 어떤 것이라도 팔거나 양도할 권리가 없다. 소유자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국민이 소유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한 사업가가 그 땅의 일부를, 예컨대 거대한 늪지를 사려고 한다. 이 경우 부당취득 usurpation 이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공중은 자기 정부의 손에 의해서 그 정확한 값을 돌려받고 있기 때문이며, 매각 후에도 매각 전과 마찬가지로 부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롱조의 말이다. 뭐라고! 씹씹이가 헤프고 경솔하고 서툴기 짝이 없는 한 장관이, 내가 이익을 제기할 수도 없는 가운데 (국가의 피보호자인 나는 국무회의에서 발언권도 심의권도 없다), 국가의 재산을 〈팔기〉 때문에, 이 매각이 건전하고 합법적이라고! 인민의 후견자들은 인민의 자산을 탕진하고 인민은 호소할 데도 없다니! 당신은, 내가 정부의 손에 의해서 내 몫의 판매대금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선 나는 팔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팔기를 원했을 때는 팔 수 없었으며 또 그럴 권리도 없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는 이러한 매각 행위가 내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도 알지 못했다. 나의 후견자들은 군인에게 군복을 입히고, 낡은 성벽을 수리하고, 자랑이나 하듯 비싸고 보잘 것 없는 기념물들을 세웠다. 다음에 그들은 불꽃놀이를 벌이고 보물 따기 기동을 세웠다. 내가 잃은 것에 비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사들인 자는 경계말뚝을 박고, 울타리를 치고, 소리친다: 이것은 내 것이다. 각자에게 자기 몫을, 각자가 자기 몫을. 이리하여, 이제 소유자나 그 친구가 아니라면 누구도 발을 들여놓을 권리가 없는 땅덩어리, 소유자나 그

척에 어긋나고 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데도 말이다. 한 기업가가 원료를 10 만 프랑에서 사들이고 임금과 품삯으로 5 만 프랑을 지불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생산물에서 20 만 프랑을 얻으려 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원료와 노동자들의 노동에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료의 공급자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합치더라도 자신들이 기업가를 위해 생산한 것을 되살 수 없다면, 이들은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는가? 문제를 파고들어보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해 하루당 평균 3 프랑을 받는다면, 노동자를 고용한 부르주아가 자신에게 돌아갈 보수 (비록 그것이 자신의 자본에 대한 이자라 할지라도) 에 더하여 무엇인가 더 얻고자 한다면, 그는 상품의 형태로 노동자의 일당을 되팔아서 3 프랑 이상을 빼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노동자는 자신이 고용주에게 생산해 준 것을 되살 수 없게 된다. 사정은 어떤 직업에서나 마찬가지이다. 재단공, 모자공, 가구공, 대장장이, 무두장이, 석공, 보석세공인, 인쇄공, 점원 등등, 심지어 자영농이나 포도재배자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자신의 생산물을 되살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저런 형태로 이득을 얻고 있는 고용주를 위해 생산하면서도 이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하여 그 노동으로 얻은 것보다 더 많이 지불해야 하니 말이다.

프랑스에는 2,000 만명의 노동자가 과학, 예술, 산업 등 온갖 분야에 흩어져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온갖 물건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의 일당 총액이 연간 200 억 프랑에 달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소유권 때문에 그리고 고무수한 불로수득, 사례금, 십일조, 이자, 뇌물, 이윤, 소작료, 집세, 지대 그리고 천차만별의 이익금 때문에, 생산물은 소유자와 고용주들에 의해 250 억 프랑으로 평가된다고 하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기 위해서 바로 이 생산물들을 되사지 않을 수 없는 노동자들은 그들이 4 로 생산한 것을 5 를 주고 되사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닷새 중에 하루를 굶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계산이 잘못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경제학자가 프랑스에 있다면, 나는 나의 잘못을 지적해 달라고 간청하는 바이다. 그러면 내가 오해해서 그리고 악의적으로 소유에 대해 패부는 모든 공격을 취소할 것을 약속한다.

이제 이 이익의 결과들을 살펴보자.

만일 노동자의 임금이 어떤 직업에서나 동일하다면, 소유자의 선취에 따른 결손도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와 동시에 악의 근원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미 오래 전부터 잘 알려지고 또 억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부의 임금에서 장관의 임금에 이르기까지 임금 사이에도 재산에서와 마찬가지로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강자의 약탈은 파문을 이루듯 번져서 사회계서제에서 가장 아래 자리잡은 노동자일수록 더욱 큰 고통을 느낄 것이며, 인민의 최하층계급은 말 그대로 헐벗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산채로 먹힐 것이다.

이될것이라고답할것이다. 그러나여기서중요한것은관례적으로서로결합되어있는노동자개인의권리들을균형잡는문제가아니다. 중요한것은서로결합되어있든아니든우리의세노동자가의당그렇게하지않을수없으며원한건원하지않건현실적필요성이나수학적필연성이이들을서로결합시킨다는사실을입증하는일이다.

구두를만드는데는세가지공정이필요하다. 즉가죽을사육하는일, 가죽을마련하는일, 재단및바느질이요구된다. 가죽의가치는농부의축사에서나올때 1 이라면, 무두장이의작업장에서나올때는 2 가되고, 제화공의가게에서나올때는 3 이된다. 각노동자가일정한정도의효용을생산했다. 결국생산된효용을모두합하면이물건의가치가나온다. 따라서각생산자는우선자신의노동을, 다음에는다른생산자들의노동을지불해야만한다. 그러므로 10 개의가죽구두를얻기위해서는, 농부는 30 개의생가죽을주어야만할것이며, 무두장이는 20 개의무두질한가죽을주어야할것이다. 왜냐하면 10 개의가죽구두는연속된무두정을거친만큼생가죽 30 개의가치가나가기때문이고, 마찬가지로 20 개의무두질한가죽은무두질공정을거친만큼생가죽 30 개의가치가나가기때문이다. 그러나제화공이자기의상품 10 개에대해서농부에게 33 개, 무두장이에게 22 개를요구한다면교환은성립할수없을것이다. 왜냐하면그럴경우농부와무두장이는제화공의노동에대해 10 을지불한후, 그들자신이 10 을주고받았을 11 을주고되사지않으면안되기때문이다. 이것은불가능한일이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이것은제조업자가무언가이익을남길때마다늘일어나는일이다. 이이익이지대이든소작료든이자이든이윤이든말이다. 우리가지금이야기하는작은사회안에서만일제화공이공구를마련하고가죽재료를사들인후그리하여자금이회수될때까지살아가기위해서이자로돈을빌린다면, 그는그이자를갚기위해서농부나무두장이에게서이익을올리지않으면안된다는것이명백하다. 그러나이이익이라는것은사기를벌이지않는한불가능하기때문에, 이자는불쌍한제화공의부담이될것이고결국그를파산으로몰고갈것이다.

나는터무니없이단순화된어떤가상의경우를예로들었다. 세가지기능만으로축소된인간사회란있을수없다. 가장덜문명화된사회라도이미수많은산업을전제로하고있다. 오늘날산업적기능 (나는산업적기능이라는말로모든유용한기능을지칭한다) 의수는아마도 1,000 개이상일것이다. 그러나기능인의수가몇명이든간에경제법칙은항상동일하다. 요컨대, <생산자가살기위해서는그의임금이그의생산물을되살수있어야만한다> 는것이다.

경제학자들은이른바그들이주창하는과학의근본원리를부정할수없다. 그러면그들은왜그토록고집스럽게재산을옹호하고, 임금의불평등과고리대의정당성과이윤의정당함을옹호하는가? 이모든것이경제법

중복들을제외하고는누구에게도이득이되지않는땅덩어리가생긴다. 이러한매각행위가되풀이된다면, 인민은더이상설자리도, 누울자리도, 수확을거둘자리도찾지못할것이다. 인민은소유자의대문앞에서, 달리말해자신이물려받은유산이었던이소유의벼랑에서쫓겨죽을것이다. 그리고소유자는인민이죽는것을눈앞에보면서말할것이다: 이리하여게으름뱅이와겁쟁이들이죽었도다!

소유자의부당취득을당연하게받아들이도록하기위해서콩트씨는매각할때의토지의가치를낮추는척했다.

<이러한부당취득의규모를지나치게과장하지않도록주의하자. 부당취득이란것은선점된토지가먹여살리는사람의수와이들에게제공되는생계수단들에의해평가되어야한다. 예컨대, 오늘날 1,000 프랑의값어치를지닌토지면적이부당취득될당시에 5 상탐에불과했다면실질적으로는 5 상탐만큼만횡령당한셈이다. 4 제곱킬로미터의땅한조각은야만인한명을겨우먹여살리기에도비좁았을것이다. 그러나그땅은오늘날 1,000 명에게생계수단을확보해주고있다. 1000 분의 999 가점유자의정당한소유이고, 1000 분의 1 만큼의가치만이부당취득된것이다.>

한농부가, 자신의빚 300 프랑을확인하는채무증서를찢어버렸다고신부앞에서참회했다. 고해신부는말했다: 300 프랑을갚아야만하오. 그러자농부가대답했다: 아닙니다, 나는종이값으로 2 리아드 liard 를갚겠소.

그렇다. 콩트씨의추론은바로이농부의솔직함과흡사하다. 땅은단지총액으로서의값어치만을갖는것이아니다. 그것은또한미래를향한잠재적인값어치를갖는다. 그리고그값어치는그땅을사용하고값지게만드는우리의능력여하에달려있다. 환어음, 약속어음, 연금증서를찢어버려라. 그러면종이값으로는당신은거의잃은것이없다. 그러나당신은이종이와더불어당신의자격을파괴하고, 자격을잃음으로써당신의재산을파괴한것이된다. 토지를파기하라, 아니당신의경우에대한가지로말하자면, 토지를매각하라. 그러면당신은한해, 두해또는여러해의수확을양도하는것일뿐만아니라당신과당신의자손들, 당신의자손의자손들이거둘수있을모든생산물을없애버리는셈이된다.

소유의사도이자노동의찬미자인콩트씨가정부측의토지양도를가정할때, 우리는그가어떤동기도의도도없이그러한가정을내세우고있다고믿어서는안된다. 그로서는이러한가정이필요했다. 그는선점의이론을배척했기때문에, 게다가노동은선점에대한사전허가없이권리를구성할수없다는사실을잘알고있었기때문에, 이러한허가를정부의권위에결부하지않을수없었던것이다. 그러나이는소유자인민주권의원리를, 아니달리말하자면보편적동의의원리를토대로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우리가이미이편견에대해논의했듯이말이다.

소유가노동의딸이라고말하고나서뒤이어노동에그실행수단으로서의가치를인정해주는것은, 내생각이틀리지않다면, 일종의악순환을빚는일이다. 온갖모순들이모습을드러낼것이다.

〈일정한넓이의토지는한사람이하루에소비할만큼의식량을생산할수있을뿐이다. 만약점유자가자신의노동에의해이들분의식량을생산할수있는수단을발견한다면, 그는토지의가치를두배로만든것이다. 이새로운가치는그의작품이며그의창조물이다. 그것은누구에게도빼앗기지않는그의소유이다.〉

나는, 점유자가두배의수확으로자신의노고와근면을보상받는다는것을, 그러나토지에대한어떤권리도얻지못한다는것을주장한다. 일한자가노동의결실을자기것으로한다는점에나는동의한다. 그러나나는생산물의소유가원료의소유를가져온다는점은이해할수가없다. 어부가같은해안에서자기 동료들보다더많은고기를잡을줄안다고해서, 그의수완을이유로, 자기가고기잡이하는해역의소유자가될수있겠는가? 사냥꾼의수완을한지역의사냥감에대한소유권자격으로간주할수있겠는가? 유사성은완벽하다. 근면한농사꾼은풍부하고질좋은수확으로자신의근면을보상받는다. 만약그가땅을개량했을경우, 그는점유자로서의우선권을갖는다. 그러나결코, 어떤경우에라도, 그는경작자로서의자신의남다른수완을마치자신이경작하는땅의소유권에대한자격인양제시할수는없는일이다.

점유를소유로전환시키기위해서는노동이아닌다른어떤것이필요하며, 그것이없으면인간은노동을그만두자마자소유자의자격을잃게될것이다. 그런데소유를구성하는것은, 법률에따르면, 아무도이의를달수없는아주오래전부터의점유, 즉시효취득이다. 노동은선점이표현되는물질적행위이자눈에드러나는표지일따름이다. 따라서농사짓는이가노동과생산을그만둔후에도소유자로계속남는다면, 처음에는허용되고다음에는관용된그의점유가마침내양도할수없는것으로된다면, 그것은바로민법의유리한해석과선점의원리에의한것이다. 이것은정말로진실이므로, 이사실을전제하지않고는매매계약도, 토지나가옥의임대차도, 지대의설정도있을수없다. 한가지예를들어보자.

부동산의가치는어떻게측정되는가? 그생산물에의해서이다. 만약어떤토지가 1,000 프랑의수확을올린다면, 이땅의값어치는 5% 를기준으로할때 2 만프랑으로, 4% 를기준으로할때 2 만 5,000 프랑으로산정된다. 이것은달리말하자면앞으로 20 년또는 25 년이지나면토지가격이모두구매자에게상환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일정기간이지난후에부동산의가격이완전히구매자에게상환된다면, 무슨이유로구매자가계속소유자로남아있는것인가? 이는선점권이있기때문이며, 그렇지않다면일체의매각은환매還買행위가될것이다.

째것에서새로운원기를얻게되어, 이제폭리에더해기근이노동을더욱필요하게만들고동시에더욱드물게만들것이다.

상업과경제학의원리에따르자면, 한기업이성공하려면그생산물이 (1) 자본의이자와, (2) 이자본의유지와, (3) 모든노동자와기업가의임금의총액과같아야만하며여기에더하여가능한만큼더많은이익이실현되어야만한다.

소유가지닌금전적이고탐욕적인재능을찬미하자. 불로수득이지닌각양각색의이름에맞추어소유자는 (1) 이자의형태로뿐만아니라, (2) 이윤의형태로그것을얻을권리를요구한다. 자본의이자에는제조비에들어간선금의일부일뿐이라는것이소유자의주장이다. 어느공장에 10 만프랑을투자해서그중에경비를공제하고연 5,000 프랑의수입을얻었다면그것은이윤이아니라자본의이자일뿐이라는것이다. 그런데소유자는공짜로일하는인간이아니다. 우화에나오는사자처럼, 소유자는자기의자격하나하나에대해지불케하고, 그러고나서는함께일한사람들에게는하나도남기지않는다.

첫째것을차지한다. 내가사자이니말이다.

둘째것을가져간다. 내가가장힘이세니말이다.

셋째것도내몹이다. 내가더뛰어나니말이다.

넷째것을누군가가가져가면, 그는화를입을것이다.

(Ego primam tollo, nominor quia leo:

Secundam quia sum fortis tribuetis mihi:

Tum quia plus valeo, me sequetur tertia:

Malo adficietur, si quis quartam tetigerit.)

이우화만큼더유쾌한것이있겠는가.

나는기업가, 나는첫째몹을차지한다.

나는노동자, 나는둘째몹을차지한다.

나는자본가, 나는셋째몹을차지한다.

나는지주, 나는전부다차지한다.

파에드루스 (Gaius Julius Phaedrus, 기원전 20~?, 우화작가. 이솝이야기를라틴어로옮겼다-옮긴이) 는이 4 행으로소유의모든형태를요약하고있다.

내가말하고싶은것은, 이이자가, 하물며이이윤이불가능하다는사실이다.

노동자들은서로어떤관계를맺는가? 노동자들은거대한산업사회의다양한구성원들로서제각기노동및기능분화의원리에따라전체생산중그일부를떠맡고있다. 우선이사회가축산업자, 무두장이, 제화공이라는세명의개인으로한정되어있다고가정해보자. 사회의산업은구두를만드는데있다. 사회의생산물에서각생산자가차지하는몹이얼마냐고내가묻는다면, 어떤학생이든상업이나회사의규칙에따라그몹은생산물의 1/3

늘다른한편의결과이기때문이다. 그러나자신의능력과필요이상으로생산하려면, 다른이의생산을차지해야만하며따라서생산자의수가감소된다. 이렇게소유자는우선스스로생산에서멀어짐으로써생산을감소시킨후, 다시노동을독차지함으로써생산을감소시킨다. 계산해보자.

우리가앞에서살펴보았듯이, 지대를지불한후에노동자가입은손실은 1/10 이다. 노동자는그정도분량만큼자신의생산을늘리려고애쓸것이다. 그러기위해서노동자는일을더하는것밖에달리수단이없으며, 실제로그렇게하고있다. 지대를완전히받아낼수없는지주들의불만, 더성실하고더일을잘한다고여겨지는다른소작인들이지주에게내미는유리한제외와연질, 비밀스런홍정이나음모, 이런것들이노동의할당에서의변동이나일정수의생산자들의퇴출을결정한다. 다른이들의생산에 1/10 을덧붙이기위해서 900 명중에서 90 명이퇴출될것이다. 그러면총생산은늘어날것인가? 결코아니다. 노동자 810 명이 900 명목의생산을맡고있지만, 그들이생산해야만하는것은 1,000 명의몫이다. 그런데소작료는노동에비례해서가아니라토지자본에비례해서책정되는것이며절대줄어들지않기때문에, 부채는전과마찬가지로계속되고피로는쌓여만간다. 이것이바로열명중에한명을죽이고또다시열명중에한명을죽이곤하는사회의모습이다. 이사회는, 실패, 파산, 정치적·경제적파국과위기가주기적으로일어나서평형을회복해주고보편적고난의참된원인에관심을돌리게하지않는다면, 스스로붕괴하고말것이다.

자본과토지의침탈에이어서경제적과정들이뒤따르는데, 그결과는다른마찬가지로일정수의노동자들을생산에서축출하는것이다. 이자가어디서나소작인이나기업가를따라다니기때문에, 이들은너나할것없이이렇게말하곤한다. <일꾼들에게적게지불한다면, 그것으로지대와이자를갚을수있을텐데.> 이제이놀라운발견은노동을쉽고신속하게만들어주며나아가노동자들을수천씩죽이는그만큼많은끔찍한기계들이된다.

<몇년전에스트래포드 Strafford 백작부인은 1 만 5,000 명을영지에서내쫓은후이들을소작인으로다시고용해서땅의가치를높였다. 이사적인통치행위가 1820 년에어느스코틀랜드의대지주에의해소작농 600 가구에게다시되풀이되었다.> (티쏘 Tissot, 『자살과폭동에대하여』).

내가인용한저자는현대사회들을뒤흔드는반항정신에대해웅변조의글을쓰고있으나정작추방당한사람들의반항을부인할것이아니나냐에대해서는한마디도않고있다. 나로서는반항이첫번째권리며가장신성한무라고소리높여치는바이다. 오늘날는다만나의신앙고백이이해되기를바랄뿐이다.

사회는자기자신을먹어치운다. 첫째는노동자들에대한폭력적이고주기적인억압에의해서 (우리는이사실을보아왔고또앞으로도보게될것이다). 둘째는소유가생산자의소비에서취하는몫에의해서말이다. 이두가지형태의자살행위는동시에발생하는것이나, 얼마안가서첫째것이둘

노동에의한점유라고하는이론은따라서법전과모순된다. 그리고이이론의주창자들이그것을토대로법률들을설명하고자할때, 그들은자기자신과모순된다.

<만약사람들이아무것도생산하지못하는토지를, 심지어늪지와같은유해한토지를비옥하게만들었다면, 그들은바로그일에의해서완벽한소유권을창출한것이다.>

마치우리에게착각을불러일으키려는듯이표현을부풀리고모호한말을늘어놓은들무슨소용이있겠는가? <그들은완벽한소유권을창출한것이다> 라는식으로말이다. 당신은그들이이전에는없었던생산능력을창출했다고말하려는것인가. 그러나이러한능력은, 그것을지탱해주는질료 matière 라고하는조건이없는창출될수없다. 땅이라는실체는언제나같은것이다. 변하는것은그품질과형태뿐이다. 인간은모든것을, 질료를제한모든것을창출했다. 따라서내가주장하는것은인간은이질료를점유하고사용할분이며항구적인노동의조건아래서일정기간동안만자신이생산한사물들에대해소유권을가진다는점이다.

이제한가지중요한문제가해결된다. 즉생산물의소유는실사그것이허용된경우라도결코생산수단의소유를동반하지않는다는것이다. 이는더이상의상세한설명을필요로하지않을것이다. 무기를지닌병사, 맡겨진재료를지닌석공, 하천을차지한어부, 들판과삼림을차지한사냥꾼, 토지를지닌농민들, 이들은모두마찬가지이다. 이들은말하자면자신이산출한생산물의소유자들일뿐이며누구도생산수단의소유자는아닌것이다. 생산물에대한소유는배타적이다. 요컨대물物에서의권리 jus in re 이다. 반면에생산수단에대한권리는공통적이다. 즉물物에대한권리 jus ad rem 이다.

제 5 절 노동은소유물의평등에귀착된다.

그러나노동이질료에대한소유권을부여해준다고동의하자. 그러면왜이원리는보편적으로적용되지않는가? 왜이법률의혜택이소수에게만한정되고다수의노동자들에게는인정되지않는가? 모든동물은옛날에햇볕으로데워진대지로부터마치버섯처럼생겨났다고주장한한철학자에게누군가가왜대지가같은질료를가지고이제아무것도남지않는가를물었다. 그는, 대지가늪었고산출능력을잃었기때문이라고답했다. 옛날에그토록다산多産이었던노동이이렇게불모로되었는가? 왜소작농은, 예전에는소유자가노동에의해획득하던그토지를이제는자신의노동으로얻지못하는가?

그것은토지가이미전유되었기때문이라고사람들은말한다. 이는답이될수없다. 어떤땅을헥타르당 50 부아소 (boisseau, 1 부아소는약 13 리터-웁긴이) 로소작을준다고치자. 소작농의재능과노동은이생산물의가치를두배로만든다. 초과분은소작농이창출한것이다. 지주가여간해선보기도문자재력을발휘해서, 소작료를올려생산물독차지하려는데까지나아가지않고경작자에게그노동의결실을향유하게했다고가정하자. 그러나그것으로써정의가충족되는것은아니다. 소작농은땅을개량함으로써소유에대한새로운가치를창출했으며, 따라서일정한부분에대한소유권을갖는다. 땅의값어치가원래 10 만프랑이었는데소작농의노동에의해 15 만프랑의값어치를얻었다면, 이잉여가치의생산자인소작농은이땅의 3 분의 1 에대한정당한소유자이다. 콩트씨도이논리를거역하지는못할것이다. 왜냐하면그는다음과같이말하고있기때문이다.

〈토지를더비옥하게만든사람들은땅을새로넓힌사람들보다자신의동료들에게덜공헌한것이결코아니다.〉

그러면, 왜이규칙이땅을처음간척한사람에게만적용되고땅을개량한사람에게는적용되지않는가? 전자의노동에의해토지가 1 의가치가나간다면, 후자의노동에의해토지는 2 의가치가된다. 양쪽모두평등한가치를창출한것이다. 왜양쪽모두에게평등한소유권을주지않는가? 이점에대해최초의선점자의권리를다시들고나오지않는한, 나는사람들이어떤확고한근거로도이를반박하지못하리라고단언한다.

그러나어떤이는이렇게말한다: 당신이원하는바를우리가인정하더라도소유지의더나은분할에는이르지못할것이다. 토지들은그가치가끝없이증대하지는않는다. 따라서두번또는세번경작한후에도토지는곧비옥도의최대치에도달한다. 농업기술에의해개량되는것은과학의진보와지식의확산에의한것이지농부의기술에의한것이아니다. 따라서일하는자몇명이소유자다중多衆에게보태졌다는사실이소유자체를부정하는논거가될수는없다.

우리의노력이수백만무산자대중가운데서그저단지노동자들수백명만을해방시킴으로써토지의특전과산업의독점을확대하는데이른다면, 이는사실상이논의에서아주빈약한수확을얻는것이리라. 그러나그것은또한우리의생각을잘못이해하는것이며지성과논리의박약을보여주는것이다.

만약사물에가치를덧붙인노동자가그사물의소유에대한권리를얻는다면, 그가치를보전하는자도마찬가지의권리를얻는다. 왜냐하면보전한다는것은끊임없이덧붙이는것이며지속적으로창출하는것이기때문이다. 경작한다는것은무엇인가? 그것은땅에매년그가치를부여하는일이다. 그것은창출행위를해마다되풀이함으로써토지의가치가감소하거나상실되는것을막는일이다. 따라서소유를합리적이고정당하다고인정

그들은마침내 〈더잘, 더생산적으로일해야한다〉 라고말할것인가? 그러나소작료는생산량을최대한으로잡은평균치를바탕으로계산한것이다. 그렇지않은경우, 지주는소작료를올린다. 이런식으로, 대지주들은인구의증대와산업의발전에따라사회가자신들의소유지에서얼마나더생산할수있는지를알때마다그만큼순차적으로임대료를올리지않았는가? 소유자는사회의공익에는무관심하다. 그러나그들은마치매처럼먹이에눈을떼지않고언제든지덜쳐서먹어치울채비가되어있다.

우리가지금구 1,000 명의사회에대해관찰한사실들은각나라에서나인류전체에서더큰규모로재현되고있다. 물론그모양새는한없이다채롭고변화무쌍하지만, 여기서그것을묘사하는것은나의의도가아니다.

요컨대, 소유는형령에의해서노동자들을헐벗게만든다음에탈진으로서서히죽게만든다. 약탈과살인이없으면, 소유는무無이다. 그런데약탈과살인에의해서소유는즉시지지기반을잃고소진된다. 따라서소유는불가능하다.

다섯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사회는소유에의해자기자신을먹어치우기때문이다.

짐을너무많이실으면, 당나귀는기진맥진하지만인간은줄곧앞서걸어간다. 이고집스러운끈기, 이것을소유자는잘알고있으며여기에돈을벌희망을건다. 자유로운노동자는 10 을생산한다. 그러나나를위해그가 12 를생산할것이라고소유자는생각한다.

사실상, 우리가앞에서말한농부는자기땅을저당잡히는데동의하여자기가태어난집에작별을고하기전에필사의노력을다한다. 그는새땅을소작한다. 그는 1/3 만큼더씨를뿌릴것이다. 그러면이새수확의절반이자기몫이되는고로, 그는 1/6 만큼만여분으로수확해서지대를지불할것이다. 오호통재라! 생산을 1/6 만큼불리기위해서농부는 1/6 이아니라 2/6 만큼더노동을해야만하는것이다. 그가수확을거두는것은이러한대가를치르고서이며, 그는신앞에서라면지불하지않아도될소작료를지불하는것이다.

소작인이한것을이번에는기업가가따라한다. 소작인은더많은땅을경작하며이웃을땅에서내쫓는다. 기업가는상품가격을낮추고, 제조와판매를독점하며경쟁자들을몰리치려애쓴다. 소유를만족시키려면우선노동자는자신의필요이상이므로, 그다음에자신의힘이상으로생산해야만한다. 왜냐하면소유자로격상한일부노동자가자리를비움으로써한편은

자신이 생산할 수 없는 것을 값아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소유자가 공동체적 생산에서 뒤로 물러앉아 새로운 방식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기 시작하면서 소작농이 처하게 된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가 설로 다시 돌아가자.

어느 때처럼 값은 양을 생산했다고 확신하고 있던 농민 900 명은 소작료를 지불하고 나니 지난해보다 1/10 만큼 가난해진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란다. 사실 인즉, 이 1/10 은 한 때 생산과 공공 지출에 참여했던 지주-노동자가 생산했던 것이고 또 그에 의지 불되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은 이 1/10 이 생산되지 않으며 지불되기만 할 뿐이다. 즉 그것은 생산자의 소비에서 차압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 불가해한 적자를 매우려고 노동자는 되 값을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자신하면서 돈을 빌린다. 그런데 이 확신은 결국 이듬해에 먼저 빌린 돈에 이자까지 덧붙인 또 한번의 대부 로 귀착 될 뿐이다. 누구에게서 빌리는가? 지주로부터이다. 지주는 그가 노동자에게서 받은 돈 중에서 남아도는 몫을 노동자에게 빌려준다. 그리고 지주가 되돌려 주어야 마땅 할 이 과잉 징수액은 이자 대부의 형태로 다시 그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다. 이리하여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소유자는 값을 능력이 없는 생산자에게 값을 해 주기를 꺼린다. 그리고 생산자는 늘 빼앗기면서도 그에게서 빼앗아 간 것을 늘 빌리고, 마침내 알 거지가 된다.

이번에 그는 수단을 강구한다. 그는 곡물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제조업자도 그만큼 자기 제품 값을 올린다. 반작용이 계속되고 몇 차례 요동이 따르고 나면, 농민이 제조업자에게 전가했다고 생각하는 소작료는 거의 상쇄된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셈이 성공했다고 자축하는 동안 그가 또 다시 가난해졌음을 알게 된다. 물론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가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가격 상승은 누구에게나 미치는 것이니, 소유자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1/10 만큼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9/10 만큼 가난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빛이며, 이 빛 때문에 노동자는 빌리고, 이자를 갚고, 검약하고 또 굶어야만 한다. 갚지 않아도 되나 갚고 있는 이 9/100 때문에 굶는 것이다. 빛을 탕감하기 위해 굶는 것이다. 그 빛의 이자를 탕감하기 위해 굶는 것이다. 흉년이 들면, 굶는 일은 아사에 까지 이른다. <더 일해야 한다> 고 그들은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도한 노동은 굶는 일만큼이나 치명적이다. 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더 일해야 한다> 라는 말은 '더 생산해야 한다' 라는 의미이다. > 라고 그들은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생산은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는가? 노동과 자본과 토지의 결합된 작용에 의해서이다. 노동의 경우, 소작인의 이당 그것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본은 저축에 의해서만 마련된다. 그런데 소작인이 무언가 저축할 것이 있다면, 그는 곧 그것으로 빛을 갚아야 한다. 더 양보해서, 그에게 자본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자. 그래도 그가 경작하는 땅덩이가 늘 같은 면적이라면, 그 자본이 그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늘려야 할 것은 바로 땅덩어리이다.

하고 소작을 공정하고 올바른 것으로 인정 함으로써 내가 말 하고자 하는바는 경작하는 자는 개간하는 자나 개량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획득하며, 소작농이 지대를 낼 때 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맡겨진 땅에 대해 지대 몫에 비례하는 만큼의 소유권을 얻는다는 사실이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면 당신은 독단과 전횡에 빠지는 것이며 카스트의 특권을 인정하고 노예제를 용인하는 것이다.

노동하는 자는 누구나 소유자가 된다. 이 사실은 현재의 정치 경제학과 법학의 원리들 안에서 부정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소유자라고 말할 때, 우리 위선적인 경제학자님들처럼 봉급, 임금, 급료 등의 소유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자신이 창출하는 가치의 소유자들이다. 그가 가치를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만 이 혜택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 모든 것이 임금 및 생산물 분배의 이론과 관련되어 있고 또 이 문제는 아직껏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내가 이 점을 특히 강조하도록 허락해 주기 바란다. 이 점을 논의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에게 생산물과 그 이익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노동자들을 위해 요구하는 참여는 순전한 착선이다. 이들은, 그 참여가 노동에 내재한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권리이며 가장 저급한 작업에 이르기까지 생산자로서의 자질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입증하지 않았으며 의심조차 해보지 않았다.

이제 나의 명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일하는 자는 심지어 자신의 임금을 받은 후에도, 자신이 생산한 사물에 대한 자연적인 소유권을 가진다.>

쿵트 씨를 계속 인용해 보자.

<노동자들은 이 늪지에서 물을 빼고 잡목과 덩굴을 없애도록, 한 마디로 말해서 땅을 간척하도록 고용된다. 그들은 그 땅의 가치를 높이고 더 큰 재산으로 만든다. 노동자들이 거기에 부가한 가치는 식량과 일당의 형태로 그들에게 지불된다. 그러면 이 가치는 자본가의 소유가 된다.>

지불은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노동이 가치를 창출했으며, 이 가치는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그 가치를 팔지도 다룬 것과 교환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당신, 자본가인 당신은 그 가치를 사들이지 않았다. 당신이 지급해 준 물품 및 당신이 마련해 준 생계 수단의 대가로 전체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면, 그것은 물론 아주 정당한 일이다. 당신은 생산에 기여했다. 그러므로 향유에 참여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권리가 노동자들,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생산 과정에서 당신의 동료였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임금에 대해 당신은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이 노동자들에게 일당으로 지불하는 돈은 그들이 당신에게 넘겨 준 영구적인 점유의 겨우 몇 년치 몫에 지나지 않는다. 임금은 노동자가 나날이 자신을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그것을 판매 대금으로 여기는 것은 당신의 오산이다. 노동자는 아무 것도 팔지 않

았다.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도, 그가당신에게한양도의범위도, 당신이그와맺었다고주장하는계약의의미도알지못한다. 노동자편에서는완벽에가까운무지가, 당신편에서는사기와강탈이라고까지지는할수없어도착오와놀라움이함께한다.

다른예를들어서이모든것을더욱명확하고더욱진실에가깝게밝혀보자.

메마른토지를경작가능하고생산성이높은토지로바꾸는데얼마나많은어려움이따르는지모르는사람은없을것이다. 그어려움은정말엄청나서대개의경우고립상태에서홀로일하는사람은그땅이자신에게조금만이라도식량을마련해줄수있는상태가되기전에죽고말것이다. 개간을위해서는공동체의단합된노력과산업의모든자원이다동원되어야한다. 콩트씨는이주제에대해수많은참된사실들을열거하고있으면서도사실상자신의논설에어긋나는증거들을끌어모으고있다는것을눈치채지못한다.

20 또는 30 가구로이루어진개척마을이덤불과잡목으로뒤덮인황량한지역에들어서고, 원주민들이협약에의해그마을에서퇴거하는데동의했다고가정하자. 각가구는많지는않지만그래도누구나동물들, 곡물, 연장, 약간의돈, 식량따위중에서선택할수있을만큼충분한자금을지니고있다. 땅이할당되고각자는최선을다해주거지를마련하고자신에게주어진몫의땅을개간하기시작한다. 그러나난생처음겪는피로, 민을수없는고역, 파멸적이고거의결실없는노동으로몇주일을보낸후, 우리의입주자들은자기일을불평하기시작한다. 그들은조건이가혹하게느껴지고, 자신들이처한비참한신세에대해불평을늘어놓는다.

돌연이들중가장약삭빠른이가돼지한마리를잡아서일부는소금에절이고나머지는나누어주기로결심하고궁핍에빠진자기동료들을찾아나선다. 그는호의에가득찬어조로말한다. 벗이여, 보잘것없는일때문에, 기껏지독한생활을하려고이고생인가! 당신네들에게이득이될거래를하세. 당신들에게먹을것과술을제공할것이니네. 당신들은날마다그만큼씩언제될걸세. 우리는함께일할것ियो, 신이여만세, 내벗들이여, 우리는즐겁고만족할걸세!

텅빈위궤들이이런장광설에저항할수있다고믿는가? 가장굶주린사람들이미덥지못한초청자를따라나선다. 사람들은일을시작한다. 함께한다는미덕, 경쟁심, 희열, 상부상조가노력을배가시킨다. 일은순식간에진척되고사람들은노래하고웃는가운데자연의길들인다. 얼마만가서땅이모습을바꾼다. 길들여진땅은씨뿌리기만을기다린다. 이제, 소유자는자기가부린노동자들에게지불을하며, 노동자들은고마운인사를하고물러나면서그와함께지낸행복했던나날을아쉬워한다.

다른사람들도이런본보기를쫓으며마찬가지로성공을거둔다. 그러고나서어떤이들은정착을하고나머지는흠어진다. 한사람한사람자기

왜냐하면우리의공리의세번째귀결에따르자면, 이들은자신이그소유자인자본에대해서이자를지불하지않으면안되기때문이다. 이자본을 8,000 프랑, 이자율을 2.5% 라고하면, 해마다지불해야할이자 200 프랑이된다. 따라서만일이 200 프랑을총생산에서따로떼어저축하고자본화시키는대신, 소비에돌린다고하면, 가계의지출에서매년 200 프랑씩적자가생기고그리하여 40 년이지난후에는이선량한사람들은알지도못하는사이에자기자산을다먹어치우고알거지가된다.

우스꽝스러운결론이다. 그러나비참한현실이다.

징병이다가온다... 징병이란무엇인가? 그것은정부가가정에대해행사하는불시의소유권행위이며, 인력과금전의약탈이다. 농민들은자기자식들이떠나는것을결코반기지않는다. 이점에서그들은조금도잘못이없다고나는생각한다. 스무살의젊은이가병영에서무엇인가를빈다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 그는거기서몸을망가뜨리지않으면, 자기혐오에빠진다. 대개병사의사기는그가군복에대해품은증오심에의해판단하면된다. 불행한백성아니면쓸모없는백성, 이것이바로국가의부름을받은프랑스인의처지이다. 있어서는안되지만, 벌어지는일이다. 10 만명에게물어보라. 그러면단한명도내말을부인하지않을것이다.

우리의농민이정집된자식두명을되찾으려면, 빌린돈 4,000 프랑을내야한다. 우리가앞에서말한대로이자는 5% 로계산해서 200 프랑이다. 해마다그럭저럭수지의균형을맞추어온가족의생산이지금까지 1,200 프랑즉한사람당 200 프랑이었다고하면, 이이자를갚기위해서는여섯명이일곱명분의일을하거나아니면다섯명분의소비를해야한다. 소비를줄일수는없는일이다. 어떻게생필품을줄인다는말인가? 생산을늘리는일도불가능하다. 더잘더많이일할방도가없으니말이다. 어중간한방법을택해서다섯명반만큼소비하고여섯명반만큼생산하면어떨까? 위장에는타협이없다는것을, 일정한한계아래로는절식을할수없다는것을, 즉건강을해치지않고허리띠를줄라매는일이불가능하다는것을곧체험할것이다. 생산을여섯명반으로늘리더라도서리, 가뭄, 가축병따위가덮쳐서농민의희망은완전히꺾인다. 요컨대지대는값을길이없게되고, 이자는늘어만가고, 작은땅덩어리는차압당하고, 원래의점유자는추방당한다.

이렇게, 소유권을행사하지않는동안은행복하게살던한가정이이권리의행사가요구되자마자비참한상태에빠진다. 소유란, 충족되려면땅을차지한이가말만으로그땅을넓히고또기름지게할수있는이중의능력을요구하는것이다. 토지의단순한점유자라면, 그는거기에서먹고살수것을찾을수있다. 그가소유권을주장한다면, 그땅은그에게부족하게된다. 자신이소비할만큼만을생산할수있는동안에는그가자신의노력에의해얻은결실은그의노력에대한보상일뿐이다. 도구를위해서는아무것도남지않는다.

리고그는 〈각자나에게불로수득을지불하라〉 고말한다. 따라서소득을 늘리려면, 소유지를나누기만하면된다. 소유자는자기몫의이익을자기 가행한노동에근거해서계산하는것이아니라자기의자본에근거해서계 산한다. 이런식의지환행위예의해주인의손으로는하나밖에생산하지못 하는바로그소유지가그주인에게 10 개, 100 개, 1,000 개, 100 만개의 가치를갖게되는것이다. 이제부터소유자는자기에게달려오는일꾼의이 름을적을채비만하면된다. 그의일은허가장과영수증을내주는일뿐이 다.

이토록수월한일거리에도만족하지않고소유자는자신이놀고먹으면 서생기는적자를감수하려하지않는다. 적자는생산자에게로전가되고, 소유자는늘생산자에게동일한보상을요구한다. 소작료가일단천정부지 로오르고나면, 소유자는절대그것을내리는일이없다. 물가의양등, 일손 의부족, 계절에따른장애, 심지어죽음마저도그는개의치않는다. 자신이 일하는것도아닌데왜그가흥년을걱정하겠는가?

여기서일련의새로운현상들이나타난다.

세는세금을공격할때는언제나멋지게논리를전개하면서도, 지주가 소작인에게세리稅吏와마찬가지의약탈행위를저지르고있다는사실을 좀처럼인정하려하지않는다. 그는자신의두번째서한에서멜서스에게다 음과같이말한다.

〈만일징세관들, 그위탁업자들이생산물의 1/6 을소비한다면, 그들 은이로인해생산자들이자신들이생산한것의 5/6 로먹고살도록강요하 는셈이다. 그들은이점을인정한다. 그러나동시에그들은각자가자신이 생산한것의 5/6 만가지고도살수있다고말한다. 원한다면, 나역시그점 을인정할것이다. 그러나나로서는생산물의 1/6 이아니고, 2/6 아니면 그반을요구할경우라도생산자가마찬가지로잘살수있으리라고생각하 는가를묻고싶다. 그러면나는생산자가 2/3 를… 나아가 3/4 을빼앗기 더라도여전히살아갈것인가를묻고싶다. 그들이더이상아무대답도못하 리라는것을나는알고있다.〉

이프랑스경제학자들의대부께서는만일소유에대한자신의선입견에 의해눈이멀지만않았더라면, 소작제가낳는결과가바로이러한것이라는 사실을알아차렸을것이다.

부모와아이넷, 합해서여섯명으로이루어진한농민가정이있다고하 자. 이들은작은전답을갈며생활한다. 그들은열심히일해서그럭저럭수 지를맞추고있으며, 의식주를해결하고나면저축할돈도남지않지만빚질 일도없다고가정하자. 좋은해도있고나쁜해도있지만그들은생활해나간 다. 풍년이들며, 아버지는포도주를좀더마시고, 딸들은드레스를사고, 아들들은모자를산다. 약간의낙농품도먹고, 이따금씩고기도맛본다. 내 가말하고자하는것은바로이러한사람들이파산하고몰락한다는사실이 다.

간지로돌아간다. 그러나개간을하려면우선먹고살아야한다. 남을위해 경작하는동안자기땅은돌보지못하지않았는가. 씨를뿌리고수확을거두 는데이미일년을빼앗겼다. 사람들은자기의노동력을빌려줌으로써, 자 기가먹을식량을절약할수있으므로더많이벌것으로생각했고더잘살면 서도더많은돈을모으리라고생각했다. 잘못된생각이로다! 남을위한생 산도구를창출했을뿐, 자기를위해서는아무것도창출하지못한것이다. 개간의어려움은여전했다. 걸친옷은해지고, 식량은바닥나고, 주머니는 텅비고, 결국특정인만이득을본다. 모두가받들어일했던그자, 혼자만이 생산할수있는위치에남게된까닭에다른이에게부족한식량을제공해줄 수있는바로그자말이다. 그리고나서, 가련한개간자가돈이바닥날때쯤, 멀리서부터먹잇감냄새를맡는동화속의식인귀처럼, 먹을것을잔뜩가진 자가다시나타난다. 그는어떤사람들에게는일당으로고용하겠다고제안 하고, 어떤사람들에게는그척박한땅조각을혈값에사겠다고제안한다. 물론사들인땅에서그는아무일도하지않으며앞으로도그럴것이다. 즉, 그는자신을위하여, 어떤이의땅을다른이로하여금경작하게하는것 이다. 따라서 20 년이지나고나면, 애초에는동등한재산을지녔던 30 여 명의개개인중에서다섯또는여섯명만이지역전체의소유자가될것이고, 나머지는보는이의연민을자아낼정도로빈털터리가될것이다.

운 좋게도내가태어난이부르주아도덕성의시대는도덕에대한각각이 정말무뎌져버렸다. 따라서나는, 허다하고매한소유자들이내가발견한 모든것이근거없고부당하지않느냐고내게묻더라도결코놀라지않을것 이다. 비열한영혼이여! 되살아난시체여! 눈앞에서일어나는도적질이란 신에게자명하게보이지않는다면, 어떻게당신을납득시킬수있겠는가? 인간은감언이설을동원해서타인들로하여금자기의사업을위해봉사케 하는비결을알고있다. 그다음에일단단합된노력으로부를얻고나면, 그 는자기에게재산을만들어준사람들의복리를증진시키는일을거부한다. 자기나름대로규정한여러조건들을들먹이면서말이다. 그런데당신은이 러한행위가왜사기냐고묻고있는것이다! 노동자들에게보수를지불했고 더이상아무것도빚진것이없다는구실로, 자기의사업은바쁜반면다른이 들을위해서는달리할일이없다는구실로, 그는다른이들이자기사업에도 와주었음에도불구하고이들의사업을돕기를거부한다. 그리고고립에따 른무력감속에서버림받은노동자들이물려받은유산을담보로돈을마련 해야할절박한지경에빠졌을때, 바로그, 즉이뻔뻔한소유자, 이벼락부자 사기꾼이나타나서노동자들을약탈하고파멸시킬계획을짜고있다. 그런 데당신은이것이정당하다는말인가! 정신차려라, 나는당신의눈초리에 서, 본의아닌무지에서오는순진한놀라움을넘어서는죄의식의질책을읽 는다.

자본가는노동자들에게 〈수당 les journées〉 을지불했다고사람들 은말한다. 정확하게표현하려면, 자본가는매일노동자들을고용할대마

다그날의 〈일당 une journée〉를 지불했다고 말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협동과 조화, 그들 노력의 집중과 동시성이나 오는 이 거대한 힘에 대해 자본가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 명의 정예병이 몇 시간 만에 룩소르 Luqsor 의 오벨리스크를 단단한 지반 위에 세웠다. 한 사람이 200 시간 안에 같은 일을 해 낼 수 있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그런데도 자본가의 셈법으로는 임금의 액수가 같다는 말인가. 사막을 개간하는 일, 집을 짓는 일, 공장을 가동하는 일 따위는 오벨리스크를 세우는 일, 산을 옮기는 일과 같은 것이다. 가장 작은 재산, 가장 빈약한 기업, 가장 보잘 것 없는 공장의 운용도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다양한 노력과 재능의 결합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이 점에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자본가가 얻은 것과 지불한 것 사이에 수지를 맞추어 보자.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필요로 한다. 당연히 그는 소비하면서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부리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 먹을 것과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 아니면 그에 맞먹는 임금을 부담해야만 한다. 이것은 모든 생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몫이다. 나는, 이 점에서 자본가가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일단 인정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생산에서 당장의 생계 외에도 장래의 생계에 대한 보장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의 원천은 고갈될 것이며 노동자의 생산 능력은 소실될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해야 할 노동은 마친 노동에서 끊임 없이 다 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재생산의 보편적 법칙이다. 이 리하여 소유자 농민은 ① 자신의 수확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 수단뿐 아니라 자신의 자본을 유지, 증진시키고 가족을 사육할 수단,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노동하고 항상 재생산할 수단을 찾으며, ② 생산 도구의 소유 속에서, 경작하고 노동할 토지에 대한 항구적인 보장을 찾는다.

자기의 노동력 services 을 제공하는 자가 경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소유자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는 추정과 소유자가 자기를 무상으로 고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추정된 사실이다. 옛날에 평민이 영주의 신심과 선의에 의해 토지를 얻었듯이, 오늘날 노동자는 고용주와 소유자의 선의와 필요에 의해 일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임시적 précaire¹ 자격의 점유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 조건은 부당한 것이다. 당연히 그것은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자의 일상적인 소비를 거의 넘어서지 못하고 내일의 임금을 보장 해주지 못하는 반면에, 자본가는 노동자가 생산한 도구에서 미래를 위한 독립성과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다.

¹ précaire 는 precor, 즉 〈나는 간청한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왜냐하면 양도문서는 영주가 자신이 부리는 사람들을 즉종 노의 간청에 따라 경작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는 것이다. 그러나 선점권은 만인에게 동등한 것이므로, 모든 사람은 같은 자격으로 소유자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산물의 일부에 대해 동등한 소득을 취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노동자가 소유권을 이유로 소유자에게 지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면, 소유자는 바로 같은 권리에 의해 같은 지대를 노동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들의 권리는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이들 사이의 차이는 영멸이 된다.

〈주석〉 만일 소작료가 법적으로 소유자의 추정된 생산물의 일부에서 나지 않는다면, 그 소유의 범위나 비중에 관계없이, 개개의 소토지 소유자들 대다수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이 이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착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전부를 동시에 착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약해 보자. 불로소득권은 생산의 법칙에 의해 규정된 대단히 좁은 범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선점권에 의해 무효화된다. 그런데 불로소득권 없이는 소유가 없으며 따라서 소유는 불가능하다.

네 번째 명제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일 불로소득권이 이성 과정의 법칙에 종속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수당, 즉 그 〈최대치〉가 노동자 한 명당 그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의 일부를 절대로 넘어서지 않는 보상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논증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불로소득권 - 주저 없이 말하자면 도둑질 권리 - 이 왜 이성의 통제를 감수하겠는가? 불로소득권은 이성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데 말이다. 소유자는 양식과 사물의 이치가 자신에게 부여해주는 바대로의 불로소득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10 배, 100 배, 1,000 배, 100 만 배로 지불 받는다. 소유자로서 그는 자기의 소유물에서 단지 1 만분의 생산물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사회를 상대로, 소유자로서의 생산 능력에 비례하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수당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그들의 힘, 머릿수, 근면성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긴다. 농사꾼에게 사내아이가 한 명이 태어난다. 〈옳거니, 불로소득이 하나 더 늘었다〉라고 소유자는 말한다. 소작료에서 인두세로의 이러한 탈바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의 법률학자들, 우리의 신학자들, 이 꾀주머니 박사님들은 어떻게 불로소득권의 이러한 확대를 막지 않았는가?

소유자는 자기의 생산 능력에 비추어 자신의 소유지를 다이얼하는 데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계산해 보고 나서 그 수만큼 소유지를 분할한다. 그

자보다 10 배강해진다면, 그는 10 배더생산할것이다. 이것이지주가소작료를 10 배나올리는이유가될수있는가? 그의권리는 <내가많이생산하는만큼, 나는많이요구한다> 라는것이아니라, <내가더손을떼면떨수록, 나는더요구한다> 라는것이다. 그러므로소작인가족수의확대, 소작인이부리는일꾼의수, 소작인이일에동원하는자원들, 즉생산을증대시키는이모든요인들은지주와는무관한것이다. 그의요구는그자신에게있는생산능력에의해측정되어야하며, 다른이에게있는생산능력에의해측정되어서는안된다. 소유는불로수득의권리일뿐, 결코머릿수에따른권리가아닌것이다. 혼자서는겨우몇에이커의땅도경작하기힘든자가, 자기땅이 1 만헥타르라고해서, 혼자서생산할수없는것의만배를어떻게사회에요구할수있다는말인가? 어쩌서임대료가, 소유자가거기서얻을수있는효용에비례해서가아니라임차인의재능과힘에비례해서늘어나야한다는말인가? 따라서우리는두번째경제법칙을인정하지않을수없다. <불로수득금은소유자의생산을분수分數로해서측정된다.>

그런데이생산, 이소유자의생산이란무엇인가? 달리말하면, 토지를가진영주나주인이그것을소작인에게빌려주면서자신이희생하는몫이라고당당하게말할수있는것은과연무엇인가?

소유자의생산능력이다른노동자들의생산능력과마찬가지로 1 이므로, 토지를양도함으로써그가내어주는생산물도역시 1 이된다. 따라서불로수득의비율이 10% 라면불로수득금의최대치는 0.1 이될것이다.

그러나우리가앞에서살펴본것처럼, 소유자가생산에서물려줄때마다생산물의총량은 1 씩줄어든다. 따라서소유자의손에들어오는불로수득금은, 그가노동자로남아있는동안에 0.1 에해당하지만, 그가일을그만두고물려서는경우소작료감소의법칙에따라 0.09 가될것이다. 이것은우리를다음과같은마지막공식으로인도한다. <지주의소득의최대치는노동자 1 명의생산물 (이생산물이일정한수치로표현된다면) 의제곱근과같다. 이소득이감내하는감소분은, 소유자가일을하지않을경우에는, 1 을분자로하고생산물을표현하는수치를분모로하는분수와같다.>

이리하여, 일하지않는소유자또는공동체의외부에서자기자신만을위해일하는소유자의소득의최대치는노동자 1 인당평균생산 1,000 프랑의 1/10 로산정하면, 90 프랑이될것이다. 따라서프랑스에해마다평균 1,000 프랑의소득을누리나그것을비생산적으로소비하는 100 만명의소유자가있다면, 그들이매년지불받는금액은 10 억프랑이아니라, 법의엄정함과가장정확한계산에따라 9,000 만프랑이어야한다.

주로노동계급을짓누르는부담금중에서 9 억 1,000 만프랑을덜어낸다는것은이미상당한일이다. 그러나아직도계산은끝나지않았다. 노동자는아직도자기권리의모든내용을다알지못하고있는것이다.

우리가지금보여준바와같이, 일하지않는소유자에게응당돌아가야할최소한으로줄어든불로수득권이란무엇인가? 그것은선점권을인정하

그런데이재생산의효모, 이영원한생명의씨앗, 생산의도구와토대의이러한준비야말로자본가가생산자에게빚지고있는것이며다시는돌려주지않는것이다. 그리고이것은노동자의빈곤, 유한자有閑者의사치, 조건의불평등을만드는기만적인거부행위이다. 사람들이인간의한인간의착취라고널리불렀던것이바로여기에서나온다.

실은다음세가지중어느하나여야한다. 즉 ① 노동자는모든임금을제하고자신이생산한것을고용주와함께나눌것이다. ② 그렇지않으면, 고용주는생산노동의등가물을노동자에게돌려줄것이다. ③ 그렇지않으면, 고용주는노동자의고용상태를항상유지해주어야만할것이다. 생산물의분배, 노동의상호성, 항구적인노동의보장, 자본가는이세가지대안중어느하나를피할수없다. 그러나자본가가두번째와세번째조건에만족할리없다. 그는직간접으로자신의사업에힘써준이수천의노동자들에게봉사할수도없고, 그들모두를영원히고용할수도없다. 따라서소유자의분배만이남는다. 그러나소유자가분할되면, 모든조건들은평등해질것이다. 대자본가들도대소유자들도존재할수없게된다.

따라서콩트씨가자신의가설에따라, 자본가가자신이대가를지불한모든사물에대한소유권을차례로회득하는것을우리에게보여줄때, 그는점점더개탄할만한거짓추리에빠지게된다. 그리고그의논증이늘변함없는만큼, 우리의답변도늘한가지이다.

<여러노동자들이건물을짓는데고용되어있다. 어떤이는채석장에서돌을고르고, 어떤이는운반하며, 어떤이는다듬고, 또어떤이는제위치에가져다놓는다. 그들하나하나가자기손을거쳐간재료에일정한가치를더한다. 그리고이가치, 즉개개인의노동의산물은개개인의소유이다. 그는가치를창출하자마자곧그것을건물소유자에게팔아버리고건물소유자는그대가로먹을것이나임금을지불한다.>

<분할하고통치하라 divide et impera> . 분할하라, 그러면당신은통치할것이다. 마찬가지로분할하라, 그러면당신은부자가될것이다. 분할하라, 그러면당신은사람들을속일수있을것이며, 그들의이성을흐리게하고, 정의를우롱할수있을것이다. 노동자들을서로떼어놓으면, 각자에게지불된일당이각자가개인적으로생산한가치를넘을수도있다. 그러나문제는그점이아니다. 20 일동안 1,000 명이노동한힘에대해서단한명이 55 년동안노동한것과마찬가지로지불된것이다. 그러나이 1,000 명이단 20 일만에, 한명의힘으로는 100 만세기동안노력을되풀이해도이주지못할것을해낸것이다. 거래는정당한가? 거듭말하지만, 결코아니다. 당신은개개인의힘모두에대해지불했지만, 집합적인힘에는지불하지않았다. 따라서당신이결코언지못한집합적인소유권이여전히남는다. 당신은그것을부당하게향유하고있는것이다.

20 일의임금이이많은사람들을 20 일동안먹이고재우며입히기에충분하기를나는바란다. 그러나계약기간이끝난후일거리가없어지면이

사람들은어떻게되는가? 그들은생산물을이루어내자마자곧소유자들에게팔아넘기고, 소유자는곧그들을저버릴터이니말이다. 노동자모두의 단합된노동덕에확고하게자리잡은소유자는안전한생활을누리고더이상노동과쌍의결핍을걱정하지않는데반하여, 노동자는자신의자유를팔아버리고중속시킨바로이소유자의호의외에는달리희망을걸곳이없다. 따라서소유자가자신의안락과권리안에웅크리고앉아서노동자를고용하기를거부한다면, 노동자는어떻게먹고살것인가? 그는비옥한땅을마련하고도거기에씨를뿌리지못할것이고, 안락하고화려한집을짓고도거기에머물지못할것이며, 모든것을생산하고도아무것도누리지못할것이다.

노동에의해우리는평등으로나아간다. 우리가내딛는한걸음한걸음이우리를평등으로더욱가깝게인도한다. 그리고노동자들의힘, 근면성, 노력여부가동일하다면, 재산도마찬가지로동일해질것이명백하다. 사실사람들이주장하고또우리가앞에서동의한것처럼, 노동자가자신이창출한가치의소유자라면, 다음과같은사실이되따른다.

- 1) 노동하는자가한가한소유자를대신해서얻는다.
- 2) 모든생산은필연적으로집단적인것이므로, 노동자는자기의노동에비례해서생산물과이익에참여할권리를갖는다.
- 3) 모든축적된자본은사회적소유이므로, 누구도배타적인소유권을가질수없다.

이러한추론들은피할수없다. 이추론들만으로도우리의경제전반을뒤엎고우리의제도와법률들을변혁하기에충분하다. 이러한원리를세운바로그사람들이왜이제와서그원리를따르기를거부하는가? 세 Say, 쿤트, 엔스켄등과같은이들이왜소유는노동에서나온다고말하고나서뒤이어선점과시효취득이라는것에소유를붙들어매려하는가?

그러나이권변가들이자신의모순과맹목에빠지도록내버려두자. 인민의양식이그들의모호한태도를심판할것이다. 우리로서는하루빨리이양식을계도하고올바른길을보여주도록하자. 평등이다가온다. 이미우리는평등과좁은간격을두고있다. 내일이면이간격을뛰어넘을것이다.

제 6 절 사회에서 모든 임금은 평등하다.

생시몽주의자들 Saint-simoniens, 푸리에주의자들 fouriéristes, 또일반적으로오늘날사회경제와개혁에관여하는모든이들은자신들의깃발아래다음과같이쓰고있다.

소작료로남게되는것이다. 따라서지주들이소작료전액을다받으려한다면, 이들 100 명중 10 명은소작료를받지못하거나, 아니면이들모두가 10% 만큼의감소를받아들여야만한다. 왜냐하면지주가노동을그만둔다고해서그손실을노동자가떠맡을수는없는일이기때문이다. 노동자들은결코자기직분을다하지못한적이없으며예나다름없이생산을해왔으니말이다. 자신의나태함에따른결과를떠맡아야하는것은바로지주들이다. 그러나지주는그가더누리려한다는바로그사실로인해더욱가난해진다. 자신의권리를행사하려함으로써, 그는그권리를상실한다. 이렇게재산이란우리가그것을불잡으려하면할수록줄어들고없어져버리는듯이보인다. 재산은찾으면찾을수록손에서떨어지는것이다. 수량에따라가변적이고산술적배열에따라상실될수도있는이권리란과연어떤것인가?

지주-노동자는 ① 노동자로서 0.9 의임금과, ② 지주로서 1 의소작료를받았다. 그는스스로에게이렇게말했다. <내가받은소작료로충분하다. 나는더얻으려고일할필요가없다.> 따라서그가생각했던수입은 1/10 만큼줄어드는셈이다. 어쩌서그렇게되는지를그가생각조차하지못한사이예말이다. 생산에참여했을때, 그는자신이지금되찾지못하는이 1/10 만큼의생산자였던것이다. 그리고그가자신을위해서만일하고자생각했을때, 그는자기생산물을교환하는데서일정한손실을입은것이며, 그결과자기소작료의 1/10 만큼을자기자신에게지불하게하는셈이었다. 다른이들처럼그는 1 을생산했으나, 0.9 만을받은것이다.

만일노동자가 900 명이아니라 500 명밖에없었다면, 소작료총액은 50 으로줄었을것이다. 마찬가지로 100 명뿐이었다면, 10 으로줄었을것이다. 그러므로소유자경제의법칙으로다음과같은공리를세우자. <불로수득은일하지않는자의수가늘어날수록줄어든다.>

이첫번째결론은우리를한층놀라운또하나의결론으로인도할것이다. 그것은소유를제거하지않고서, 소유자들에게해를입히지않고서, 아주보수적인방법으로단숨에소유의모든부담에서우리를해방시키는문제이다.

노동자 1,000 명으로이루어진한사회소의작료가 100 이라면, 900 명의경우는 90, 800 명의경우는 80, 100 명의경우는 10 등등이된다는것을우리는앞에서보았다. 이런식으로사회에노동자가단 1 명뿐이라면, 소작료는차지한땅의규모나가치에상관없이 0.1 이될것이다. 따라서 <토지자본이일정하다면, 생산은소유에비례하는것이아니라노동에비례한다> .

이원리에따라, 모든소유에대한불로수득의최대치는얼마여야하는지를생각해보자.

토지임대차계약이란원래무엇이였는가? 그것은소유자가토지에서나오는소득의일정몫을자기가가진다는조건으로자기의토지에대한점유를임차인에게양도하는계약이다. 만일가족수가늘어서소작인이소유

들은일을하지않으므로, 그들의소비는경제원칙에따르자면비생산적이다. 따라서사회에는예전과마찬가지로생산물에의해지불되지않는 100 만크의노동이있는것이아니라노동없이소비되는 100 만크의생산물이 있게된다. 생산과소비중어느항목에나타나든간에결국적자는마찬가지 인것이다. 정치경제학의격언이잘못된것이란아니면그격언을거스르는 소유가불가능한것이든둘중의하나이다.

경제학자들은비생산적인모든소비를하나의악으로, 인류에게저지 른도독질로간주하고, 소유자들에게마냥절제와노동과검약을권고해마 지않는다. 그들은소유자들에게자신의유용성을찾으라고, 얻은것을다 시생산에투자하라고권유한다. 그들은사치와태만에대해가장끔찍한욕 설을퍼붓는다. 이러한훈육이훌륭한일이라는것을누군들모르겠는가. 그러나아쉬운것은상식이결여되어있다는점이다. 노동하는소유자, 즉 경제학자들의표현을빌리면 <자신을유용하게만드는> 소유자는바로이 노동과이유용성에의해지불받는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소유자가자신 이몸소이용하지않으면서도수입만을챙기는재산들에대해서는덜나태 한가? 그가무슨일을하건그의처지는비생산적인것이며 <흙물스러운> 것이다. 소유자는소유자이기를그만두지않는한, 낭비하고파괴하는일 을그칠수없다.

그러나이것은소유자가가져오는가장사소한악에지나지않는다. 사 회는게으른자도부양한다는것을우리는아무튼잘알고있다. 사회에는늘 맹인, 불구자, 정신병자, 저능아등등이있다. 그러나사회가몇몇게으른 자를부양못할이유가있겠는가. 그러니불가능한일들이복잡하게뒤엉키 고겹겹이쌓여가는것이다.

세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자본이 일정한경우생산은소유가아니라노동에비례하기 때문이다.

생산물의 10% 로소작료 100 을지불하기위해서는생산물이 1,000 이어야만한다. 생산물이 1,000 이기위해서는 1,000 명의노동자가필요 하다. 따라서누구나지대수취자로서의삶을누릴평등한권리를가진이들 지주-노동자 (Travailleurs Propriétaires, 지주이면서동시에일하는 자를말한다-웁긴이) 100 명을지금쉬게한다면, 우리는이들에게그들의 수입을지불할수없는상태에빠진다. 실제로, 원래 1,000 이었던생산력 은 900 으로줄고, 생산역시 900 으로줄게되므로, 그 10% 인 90 만이

각자의능력에따라각자의몫을, 각자의성취에따라각자의능력을.(생 시몽)

각자의자본, 각자의노동, 각자의재능에따라각자의몫을.(푸리에)

비록모양새를갖추어야이야기하고있는것은아니지만, 그들은노동과 근면의해취득되는자연의생산물들은모든종류의탁월함과우월성에 대해주어지는보상이요찬가이며, 영광이라고주장한다. 이들은토지를 하나의거대한투기장으로취급하는데, 이투기장에서는이제창과칼이부 딛치는폭력이나배신의해서가아니라획득한부, 과학, 재능심지어덕 망에의해가격이흥정된다. 요컨대이들몫이들과더불어누구나최고의능 력에는마땅히최고의보수가돌아간다는것을, 상거래식이지만모호함을 피할수있는말투로표현하자면, <보수> 는성취와능력에비례해야만한 다는것을주장하고있는것이다.

이른바이두개혁가의제자들은이것이그들의생각이라는사실을부인 할수없을것이다. 만일그렇지않다면그들은자신들의공식적인해석과어긋날것이며, 자신들이내세운이론의통일성을파괴할것이기때문이다. 게다가그들이부인한다고해도하등열두에둘필요가없다. 두분파는, (그 들의말에따르면) 그역시능력의불평등을배양했던자연에대한유추를빌 려서조건들의불평등을주장하는일을영예로여기고있기때문이다. 그들 은단지한가지사실을자랑으로내세우고있는데, 그것은그들이구상한정 치조직이너무완벽해서사회적불평등이항상자연적불평등과일치하리 라는사실이다. 조건들의불평등 - 나라면보수의불평등이라고말하겠다 - 이가능한가의문제에대해서, 그들은능력의척도를규정하는것외에는 아무데에도관심을두지않는다.²

각자의능력에따라각자의몫을, 각자의성취에따라각자의능력을.

각자의자본, 각자의노동, 각자의재능에따라각자의몫을.

생시몽이죽고푸리에가스스로를신격화한이후에, 그들의사도중누 구도이위대한격언에대한과학적논증을사람들에게제시하려하지않았 다. 그리고나는푸리에주의자들중누구도이이중의경구가두가지다른해 석에열려있다는점의의심조차하지않고있었다는사실에 100 대 1 로내기 를걸겠다.

각자의능력에따라각자의몫을, 각자의성취에따라각자의능력을.

각자의자본, 각자의노동, 각자의재능에따라각자의몫을.

흔히말하듯이가장평이한의미로 in sensu obvio, 즉표면적이고통 속적인의미로해석되는이명제는그러나거짓이고모순에차있으면서부

² 생시몽에따르자면, 생시몽파의사제는로마교회에서본뜬교황의무오류성에의거 해서각인의능력을판정해야만했다. 푸리에에따르자면, 서열과공적은입헌제도를본뜬표 결과선출에의해정해질것이다. 이위대한인물은명백히독자를우롱했다. 그는비밀을털어 놓지않았던것이다.

당하다. 자유에적대적이고압제를비호하며반사회적이인명제는소유자적편견의절대적인영향력아래서숙명적으로받아들여진다.

우선, 〈자본〉은보상의기본요인에서제외되어야한다. 푸리에주의자들은, 그들의몇몇팜플릿을통해내가이해하는바로는, 선점권을부정하고노동외에다른소유의원리를인정하지않는다. 비슷한전제아래그들은조금만추론해본다면, 자본은선점권에의해서만그소유자에게이익을가져다주지만, 이러한생산은정당하지않다는사실을이해할것이다. 사실노동이소유의유일한원리라면, 나는어떤다른사람에게소작료를받고경작시키자마자내땅의소유자가될수없을것이다. 우리는이것을논박할여지가없이입증했다. 그런데이것은모든자본에대해서마찬가지이다. 따라서어떤기업에자본을투자하는일은법의엄정한해석에따르자면이자본을등의생산물과교환하는것이다. 무익해보이는이토론을여기에서되풀이하지말자. 나는〈자본에의한생산〉이라불리는것에대해서다음장에서깊이있게다룰것이다.

이렇게자본은교환될수있으나, 소득의원천이될수는없다.

이제, 〈노동〉과〈재능〉, 즉생시물의말을빌리면〈업적〉과〈능력〉이남는다. 이것들을차례로검토해보자.

보수는노동에비례해야만하는가? 달리말하자면더많이일한자가더많이받는것은정당한가? 이문제에두배로관심을집중할것을독자에게당부한다.

문제를한번에해결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질문을제기하는것으로충분하다. 노동은하나의〈조건〉인가아니면〈전투〉인가? 내가볼때, 답은의심할여지가없다.

신은인간에게말했다. 〈네얼굴에땀을흘려네빵을먹을지라. 너는몹소네빵을생산하라, 그리고네가스스로의노력을조절하고인도할줄아는만큼너는크고작은즐거움을만끽하면서일할것이다.〉 신은〈너는네이웃과빵을다투리라〉고말씀하신것이아니라〈너는네이웃과함께일하라. 그리고너와네이웃은모두평화롭게살리라〉고말씀하셨다. 너무나단순해서때로는모호한해석을남는이율법의의미를펼쳐보자.

우리는노동에서두가지요소, 즉〈결합 association〉과〈이용재료 matière exploitable〉를준별해야만한다.

결합된자로서노동자들은평등하다. 그리고한노동자가다른노동자보다더많은보수를받는것은모순이다. 왜냐하면한노동자의생산물은다른노동자의생산물로밖에지불될수없다는점을고려할때, 만일두생산물이불평등하다면그가치의차이즉가장큰생산물과가장작은생산물사이의차액은사회에의해획득될수없으며, 따라서교환도이루어지지않아임금의평등에아무런영향을주지못할것이기때문이다. 그결과, 가장힘센노동자에게는사회적불평등이아니라구태여말하자면자연적불평등이생길것이다 (그의힘과생산적활력은아무에게도상처를주지않는다). 한

그러나사회는 10% 의지대를지불해야한다. 그리고우리는농부들만이그것을지불하든일하는자모두가지불하든그결과는마찬가지임을알게될것이다. 농부는자신이지불해야하는몹에비례해서식료품값을올린다. 그러면제조업자들이곧이러한상승추세를뒤따르게되고, 몇차례엮치락뒤치락하고난다음에형평이회복될것이다. 결국개개인은거의동등한양을지불하는것이다. 그러므로한나라에서농부만이지대를낸다고생각하면큰오산이다. 국민전체가지불하는것이다.

따라서내가말하고자하는것은, 만일 10% 를징수당한다고치면, 개개인의소비는다음과같이줄어든다는것이다. 밀 0.63, 포도주와정원 0.09, 신발과옷 0.054, 철물과가구 0.045, 여타다른생산품 0.072, 교육 0.0063, 행정 0.0018, 예배 0.0009. 다시말해모두합하면 0.9 가된다.

일하는자는 1 을생산하는데 0.9 만을소비한다. 따라서그는자신의노동의가격에서 10% 만큼을잃어버린것이다. 요컨대그의생산에드는비용은항상그생산물의효용가치보다비싸다. 다른한편으로, 소유자가차지하는이 10% 는소유자에게무가치하게된다. 왜냐하면소유자 스스로도일을하므로자신들이생산한생산물의 90% 를가지고다른이들처럼살수있으며, 따라서부족한것이없을터이니말이다. 그들이그것을소비할수도교환할수도없다면, 그들이차지한빵, 고기, 포도주, 옷, 집따위의양이두배로된들무슨소용이있겠는가? 따라서지대는나머지다른이들에게와마찬가지로그들에게도무가치한것으로남게되며그들의손안에서소실되고만다. 이가설을확대해서생산물의수효와종류를늘려보라. 당신은마찬가지결론을얻게될것이다.

지금까지나는소유자를생산에참여하는자로, 즉세가말한것처럼단순히자신의도구에의해서참여하는것이아니라자기스스로의노동에의해서실질적으로참여하는것으로취급해왔다. 이러한조건에서라면결코소유가존재할수없으리라는것은쉽사리생각해볼수있다. 어떤일이일어나겠는가?

정절도염치도없는천성적으로호색한인소유자는질서와규율의생활과는절대로어울리지않는다. 그가재산을사랑한다면, 그것은그가원할때, 원하는만큼, 자기의안락을얻기위해서이다. 먹고살기에충분하다고느끼면, 그는쓸데없는일이나안일한생활에몸을내맡긴다. 그는즐기고, 바보짓하고, 신기한것과새로운자극을찾아나선다. 소유는자기스스로를만끽하기위해서일상적인처지를내팽개치고사치스러운일과세속적인향락에눈을돌려야만한다.

손안에서소실되고마는지대를마다한다거나그만큼사회의노동부담을덜어주려하기는커녕, 우리의 100 여소유자들은몸을뺀고휴식을취한다. 이들의발뺨때문에생산의절대량은 100 만큼줄어들지만소비는마찬가지여서, 생산과소비가균형을이룬듯이보인다. 그러나우선소유자

는 효용과 가치를 잃은 것이며 교환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무엇이든간에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이미 생산물이 아닌 것이다.

소비의 경우도, 그 소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즉 소비다운 소비가 되려면 효용을 재생산해 내야만 한다. 만일 소비가 비생산적일 경우, 소비가 생산물을 소모하는 일은 가치를 파손하는 것이고, 생산물을 완전히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며, 생산물의 값어치를 그 가치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응당 소모할 권한을 지닌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재생산하는 것만을 소비한다. 따라서 올바른 경제활동에는 생산과 소비 사이에 하나의 등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전제로 해서, 외부와의 교섭이 단절된 채 일정한 영역에 틀어박혀서 사는 1,000 가구의 한 부족을 가정해보자. 우리에게 이 부족은 인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 지구에 널리 흩어져 있는 인류는 참으로 고립된 존재이니 말이다. 사실 한 부족과 인류 전체의 차이는 그 수적인 규모에 있을 뿐, 경제적인 면에서의 결과는 완전히 같을 것이다.

이제 단지 밀만을 재배하는 이 1,000 가구가 생산량의 10%에 해당하는 수입을 매년 현물로 그들 중 100 명에게 지불해야만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불로소득권은 사회의 생산에 대한 징수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징수는 어디에 쓰이는가?

이 징수는 부족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것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식량 공급은 지대와와는 아무 상관도 없으니 말이다. 또한 이 징수는 결코 노동과 생산물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몫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수자들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노동할 때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해서 노동하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이 징수는 지주들에게 어떤 효용도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주들은 스스로 소비하기에 충분한 밀을 수확한 데다가, 교역도 산업도 없는 사회에서 그것으로 다른 어떤 것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자신들의 소득이 가져오는 이점을 상실할 것이니 말이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는 생산물의 1/10 이 소비되지 않고 남기 때문에, 노동의 1/10 이 지불되지 않고 남는 셈이다. 생산비용이 그 생산물의 효용 가치보다 더 드는 것이다.

여기서, 밀 생산자 300 명을 다른 분야의 일거리에 배당해보자. 예컨대, 정원사나 포도재배농 100 명, 제화공이나 재단공 60 명, 가구공이나 대장장이 50 명, 여타 다른 직업인들 80 명,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학교 선생님 7 명, 총장 1 명, 재판관 1 명, 성직자 1 명을 두도록 하자. 각 직종은 제 나름대로 부족 전체를 위해 생산한다. 그러면 총 생산량을 1,000 으로 할 경우,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비량은 1 이 된다. 즉 개인은 밀, 고기, 곡물을 0.7 만큼, 포도주와 정원을 0.1 만큼, 신발과 옷을 0.06 만큼, 철물과 가구를 0.05 만큼, 여타 다른 생산품을 0.08 만큼, 모두 합해서 1 만큼을 소비하는 셈이다.

마디로 말하자면, 사회는 평등한 생산물들만을 교환한다. 사회는 사회를 위해 행해진 노동에 대가를 지불한다. 따라서 사회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평등하게 지불한다. 이들이 사회 밖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목소리나 머리카락의 차이 정도 밖에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는 지금 스스로 불평등의 원리를 세우고 있는 듯이 보일 수도 있다. 아니다, 그와 정반대이다. 사회를 위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동, 즉 교환 가능한 노동의 합계는 운영자금이 일정하다면 노동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질 일의 양이 줄어들수록 커진다. 따라서 자연적 불평등은, 노동의 결합이 확대되고 더 많은 사용 가치가 사회적으로 생산됨에 따라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사회에서 노동의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선점권이나 소유권일 따름이다.

그런데 경작, 제초, 수확 등으로 계산되는 이 하루당 사회적 일이 200 제곱미터의 면적에 대하여 평균 필요 노동 시간으로 7 시간을 요구한다고 가정하자. 어떤 노동자는 6 시간만에, 어떤 노동자는 8 시간만에, 그리고 고대다수는 7 시간만에 일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요구되는 양의 노동을 제공하기만 하면 투자한 노동 시간에 상관없이 임금의 평등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6 시간만에 자기 일을 끝마칠 수 있는 노동자는 자기의 힘과 활동이 더 크다 는 구실로, 자기보다 덜 숙달된 노동자의 일감을 빼앗고 그리하여 그의 노동과 빵을 강탈할 권리가 있는가? 누가 감히 이런 주장을 고집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을 마친 이는 원한다면 휴식을 취할 수 있으리라. 힘을 재충전하고 영혼의 양식을 얻고 삶을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 운동이나 유익한 일에 몰두하는 것도 좋으리라.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고 이 런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이에 대해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도 있으리라. 활력, 친분, 근면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모든 개인적 장점은 자연의 몫이며,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의 몫이다. 사회는 이들에게 합당한 응분의 평가를 부여한다. 그러나 사회가 이들에게 주는 보수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생산한 것에 비례한다. 이렇게 각자의 생산물은 모두의 권리에 의해 제한된다.

만일 땅의 넓이가 무한정이고 이용할 재료의 양이 무진장이라고 할 지라도, 우리는 <각자의 노동에 따라 각자의 몫>이라는 격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그런가? 다시 한번 사회는 그 구성원의 수에 관계없이 그들이 생산한 생산물로만 지불하므로, 이로 모두에게 동일한 임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가 앞에서 한 가정에 따라 아무도 강자가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평등의 바로한 복판에서 자연적 불평등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일이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토지는 주민의 생산력과 그들의 확장 능력의 측면에서 매우 제한되어 있다. 더구나 생산물의 극도의 다양성과 극단적인 노동 분업은 사회적 과업을 한층 더 해내

기쉽게만든다. 그러므로바로이생산가능성의한계와생산작업의수월함에의해서절대적평등의법칙이우리에게주어지는것이다.

그렇다, 삶은하나의전투이다. 그러나이전투는결코인간에대한인간의전투가아니라자연에대한인간의전투이며, 우리들각자는몸소여기에참여하지않으면안된다. 이투쟁에서강자가약자라도우려나선다면, 그의선행은칭찬과사랑을받을것이다. 그러나그의도움은자유롭게배풀어저야하며무력에의해강제되거나돈을받고제공되어서는안된다. 누구에게나경주트랙은같은것이며지나치게길지도지나치게험난하지도않다. 끝까지달린사람은누구나결승점에서대가를받는다. 그러나반드시일등일필요는없다.

인쇄소에서노동자는대개도급제로일한다. 식자공은조판할수있는활자수에따라, 인쇄공은인쇄한중이매수에따라봉급을받는다. 여기에또다른곳과마찬가지로재능과기술의불평등이존재한다. 일거리가없는것 calence 즉실업에대한걱정이없는한, 조판일이나식자일이부족하지않은한, 누구나자유롭게열심히일에전념하며자기능력을펼친다. 많이일을한사람은많이번다. 적게일한사람은적게번다. 그러나일거리가줄기시작하면, 식자공과인쇄공은일감을나눈다. 독차지하려는자도독이나배신자만큼미움을산다.

이인쇄업의관행안에경제학자나법률가들이결코도달하지못한하나의철학이있다. 우리의법학자들이인쇄소에서볼수있는분배적정의원리를자신들이만든법전에도입했다면, 그들이이러한민중의본능적관행을비굴하게홍내내기위해서가아니라잘고쳐서일반화시키기위해고찰했다면, 이미오래전부터자유와평등은난공불락의기초위에터잡았을것이며, 더이상사람들은사회적차별의불가피성이나소유권따위에대해논쟁할필요가없었을것이다.

건강한개개인의육체의수에따라노동이할당된다면, 하루당평균노동시간은프랑스의경우 5 시간을넘지않을것이라고사람들은추정했다. 그렇다면, 누가감히노동자들의불평등을말하는가? 불평등을낳는것은로베르마케르 (Robert Macaire, 19 세기중엽통속극의작중인물로은행가, 실업가등현대판도둑의전형-웁킨이) 의 <노동> 이다.

<많은노동한자는많이번다> 라는의미로해석된 <각자의노동에따라각자의몫> 이라는원리는따라서명백히잘못된두가지사실을전제로하고있다. 하나는경제학적인오류, 즉사회적노동에서일은평등할수없다는주장이다. 다른하나는다물리학적인오류, 즉생산가능한물건의양이무제한이라는주장이다.

그러나사람들은이의를제기할것이다. <자기의일을반박에하지않으려는사람이있으면, 어쩔텐가? 무척난처할것이아닌가?> 아마도이들은그들이받은절반치임금에만족할것이다. 자신들이제공한노동에따라지불을받았으므로, 무슨불평이있겠는가? 이런의미에서 <각자의성취

<추론> 1. 소유권을 <자신의노동의결실을향유할권리> 라고정의한 1793 년의공화정헌법은엄청나게잘못된것이다. 그것은다음과같이말했어야한다. 즉소유권은타인의재산과타인의노동과땀의결실을자기마음대로향유하고처분할권리이다.

2. 토지, 가옥, 가구, 기계, 도구, 금전등등을가진자들중에서그것을수리비를초과하는비용으로빌려주는자는기만적인전매꾼이며사기와횡령의죄를면할수없다. 한마디로말하자면손해배상의구실로그러나사실상빌려주는대가로징수하는모든임대료는소유권의행위이며도둑질이다.

<역사적해설> 승전국이패전국에요구하는공납은진정소작료와마찬가지이다. 십일조, 재산이전세, 부역그리고 1789 년의혁명이폐지한영주부와조등은소유권의여러형태이다. 그리고귀족, 영주, 성직이권자, 성직록수혜자따위의이름으로이권리를누리는자들은소유자이외에달리아무것도아니다. 오늘날소유를옹호하는것은혁명을규탄하는것이다.

두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소유가 용인되는곳에서생산은효용가치이상의비용이들기때문이다.

앞의명제는법률적인성격의것이었으나, 이명제는경제적인성격의것이다. 이명제는, 폭력을기원으로하는소유가결과적으로무가치를낳는다는것을입증하는데쓰인다.

세는말한다. <생산은하나의거대한교환행위이다. 교환이생산적이라면생산에들어간모든노동의가치가생산된물건의가치와균형을이루어야만한다. 만일이조건이충족되지않았다면, 교환은불평등했던것이고, 생산자는받은것보다더많이내준셈이다.>

그런데가치는효용을필수적인기반으로하기때문에, 효용을갖지못한모든생산물은당연히무가치한것이고, 교환될수없으며, 따라서생산에들어간노동을 <지불하는> 구실을다할수없다.

따라서생산이소비와균형을이룰수는있어도결코소비를넘어설수는없다. 왜냐하면효용을생산하는곳에서만실제로생산이이루어지며, 소비의가능성이있는곳에서만효용이존재하기때문이다. 그리하여과잉생산에의해소비되지않고남은모든생산물은그소비되지못한양에대해서

기원전 486~465, 그리스를 침공한 페르시아 왕-알렉산더) 군대의 엄청난 노고만큼이나 비생산적일 것이다.

도구와 자본, 토지, 노동 따위는, 만일 이것들을 서로 떼어서 추상적으로 고려한다면, 비유적 관점에서만 생산적일 뿐이다. 자신의 도구, 생산력, 자신의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 그에 따른 무엇을 요구하는 소유자는 따라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실, 즉 자본이 그 자체로 무엇인가 생산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가 상의 생산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케 함으로써 그는 말 그대로 공짜로 무엇인가를 얻는 셈이다.

〈반론〉 그러나 만일 대장장이나 집수레공이, 한마디로 모든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도구들의 대가로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면, 만일 토지가 하나의 생산 도구라면, 왜 이 생산 도구는 그 진정한 또는 가상의 소유자에게 생산물의 일부에 대한 몫을 보장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답변〉 여기에 바로 수수께끼의 매듭이 있으며, 소유권의 비밀이 있다. 불로소득권의 기묘한 효과에 대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만 한다.

농기구를 제작하고 수선하는 노동자는 일시불이든 분할불이든 〈단한 번〉 그 대가를 지불 받는다. 일단 노동자에게 그 대가가 지불되고 나면, 그가 넘긴 기구는 이미 그의 것이 아니다. 그는 결코 같은 기구, 같은 수리에 대해 이중으로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만일 그가 매년 농민과 나누어가진다면, 이는 그가 매년 농민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지주는 자신의 도구 중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다. 그는 영원토록 자신의 도구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으며 영원토록 그것을 보전한다.

사실 지주가 받는 지대는 도구의 유지와 수선에 드는 비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빌린 자의 몫으로 남으며 그 도구의 보전에 관심을 가진 정도만큼만 소유자와 관련될 뿐이다. 만일 지주가 그 비용을 떠맡는 다 해도, 그는 자신이 선불한 돈을 어김없이 되돌려 받는다.

요컨대, 이 지대는 지주가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참여는 대장장이나 집수레공의 참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도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만의 미를 지니며, 이 경우 지주는 더 이상 소유자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는 가치의 교환도 노동의 교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공리公理에서 말한 것처럼, 소작료는 진정 불로소득일 뿐이며, 한편으로는 사기와 폭력에,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와 무지에도 대를 들 뿐인 강탈 행위이다. 경제학자들은 〈생산물은 생산물의 해를 만구입된다〉 라고 말한다. 이 격언은 소유권에 대한 유죄 판결이다. 소유자는 스스로도 자신의 도구에 의해서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며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으면서 생산물을 취득한다. 따라서 소유자는 기생충이거나 좀도둑이다. 따라서 소유가 권리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면, 소유는 불가능하다.

에따라 각자의 몫을〉이라는 격언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것이 바로 평등의 법칙이다.

게다가 경찰 제도나 산업 조직에 관련된 많은 난관이 여기서 제기될 수도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단 한마디로 답할 것이다. 이 모든 난관은 평등의 원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물을 것이다. 〈어떤 일은 능장을 부리면 생산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런데 사회는 몇몇 사람들의 태만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며, 노동권에 대한 존중 때문에, 이들이 거부한 생산품을 사회가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장만하지도 못한다는 말인가? 이 경우에 봉급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사회에 돌아가야 한다. 사회는 스스로의 힘으로든 아니면 대표자들에게 의해서든, 그러나 항상 일반적 평등은 침해되지 않고 나태한 자들만이 자신의 태만의 값을 치르는 방식으로, 중단된 노동을 해나갈 것이다. 게다가 사회는 뒤처진 자들에 대해 너무나 혹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사회 자체의 존속을 위해서 악폐를 감시할 권리를 갖고 있다.

사람들은 또 덧붙일 것이다. 〈모든 산업에는 지도자, 훈육자, 감독관 등등이 필요하다. 이들은 그러한 과업에 종사해야 하는가?〉 아니다, 지도하고, 감시하고, 훈육하는 것이 이들의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들이 가운데서 노동자들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하며 피선거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이든 교육이든 모든 공적직위들이 다 마찬가지이다.

이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노동을 노동자의 수에 따라 분배할 필요를 입증한다. 사회적 과업 즉 평등한 과업은 성취할 수 있게끔 모두에게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과, 다른 노동자의 생산품에 의해서가 아니면 노동자에게 지불할 수 없다는 사실은 보수의 평등을 정당화해 준다.

제 7 절 능력의 불평등은 재산의 평등의 필요조건이다.

당신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론이 사실 생시몽의 격언의 두 번째 구절을, 푸리에의 격언의 세 번째 구절을 이루고 있다.

반론은 다음과 같다: 해야 할 노동이 모두 한결같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아주 뛰어난 재능과 지력을 요구하는 것도 있으며, 이러한 우수성 자체가 값어치를 낳는다. 예술가, 학자, 시인, 정치인 등은 그들의 탁월성에 준해서만 평가받으며, 이러한 탁월성은 그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등한 관계를 파괴한다. 지식과 재능의 이 최고 권위자들 앞에서 평등의 법칙은 사

라진다. 그런데 평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인에서 소설가로, 조각가에서 채석장으로, 건축가에서 석공으로, 화학자에서 요리사 등으로 내려간다. 능력은 등급지어지고, 목표와 속屬과 종種으로 세분된다. 재능의 양극단은 중간단계의 재능들에 의해서 연결된다. 인류는 거대한 계층을 이루며, 이 계층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의해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이 생산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매긴 값어치에서 자기의 진가를 찾는다.

이러한 반론은 늘 만만찮게 보였다. 그것은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평등의 주창자들에게도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이 된다. 그것은 전자를 엄청난 오류 속에 몰아넣었으며, 후자로 하여금 믿기 어려운 정도의 어설픈 말을 내뱉게 했다. 그라쿠스 바뵈프 (G. Babeuf, 1760~1797, 프랑스의 혁명가, 평등주의 음모 혐의로 처형됨-옴진이) 는 모든 우월성을 <단호히 배격하고> 심지어는 <사회적 재앙으로 고발하기> 를 원했다. 자신이 원하는 공동체의 건물을 짓기 위해 그는 모든 시민들을 가장기가 작은 이의 수준으로 낮추었다. 우리는 무지한 유권자들이 지식의 불평등을 배척하는 것을 봐왔으며, 나로서도 언젠가 누군가가 미덕의 불평등에 맞서 들고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추방당했고,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셨으며, 에파미논다스 (Epaminondas, 기원전 418~362, 테베의 장군, 정치가-옴진이) 는 방탕하고 우둔한 대중 선동가들보다 이성과 덕망에서 앞선다는 이유로 재판정에 섰다. 맹목적이고 부에 짓눌린 대중에게 재산의 불평등이 새로운 압제자의 출현을 두려워할 이유를 주는 한, 이러한 어리석은 짓은 되풀이될 것이다.

우리 주변 아주 가까운 데서 눈에 띄는 것보다 더 기괴한 것은 없으리라. 그리고 때로는 진실 그 자체야말로 가장 그럴듯한 법이다. 장자크 루소는 <우리가 매일 보고 지나치는 것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관찰하려면 많은 철학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리고 달랑베르 (D'Alembert, 1717~1783, 프랑스의 계몽 철학자-옴진이) 는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처럼 보이는 진실도, 주의를 기울여보지 않는 한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한다> 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의 즉각적인 세 Say - 나는 두 인용문을 세에게서 빌렸다 - 는 이 인용문들을 잘 인용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장님을 비웃는 자는 안경을 끼야 할 것이며, 그를 알아본 자도 근시안에 불과하다.

놀라운 일이다! 사람들을 그토록 놀라게 한 것이 평등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평등의 조건이라니! 자연의 불평등이 평등의 조건이라니! 이 무슨 궤변인가! 내가 착각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주장을 다시 되풀이한다. 즉 능력의 불평등은 재산의 평등의 <필수> 조건이라고.

사회에서는 두 가지 사실, 즉 <기능> 과 <관계> 를 구별해야 한다.

(1) <기능> 노동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완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일상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모든 수공업자는 자기

지 않는 것이 소송과 싸움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의 논리는 정말 기묘하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주가 토지의 정당한 주인이라고 인정해 보자.

<토지는 하나의 생산 도구이다> 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이는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들이 명사를 형용사로 바꾸어서 <토지는 생산적인 도구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는 극악무도한 오류이다.

케네 Quesnay 와 옛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모든 생산은 토지에서 나온다. 반면에 스미스, 리카도, 드트라시는 생산을 노동에서 찾는다. 세를 비롯해서 그의 뒤에 나타난 경제학자들은 토지와 노동과 자본 <모두> 가 생산적이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정치경제학의 절충주의이다. 진실인즉 토지도 노동도 자본도 생산적이지 않다. 생산이란 이 세 가지 요소, 즉 모두가 필수적이거나 때때로 놓으면 불모인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한 결과이다.

사실상, 정치경제학은 생산, 분배 그리고 부와 가치의 소비를 취급한다. 그러나 어떤 가치인가? 그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생산된 가치, 즉 인간이 자신의 용도대로 원재료에 가한 변형의 결과물이자 자연의 자생적인 생산물이 아니다. 인간의 노동은 손을 대는 순간에만 이루어지며, 인간이 이러한 노고를 다 할 때에만 가치가 생산된다. 그때까지는 바다의 소금, 샘의 물, 밭의 풀, 숲의 나무 등은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부와 어부의 그물이 없는 바다는 생선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벌목꾼과 벌목꾼의 도끼가 없는 숲은 땔나무도 목재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벌초꾼이 없는 초원은 건초도 그루 풀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자연은 이용하고 생산할 거대한 원료와도 같다. 그러나 자연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낳지 못한다. 즉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자연의 생산물들은 인간에 대해서는 아직 생산물이 아니다.

자본, 도구, 기계도 역시 비생산적이다. 망치와 모루는 대장장이나 철이 없다면 아무것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방앗간은 제분업자나 곡물이 없다면 아무것도 빵지 못한다. 도구와 원료를 한꺼번에 집어 넣어 보라. 예컨대 호미와 씨앗을 기름진 땅 위에 뿌린다거나 용광로를 만들어 불을 지피고 공장문을 달아 보라. 당신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관찰은, 그의 동료들보다 뛰어난 양식을 지닌 한 경제학자가 이미 제기한 바 있다. <세는 자본에 그 속성과 어울리지 않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자본은 그 자체로는 무기력한 도구이다.> (자크 드로 J. Droz, 『정치경제학』)

마지막으로, 노동과 자본이 합쳐지더라도 잘 조합되지 못하면 여전히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 모래사막을 갈고, 하천물을 휘젓고, 활자活字를 체로 걸러 보라. 이 모든 일은 당신에게 밀도 생산도 책도가 가져다 주지 않는다. 당신의 노고는, 해로도 토스의 말에 의하면, 페르시아 대왕이 건설케한 배다리 (船橋) 를 산산조각 낸 바다를 벌주기 위해 300 만의 병사들이 막대기로 24 시간 동안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두들긴 크세르크세스 (Xerxes,

농사꾼을위해농기구를제작하는대장장이, 수레를만들어주는목수, 농사꾼의헛간을짓는석공, 그리고자신들이준비한도구로농업생산에기여하는골조공, 광주리공등은모두효용의생산자이다. 이자격으로그들은생산물의일부에대한권리를가진다.

〈의심할나위가없다. 그러나토지는마찬가지로하나의도구이며, 그사용에대해서는대가가지불되어야한다. 따라서...〉 라고세는말한다.

토지가하나의생산도구라는것에나는동의한다. 그러나그것을만든사람은누구인가? 소유자인가? 소유권의효력에의해, 땅에스미어있는이〈도덕적자질〉에의해, 땅에원기와비옥도를더해주는것은바로소유자인가? 소유자의독점이라는것은바로여기에서생긴다. 그는자신지도구를만들지도않으면서그사용료를챙기니말이다. 차라리조물주가나타나서스스로소작료를요구하고나설지어다 - 그러면우리는조물주에게지불하리라. 아니면소유자가스스로그대리인이라고자처한다면위임장을보여줄지어다.

세는〈소유자의노고는자신에게는수월한것이다. 나는이를인정한다〉 고덧붙인다.

고백은솔직하다.

〈그러나우리는소유자가없이는지낼수없다. 소유권이존재하지않는다면, 농사꾼은지주가없는밭을갈려고서로싸울것이며밭은황폐한채로남을것이다...〉

이렇게, 지주의역할은농사꾼들에게서모든것을빼앗음으로써그들을화해시키는데있다. 오, 이성이여! 오, 정의여! 오, 경제학자들의놀라운과학이여! 이들에따르면, 지주는조개하나를놓고다투고있는두명의나그네앞에서그조개를벌려서먹어버리고는이렇게관결한페랭-당탱(Perrin-Dandin, 라블레의소설, 『팡타그뤼엘』에나오는인물로아무렇게나재판을하는재판관의전형-웁긴이) 과마찬가지이다.

법정은당신들들에게조개껍데기를주는바이다.

소유권에대해이보다더형편없는말을할수있을까?

세는우리에게, 소유자가없다면땅을서로차지하려고싸울농사꾼들이어쨌서오늘날바로마찬가지의점유를위해서소유자들에맞서싸우지않는가를설명해줄것인가? 이것은명백히농부들이지주들을정당한점유자라고믿기때문이며또한가상假想의권리에대한중심이이들에게서탐욕을억누르기때문이다. 나는제 2 장에서소유없는점유만으로도사회의질서를유지하기에충분하다는사실을입증한바있다. 그런데지주가있는농부보다도주인이없는점유자를인정하는것이더어려울까? 자신을희생하면서이른바게으른자들의권리를존중하는, 이일하는자들은생산자와산업가들의자연권을침해하는것인가? 뭐라고! 농사꾼이점유를그만두어그토지에대한자신의권리를잃게된다면, 그는더욱탐욕스럽게될것이라고! 그리고불로수득금을요구하지않는다거나타인의노동에과세하

의일 *métier* 을알아야만한다. 노동자가자기의일을충분히숙지하므로여기에서는기능의담지자와기능사이에등식이성립한다.

인간사회에서기능들은서로비슷하지않으며, 따라서여러가지능력들이존재해야한다. 게다가어떤기능들은더큰지성과능력을요구하며, 따라서우수한정신과재능을갖춘사람들이존재하기마련이다. 왜냐하면성취해야할일이필연적으로수완가를부르기때문이다. 필요는관념을낳고, 이관념은생산자를만든다. 우리는우리의감각이불러일으키는것, 그리고우리의지성이스스로자문하는것외에는알지못한다. 우리는깊이깨달은것만을열렬하게원하며, 우리가잘깨달을수록더욱더잘생산하게된다.

이와같이기능은필요에의해, 필요는욕구에의해, 그리고욕구는즉각적인지각과상상에의해주어지므로, 상상을담당하는지성역시생산기능을담당하는셈이다. 따라서해야할어떠한노동도노동자보다우월하지않다. 한마디로말하자면, 기능이기능의담지자를부르는것이라할지라도, 현실에서는기능의담지자가기능에앞서존재한다.

그런데자연의경제를우려러보자. 우리가안고태어났으나우리개인들의고립된힘만으로는도저히만족시킬수없는이무수한필요들에대하여, 자연은개체에게는주어지지않은힘을집단 *espèce* 에게주지않았는가. 여기에서〈업무의전문화〉에근거한원리, 즉〈분업〉의원리가나온다.

게다가, 어떤필요들은충족되려면인간의지속적인창조를요구하는반면에, 어떤다른필요들은단한명의노력만으로도몇백만명을그것도몇세기동안이나충족시킬수있다. 예를들면, 의복과식량의필요는끝없는재생산을요구한다. 반면에, 우주체계에대한지식은단두세명의우수한사람에의해서영구히획득될수있다. 이를테면하천의영속적인흐름은우리의통상을유지하고, 우리의기계를돌린다. 그러나태양은하늘한복판에서홀로세상을비춘다. 자연은노동자나목자들을창조해내듯이그렇게많은플라톤, 베르길리우스(Vergilius, 기원전 70~19, 고대로마의시인-웁긴이), 뉴턴, 퀴비에 Cuvier 등을창조할수도있었지만그렇게하기를원치않는다. 자연이원하는바는천재의희소성을천재가만들어낸생산물들의내구력에비례시키는일이며, 동시에능력들의수를각각의충분함여부에따라조절하는일이다.

나는여기서사람들의재능과지성의차이가우리의개탄할문명에서유래하는것인지그리고사람들이오늘날〈능력의불평등〉이라고부르는것이더나은조건에서라면사실〈능력의다양성〉에다름아닌것인지를묻고자하지않는다. 최악의입장에서서, 나는내가사람들을기만하려하거나난점을회피하려한다는비난을사지않기위하여, 사람들이원하는만큼의

재능의온갖불평등이있다는사실을인정하고자한다.³ 평준화를좋아하는어떤철학자들은지력은누구나대등하며차이점은교육에서온다고주장한다. 고백컨대, 나는이러한학설에동의하지않는다. 더욱이이러한학설이설령진실이라고할지라도, 그것이주장하는것과는정반대의결론에이른다. 왜냐하면, 모든능력들이다균등하다면, 그능력들이어느정도까지힘을다하든간에 (그도그렇것이어느누구도강제당하지않으므로), 가장잘보상받아야할것은조야하고거칠며때로는매우힘겨운기능들일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이는 <각자의성취에따라각자의몹을> 이라는원리에맞지않게평등의원리에도어긋나는것이다. 그와반대로다른사회를, 즉모든종류의재능이필요의수에비례하고기능의계서제를준중하면서도생산자개개인에게자신의전문성에따라생산할것만을요구하는그러한사회를내눈앞에제시해보라. 그러면나는거기에서재산의평등을추론해낼것이다.

이것이나의두번째요점이다.

(2) <관계> 노동의요소를다루면서, 나는같은종류의생산적봉사에서사회적과업을수행하는능력이누구에게나주어져있기때문에개개인의힘의불평등이보상의불평등을낳는근거가될수없다는사실을보여주었다. 그럼에도어떤능력들은어떤종류의봉사에는전혀유용해보이지않으며, 인간의재능을돌연특정한종류의생산물에만제한한다면즉시수많은무능력이생겨날것이고, 따라서엄청난사회적불평등이 나타날것이라고말하는것은정당하다. 그러나내가구태여말하지않아도누구나재능의다양성이이러한난점을방지해준다는사실을알것이다. 이것은매우자명한진실이므로여기서더거론할필요가없다. 따라서문제는, 한가지같은기능을수행하는노동자들이서로평등하듯이기능들역시서로평등한가를입증하는일로귀착된다.

사람들은내가천재성, 지식, 용기등을거부하는것에, 달리말하자면세상사람들이감탄해마지않는모든우월성들, 위엄에대한경의, 권력과부에서오는영예따위를거부하는것에놀란다. 그러나거부하는것은내가아니다. 그것을거부하는것은바로경제이고, 정의이며, 자유이다. 자유! 이논의에서처음으로나는그이름을일깨운다. 자유로하여금스스로변론에나서게하고자신의승리를찾도록하자.

모든거래는생산물이나용역의교환을목적으로하므로 <상행위> 로규정할수있다.

³ 나는여기서, 조건들의불평등을정당화하기위해사람들이어떤식으로굳이특정인의성향과재능의천박함을들먹거리는지를떠올리지는않겠다. 우리가많은사람들에게서찾아볼수있는, 이마음과정신의수치스러운비속성은, 소유로말미암아그들이내던져진빈곤과비천에서가 아니라면어디에서오겠는가? 인간성을거세하는것은바로소유이다. 그런데바로이소유가인간을매마른고목이요, 열매맺지못하는수목이라고비난하고있는것이다.

맬서스 Malthus 는소작료의원천은토지를경작하는사람들을먹여살리는데필요한양보다더많은식량을제공하는토지의능력에있다고생각한다. 나로서는맬서스에게왜성공적인노동이게으른자에게그생산의결과물에참여할권리를부여해주어야하는가를묻고싶다.

그러나맬서스님은자신이말한사실을설명하는데서착각하고있다. 물론토지는, 만일 <경작자> 라는말이소작인만을뜻한다면, 그것을경작하는사람들을먹여살리는데필요한양보다더많은식량을제공할능력이있다. 재단사는몸소입을웃보다더많은웃을만들며, 가구공은자기에게필요한것보다더많은가구를만든다. 그러나모든직업들이서로를전제로하고서로를지탱하는것이므로, 그결과농사꾼만이아니라온갖직업인들, 심지어의사나교사에이르기까지 <토지의경작자> 로말해지며또그래야만한다. 맬서스가소작료에적용한원칙은상업의원칙이다. 그런데상업의기본법칙은생산물의등가교환이므로, 이등가성을해치는것은모두법칙을위배하는것이다. 맬서스의그릇된평가는정정되어야한다.

스미스 Smith 를논평하면서부캐넌 Buchanam 은소작료를독점의결과로간주했으며노동만이생산적이라고주장했다. 그래서그는이러한독점이없었다면생산물은값이더싸질것이라고주장했으며나아가소작료의근거를민법에서만찾았다. 이러한견해는민법을소유권의토대로보는견해의논리적귀결이다. 그러면성문화된이성이라할민법이왜이러한독점을옹인했는가? 독점을말하는자는필연적으로정의를배제한다. 그런데소작료가법률에의해공인된독점이라고말하는것은불의가정의를자신의원리로한다고말하는것과마찬가지로모순된이야기이다.

세는독점자란 <상품에조금도효용을더하지않는자> 이기때문에소유자는결코독점자가될수없다고부캐넌에게답한다.

소작인의생산물은얼마만큼의효용을소유자에게서받는가? 소유자는발을갈고, 씨를뿌리고, 거두어들이고, 낫으로베고, 키질을하고, 잡초를뽑았는가? 바로이와같은작업을통해소작인과그의일꾼들은재생산을위해그들이소비하는원료들의효용을높이지않았는가.

<지주는토지라는자신의생산도구로상품의효용성을높인다. 이도구는밀을구성하는원료들을어떤상태로받아들여다른상태로돌려준다. 땅의활동은화학작용과같은것이다. 이작용에의해서밀이라는원료는스스로해체됨으로써증대되는식으로일정한변형을겪는다. 따라서땅은효용의생산자이다. 그리고그것 (땅?) 이그소유자에게돌아같이윤이나소작료의형태로그효용을지불받고자할때, 이는소비자가지불하는것에대한다가소비자에게아무것도주지않고이루어지는것은아니다. 그것은생산된효용을소비자에게주는바, 바로이효용을생산하기때문에땅은노동과마찬가지로생산적인것이다.>

이모든것을명확히밝혀보자.

세는말한다. <농민이밀재배에드는원료들을가공하는데사용하는 도구들중에는우리가밭이라고부르는큰도구가있다. 밭의소유자가아니라소작인이어나지않는다면, 농민은이도구를생산에서사용한대가를소유자에게지불한다. 소작인은그비용을구매자에의해보상받고, 그구매자는다른구매자에의해보상받는식으로중국에는생산물이소비자에게이른다. 그러면소비자는애초의지불금에더해서생산물이자기손에들어오기까지든일체의지불금을다갚는셈이다.>

생산물이소비자에게도달하기까지연달아불어난지불금은제쳐두고, 여기서우리는최초의지불금, 소작인이소유자에게지불하는지대만을다루도록하자. 소유자가이지대를자신에게지불하도록요구하는근거는무엇인가를물어보자.

리카도 Ricardo, 매컬록 Maccullock, 밀 Mill 에따르면, 본래의미에서소작료란 <가장비옥한토지의생산물을그보다열악한토지의생산물과비교할때의초과분> 에지나지않는다. 따라서소작제는인구증가로말미암아열등지의경작에호소하지않을수없을때에야발생하기시작한다는것이다.

이주장에서조금이라도어떤의미를찾아보기는힘들다. 토지의비옥도차이가어떻게토지에대한권리를가져올수있는가? <부식토> 의다채로움이어떻게입법과정치의원리를낳는가? 이형이상학은내게너무나미묘하고심원해서, 생각하면할수록혼란만을더해줄뿐이다. 면적이같은토지 A 와 B 가있다고하자. A 는주민 1 만명을먹여살릴수있는반면에, B 는 9,000 명만을먹여살릴수있다. 인구증대로인해 A 에사는주민들이 B 를경작하지않을수없게되었을때, A 땅의지주들은 A 땅을빌린소작인들에게 10 대 9 의비율로산출된지대를받는다. 내가생각건대, 리카도, 매컬록, 밀등이말한바가바로이것이다. 그러나만일토지 A 는감당할수있는만큼만의주민을먹여살리고있다면, 즉 A 토지의주민들이인구수를고려해볼때먹고살기에꼭필요한것만을가지고있다면, 그들은어떻게소작료를지불할수있는가?

만일이들이토지의차이가소작료의 <원인> 이라고말한것이아니라단지그 <계기> 였다고말한것이라면, 우리는이단순한관찰로부터귀중한교훈을얻는셈이다. 즉그것은소작료의근거는평등의욕구에그원리를두고있으리라는사실이다. 사실, 좋은땅을차지할권리가누구에게나평등하다면, 그누구도반대급부없이열악한땅을경작하도록강제될수없다. 따라서리카도, 매컬록, 밀에따르면, 소작료는이윤과노고를보상해줄요량으로생긴일종의손해보상금인셈이다. 이실제적인평등의기제는좋지않은것이라는점을인정하자. 하지만그의도는나무랄데없는것이있다. 리카도, 매컬록, 밀은이로부터소유권에유리한어떤논거를찾아낼수있었을까? 이들의이론은그들자신과어긋나는것이며그들의목을죄는것이다.

상거래 commerce 를말하는자는동등한가치의교환을말한다. 그도그런것이가치가동등하지않고손해를본계약당사자가그사실을알아차린다면, 그는교환에동의하지않을것이며상거래란이루어질수없기때문이다.

상거래는자유로운사람들사이에서만이루어진다. 물론강압과사기에의해서거래가이루어질수도있지만거기에는상거래란존재하지않는다.

자유롭다는것은이성과능력을향유하며열정에는이멸지않고두려움에강제되거나방해받지않으며허위에기만당하지않는다는것을말한다.

그런데어떤교환에서나계약당사자들중한쪽이다른한쪽에손해를끼치고서는아무것도얻을수없다는일종의도덕적의무가존재한다. 즉상거래가정당하고진실되기위해서는모든불평등에서벗어나야만한다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상거래의첫번째조건이다. 두번째조건은상거래가자발적이어야한다는것이다. 즉당사자들끼리자유롭고충분한이해를가지고거래해야한다.

따라서나는상거래또는교환을일종의사회적행위로정의한다.

주머니칼을얻기위해자기마누라를팔고, 유리알을얻기위해아이들을팔며, 심지어술한병을얻기위해자기몸을파는흑인은자유롭지않다. 그가거래하는인육상인은그와한동아리가아니라그의적이다.

땀한조각을얻기위해온몸을바쳐일하고, 마구간에서자기위해궁궐을짓고, 누더기를걸치기위해아주비싼천을짜고, 아무것도없이지내기위해모든것을생산하는, 문명사회의노동자들은자유롭지않다. 그가몸바쳐일하는주인은임금과용역의교환에의해그와한동아리가되는것이아니라그의적이다.

사랑으로조국에봉사하는것이아니라두려움에끌려조국에봉사하는병사는자유롭지않다. 그의동지들, 그의상관들, 장관또는군사재판기구들, 이모두가그의적이다.

토지를빌린농민, 자본을빌린실업가, 통행세, 염세鹽稅, 특허세, 영업세, 인두세, 동산세등등을바치는납세자, 그리고이들을대표해서표결하는대의원, 이들모두는지성도자신의행동에대한재량도갖고있지않다. 그들의적은바로소유자들, 자본가들그리고정부이다.

사람들에게자유를주고그들의지성에불을 밝혀서자신들이맺은계약의의미를알도록하라. 그러면당신은재능과지식의우월성에조금도구애됨이없이가장완벽한평등이그들사이의교환을주재하는것을볼수있다. 그리고당신은상업적사고의범주에서는, 즉사회의영역에서는우월성이란단어가아무의미도갖지못함을알수있을것이다.

호메로스가내게자신이쓴시를읽어준다고하자. 나는이송고한천재에게귀를기울인다. 단순한목자요천한일꾼인나는그에비하면아무것도아니다. 사실, 작품과작품을비교한다면, 『일리아드』 에견주어볼때내

가만든치즈나내가만든누에콩이무슨가치가있겠는가? 그러나그의불후의시를대가로호메로스가내게서가진것모두를빼앗아가고나를노예로삼으려한다면, 나는그의노래를듣는즐거움을포기하고그를몰리칠것이다. 나는『일리아드』를안들으면그만이고, 정필요하다면『아이네이스』를기다릴수있다. 반면에호메로스는내가만든생산물없이단하루도버틸수없다. 그러므로호메로스로하여금내가제공해야하는아주보잘것없는것이라도받도록하자. 그리고나는그의시를통해배우고, 용기를얻고, 위안을받도록하자.

당신은외칠것이다: 뭐라고! 인간과신을노래하는자의대가가이것이라고! 수치와고통이따르는은전恩典이라니! 이무슨야만스러운관용인가! 소리치지마시기바라오. 소유는시인을크로에수스(Croesus, 기원전 6 세기리디아의왕, 전설적인부호-윙간이)로만들기도하고거지로만들기도한다. 평등만이시인에게영예를부여할줄알고, 갈채를보낼줄안다. 그렇다면무엇이문제인가? 노래하는자의권리와듣는자의무를규정하는일이다. 그런데이문제를해결하는데아주중요한한가지사항을유의하자. 즉과는자와사는자, 두당사자는모두자유로우며그순간부터각자의권리주장은아무효과가없다는사실, 그리고한쪽이자신의시에대해다른한쪽이자신의은전에대해가질수있는올바른또는과장된의견은계약조건에아무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사실을말이다. 우리는판가를내리는기준을재능에대한국려가아니라생산물에대한국려에두어야한다.

아킬레우스(『일리아드』에나오는그리스의영웅-윙간이)의시인이마땅한보수를얻기위해서는우선자신을상대방에게납득시키는일부터시작하지않으면안된다. 그러고나서야그의시와얼마간의급료사이의교환은자유로운행위이자동시에정당한행위가될것이다. 즉시인의급료는그의생산물과동일해질것이다. 그렇다면이생산물의가치는무엇인가?

우선나는『일리아드』즉공정하게보상되어야할이걸작이실제로더할나위없이무한한가치를갖고있다고전제한다. 자유의사에따라그시를구입할수있는위치에있는공중이그시를사기를원치않는다고하자. 그러면그시는교환될수없으며, 그내재적가치는조금도줄지않는다고하더라도그교환가치즉시의생산적효용성은영零으로줄어들것이다. 따라서우리는한편의무한無限과다른한편의무無사이에서양쪽모두에대등한거리를두면서지불해야할임금의액수를정하지않으면안된다. 그도그렇것이모든권리와모든자유가대등하게존중되어야하기때문이다. 달리말하자면결정해야하는것은팔린물건의내재적가치가아니라상대적가치인것이다. 이문제는단순해진다. 즉이상대적가치란무엇인가? 『일리아드』와같은시의저자에게돌아가야할마땅한보수는얼마인가?

이문제는정치경제학이학문으로정립된후에해결해야할첫번째문제였다. 그런데정치경제학은그문제를풀지못했을뿐만아니라해결불가능

불로수득은빌린자에게는완전한손실인바, 이는〈사물은분해되어소멸한다(res perit solventi)〉라는라틴어가웅변적으로말해준다.

3. 불로수득은국외자에게맞서발생하는것과마찬가지로소유자에게맞서발생한다. 사물의지배자는소유자로서의자신과점유자로서의자신을구별한다. 따라서그는자신의재산을스스로이용한대가로, 그가제3자에게서받을수있는것과동일한이용료를자기자신에게부과하는셈이다. 따라서자본은그것을빌린차용인이나출자받은자에게서와마찬가지로자본가자신에게서도이자를낳는다. 실제로, 내아파트의집세 500 프랑을받는대신에내가직접그곳에살며누린다면, 나는내가포기한만큼의집세에대해나자신에대한채무자가되는셈이다. 이원리는거래에서널리인정되고있으며, 경제학자들에게는하나의공리로받아들여지고있다. 따라서은전자금의소유자라는유리한위치에있는산업가들은아무에게도이자를지불할의무가없는데도불구하고, 자신의불급및경비와함께자본의이자마저도공제한후에비로소이익을계산한다. 마찬가지로이유로, 대금업자들은자기수중에가능한한돈을남겨두려고하지않는다. 왜냐하면자본에는필연적으로이자따르는만큼, 만일이이자누군가에의해사용되지않는다면결국자본금에서빠져나와그만큼자본이줄기때문이다. 이와같이불로수득권에의해자본은스스로에게상처를입힌다. 파피니아누스(Papinianus, 고대로마의법률학자-윙간이)가다음과같은우아하고힘찬문구로표현한내용이바로이것이다: 〈이자는충액을잡아먹는다(Foenus mordet solidum)〉. 여기서너무자주라틴어로이야기하는것을용서해주기바란다. 이는일찍이고리대금업에가장능했던국민에게바치는경의인것이다.

첫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그것은 무無에대해무엇인가를요구하기때문이다.

이명제에대한검토는, 경제학자들이그토록논쟁을일삼았던소작료의기원에대한검토와매한가지이다. 대다수경제학자들이쓴글을읽을때면, 나는추악함과물상식이서로겨루고있는이명청한구절들로인해경멸과분노가뒤섞인감정을억누를수없다. 잔인한결말만을빼버리면, 이는달에사는코끼리이야기와마찬가지이리라. 도둑질, 공갈, 횡령에지나지않고또그럴수밖에없는것에대해합리적이고적법한기원을찾으려하는것은실로소유자가내보이는어리석음의절정이며, 충분히계발될수있을정신이편벽한이기주의에빠져든최고의주술이다.

지팡이로 무장한 프롤레타리아가 대적하고 나서기 전까지 이 괴물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쓰여 있지 아니한가.

추론 | 1. 불로수득의 양은 사물에 비례한다. 이자율이 얼마든 간에, 즉 이자율을 3%, 5%, 10% 로 올리든, 아니면 1/2, 1/4, 1/10 로 낮추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자율 증가의 법칙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 법칙이란 다 음과 같은 것이다.

화폐가치로 평가된 모든 자본은 100 을 비율로 하는 산술급수의 한 항으로, 그리고 이 자본이 가져오는 소득은 이자율을 비율로 하는 또 다른 산술 급수의 대응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본금 500 프랑은 비율을 100 으로 하는 산술급수의 다섯 번째 항이 될 것이며, 3% 의 이자율에 따 르는 그 소득은 비율을 3 으로 하는 산술급수의 다섯 번째 항이 된다.

100 200 300 400 500

3 6 9 12 15

이런 종류의 대수표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아주 진기한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를 얻을 수 있다. 소유자들이 아주 높은 등급까지 계산해서 자기 집에 걸 어놓은 이 대수표는 우리에게 놀라움에 놀라움을 더해줄 것이다.

불로수득권의 <대수> 이론에 의하면, 소득과 과한 재산은 <그단 위수를 100 으로 나누어 이자율을 곱한 총액과 같은 수치> 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 만 프랑으로 평가되고 5% 의 비율로 임대된 가옥은 다음 식 $(100,000 \times 5 \div 100 = 5,000)$ 에 의해 5,000 프랑의 소득을 가져온 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2.5% 비율로 3,000 프랑인 토지는 다음 식 $(3,000 \times 100 \div 2.5 = 120,000)$ 에 따르면 12 만 프랑의 가치가 된다.

첫 번째 경우에 이자의 증가를 나타내는 급수의 비율은 5 이며, 두 번째 경우에 2.5 이다.

<비평> 소작료, 지대, 이자 등의 이름으로 알려진 불로수득금은 1 년 단위로 지불된다. 집세는 매주, 매월, 매년 단위로 지불된다. 이윤과 이익 은 교환이 이루어질 때마다 생긴다. 따라서 불로수득금은 시간에 비례할 뿐 만 아니라 사물에 비례한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고리대는 암과 같이 증식한다 (faenus serpit sicut cancer)> 라고 말했던 이유이다.

2. 보유자에 의해 소유자에게 지불되는 불로수득금은 보유자에게는 완전한 손실이다. 왜냐하면 만약 소유자가 그가 받은 불로수득에 대한 대가 로, 그가 보유자에게 허용해 준 것이 상의 그 무엇을 줘야 한다면, 그의 소유권은 완전할 수 없으며 그는 <최상의 법으로 (jure optimo)> , <완 전한 법으로 (jure perfecto)>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실질 적으로 소유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로수득권에 의해서, 선점 을 허용한 대가로 선점자의 손에서 소유자의 손으로 넘어간 모든 것은 소유 자에게는 영원히 획득되는 것이고, 선점자에게는 완전한 손실이 되는 것이 다. 이제 증여, 자선, 노동에 의한 임금, 인도한 상품의 가격 등에 의해서가 아니면 그 무엇도 선점자에게 되돌아올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다고 선언했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물건의 상대적 가치 즉 교환 가치는 절대적 기준으로 정해 질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세는 말한다. <한 물건의 가치는 확정된 양을 가지고 있으나 주어 진 순간에만 그러할 뿐이다. 그것의 본성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아무것도 그것을 항구적으로 고정시킬 수 없다. 물건의 가치는 욕구와 생산 수단들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욕구와 생산 수단들은 매 순간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무쌍함이 정치경제학의 제반 현상을 복잡하게 만들며, 때로는 관찰하고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 나는 여기에 어 떤 치료책도 가져다 줄 수 없다. 사물의 본성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세는 다른 곳에서 도둑이 해서 말하고 있다. 가치는 효용에 토대를 두 고 있고, 효용은 온전히 우리의 필요, 번덕, 기본 따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치는 의견만큼이나 가변적이라고. 그런데 정치경제학은 가치 및 그 가 치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에 대한 과학이다. 교환 가치가 절대적인 방 식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정치경제학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그것이 어떻게 과학일 수 있는가? 경제학자 두 사람이 서로 마주쳐 다 보면서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떤 면에서 이들이 감히 형이상학자 들과 심리학자들을 비웃을 수 있는가? 뭐라고! 데카르트는 어떤 어리석 은 이는 철학은 과학이라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어떤 부동의 토대 (aliquid inconcussum) 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으며 고지식하게도 그것을 찾 았다. 그런데 경제학의 위대하고도 위대한 신 헤르메스 Hermes 인 세는 정 치경제학은 과학이라는 이 엄숙한 주제를 부연 설명하는 데 책의 반을 할애 하고 나서, 이 과학은 그 대상을 규정할 수 없다고 용기 있게 단언한다. 이것 은 정치경제학은 원리도 토대도 없다는 말과 매한가지 아닌가! 따라서 고 명하신 세는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으며 그가 말하려는 문제를 모 르고 있다.

세가 든 예는 나름대로 결실을 맺었다. 정치경제학은 그것이 현재 다 다 른 지점에서 불때 존재론과 유사하다. 결과와 원인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 것도 설명하지 못하며 아무 결론도 맺지 못한다. 경 제법칙들이라는 이름으로 장식한 것은 몇 가지 혼해 빠진 일반론으로 환원 된다. 이 일반론에 걸맞는 부리는 문체와 전문 용어로 옷을 입히면 무언가 심오 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사회 문제들에 대해 내 린 해결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들의 땀과 나홀린 작품들이 가끔 어리석은 것에서 벗어나 다고 할지라도 곧 우스꽝스러운 것에 빠지고 만다 는 사실이다. 지난 25 년 동안 정치경제학은 마치 두터운 안개처럼 프랑스 를 뒤덮으면서 정신의 비약을 가로막고 자유를 짓누르고 있다.

산업의 모든 창조물은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따라서 정당하고 참된 시장 가치를 갖는가? - 그렇다.

인간의 모든 생산물은 인간의 다른 생산물과 교환될 수 있는가? - 역시 그렇다.

얼마만큼의 몫이나 막대한 결례와 맞먹는가?

우리가 이 엄청난 문제를 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난 6,000 년 동안 인류가 찾던 사회체제의 열쇠를 쥔 수 있으리라. 이 문제 앞에서 경제학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선다. 읽고 쓸 줄 모르는 농민은 서슴없이 답할 것이다. 같은 시간 안에 같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만큼이라고.

따라서 어떤 물건의 절대적 가치는 그 물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다. 모래속에서 주워 올리는 다이아몬드는 얼마나 가치가 나가는가? - 전혀 가치가 없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생산품이 아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다듬고 세공한다면 얼마나 가치가 나을까? - 직공에게 드는 시간과 비용만큼이다. -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왜 그리도 비싼가? -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가장 희소한 물건들도 가장 흔한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그것을 얻어 향유할 수 있도록 교환과 분배를 규제해야만 한다. - 그러면 의견의 가치는 무엇인가? - 거짓말, 불의, 도둑질이다.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합의가 이끌어 내기가 쉬워진다. 우리가 무한한 가치와 무가치 사이에서 찾는 중간항이 모든 생산물에 대하여 그것의 생산에 들어간 시간의 비용의 합계로 표현된다면, 원작자가 30 년의 노동과 여행이니 책자 등등의 비용으로 1 만 프랑을 들인 시詩 한 편에 대해서 노동자의 평균적 봉급 30 년치와 1 만 프랑의 보상을 지불해야만 한다. 그 총액을 5 만 프랑이라고 가정하자. 이 걸작을 손에 넣은 사회가 100 만 명을 수용하고 있다면, 나의 부담액은 5 샴틴셈이다.

이것은 몇 가지의 견을 일깨운다.

(1) 같은 생산물이라도 시기와 장소에 따라 투자된 시간과 경비가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다. 이 점에서 가치의 양이 변동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은, 가치 변동의 원인들 안에 생산수단, 취향, 번덕, 기호, 의견 따위를 마구 뒤섞어 놓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변동이 아니다. 요컨대, 어떤 물건의 참된 가치는 화폐적 표현에서는 변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대수적 표현에서는 불변인 것이다.

(2) 수요를 가진 모든 생산물은 그것에 들어간 시간과 경비만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지불되어야 한다. 수요가 없는 모든 생산물은 생산자의 손실이며 상업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3) 평가의 원리에 대한 무지, 또 대개의 경우 그 원리를 적용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은 상업상의 기관의 원천이며 재산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원인들 중 하나이다.

(4) 어떤 산업들, 어떤 생산물들의 값을 지불하는 경우, 재능이 희소할수록, 생산물이 비쌀수록, 예술과 과학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그만큼 인구가 더 많은 사회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자면, 50 명의 농사꾼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학교 선생 한 명을 부양할 수 있다면, 구두수선공 한 명에는 100 명

불로수득권을 확립하는 절차는 신비롭고 초자연적이기까지 하다. 옛날에 비교단에 입회하는 의식 절차가 그러했듯이 소유자의 서임에는 대단한 예식이 따른다. 그것은 첫째로, 사물의 <축성 consécration> 이다. 축성은 누구나 소유자의 서명이 적힌 허가장을 얻어 그의 물건을 사용하고 자 할 때 마다 그에 합당한 공물을 소유자에게 바쳐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파문 anathème> 인데, 이는 위에서 말한 경우 외에, 소유자가 부재하는 경우라도 그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을 금지하는 것이며, 소유를 침탈한 모든 자들을 신성모독, 불명예, 벌금형 따위에 처하고 세속 권력에 인도한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봉헌 dédicace> 인데, 이에 의해서 소유자 즉 사물의 수호신으로 정해진 수호성인은 신이 성소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거기에 거하게 된다. 이러한 봉헌 효과에 의해서, 사물의 실체가 말하자면 소유자의 인격으로 전화되며, 이 인격체가 그 사물의 형질과 외양 아래 자리잡게 된다.

법률학자들이 내세우는 순수한 교리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툴리에 Toullier 는 말한다. <소유란 사물에 내재하는 '도덕적 특질' 이자, 그 사물을 소유자와 결부시켜 주며 그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끊어질 수 없는 '실재적 인 관계' 이다.> 로크는 신이 질료에 <지력> 을 불어 넣지 않았을까 하고 정중하게 의문을 표명했다. 툴리에는 소유자가 질료에 <도덕성> 을 부여한다고 확언한다. 소유자를 신격화하는데 달리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는 과찬이 아니다.

<소유는 불로수득의 권리이다.> 즉 그것은 노동하지 않고 생산하는 능력이다. 그런데 노동하지 않고 생산한다는 것은 무로부터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 한마디로 말하자면 창조하는 것이다. 이는 질료에도 덕성을 부여하는 일보다는 덜 힘든 일일 터이다. 따라서 법률학자들이 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은 성서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것도 일리가 있는 일이다. <내가 말했다시피, 당신들은 신이시며, 모두 지고 하신 그분의 아드님들이십니다.>

<소유는 불로수득의 권리이다.> 우리에게 이 공리는 『묵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이름과 같은 것인바, 이 이름 안에 그 짐승의 온갖 신비가 감추어져 있다. 이 이름의 신비를 푸는 자는 모든 예언의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짐승을 물리 칠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렇다! 우리가 소유라는 스펅크스를 무찌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공리를 완벽하게 해명 함에 의해서이다. 이 명약과 화한 사실, 즉 <불로수득권> 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이 노획한 뱀의 꿈틀대는 꼬리 안에까지 추적해 들어갈 것이고, 이 가공할 춘풍, 벗어 던진 거대한 허물 자루는 적에게 내맡기면서도 그 무수한 흡반 吸盤이 달린 머리는 늘 가장 강한 자의 칼도 피해 내는 이 괴물이 내보이는 치명적인 회감기의 횡수를 셈할 것이다. 괴물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용기 외에 그 무엇이 필요하다. 마법의

소비할권리, 파괴할권리, 사용하고남용할권리등을다표현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이모든권리는소유의다양한작용들이므로우리는그것들을각각고찰해볼수도있지만여기서는단한가지만, 즉불로수득(不勞收得, aubaine : aubaine 은원래옛날에귀화하지않는외지인이죽을때남긴재산을해당지역의영주가차지하는것을뜻했으나, 오늘날에는힘안들이고부당하게취득한모든재산을뜻한다. 여기서는불로수득으로옳긴다-옳긴이) 의권리만을다루어보도록하자.

2. 이명제는보편적으로받아들여지는것이다. 이명제를부인하는자는누구나사실들자체를부인하는셈이며, 그즉시로보편적관행과어긋나게된다.

3. 이명제는명약관화하다. 그도그럴것이이명제가표명하는사실은늘현실적이든임의적이든소유를동반하기마련이며, 소유가스스로를나타내고확립하며주장하는것은특히이사실의해사이기때문이다.

4. 마지막으로, 이명제를부인하는것은자체모순이다. 불로수득권은실질적으로소유에내재하는것이며소유와아주긴밀하게결부되어있는만큼, 불로수득권이존재하지않는곳에서는소유란무의미하다.

〈비평〉 불로수득은그것을낳은사물에따라여러가지이름을지닌다. 토지에대해서는〈소작료 ferme〉, 가옥및가구에대해서는〈임대료 loyer〉, 영구대여에대해서는〈지대 rente〉, 금전에대해서는〈이자 intérêt〉, 교환에대해서는〈이익 bénéfice〉, 〈벌이 gain〉, 〈이윤 profit〉 - 세가지를임금, 즉노동에대한정당한대가와혼동해서는안된다 - 등이다.

불로수득은일종의국왕특권, 즉유형또는무형의신서信誓에서유래하는것으로, 그명목적이고관념적인선점에근거해서소유자의권한에속한다. 소유자의표찰이물건에붙는다. 이것만으로도그누구도〈소유자의〉허가없이이물건을선점할수없도록하기에충분하다.

소유자는자신의물건을선점할권리를무상으로양도할수있으나통상적으로는매각한다. 실제로이매각은사취이자형명이다. 그러나소유권한이라는법적허구에의해이러한매각은, 그이유를알지도못하면서다른경우에서라면엄중히처벌받지만, 소유자에게는이윤과정의의원천이된다.

소유자가자신의권리를제공하는대신요구하는몫은금전적표식으로, 아니면예상되는생산물에대한현물배당몫으로표현된다. 따라서소유자는불로수득권의덕에거두기는하나받을갈지않고, 수확은챙기나경작하지는않으며, 소비는하나생산하지는않고, 향유하지만아무일도하지않는다. 소유의신들은『시편』작가(다윗을가리킴-옳긴이)의이상들과는전혀다르다. 후자는손이있으나아무것도만지지않는다. 반면에전자는〈손이있으므로만진다(manus habent et palpabunt)〉.

이, 편자공한명에는 150 명이, 재단공한명에는 200 명등등이필요하다. 농사꾼의수가 1,000 명, 1 만명, 10 만명등으로늘어난다면, 그수가증가하는데비례해서우선적으로필요한공무원들의수도같은비율로늘어야만한다. 따라서가장높은직능들은가장힘있는사회들에서만가능하게된다.⁴ 바로이점에서만능력의차이가나타난다. 천재성과그영예의표지는거대한민족에게서만탄생하고또발전할수있다. 그러나천재의이생리적조건은그의사회적권리에는아무것도보태지않는다. 그렇기는커녕, 천재가뒤늦게나타난다는사실은경제적, 시민적질서에서는가장높은지성도부의평등에, 즉지성보다앞섰고지성이란그것의꼭대기장식일뿐인바로이평등에종속된다는것을보여준다.

이러한사실은우리의자존심을건드리는일이지만엄연한진실이다. 여기서심리학이사회경제학을뒷받침해주고, 물질적보상과재능사이에는어떤공통의척도도존재하지않으며이런조건아래서모든생산자들의조건은평등하다는점을, 따라서이생산자들과온갖부류의재산들사이의비교는불가능하다는점을우리에게일깨워준다.

사실상, 사람의손을거치는모든작품은그작품에들어가는원료와비교할때무한한값어치를갖고있다. 이점에서, 나막신한켈레와호두나무줄기사이의차이는스코파스(Scopas, 기원전 5 세기그리스의조각가-옳긴이) 의조각상과대리석한덩어리사이의차이만큼크다. 뉴턴같은이의정신이그가거리와질량과운행을측정하는데사용하는무미건조한지구의地球儀보다우월한바로그만큼, 가장단순한수공업자의재능은그가사용하는재료보다우월하다. 당신은재능과천재성에대해그에상응하는영예와부를요구한다. 나에게서촌부로서의재능을평가해다오. 그러면나는당신에게서호메로스의재능을평가하리다. 지성을평가할수있는그무엇이있다면, 그것은바로지성그자체이다. 다양한여러 유형의생산자들이감탄과찬미의언사를서로주고받을때생기는일이바로이것이다. 그러나서로의욕구를충족시킬목적으로생산물을교환하는일은어떠한가? 이러한교환은재능이나천재성에대한고려와는관계없이경제적추산아래서만이루어지는일이다. 그교환을규제하는법칙은막연하고무의미한감탄이아니라차변(借邊, le doit) 과대변(貸邊, l'avoir) 사이의정당한균형, 즉상업적인산술에서부터나오는것이다.

그런데사고파는자유가임금의평등에대한유일한근거이고, 사회는권리와는아무런관련이없는어떤타성적인힘에서만재능의우월성에맞선도피처를구할수있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있다. 이들의오해를풀어주기위해서나는왜모든능력들에대해같은보수가지불되어야하는지를, 그

⁴ 철학교수한명에게봉급을지불하는데얼마나많은시민이필요한가? 3,500 만명이다. 경제학자한명에게는? 20 억명이다. 그러면학자도예술가도철학자도경제학자도아닌, 그저신변잡기소설을쓰는글쟁이에게는? 한사람도필요치않다.

리고왜임금의차이가부당한지를설명할것이다. 나는사회적수준에순응할의무가재능의내재적속성이라는점을보여줄것이며, 천재의우월성이라는바로그토대위에재산의평등이라는원칙을세울것이다. 앞에서나는모든능력들사이에는임금이균등해야한다는점을소극적인차원에서지켰다. 이제나는그점에대한직접적이고적극적인이유를제시할것이다.

우선경제학자의말을들어보자. 그가어떻게추론하는지를, 그리고정당하게생각할줄아는지를보는것은항상즐거운일이다. 게다가경제학자가없었다면, 웃음을자아내는그의실수와눈이휘둥그레질추론이없었다면, 우리는아무것도알지못했을것이다. 평등은, 경제학자에게는대단히역겨운것이라할지라도, 사실정치경제학에서많은것을얻고있다.

〈어느의사(원문에는변호사라고되어있으나이역시좋은예가아니다)의가족이그의교육에 4 만프랑을들었다고했을때, 이금액은그의머리에투여된자본이라고할수있다. 투하된자본이앞으로매년 4,000 프랑정도의수입을가져올것으로기대해보자. 의사가 3 만프랑을번다면, 따라서자연이부여한그의개인적능력에서나오는수입의몫은 2 만 6,000 프랑인셈이다. 이러한계산에따른다면, 이자율을 10% 로할경우, 자연적자본은 26 만프랑이된다. 그리고그의가족이그에게학비로제공한것은 4 만프랑이다. 이두가지자본금을합한것이바로그의재산이다.〉(세, 『경제학강의』 등).

세는의사의재산을두부분으로나눈다. 하나는의사의교육에지불된자본이고, 다른한나는그의개인적재능에따른것이다. 이러한구분은정당하다. 이구분은사물의이치에맞으며보편적으로받아들여진다. 이구분은또한능력의불평등에대한중요한논증의대전제구실을한다. 나는이대전제를아무런유보조건없이받아들인다. 이제그결과를보자.

(1) 세는의사의교육에들어난 4 만프랑을그의대변쪽에집어넣고있다. 하지만이 4 만프랑은그의차변쪽에넣어야한다. 왜냐하면이지출은비록그를위해쓰이기는했지만그가쓴것이아니며따라서이 4 만프랑을자기것으로하기는커녕의사는그것을자기의생산물에서공제하고빚진자에게갚아야한다. 게다가세는자본이생산적이라는그릇된원리에의거해서추론하다보니, 그것을 〈상환〉 의대상이아니라 〈소득〉 의원천으로보고있다는점을주목하자. 이렇게, 재능의교육에들어난지출은바로그재능이갚아야만하는빚인것이다. 살아있다는바로그하나의사실만으로도그는자신이자라는데들여간것만큼의액수에대한채무자이다. 이는너무도자명하고논박의여지가없는사실이므로, 만일어느가정에서한아이의교육에그의형제들의교육보다 2 배또는 3 배의비용이들었다면, 형제들은상속재산을나누기전에비례적인자기몫을가질권리가있다. 재산이미성년자들의이름으로관리되고있는경우라도, 이것은후견권의문제에서어떠한어려움도따르지않는다.

우리자신도모르는사이에심지어실현불가능하다고우리 스스로확언하는바로그순간에도이조건의평등이실현되고있다는사실을, 우리가찾아나서거나원하지않았는데도도처에서조건의평등을세우게될순간이다가오고있다는사실을, 그리고평등과더불어, 평등안에서만, 평등의의해서만, 자연과진리에따른정치질서가수립될것이라는사실을우리는마침내깨닫게될것이다.

인간의열정이란얼마나맹목적이고완고한가를이야기하고자할때사람들은, 만일진리를부정하는데에무엇인가얻을것이있기만하다면누구나서슴지않고산술적진리의확실성을뒤흔들어놓을방책을찾을것이라고말하곤한다. 지금이바로그런진기한경험을할기회이다. 나는소유를그고유한경구들에의해서가아니라산술에의거해서공격한다. 그러니소유자들로하여금나의계산을검증할준비를하도록하자. 왜냐하면그들에게는안된일이지만나의계산이옳다면, 그들이패한것이니말이다.

소유의불가능성을증명하면서나는소유의부당성을증명할수있다. 요컨대,

〈정당〉 한것은하물며 〈유익〉 하다.

〈유익〉 한것은하물며 〈진실〉 하다.

〈진실〉 한것은하물며 〈가능〉 하다.

결과적으로, 가능한것에서나온것은바로그럼으로써진실, 유용성, 정당함에서나온것이다. 따라서선험적으로어느사물의정당성여부를그불가능성에의해판단할수있다. 만일이사물이절대적으로불가능한것이라면, 그것은절대적으로부당한것이리라.

소유는물리적으로그리고수학적으로불가능하다

논증

공리-소유란소유자가자신의표찰을붙인사물에대해행사하는불로소득권이다.

이명제는완벽한의미에서의공리이다. 왜냐하면,

1. 이것은결코정의定義가아니다. 그도그렇것이이명제는소유권이내포하는것, 즉팔고, 교환하고, 양도할권리, 형태와내용을바꿀권리,

제 4 장소유는불가능하다

소유자들이내세우는마지막논거, 그막강한힘으로그들을안심시키는맹렬한논거는그들에따르면조건의평등은불가능하다는것이다. 조건의평등은몽상이라고그들은모든것을다아는표정으로외친다. <오늘재산을균등한몫으로나누어주자. 그러면내일이평등은사라질것이다.>

터무니없는확신에차서그들이아무데서나늘어놓는이진부한대론에그들은 <아버지에게영광있으라 (Gloria Patri)> 라는식으로다음과같이사족을달기를잊지않는다. <만일모든사람이평등하다면, 아무도일하려하지않을것이다.>

이러한찬가는여러가지곡조로울려퍼진다.

만일모든사람이주인이라면, 아무도복종하려하지않을것이다.

만일부자가없다면, 누가가난한자들로하여금일하게하겠는가?

그리고만일가난한자들이없다면, 누가부자들을위하여일하겠는가? 그러나우리로서는더이상매도만당하지말고응답을하는편이날것이다.

만일내가불가능한것은바로소유그자체라고입증한다면, 소유는모순이고몽상이며유토피아라고입증한다면, 그리고내가그것을형이상학이나법학의논증에의해서가아니라수치와등시고하와산술에의해서입증한다면, 금세깜짝놀란소유자의공포는어떠할까? 그리고독자여, 당신은이러한반격을어떻게생각할것인가?

수가세계를지배한다 (mundum regunt numeri). 이속담은항성이나분자의세계와마찬가지로도덕과정치의세계에서도진실이다. 법의요소들은대수학의요소들과마찬가지이다. 입법이나통치는분류표를만들고세력들의균형을맞추는기술에다름아니다. 법률학은산술의규칙안에있다. 이장과다음장은바로이놀라운원리의토대를놓는데기여할것이다. 그때에거대하고새로운행로가독자의눈앞에드러날것이다. 그때에우리는숫자들의조화안에서철학과과학의종합적인통일성을보기시작할것이며, 자연의이깊고엄숙한단순성앞에서감탄과열정에가득차서최초의사도처럼외칠것이다. <진실로, 신은수와무계와양을가지고만물을지으셨노라.> 우리는조건의평등이가능할뿐만아니라그외의다른것은불가능하다는사실을, 조건의평등에갇다붙이는그허울좋은불가능성은인간의천성에어긋나는정치형태인소유라든가공동체라는것안에서조건의평등을생각하는데에서나온다는사실을이해할것이다. 매일매일

(2) 재능에대한교육비를상환해야할의무에관해내가지금말한것에대해서, 경제학자들은조금도개의치않는다. 그도그럴것이재능을가진사람이자신의가족을계승할경우, 자신이지고있는 4 만프랑의빚에대한채권도상속하게되며따라서그채권의소유자가된다고이들은생각한다. 그러나여기서우리는재능의권리문제를벗어나서선점권의문제와다시마주치게되며, 우리가앞의제 2 장에서제기한모든문제가다시나타난다. 선점권이란무엇인가? 상속이란무엇인가? 상속권은누적 cumul 의권리인가, 아니면단순한선택 option 의권리인가? 의사의아버지는누구에게서재산을얻었는가? 그는소유권자였는가, 아니면단순한용의권자였는가? 그가부자였다면, 그의부는어떻게설명되는가? 그가가난했다면, 어떻게그가그토록막대한지출을감당할수있었는가? 만일그가구호금을받았다면, 어떻게이구호금이자선가에맞서채무자에게유리한특전을받았는가?

(3) <자연이부여한그의개인적능력에서나오는수입의몫은 2 만 6,000 프랑이다.> (세, 앞의책). 여기서출발해서세는우리의사의재능은 26 만프랑의자본과맞먹는다고결론짓는다. 이능숙한계산가는결과를원칙과바꾸어생각하고있다. 의사가얻는수입에의해재능을평가해야하는것이아니라, 오히려그와는반대로재능에의해그의급료가산정되어야한다. 왜냐하면문제의의사가자신의모든장점에도불구하고아무것도벌지못하는때도있을수있기때문이다. 이경우에이의사의재능또는재산을영으로평가해야한다는말인가? 유감스럽게도세의추론에따른결론은바로이런식이다. 명백히불합리한결론이다.

그런데어떤재능이든그것을현금으로평가한다는것은불가능한일이다. 그도그럴것이재능과돈은서로공통의척도로측정될수없기때문이다. 납득할만한어떤이유로 의사가농민보다두배, 세배혹은백배의수입을올려야한다고증명할수있겠는가? 이것은탐욕, 필요, 압제따위의해서가아니면해결된적이없는아주어려운문제이다. 재능의권리는이런식으로결정되어서는안된다. 그러면어떻게결정되는가?

(4) 우선나는의사가어떤다른생산자보다불리하게보수를받아서는안되며다른사람들과대등한수준아래에머물러서도안된다고말한다. 나는이점을줄기차게입증할것이다. 그러나나는의사가이평등의수준을넘어서도안된다고덧붙인다. 왜냐하면그의재능이란그가한번도지불하지않은공동의재산이며그는그공동의재산에대한영원한채무자이기때문이다.

모든생산도구의창출이집합적인힘의결과인것과마찬가지로, 인간간에계있는재능과학문은보편적지성과일반적지식의소산이며, 이는많은거장들에의해그리고상대적으로열등하나근면한많은사람들의도움을받아서서히축적된것이다. 의사가자신의선생님에게지불하고, 자기책과자격증의값을치르고, 모든비용을다청산했을때에도, 그는자신의

재능에 대해서는 값을 치르지 않았다. 이는 자본가가 노동자들에게 봉급을 지불하면서도 자신의 영지와 성역에 대해서는 값을 치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재능을 가진 이는 자기 자신 안에서 유용한 도구를 생산해 내는데 기여했다. 따라서 그는 공동점유자이다. 그는 소유자가 아닌 것이다. 그에겐 자유로운 노동자와 축적된 사회적 자본이 동시에 존재한다. 노동자로서 그는 자신의 본래의 능력인 도구의 사용이나 기계의 조작에 관여한다. 자본으로서 그는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용된다.

재능의 우월성이라는 것이 타인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봉급을 공동의 수준 이상으로 올리기도 하는 차라리 낫추는 동기를 재능에서 찾아야 하리라. 모든 생산자는 교육을 받는다. 모든 노동자는 재능이자 능력 즉 달리 말하자면 집합적 재산이다. 그러나 그 재산을 창출하는데 드는 비용은 같지가 않다. 농사꾼이 나장인을 길러 내는데는 교사와 시간과 교양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 창조의 노고, 굳이 말하자면 사회적 회임 기간은 능력의 탁월성에 비례한다. 그러나 의사, 시인, 예술가, 학자는 아주 소수만을 그것도 더디게 생산하는 반면에, 농사꾼의 생산은 훨씬 실패 부담이 적고 몇 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든간에, 그 능력이 창출되자마자, 인간은 이미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근면한 손이 빚어 낼 재료와 같이, 인간은 생산 *devenir* 의 능력을 지녔을 뿐이며, 사회가 그를 존재 *être* 로 만들었다. 도자기가 도공에게 〈나는 있는 그대로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다〉 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술가, 학자, 시인은 사회가 그들에게 오직 학문과 예술에만 전념하도록 허용해 주었다는 바로 그 사실만으로도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길러 내고 온갖 다른 부담을 면제해 준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사회는 엄격히 말해서 산문이나 시, 음악이나 회화 없이도, 즉 달과 북극성의 운행에 대한 지식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사회는 먹을 것이나 잠잘 곳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물론,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복음서에 따르자면, 인간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 즉 선을 사랑하고 실천하며, 미를 알고 즐기며, 자연의 경이를 탐구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이 영혼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보존하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의 의무가 고귀함의 위해 인간에게 요구되듯이, 뒤의 의무는 필요의 위해 인간에게 요구된다.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훈육하는 일이 영예이듯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도 귀중하다. 따라서 사회가 분업의 원리에 충실하여 구성원 중 한 사람에게 예술이나 학문의 사명을 맡기고 공통의 노동을 면제해 줄 때, 그는 자신이 생업에서 면제받은 모든 것에 대하여 사회에 보상할 책임을 진다. 사회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것뿐이다. 만일 그가 더 이상을 요구한다면, 그의 봉사를 거부하고 그의 주장을 무효로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의 천성에 맞지

신의생산물의점유자조차아니다. 그가생산물을완성하자마자사회가즉시그것을자기것이라고주장한다.

사람들은말하리라. 그러나설령그렇다고해도, 설령사회가개개노동자에게자신의생산물에대한등가물을주기때문에, 생산물은생산자개인에게속하는것이아니라할지라도, 이등가물, 임금, 이보상, 이보수는 그의소유라고. 이소유는정당하다는것을당신은부정하는가라고. 노동자가자신의임금을다쓰지않고절약할경우누가감히그와다룰것이냐고. 노동자는자기노동의값어치에대한소유자조차아닐뿐더러그것을결코 마음대로처분할수도없다. 잘못된정의定義에속아넘어가지말자. 자신의생산물에대한대가로노동자에게주어지는것은그가행한노동에대한보수로주어지는것이아니라, 해야할노동에대한지급이자선불로서주어지는것이다. 우리는생산하기전에소비한다. 노동자는하루일과가끝난 다음에이렇게말할수있으리라. <나는어제의비용을지불했다. 내일나는오늘의비용을지불할것이다> 라고. 살아있는매순간마다사회의구성원은누구나현재의계좌에서가불금을얻는다. 그는자기빚을갚지못하고죽는다. 어떻게그가조금이라도저축을할수있겠는가?

어떤이는절약에대해말한다. 소유자의행태이다. 평등체제에서는앞으로의재생산이나향유를목적으로하지않는절약은불가능하다. 왜그런가? 이절약은자본화될수없는만큼그즉시로목적 상실하게되고더이상<궁극원인> 도갖지않기때문이다. 이점은다음장을읽으면더욱잘이해될것이다.

결론을맺자.

일하는자는누구나사회에대하여필연적으로지불불능상태로죽어가는채무자이다. 소유자는자신에게맡겨진수탁을부인하고일수, 월수, 연수로보관료를받기를원하는불성실한보관자이다.

우리가지금까지제시한원리들이몇몇독자들에게는여전히너무형이상학적으로보일수도있다. 나는이원리들을가장우둔한머리로도알수있는더구체적이고흥미진진한결론들로가득찬형태로다시논의할것이다.

지금까지나는소유를 <배제> 의능력으로고찰했다. 이제부터는 <침해> 의능력으로살펴보겠다.

않는노동을살기위해서감당해야만할때, 천재는무기력을느끼고최악의생존상태로떨어질것이다.

어느유명한여류성악가가러시아의여황제예카테리나 2 세에게 2 만루블을요구했다고한다. <그돈은내가장군들에게주는돈보다더많은양이오> 라고예카테리나는말했다. <폐하, 장군들에게노래를시키시지요> 라고상대는답했다.

예카테리나 2 세의러시아보다더강국인프랑스가라셀 Rachel 양에게 <100 루이 (louis, 옛금화, 1 루이는 20 프랑-웁긴이) 를받고출연하든지아니면면화를짜시오> 라고하거나, 뒤프레 Duprez 씨에게 <2,400 프랑으로노래하든지아니면포도밭에가시오> 라고말했다고하자. 비극배우라셀양과성악가뒤프레씨가제일먼저후회할것이다.

하셀양은코메디-프랑세즈 Comédie-Française 에서연봉 6 만프랑을받는다고한다. 그녀와같은재능인에게는보잘것없는보수이다. 왜 10 만프랑, 20 만프랑이되어서는안되는가? 왜황실경비와같이아는안되는가? 이무슨짜짜한일인가! 라셀양과같은예술인과값을흥정하려하는가?

극단측은답할것이다. 손해를보지않고는더이상지불할수없으며, 젊은단원의뛰어난재능은인정하지만보수를결정하면서극단의수입과지출의명세를고려하지않을수없다고말이다.

이모든것은정당하다. 그러나이모든것은내가앞에서말한것을확인해줄따름이다. 즉예술가의재능은무한할수있지만, 그의금전상의요구는필연적으로제한될수밖에없는것이다. 한편으로는자기에게돈을지불하는사회에게그가가져다준효용성에준해서, 다른한편으로는사회자체의자원의양에의해서제한되는것이다. 달리말하자면파는이의요구는사는이의권리에의해균형을이루게된다.

라셀양은테아트르-프랑세즈 Théâtre-Français 에 6 만프랑이상의수입을올리게해준다고들한다. 나는그말에여전히동의한다. 하지만그렇다면나는극장측을비난한다. 테아트르-프랑세즈는누구에게서돈을거두는가? 실로자유로운호사가들로부터이다. 옳다. 그러나이호사가들이극단에지불할모든돈을언어내는노동자들, 세입자들, 소작인들, 이자와담보로돈을빌리는채무자들, 이들은자유로운가? 그리고이들의생산물의대부분이자신들과상관없이극장에서소비되고있을때, 당신은이들의가족이굶고있는일은없으리라고나를안심시킬수있는가? 프랑스국민이이들예술가, 학자, 공무원에게줄급여에대해곰곰이생각해보고실정을알고난후에완전히자신의의사를표명하기전까지는, 라셀양과그녀의모든동료들이받는보수는오만심을포상하고방종을고무하기위해폭력으로탈취된강제헌금일뿐이리라.

우리가기만적인거래를받아들이고노동자가권력의위압과재능의이
기심에놀려한가한이들의호기심을충족시키는대보수를지불하는것은
우리가자유롭지못하며충분히개명되지못하기때문이다. 그리하여우리
는여론이조장하고갈채를보내는이기괴한불평등들에늘분개하며사는
것이다.

국민전체가그리고오직국민만이이들작가, 학자, 예술가, 공무원등
에게보수를지불한다. 그보수가어떤경로를통해이들에게전달되든지간
에말이다. 어떤기준으로국민은이들에게지불하는가? 평등의기준에의
해서다. 나는재능의가치에대한평가를통해이를입증했다. 다음장에서
나는일체의사회적불평등의불가능성이라는것에의해이를확증할것이
다.

지금까지의논의를통해우리는무엇을입증했는가? 정말이지우스꽝
스러워보일정도로아주단순한아래와같은사실들이다.

여행객이자신이지나가는대로를자기것으로하지않는것과마찬가지
로, 농사꾼은자기가씨를뿌리는밭을자기것으로하지않는다.

그럼에도노동자가자신들이들인노고를이유로자신이이용하는재료를
자기것으로한다면, 그재료를이용하는모든이들은마찬가지자격으로소
유자가된다.

물질적이든정신적이든모든자본은집합적소산이며따라서집합적재
산을이룬다.

강자는약자의노동을강압적으로침해할권리가없으며, 유능한자는
단순한자의선의를이용할권리가없다.

마지막으로, 누구나자신이원하지않는물건을사도록강요당하지않
으며자신이사지않은물건의값을지불하도록강요당하지않는다. 따라서
한생산물의교환가치는사는이의의도나파는이의의도를척도로하는것
이아니라그것에들어간시간과비용을척도로하기때문에소유는누구에
게나항상평등하다.

이것은너무나도터무니없는진실들이아닌가? 물론이다! 아무리터무
진실처럼보여도, 독자여, 당신은이보다더진부하고터무니없는일들을볼것
이다. 그도그럴것이우리는기하학자들과는반대방향으로가고있으니말
이다. 기하학자들의경우, 이들이앞으로나가면나갈수록문제는더욱어
려워진다. 이와반대로우리는가장추상적인명제들로부터시작해서공리
公理로끝을맺을것이다.

그러나이장을끝맺기전에경제학자도법학자도꿈꿔보지못한엄청난
진실들중하나를드러내보자.

제 8 절정의의질서안에서는노동은소유를파괴한 다.

이명제는앞선두절의결론이다. 우선이를요약해보자.

고립된인간은자신의욕구의아주작은부분만을만족시킬수있을뿐이
다. 그의모든힘은사회안에있으며모든사람들의노력의현명한결합속에
있다. 노동의분업과협업은생산물의양과종류를증대시키며, 기능의전
문화는소비재의질을높인다.

따라서수천의여러생산자들의생산품으로살지않는자는한명도없
다. 사회전체로부터소비물자를받지않으며, 그소비물자와더불어재생
산수단을받지않는노동자는한명도없다. <나는내가소비하는것을나혼
자서생산한다. 나는그누구도필요하지않다> 라고누가감히말할수있겠
는가? 옛경제학자들이유일한참된생산자로간주한농사꾼, - 농사꾼은
석공, 목공, 재단사, 제분업자, 제빵업자, 정육업자, 향료상, 대장장이
등의덕택으로주거를마련하고, 가구를들이고, 의복을입고, 먹을것을구
하고, 몸을돌본다 - 말하자면이농사꾼은혼자서생산한다고뵈낼수있을
까?

각자의소비는모든사람에의해서주어진다. 마찬가지로각자의생산
은만인의생산을전제로한다. 한생산물은반드시다른생산물을동반한
다. 고립된산업이란불가능한일이다. 농사꾼의수확은, 다른이들이그를
위해헛간, 수레, 쟁기, 의복따위를만들어주지않았다면어떻게되었을
까? 학자에게서적상이없었다면, 출판업자에게주물공과기계공이없었
다면, 그리고이들모두에게또다른많은일꾼들이없었다면어떻게되었을
까? 진부한말을늘어놓는다고편견할터이니더이상길게명단을나열하지
않겠다. 나열하기란너무쉬운일이니말이다. 모든산업은상호적인관계
에따라하나의단일한묶음으로결합되어있다. 모든생산은서로에게목적
이되고또수단이된다. 재능의모든다양성이란열등한것에서우수한것에
이르는일련의변용태變容態일뿐이다.

그런데개개생산물에대한모두의참여라는이론박할수없는엄정한사
실은모든개개의생산을공동의것으로만드는결과를낳는다. 따라서생산
자의손을벗어난개개의생산물은사회에의해서미리저당잡힌셈이다. 생
산자자신은자기가만든생산물의아주작은부분에대해서만권리를가지
며, 그전체분모는사회를구성하는개개인의수와맞먹는다. 반면에이생
산자는자기의것이아닌모든다른생산물에대해권리를가지며, 따라서모
든다른이들에맞서일종의저당권을가트는셈이다. 마찬가지로다른이들도
그에맞서저당권을가짐은물론이다. 그러나이러한상호저당이결국소유
를용인해주는커녕점유까지도파괴한다는것을모르는가? 노동자는자

피에르조제프프루동
소유란무엇인가?
권리와통치의원리에대한연구 - 첫번째연구
1840 년

kr.theanarchistlibrary.org

만명이죽었다는식으로적고있다. 그리고사람들은죽은자를땅에묻고나서다시아이를낳기시작하고, 또다시기근이일어나서같은일이되풀이된다. 시대를막론하고공자孔子의경제학이란바로이런것인모양이다.

다음의내용은어떤현대경제학자에게서빌려온것이다.

〈14, 15 세기부터영국은기근에허덕었다. 걸인들은법으로엄하게처벌되었다.〉 (그러나인구는오늘날의 1/4 도안되었다.)

〈에드워드왕은동냥행위를투옥형으로다스렸다. ...1574 년과 1656 년의칙령은재범일경우같은조치를취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엘리자베스여왕은각교구가빈민을먹여살리라고명을내렸다. 그러나빈민이란누구인가? 찰스 2 세는다른사람의이의제기가없이 40 일동안거주한경우그교구에정주하는것으로결정했다. 그러나이의제기가있을경우뜨내기는다시를떠나야했다. 제임스 2 세는이법을개정했으며, 윌리엄왕은또다시그것을개정했다. 조사하고, 보고서를작성하고, 개정하는와중에빈곤은증대하고노동자는초취한몰골로죽어갔다.〉

〈빈민에게징수된세금은 1774 년에 4,000 만프랑을넘어섰으며, 1783 년, 1784 년, 1785 년에는각각 5,300 만을넘어섰다. 1813 년에는 1 억 8,750 만프랑, 1816 년에는 2 억 5,000 만프랑을넘어섰고, 1817 년에는 3 억 1,700 만프랑에이른것으로추정된다.〉

〈1812 년에교구에등록된빈민의수는 400 만명으로추산되는바, 이는인구의 1/3 에서 1/4 에이르는수치이다.〉

〈프랑스. 1544 년에프랑수아 1 세는빈민을위한보시세를강제로제정했다. 1556 년과 1586 년에는이법이왕국전역에적용되었다.〉

〈루이 14 세치세때는 4 만명에이르는빈민들이수도에횡행했다 (인구비례로보면오늘날과상황이비슷하다). 구걸행위는엄하게처벌받았다. 1740 년에파리의고등법원은해당관할구역내에서강제각출금을다시도입했다.〉

〈제헌의회는재앙의대단함과치유의어려움에기가질린나머지현상유지를결정했다.〉

〈국민공회는빈민에대한부조를‘국가의채무’라고규정했다. 그러나그법령은시행되지않았다.〉

〈나폴레옹역시재앙을치유하려애썼다. 그러나그가생각해낸법령은징역형이었다. 이로써짐은걸인들의파렴치함과적빈이가져온불치병의혐오스러운광경으로부터부자들을보호하리라〉 고그는말했다. 아, 위인이여!

나열하자면끝이없을이러한사실들에서두가지결론이 나온다. 하나는빈곤이인구와는무관하다는것이고, 다른하나빈곤을퇴치하려고동원된어떤처방도무용지물이라는것이다.

로마가톨릭교회는병원과수도원을세웠으며, 보시를권장했다. 즉구걸을장려했다. 사제들을통해표현된로마가톨릭교회의정신은여기서더나아가지못했다.

기독교국가들의세속권력은부자들에게는세금을매길것을, 가난한자들은내쫓고가둘것을명했다. 즉, 한편으로는소유권의침해를, 다른한편으로는시민권의박탈과살인을명했다.

현대경제학자들은빈곤의원인이전적으로인구과잉에있다고생각해서우선인구증대를억제하기에몰두한다. 이들중어떤이는가난한자에게는결혼을금지시키기를원한다. 따라서이들은종교적독신을비난한후에강제적독신을제의하는셈인데, 이강제적독신은방탕한독신생활로변하기마련이다.

반면, 어떤이들은이방법, 즉그들이말하는바에따르면가난한자에게서〈이세상에서그가아는유일한즐거움〉을빼앗는너무난폭한방법에찬동하지않는다. 그들은다만가난한자들에게〈신중〉을촉구하는정도만으로만족한다. 이것이바로멜서스씨, 시스몽디씨, 세씨, 드로씨, 뒤샤텔씨등의견해이다. 그러나가난한자가신중을보여주길원할양이면, 부자가모범을보이는것이필요하다. 왜결혼연령이부자에게는 18 세, 가난한자에게는 30 세로정해져야하는것인가?

다시금, 이들이그토록꾸준히노동자들에게권장하는이결혼의신중함이라는것이과연무엇을의미하는가를밝혀보도록하자. 왜냐하면이런류의문제를모호한채로남겨둔다는것은실로어처구니없는일이며, 나로서도경제학자들이제대로이해하고있지못한것이아닌가의심이들기도하기때문이다. 〈고루한사제들은사람들이결혼에대해신중하게나온다는말을듣자감짝놀란다. 이들은사람들이‘생육하고번성하라’는신의계시를어기는것이아닌가하고겁을먹는다. 이들은독신자들을파문하려할것이다.〉(J. 드로, 『정치경제학』)

드로씨는너무순진하고너무신학적심성이부족한탓에고집불통도덕론자들이경각심을갖는이유를납득할수없었다. 이순진한무지가그의심성의순수함에대한가장훌륭한증거이다. 종교는결코조혼을장려한적이없으며, 종교가비난하는이〈신중함〉이라는것은산체스(T. Sanchez, 1550~1610, 에스파냐출신의예수회신부. 『프로뱅시알』에서파스칼의놀림감이된다-옮긴이)가말한다음과같은구절에표현된바와같다. 〈아이를가질우려때문에씨를그릇밖에흘리는것이허용되겠는가?(An licet ob metum liberorum semen extra vas ejicere)〉

데스튀트트라시는어느쪽의신중에도동의하지않는듯이보인다. 그는말한다. 〈나로서는우리의쾌락을줄이고구속하려는도덕론자들의열의도, 우리의다산성을높이고인구증대에박차를가하려는정치가들의열의도받아들이지않는다고밝혀둔다.〉 그의의견인즉, 사람은할수있는한사랑을나누고또결혼을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사랑과결혼의결과는

빈곤을 증식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철학자는 이 점을 별로 개의치 않는다. 악의 필연성이라는 교의에 충실한 그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바로 악에서 찾는다. 따라서 그는 덧붙인다. <인구증대는 사회의 모든 계급들에서 계속되기 때문에, 상류계급들에서의 잉여인구는 계속하층계급들로 밀려나며, 최하층계급은 필연적으로 빈곤에 의해 절멸한다.> 이 철학자에게는 확신에 찬 추종자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이 철학은 무엇보다도 실제에 의해 입증된다는 논박할 여지가 없는 이 점을 가지고 있다. 얼마전에 프랑스의 하원에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할 때 들려온 이야기 역시 바로 이 철학이다. <가난한 자들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라는 것이 바로 장관의 말이다 (F. Arago, 1789~1853, 프랑스의 정치인으로 선거법 확대를 주장했다. 옮긴이) 씨의 주장을 반박할 때 쓴 정치적 수사이다. <가난한 자들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아무렴, 소유와 함께.

많고 많은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 낸 <재주꾼> 인푸리에주의자들은 이번에는 자신들의 천품을 감출 수 없었다. 이들은 인구증대를 억제할 수 있는 네가지 수단을 선보였다.

(1) 여성의 체력. 이 점에서 그들의 주장은 경험과 어긋난다. 왜냐하면, 비록 건장한 여성들이 늘 빨리 임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장한 아이를 낳는 것이 바로 그녀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에서 그녀들은 이 점을 갖는다.

(2) 종합적 운동. 달리 말하면 모든 육체적 능력의 균등한 발달이다. 만일이 발달이 균등하다면, 어떻게 생식능력이 감퇴하겠는가?

(3) 미식법. 불어식으로 말하면 혀의 철학이다. 푸리에주의자들은 풍성하고 기름진 음식은 여성을 불임으로 만든다고 단언한다. 마치 수액의 과잉이 꽃을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보이게 하지만 실은 번식력을 고갈시키듯이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유는 잘못이다. 꽃의 번식력 저하는, 장미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수술, 즉 수컷 기관이 꽃잎으로 변하는 데서 오는 것이며 또한 과다한 습기로 화분이 생식력을 잃는 데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미식법이 원하는 바의 성과를 얻으려면, 여성을 살찌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남성을 생식불능으로 만들어야 한다.

(4) 화류계의 풍류. 즉 공창公娼이다. 나는 푸리에주의자들이 불어로 아주 잘 통용하는 생각을 표현하는데 왜 그리스 단어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앞의 수단과 마찬가지로 이 수단 역시 문명의 관습을 흉내 낸 것이다. 푸리에 자신은 그 증거로 공창의 예를 들고 있다. 그런데 그가 내세운 사실들에 대해 여전히 아주 커다란 의혹이 맴돌고 있다. 파랑뒤샤텔 (Alexandre Jean-Baptiste Parent du Châtelet, 1790~1836, 프랑스의 생리학자, 의사-옮긴이) 이 자신의 책 『매춘에 대하여』에서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끌어모을 수 있었던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또 철학자나 경제학자 또는 최근의 개혁가들이 거론한 바

있는빈곤과다산성에대한치유책은다음의목록에망라되어있다. 즉, 마스터베이션 masturbation, 오나니즘 onanisme², 남색, 동성애, 중혼³, 매음, 거세, 금욕, 낙태, 유아살해⁴ 등이다.

이모든수단이불충분하다고판명되고나면, 이제남는방안은추방이다.

유감스럽게도추방은가난한자의수를줄임으로써오히려그비용을높일뿐이다. 소유자가생산물에대해징수하는이자가단지이생산물의 1/20에상당한다면(법률에의해이자자는자본의 1/20 이다), 20 명의노동자가단지 19 명의몹만을생산하는셈이다. 왜냐하면이들중에소유자라고불리는사람이한명있어서두명몹을먹어치우기때문이다. 가장가난한 20 번째노동자가죽었다고가정해보자. 다음해의생산은 1/20 만큼감소할것이며따라서이제 19 번째노동자가자기몹을내놓고죽어야할것이다. 소유자에게지불해야하는것은 19 명분생산의 1/20 이아니라 20 명분생산의 1/20 이기때문에(세번째명제를보라), 살아남은노동자개개인이빼앗겨야만하는것은자신의생산물의 1/20 에다가 1/400 만큼을더한값이다. 달리말하자면 19 명중한명이죽어야만한다. 따라서소유와더불어가난한자들이죽어가면갈수록그것에비례해서가난한자가더생기는셈이다.

맬서스는생산이산술급수로증대하는데반해서인구는기하급수로증대한다고학자답게논증했지만, 〈빈곤을가져오는〉 소유의이힘은지적하지않았다. 이점을잊지않았다면, 그는우리가다산성을억제할방책을찾기에앞서서불로소득권을폐지하는일부터시작해야한다는사실을이해했을것이다. 왜냐하면이권리가용인되는곳에서는토지의넓이와비옥도에관계없이늘과잉인구가존재하기때문이다.

사람들은아마도인구의평형을유지하기위해서내가무슨수단을제시할수있느냐고물을것이다. 이문제는조만간해결되지않으면안될문제이니말이다. 내가여기서이수단이무엇이라고이름붙이지않는것을독자들

² 오나니즘과마스터베이션의차이는물론후자는혼자하는행위이고전자는둘이, 즉남녀가하는행위라는것이다. 더구나요즘남편들은남성적쾌락의하나로추잡한오나니즘을즐긴다.(Hoc inter se differunt onanismus et manuspratio, nempe quod haec a solitario exercetur, ille autem a duobus reciprocatur, masculo scilicer et faemina. Porro foedam hanc onanismi venerem ludentes uxoriam mariti habent nunc omnium suavissimam)

³ 중혼, 즉일처다부제.

⁴ 최근에영국에서맬서스의제자라고자처하는어떤저자가한소책자에서유아살해를공개적으로요구하고나섰다. 그는법률이정한수보다자식이많은가족의경우, 〈유아살해의연례행사〉를제의했다. 그리고그는남아도는유아들을특별히매장하기위해조각상, 정원, 분수, 화단등으로장식된웅대한묘지를만들자고주장했다. 어머니들은이지복의장소를찾아가어린천사들의명복을빌고위안을얻고나면곧집에돌아와탄아이를낳고또그곳에보내게될것이다.

은허락해 주기 바란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증명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은 무익한 일인데, 내가 말하는 수단을 아주 말끔히 여실히 밝히려 하면 적어도 틀을 갖춘 한편의 논문이 필요하니 말이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고도 중대하며, 아주 범용하면서도 숭고하고, 아주 진실하면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아주 신성하면서도 세속적인 그 무엇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세히 설명하거나 논증하지 않고 이름만 붙인다는 것은 경멸과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데 소용될 따름이다. 우리에게는 다음 한 마디로 충분하리라: 평등을 확립하자, 그러면 치유책이 보이리라. 진리란 오류나 범죄와 마찬가지로 연이어나 타나는 것이니 말이다.

여섯 번째 명제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소유는 압제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통치란 무엇인가? 통치란 공공의 경제, 곧 국민 전체의 노동과 재산에 대한 최상의 관리이다.

그런데 국민은 마치 시민 모두가 주주인 거대한 회사와 같은 것이다. 각자는 총회에서 발의권을 가지며, 주식 배분이 균등하다면 한 표씩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소유제도 아래서는 주주들이 출자한 몫이 서로 엄청나게 불균등하다. 어떤 이는 단 한 표밖에 갖지 못하는 반면에, 어떤 이는 수백 표를 가지는 것이다. 예컨대 내가 100 만 프랑의 소득을 누린다면, 즉 내가 3,000 만에서 4,000 만 프랑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지주이며 이 재산이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 자산의 3 만분의 1 의 몫에 해당한다면, 내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 통치의 3 만분의 1 을 구성할 것이며, 따라서 3,400 만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나는 혼자서 단순 주주 1.133 명만큼의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라고 씨가 국민 방위군 Grande nationale 전원에게 투표권을 줄 것을 요구한 것은 나무랄 데 없는 정당한 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시민은 적어도 하나씩의 국민 주株에 등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저마다 한 표의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저명한 웅변가는 그와 동시에, 상업 회사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개 유권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만큼의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해야만 했으리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국민이 개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들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소유권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소유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선거권의 평등은 소유에 대한 침해인 것이다.

그런데만일주권이재산에비례해서만개개시민에게귀속될수있을
뿐이며또그렇게되어야만한다면, 소주주들은거대주주들에의해좌우
되기마련이다. 거대주주들은마음만먹으면소주주들을노예로삼고, 마
음대로짜를뺏어주고, 그들의아내를빼앗고, 그들의아들들을거세시키
고, 그들의딸들을매춘부로만들고, 늙은이들을상어밥으로삼을수있을
것이다. 거대주주들은자기돈으로자기의하인들을먹여살리고자하지
않는한, 어쩔수없이이렇게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이것이바로오늘날
영국에서일어나는일이다. 자유, 평등, 존엄따위에그리개의치않던존
불 (John Bull, 영국대중소설에등장하는작중인물. 전통적영국인의별
칭-웁긴이) 은차라리섬기고구걸하길택했다. 그러면, 그대, 선량한자
크 (bonhomme Jacques, 프랑스농민의별칭-웁긴이) 는?

소유는정치적·시민적평등과양립할수없다. 따라서소유는불가능하
다.

〈역사적해설〉 1. 1789 년삼부회에서제 3 신분대표의수를두배로늘
리기로결정한것은소유에대한대대적인침해행위이다. 귀족과성직자는
프랑스땅의 3/4 를차지하고있었다. 따라서그들이국민의 3/4 만큼대표
성을가져야할것이였다. 인민만이거의유일하게세금을내고있으므로제
3 신분대표수의배가는정당하다고혹자는말한다. 만약세금에대해서표
결하는것만이문제였다면, 이는웁은추론일것이다. 하지만사람들은통
치와헌법의개혁을말했다. 이때부터제 3 신분의배가는소유에대한침탈
이자공격이였다.

2. 만일현재급진적반대파의대표들이권좌에오른다면, 이들은모든
국민방위군을유권자로만들고모든유권자가피선거권자로되는개혁을
단행할것이다. 이는소유에대한공격이다.

이들은공채이자를끌어내릴것이다. 이는소유에대한공격이다.

이들은일반의이익을위해가축과밀의수출에대한법령을제정할것이
다. 이는소유에대한공격이다.

이들은과세의근거를변경할것이다. 이는소유에대한공격이다.

이들은인민들에게무상교육을실시할것이다. 이는소유에대한모반
이다.

이들은노동을조직할것이다. 즉노동자에게노동을보장해주고노동
자가이익배분에참여토록할것이다. 이는소유의폐지이다.

그런데바로이급진파들이소유의열렬한옹호자이니, 이는그들이자
신이하고있는일을알지도못하며자신이원하는바를알지도못한다는근
본적인증거이다.

3. 소유는특권과전제의으뜸가는원인이다. 따라서공화제의선서문
구는변경되어야만한다. 비밀결사가가입하는자는 〈나는왕정에대한증
오를맹세한다〉 라고선서하는대신에이제부터는 〈나는소유에대한증오
를맹세한다〉 라고바꿔말해야만한다.

**일곱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소유
는자신이취득한것을소비함으로써잃어버리고,
저축함으로써폐기해버리며, 자본화함으로써생
산에적대하기때문이다.**

I. 만일우리가경제학자들을본받아노동자를살아있는기계로간주
한다면, 노동자에게돌아가는임금은이기계를유지하고보수하는데필요
한경비로볼수있다. 일당 3, 5, 10, 15 프랑을주고노동자나점원을고용
하고나아가관리비용으로 20 프랑을쓰는한공장주는자신의지출을손실
로여기지않는다. 그지출이생산물의형태로자신에게되돌아온다는것을
알고있기때문이다. 이렇게 〈재생산적소비〉는그에게 〈노동〉과마찬
가지이다.

소유자란무엇인가? 그것은일하지않는기계, 아니면자신의즐거움을
위해서나기분내키는대로만노동할뿐아무것도생산하지않는기계이다.

소유자적으로소비한다는것은무엇인가? 그것은노동하지않고소비
하는것이며, 재생산하지않고소비하는것이다. 왜냐하면, 다시한번말하
지만, 소유자가노동자로서소비하는것은그에의해서그자신에게다시회
수되기때문이다. 소유자는자신의소유와맞교환해서자신의노동을제공
하는것이아니다. 만일그렇게한다면, 그는더이상소유자가아닐것이니
말이다. 노동자로서소비함으로써소유자는벌고있거나, 아니면적어도
그가소비한것을되찾기때문에하등잃을것이없다. 반면에소유자적으로
소비함으로써그는가난해진다. 소유를향유하기위해서는따라서소유를
파괴해야만한다. 요컨대진정소유자가되기위해서는소유자이기를그만
두어야하는것이다.

자신의임금을소비하는노동자는파손되었다가또다시생산에임하는
기계이다. 반면에자신의불로수득을소비하는소유자는바닥없는심연이
요, 물을빨아들이는모래사장이며, 헛되이씨뿌리는돌밭이다. 이모든것
이진정진실일진대, 생산을원하지않고또생산방법조차모르는소유자는
자신의소유를사용하면할수록돌이킬수없이그소유를파괴하게된다는
사실을잘깨닫고있기때문에자기몫을대신해서누군가에게생산을시키
기로마음을굳힐것이다. 경제학이그불멸의정의正義로서, 〈자신의자

본에의한생산, 자신의도구에의한생산》이라고부르는것이바로이것이다. 그런데이것은 〈노예에의한생산, 도둑또는폭군으로서의생산〉이라불려야마땅한것이다. 소유자인그가생산한다고! …그렇다면도둑역시 〈나는생산한다〉 고말할수있을것이다.

소유자적소비는 〈유익한〉 소비와는대조적으로 〈사치〉 라고이름붙여왔다. 방금이야기한바에따르면, 그다지풍요롭지못한나라에서사치가만연할수있으며, 사치가만연하면할수록그나라는그만큼더빈곤해지고, 그역도마찬가지라는사실을우리는이해할수있다. 경제학자들이사치에대해그토록놀라운혐오감을복돋운덕에, 오늘날거의전부라고는말할수없지만대다수소유자들이자신의나태를부끄럽게여긴 나머지노동하고저축하며또자본을투자하고있다. 이것은사태를더욱악화시키는일이다.

다음과같은사실을거듭지적해두도록하자. 즉자신이노동을하므로소득을누릴자격이있다고믿고있으며그와동시에자신의노동에대한급료를받고있는소유자는두배로봉급을받는관료와도같다. 일하는소유자와일하지않는소유자사시의차이가바로여기에있다. 그러나소유자는자신이노동을함으로써자신의보수만을생산할뿐, 자신의소득을생산하지는않는다. 그리고소유자는자신이처한조건에서가장수지맞는일거리에매달리기마련이므로, 소유자의노동은사회에유익하기보다는유해하다고말할수있다. 소유자가무슨일을하건간에, 소유자가자신의소득을소비하는것은사실상그소득을잃어버리는일이다. 소유자가일을하고보수를받는다는사실이이러한손실을보상해줄수도정당화해줄수없다. 이손실은다른이들의생산에의해마냥보충되지않는한, 소유자체를소멸시키게될것이다.

II. 따라서소유자가소비하는행위는생산품을근절시킨다. 그러나만일소유자가저축을한다면사태는더악화된다. 소유자가한쪽편에쌓아두는물건들은완전히다른세계로넘어간다. 아무것도, 심지어그희미한흔적도더이상찾아볼수없게된다. 만일달로여행할운송수단이있다면, 그래서소유자가자신이축적한재산을그곳으로가지고갈생각에서로잡히기만한다면, 얼마지나지않아우리의지구마저그에의해달로 옮겨질것이다.

저축하는소유자는자신도그것을향유하지못할뿐더러다른이도향유하지못하게막는다. 그에게는점유도소유도없다. 그는수전노처럼보물을보듬어안고는도무지쓸생각을않는다. 그는보물을두고눈요기를하고, 옆에두고누운채, 끌어안고잠이든다. 그러나부질없는짓이리라. 금화가금화를낳는것은아니니말이다. 향유없이완전한소유가있을수없고, 소비없이향유가있을수없으며, 소유의상실없이소비가있을수없다. 이것이야말로조물주의심판이소유자를몰아넣은필연적궁지이다. 소유에저주있으라!

할수있다. 만일그가싸움을모르면, 요리사나보급병이나술창고관리인을시키면된다. 만일그가전혀쓸모가없다면, 병원에집어넣으면된다. 어떤경우라도그에게폭행을가하거나법을강제할수는없는일이다.

인간에게는두가지가능한상태만이있다. 즉사회안에있거나아니면사회밖에있거나이다. 사회안에서조건들은각자라도달할수있는준중과평가의정도가다를뿐필연적으로평등하다. 사회밖에서인간은착취의대상이고자본화된도구이며때로는불편하고쓸모없는가구이다.

여성의권리와여성의남성에대한관계는여전히규정되어야할문제이다. 혼인법은민법과마찬가지로아직미완성이다.

아일랜드가빠져든빈궁의가장중요한원인들중하나한국교회성직자들의막대한수입이었다. 이렇게이교도든, 정교파든, 개신교든, 교황파든, 누구도서로를비난할근거가없다. 모두가마찬가지로정의에서길을잃었으며, 모두가십계명의여덟번째계율 (〈도둑질하지말라〉) 을무시했던것이다.

III. 자신의소득을소비하는대신자본화하는소유자는그소득을생산에적대시키게되며, 따라서스스로자기의권리행사를불가능하게만든다. 왜그런가. 소유자가투자때문에이자분을높이면높일수록, 그는임금을줄이지않을수없다. 그런데그가임금을줄이면줄일수록, 달리말하자면기계유지와보수에드는비용을줄이면줄일수록, 노동의양은줄어들 수밖에없고그에따라생산의양나아가소득의원천이줄수밖에없기때문이다. 아래의예는이러한사정을여실히보여준다.

경작지, 목초지, 포도밭및지주와소작인의가옥으로구성된영지가있다고가정해보자. 이영지는모든경작설비를포함해서 10 만프랑의가치가나가고그이자율은 3% 에달한다고하자. 만일소유자가자신의소득을소비하는대신, 그소득을영지를확장하는데가아니라영지를미화하는데투자한다면, 그는자신이자본화한 3,000 프랑에대한다가로매년소작인에게 90 프랑을더요구할수있는가? 결코그렇지않다. 왜냐하면, 이러한조건에서라면소작인은비록그전보다더많이생산하게되지는않더라도 아무런대가도받지못하고노동하도록강요당하지않을수없으며, 분명히말해두지만, 임대를유지하기위해서어썌 수없이손실을감수하지않을수없기때문이다.

사실소득은생산기반을늘려야만증대될수있다. 대리석벽으로울타리를쌓고, 황금호미로밭을간들아무소용없는일이다. 그러나영지를계속늘려가는것, 즉라틴계사람들이쓰는말로 〈점유지들을계속취득하는것〉 이가능하지않기때문에, 그럼에도소유자에게는자본화할것이늘남아돌기때문에, 얼마안가서소유자의권리행사는결국어쩔수없이불가능해질것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불가능에도불구하고소유자는자본화하고, 자본화함으로써이자를증식시킨다. 그럼상업, 제조업, 은행등에서볼수있는수많은개별사례들에머물지말고시민모두에게관련되는더중요한사실을인용해보자. 내가말하고자하는것은예산의끝없는증가에대해서이다.

세금은해마다늘어난다. 그렇기는하지만이러한증대가공공행정의어느분야에서나타나는지정확히집어서말하기는쉽지않을듯하다. 하기야예산이라는것에대해무언가안다고누가감히자신있게말할수있겠는가? 가장능란한재무관들도서로티격태격하는것을우리는매일보고있지않은가? 통치학의대가들마저수치에대해이러쿵저러쿵하는마당에, 우리가달리무엇을생각할수있겠는가? 예산증대의직접적인원인들이무엇이든간에, 세금은아무튼사람들을절망에몰아넣을정도로날로늘어나고있다. 누구나그것을보고있고, 누구나그것을말하고있으나, 아무도그근

본원인을 알고있지는못한듯하다.⁵ 그런데내가말하고자하는것은, 이러 한일이달리될수없으며또필연적이고불가피하다는사실이다.

국민은우리가 <정부> 라고부르는대지주의소작인과도같다. 국민 은땅을사용한대가로 <세금> 이라는이름으로알려진소작료를정부에지 불한다. 전쟁을할때마다, 전쟁에서지거나이길때마다, 군수품을바꿀때 마다, 기념비를세울때마다, 운하를뚫고도로나철도를놓을때마다, 정부 는돈을빌리게되고, 납세자가그이자를지불한다. 다시말하자면정부는 생산기반을증대시키지않고운용자본을늘리는것이다. 한마디로말하자 면정부는내가앞에서막이야기한바와같은소유자로서자본화에임하고 있는것이다.

그런데일단공채가발행되고그이자가확정되어도, 예산은줄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예산을줄이려면다음과같은일들이, 그러나실은불가 능한조치들이되따라야하기때문이다. 즉, 공채소유자들이자신의이자 를포기해야만한다. 그러나이는소유권의포기없이불가능한일이다. 아니면정부가과산해야하는데, 이는정치원리에대한기만적인부정이다. 아니면정부가빚을상환해야만한다. 그러나이는또다른공채에의해 서만가능하다. 아니면정부가지출을줄여야만한다. 그러나이는있을수 없는일이다. 그도그렇것이공채가발행되었다면, 이는경상비가부족했 기때문이니말이다. 아니면정부가쓰는경비를재생산에충당해야만한 다. 그러나이는생산기반을확장하지않는한불가능하다 (이는우리의가 정과는어긋난다). 아니면마지막으로, 빚을상환하기위해납세자가새로 운세금을내야만한다. 이는불가능한일이다. 왜냐하면새로운세금이시 민모두에게균등하게할당된다면, 시민의절반아니면그이상이세금을내 지못할것이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새로운세금이부자들에게만징수된 다면, 이는강제징수요소유에대한위해이기때문이다. 오래전부터재정 실무는, 차용의방식이비록아주위험하기는할지라도여전히가장편리하 고가장확실하며가장비용이덜먹히는길이라는사실을보여주었다. 따라 서정부는돈을빌린다. 즉끊임없이자본화에임하고또예산을늘린다.

따라서예산은줄어들기는커녕필연적으로줄곧늘어날뿐이다. 이는 아주단순명료한사실인바, 경제학자들이그들의온갖학식에도불구하고

⁵ 영국정부의재정상태가 1월 23 일의상원회의에서백일하게드러났다. 재정상태 는건전하지못했다. 몇년전부터세출이세입을초과했으며, 내각은해마다신규차관을도입 함으로써저우균형을회복했다. 1838 년과 1839 년에공식적으로확인된적자만 2,250 만 프랑에달했다. 1840 년에는세출이세입을 2,250 만프랑정도초과할것으로예상된다. 이 수치를제출한것은리폰 Ripon 경이다. 멜버른 Melbourne 경은그에게이렇게답했다. <고결한백작께서공공지출이줄곧늘어난다고언명한것은유감스럽게도옳은지적입니다. 그리고나도백작과마찬가지로이지출에어떤절약방안이나치유책이있으리라고‘희망할만 한여지가없다’고말하지않을수없습니다.> (「나시오날 National」, 1840 년 1월 26 일 자)

서하소서. 그러면위대한자든미천한자든박식한자든무지한자든부자든 가난한자든이루말할수없는우애속에맺어질것이며, 모두함께새로운찬 가를부르면서당신의제단을세울것입니다. 자유의신이여, 평등의신이여!

자크는죽으면서두아들피에르와장을재산상속자로남겼다. 자크의 재산은이들에게동등하게배분되었다. 그러나피에르는딸을하나만둔반 면, 그의형제인장은아들여섯을두었다. 평등의원리와상속의원리에동 시에충실하고자한다면, 피에르와장의자녀들이두사람의유산을일곱등 분해야만할것이명백하다. 그렇지않으면, 외부사람이피에르의딸과결 혼할경우그로인해조부자크의재산의절반이다른집안으로넘어갈것이 기때문이다. 이는상속의원리에어긋나는일이다. 게다가장의자식들은 여럿이다보니까난한반면에, 피에르의딸은혼자인덕분에부자이다. 이 는평등의원리에어긋나는일이다. 겉으로는상반되어보이는이두가지의 원리를결합시켜폭넓게적용해보자. 그러면사람들은, 오늘날제대로잘 알지도못하면서공격하고있는이상속권이평등의유지에전혀걸림돌이 되지않는다는사실을깨닫게될것이다.

우리가어떤정부아래서살든지간에, <죽은자가산자를불잡는다> 라 는말, 즉인정된상속자가누구이든간에유산과상속은늘존재하리라는것 은언제나진실이다. 그러나생시몽주의자들은상속인이사법관의의해지 명되길바란다. 다른이들은, 자연의의지가평등의법칙태두리안에서구 현되어야한다는취지에서, 상속인이죽은자에의해서선택되고법률에의 해서추인되길원한다. 오늘날, 실제로상속을통제하는것은우연이거나 변덕이다. 그런데입법분야에서우연이나변덕이규칙인양받아들여질수 는없는일이다. 자연이우리를평등하게만든후에우리에게상속의원리를 제안한것은바로우연이가져오는끝없는혼란을피하기위해서이다. 이는 사회가우리에게우리형제들중에서우리의일을이루기에가장유능한이 를선택하도록권면하는목소리와같은것이다.

아킬레우스와아작스는서로결합되어있는가, 그렇지않은가? 모든 문제는여기에달려있다. 만일이들이서로결합되어있기는커녕, 둘다아 가멤논에게돈으로고용되어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규정에는어떠한 이의도제기도리수없다. 노예를부리는주인은두배의충성을바칠노예에 게두배의술값을약속할수있을것이니말이다. 전제정의법칙, 예종의법 칩이바로이것이다. 그러나아킬레우스와아작스가서로결합되어있다 면, 그들은평등하다. 아킬레우스가 4 명의힘을가지고있고, 아작스가 2 명의힘을가지고있다고한들, 그것이무슨문제인가! 아작스는자신은 늘자유롭다고답할것이며, 또아킬레우스가 4 명의힘을가지고있으면 5 명이그를죽일것이며결국몸으로충성을바치는데는그도아킬레우스만 큼위험을무릅쓴다고답할것이다. 동일한추론을테르시토스에게도적용

열째, 정치학은 자유의 과학이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통치는 어떤 이름으로 장식하더라도 압제일 뿐이다. 사회의 가장 완벽한 모습은 질서와 아니라
 키키결합에서 발견된다.

케케묵은 문명의 종말이다가왔다. 새로운 태양 아래서 지표면도 새로
 워질 것이다. 한 세대가 사멸하도록 내버려두자. 노쇠한 독직자들이 사막
 에서 죽도록 내버려두자. 거룩한 대지가 그들의 뼈를 덮지는 않으리라. 세
 기의 부패에 격분하고 정의의 열정에 목마른 젊은이여, 만일 그대가 조국을
 사랑한다면, 만일 그대가 인류의 행복을 염려한다면, 자유의 대의를 과감
 히 쟁안하라. 그대의 낡은 이기심을 벗어던지고 갓 태어난 평등의 도저한 물
 결에 몸을 맡기라. 그 물결에 잠긴 그대의 영혼은 지금껏 몰랐던 정의와 활력
 을 얻으리라. 그대의 유약해진 천성은 억누를 길 없는 활력을 얻으리라. 이
 미시들어버린 그대의 마음은 아마도 다시 젊어지리라. 맑아진 그대의 눈앞
 에서 모든 것이 먼모를 일신할 것이다. 새로운 감정들이 그대에게서 새로운
 관념들을 낳을 것이며, 종교, 도덕, 시, 예술, 언어 등이 더 장대하고 더 아
 름다운 모습으로 그대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그대의 신념을 확
 신하고 심사숙고 끝에 더욱 열정적이 되어 보편적 경쟁의 여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대, 사악한 법률의 슬픈 희생자, 빈정거리는 세상에의 해탈 벗고 두드
 러맞은 그대, 결실 없는 노동과 희망 없는 휴식에 지친 그대여, 용기를 잃지
 말라. 그대의 눈물은 보상을 받으리라. 아버지들이 고통 속에서 씨를 뿌렸
 으니, 아들들이 환희 속에서 그것을 거두리라.

아아, 자유의 신이여! 평등의 신이여! 내가 이성에의 해깨달기 전에 이
 미나의 마음 속에 정의의 감정을 심어준 신이여,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
 소서. 내가 지금껏 써 내려온 것을 내게 불러준 이가 바로 당신이오. 당신은
 나의 사상을 만들어주고 나의 연구를 지도하였으며, 나의 정신을 호기심에
 서, 나의 마음을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소이다. 그것은 내가 주인과 노
 예 앞에 당신의 진리를 널리 펼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당신이
 준 힘과 재능에 의해 말했을 따름입니다. 당신의 작업을 완수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몫입니다. 당시는 내가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 아니면 당신의 영광
 을 추구하는 지 알고 있습니다. 아아, 자유의 신이여! 아아! 나에 대한 세상
 의 기억을 지워주소서. 인류가 자유롭기만 바랄 따름입니다. 마침내 깨우
 친 인민을 그 저나 의 희미한 그림자 속에서 볼 수 있게 해주소서. 고귀한 교육
 자들이 인민을 계도하게 하소서. 사심 없는 마음이 인민을 인도하게 하소
 서. 가능한 만큼 우리의 시련의 시간을 줄여주시고, 오만과 탐욕은 평등 속
 에 묻어버리소서. 우리를 예종 속에 가두어 놓는 이 영예에 대한 허망한 욕구
 를 꺾어버리소서. 이 가련한 자녀들에게 자유 속에는 어떤 위인도 영웅도 없
 다는 것을 알려주소서. 권세자에게, 부자에게, 그리고 내가 당신 앞에서는
 절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을 자들에게 그들의 탐욕이 가져올 공포를 일깨우
 소서. 그들이 앞을 다투어 회개하게 이끄시고 남보다 먼저 누우치는 자를 용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니 그저 놀라울 뿐이다.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
 면, 어찌 그것을 비난하지 않았겠는가?

〈역사적 해설〉 오늘날 사람들은 예산경감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재정 조치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국채율 5%에 관한 문
 제이다. 그렇다면, 정치적·법률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고 재정 문제만을 고
 려하더라도, 국채율을 5%에서 4%로 변경할 경우, 앞으로는 같은 연유
 와 같은 필요로 인해 4%를 3%로, 3%를 2%로, 2%를 1%로 줄여야
 할 것이며, 마침내는 모든 종류의 국채율을 폐기해야만 한다는 것이 진실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조건들의 평등이나 소유의 폐지를 법령
 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끄떡도 않는 필연의 수레
 바퀴에 질질 끌려가느니 보다 불가피한 혁명에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국민
 에게 더 어울리는 일인 듯하다.

여덟 번째 명제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소유 의 축적력은 무한대인 반면 소유가 작용을 미치는 수 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평등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 중 하나에게 배타적인 소유권을
 부여해서, 이유 일한 소유자가 인류에게 100 프랑을 복리로 빌려주고 24
 세대가 지난 후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갚게 한다고 하면, 이 돈 100 프랑은
 600 년이 지나면 107 조 8,540 억 1,077 만 7,600 프랑이 될 것이다. 이
 것은 프랑스의 자본금을 400 억 프랑으로 가정한다면, 무려 2,696 과 1/3
 배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이것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해서 지구 전체 가치
 의 20 배가 넘는 금액이다.

성왕 루이 Saint Louis 의 시대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역시) 바로 이 100 프랑을 빌리고는 갚기를 거부했다고 가정
 해보자. 그 후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악의에 찬 사람들이었고 마침내 시효 취
 득이 만료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마지막 자손은 이 100 프랑을 이자에
 이자를 더해서 갚아야만 할 것이다. 그 액수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거의
 108 조 프랑에 달할 것이다.

재산은 날로 더욱 빠르게 증식되고 있다. 앞에서 든 예는 자본의 1/20 에
 달하는 이익을 가정했다. 그러나 그 이익이 자본의 1/10, 1/5, 1/2, 심지어
 자본 그 자체와 맞먹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평등의 불가구천의 적인 푸리에 주의자들, 평등의 주창자들을 〈탐욕
 꾀 requin〉으로 취급하는 푸리에 주의자들은 생산을 4 배로 늘림으로써

자본과노동및재능의모든요구를만족시키길원한다. 그러나생산이 4 배로늘어날때, 소유는그축적력과자본화효과에의해서순식간에생산물과자본, 토지, 심지어노동자들까지흡수해버린다. 팔랑스테르에서자본투자나이자대부를못하도록금지할것인가? 그러면소유가의미하는바를무엇이라고설명할수있을까?

이런식의산술을더밀고나가지는않겠다. 계산은천차만별일수도있으며내계산만을고집할수도없으니말이다. 내가묻고자하는것은단지점유권관련소송에서판사들이과연어떤규정에따라그이자를결정하는가하는것이다. 문제를한단계더높이끌어올려서나는다시묻는다.

입법자는, 소유의원리를공화정에도입하면서그로인해초래될모든결과들을헤아려보았을까? 그는가능성의법칙을알고있었을까? 만일알고있었다면, 왜법전은그것을기술하고있지않은가? 왜소유자가그의소유를불리고이자를요구하도록내버려두는, 재판관이이소유의권한을인정하고확립하도록내버려두는, 국가가끝없이새로운조세를매기도록내버려두는, 이끔찍스러운방종이생겨났는가? 인민이예산을거부하고, 소작인이소작료를거부하며, 기업인이자본의이자를거부하는권리를가지려면, 어떤경제선을넘어서야하는가? 놀고먹는자가얼마만큼이나일하는자를착취할수있는가? 약탈의권리는어디에서시작해서어디에서끝나는가? 생산자가소유자에게 <나는이제더는당신에게갚을것이없다>라고말할수있을때는언제인가? 소유가언제만족하겠는가? 도둑질이허용되지않을때는언제인가?

입법자가가능성의법칙을알고있으면서도그것을전혀고려하지않았다면, 그의정의正義란도대체무엇인가? 그가그것을모르고있었다면, 그의학식이란도대체무엇인가? 그가교활하든어리석든간에우리는그의권위를인정해야만하는가?

우리의현장과법전들이불합리한가정을원리로삼고있다면, 법률학교에서무엇을가르치겠는가? 최고재판소의판결은무엇인가? 우리의의회들은무엇을심의하는가? <정치> 란무엇인가? 우리는누구를 <정치인> 이라부르는가? <법률학> 이란무엇을의미하는가? 차라리우리는<법률무지학 jurisignorance> 이라말해야하지않겠는가?

만일우리의제도들이계산착오를원리로삼고있다면, 이제도들은그만큼기만행위가되지않겠는가? 그리하여사회기구전체가소유라는이절대적인불가능성위에세워져있다면, 우리를지배하고있는정부라는것은하나의허깨비이며현사회는하나의유토피아에불과하지않겠는가?

첫째, 개별적 <점유 possession> ⁹은사회생활의조건이다. 소유 propriété 의 5,000 년역사가그것을증명해준다. 즉, 소유는사회의자살이다. 점유는권리와양립할수있으나소유는권리와대립한다. 점유를보존하고소유를제거하자. 이와같은원리의변경에의해서만당신은법률, 정부, 경제, 제도들에서모든것을바꿀수있을것이다. 당신은이땅에서악을내몰수있을것이다.

둘째, 선점권 droit d'occuper 은만인에게평등하기때문에, 점유는점유자의수에따라달라진다. 소유는성립할수없다.

셋째, 노동의결실역시만인에게동일하기때문에, 소유는외부의착취에의해그리고임대료에의해상실된다.

넷째, 인간의노동은필연적으로집합적힘의소산이기때문에, 일체의소유는바로똑같은이유에서집합적이되며분할될수없다. 정확히말하자면, 노동은소유를파괴한다.

다섯째, 노동능력은노동구도와마찬가지로축적된자본이자집합적재산이기때문에, 능력의불평등을구실로삼은보수와기회의불평등은불의이며도둑질이다.

여섯째, 상거래는계약당사자들의자유와교환되는생산물들의등가성을그필요조건으로한다. 그런데가치는개개생산물에들어간시간과비용의총화로표현되는것이고자유는절대침해될수없는것이기때문에, 노동자들은권리와 의무에서평등하듯이임금에서도필연적으로평등해야한다.

일곱째, 생산물은생산물에의해서만구매된다. 그런데모든교환의조건은생산물의등가성이기때문에, 이익은불가능하고부당하다. 경제의가장기본적인이원칙을준수하라. 그러면빈곤, 사치, 압제, 악덕, 범죄등이배고픔과더불어우리에게서사라질것이다.

여덟째, 인간들은자신들의완전한동의에의해서결합하기에앞서서생산물의물리적, 수학적법칙에의해서결합하고있다. 따라서조건들의평등은정의, 즉사회의법이자공식적인법인반면에, 존중, 우정, 인정, 찬미따위는 <형평> 의또는 <비례> 의법으로귀착한다.

아홉째, 자유로운결사, 즉생산수단의평등과등가교환에한정하는자유야말로가능한유일한사회형태, 정의롭고참된유일한사회형태이다.

⁹ 개별적점유는결코대규모경작이나경작의단일화에장대가되지않는다. 내가토지세분화에따른예로사항을말하지않는것은누구나다알고있을사실을다른이들이이미다말하고난뒤에굳이반복할필요가없다고여겼기때문이다. 그러나나는, 빈곤이영세경작에서나온다고그토록멋지게주장해온경제학자들이그근원이온전히소유에있다는것을알아차리지못했다는사실에, 특히그들의토지동산화계획이소유의폐지의시작이라는것을알아차리지못했다는데에그저놀랄따름이다.

자유는본질적으로조직화의원리이다. 인간들사이의평등이나국민들사이의균형을확립하기위해서는농업과공업, 교육, 통상및집산의중심지들이각지방의지리적·풍토적조건, 생산물의종류, 주민의특성과자연적재능등에따라아주정당하고현명하며아주맞은비율로잘배분되어야만한다. 어떤지역도인구및소비와생산의과잉또는결핍에의해고통받지않도록말이다. 여기에서공법학과사법학그리고참된경제학이시작된다. 새로운법률들을기술하고세상을평온하게하는것은, 이제그릇된소유의원리에서벗어난법률학자들의몫이다. 이들에게는지식과천재가부족하지않다. 이들은이미그렇게할기반을갖고있다.⁸

이것으로나는내스스로제안했던일을끝마쳤다. 소유는타도되었다. 소유는다시회복하지못하리라. 이논설이입히고전해지는모든곳에서소유에대한죽음의씨앗이뿌려지리라. 거기에서는조만간특권과예중이사라지리라. 거기서는이성의지배가의지의전제를대체하리라. 실로, 다음과같은아주단순한명제들앞에서어떤궤변들, 어떤고집불통의편견들이버틸수있으랴.

원리에도토대를두어야만한다. 그렇지않으면평등은존재할수없을것이다. 자기희생은정의보다우월하다. 그것은법으로강제될수없으니, 자기희생이란그성격상보상이없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물론, 모든사람들이자기희생의필요성을인정하는것은바람직한일이며, 「평등주의자」의생각은아주좋은모범이다. 그러나불행히도자기희생은아무것에도이르지못한다. 사실, <나는희생하길원치않소>라고당신에게말하는자에게무어라고대답하겠는가? 그를강제해야할것인가? 자기희생이강제로이루어질때, 그것은억압, 예중, 인간에의한인간의착취라불린다. 프롤레타리아들이소유에게자기희생을희생한다는것은바로이러한의미에서이다.

⁸ 내가보기에현대의모든사회주의자들중에서푸리에의사도들이오래전부터가장앞서나가는자들이며사회주의라는이름에값하는거의유일한자들인듯하다. 만일그들이자신들의과업을이해했다면, 만일그들이인민에게호소할줄을알고, 공감을일깨울줄알며, 모르는것에대해서는입을다물줄알았다면, 만일그들이좁달오만한주장을내세우고공적이성에대해좀더많은존중심을보여주었다면, 아마도그들덕에개혁이시작될수있었으리라. 그러나그토록결연한개혁가들이어떻게권력과풍요앞에, 즉더욱반개혁적인것앞에줄곧무릎을꿇은것일까? 이이성의세기에그들이어떻게세계가신화나우화에의해서가 아니라 <논증적이성>에의해변혁된다는것을이해하지못했을까? 문명의화해할수없는적인들이어떻게문명이낳은가장불길한소산, 즉소유, 재산및서열의불평등, 폭음폭식, 축첩, 매음, 유술, 잡술, 주술등등을문명에게서빌려온것일까? 도덕, 형이상학, 심리학등그들조차이해하지못하는과학들이바로그들의체계그자체를이루고있는마당에, 왜그들은이과학들에대해비난을늘어놓는가? 명칭밖에모르는많은사물들에대해억측을늘어놓는것이주된공적일뿐인한인물을더이상기묘할수없는말로신격화하는이기벽은어디서나오는것일까? 어떤한인물의무요류성을인정하는자는누구든지그것으로인해서다른사람들을가르칠수없게된다. 이성을포기하는자는누구든지곧자유로운탐구를스스로삼가게된다. 팔랑스테르주의자들은만일힘이있었다면실패하지않았을지도모른다. 그들이이성적으로추론하고방법을세워추진하고우리에게계시가아닌논증을제시해주길바랄따름이다. 그러면우리는기꺼이귀를기울일것이다. 그들이공업, 농업, 상업을조직하고, 노동을매력적인것으로만들고, 가장미천한직분도귀한것으로만들기를바랄따름이다. 그러면우리의갈채는그들의몫이될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신자요사도로서보다는사기꾼이자일지기로서의인상을심어주는이계시론에서그들스스로벗어나길바랄따름이다.

아홉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소유는소유에대해무기력하기때문이다.

I. 우리의공리의세번째귀결에따르면, 이자는국외자뿐만아니라소유자와도충돌하고있다. 이경제원리는널리인정되고있다. 한눈에보더라도이보다더단순한것은없으리라. 하지만이보다더불합리하고, 이보다더명확히모순되며, 이보다더절대적으로불가능한것은없다.

제조업자는그의집이나그의자본의임대료를자기자신에게지불하고있다고한다. 즉 <제조업자는자기에게지불한다>, 달리말하자면, 제조업자는자신의생산품을사는세상사람들에게지불시키고있다는것이다. 자신의소유에의해이익을얻고있는듯이보이는제조업자가그이익을마찬가지로자신의상품들에의해서도얻고자한다고가정해보자. 그는 90상팀이들어간물품에대해 1 프랑 (1 프랑은 100 상팀-웁긴이) 의값을자신에게지불시키고시장에서이익을얻을수있을것인가? 아니다. 그와같은작업은돈을상인의오른손에서왼손으로옮길뿐, 그에게는아무이익도되지않을것이다.

그런데자기자신과거래하는한개인에대해진실인것은상업세계전체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진실이다. 10 명이든, 15 명이든, 20 명이든원하는만큼긴생산자들의사슬을상정해보자. 생산자 A 가생산자 B 에게서이익을취한다면, 경제원리에따라서 B 는 C 에게서, C 는 D 에게서다시그만큼의몫을회수하지않으면안될것이며, 이러한일이결국 Z 에게까지이어질것이다.

그러나 Z 는과연누구에게서, 처음에 A 가취한이익을회수할것인가? <소비자에게서> 라고세는답한다. 가련한위선자여! 이소비자는그러면 A, B, C, D 등등혹은 Z 와는다른별개의인물인가? Z 는누구로부터회수할것인가? 만일그가최초의수혜자 A 로부터회수한다고하면, 이미누구에게도이익은존재하지않게되며따라서소유란존재하지않을것이다. 만일반대로 Z 가그부담을 짊어진다고하면, 그순간부터그는그사회에속하지않게된다. 그도그렇것이사회가다른구성원들에게인정해주고있는소유권과이익권을그에게는거부하는것이니말이다.

따라서국민이란인류전체와마찬가지로자체의테두리를벗어나서는움직이지못하는거대한산업사회와도같은것이니만큼, 한사람이부자가되려면다른한사람이가난해져야만한다는것이입증된다. 왜냐하면 A 에게서소유권이나불로수득권이존중되기위해서는 Z 에게는거부되어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우리는조건들의평등과는별개로, 권리의평등이어떻게진실일수있는지를알수있다. 이점에서정치경제학의부당성은명백하다. <기업가인나는노동자의노무를살때, 노동자의임금을내기업의순생산안에포함시키지않고그와는반대로순생산에서제외시킨다.

그러나노동자는그것을자신의순생산안에포함시킨다. …〉(세, 『정치경제학』)

이것은노동자의경우, 그가얻는모든것이 〈순생산〉 임을의미한다. 그러나동시에기업가의경우그가얻은것가운데서자신의보수를제외한 나머지것만이 〈순생산〉 임을의미한다. 그런데왜기업가만이이득을얻을권리가있는가? 이권리는근본적으로소유권과같은것인데왜노동자에게는거부되는가? 경제학의용어로말하자면, 노동자는자본이다. 그런데자본이란그수리및유지에드는비용외에도이자를가져오지않으면안된다. 소유자가자신의자본을위해또자기자신을위해언어내려고애쓰는것이바로이것이다. 그런데왜노동자에게는자신의자본에대해이와유사한이자를취득하는것이허용되지않는가?

따라서소유란권리의불평등이다. 왜냐하면소유가권리의불평등이 아니라고하면, 그것은재산의평등일것이며따라서존재할수없는것이니 말이다. 그런데헌법은만인에게권리의평등을보장하고있다. 따라서헌법에의해소유는불가능하다.

II. A 라는영지의소유자는그가이토지의소유자라는사실만으로서기이웃인 B 의땅을가로챌수있는가? 〈아니다〉 라고소유자들은대답한다. 그러면이것이소유권과는어떤관련이있는가? 이제여러분은일련의 유사한문제들을통해서이를보게될것이다.

모자상인 C 는이웃에사는모자상인 D 에게그의가게문을닫고장사를그만두라고강제할권리가있는가? 결코아니다.

그러나 C 가모자하나당 1 프랑의이윤을남기려하는반면에, D 는 50 상점으로만족한다. 분명히 D 의절제가 C 의욕구를해친다. C 는 D 가혈값에장사하는것을막을권리가있는가? 확실하아니다.

D 가원한다면 C 보다 50 상점더싸게모자를팔자유가있으므로, 이번에는 C 가모자를 1 프랑더싸게내놓을자유가있다. 그런데 D 는가난하나, C 는부자이다. 따라서한두해지난다음, D 는이경쟁을감당하지 못하고파산하는반면, C 는판매를독차지하게된다. 소유자 D 는소유자 C 에의해무엇인가보상을요구할수있는가? 소유자 D 는자기의소유권과장사를회복하기위해소유자 C 에맞서소송을제기할수있는가? 아니다. 왜냐하면 D 가더부자였다면, 그역시 C 가한것과똑같은일을할권리가있었을테니말이다.

같은이유로대지주 A 는소지주 B 에게다음과같이말할수있다. 〈당신땅을내게파시오. 그렇지않으면당신은당신의밀을팔지못하게될것입니다.〉 이렇게말한다고해서, B 가소송을제기할권리가없는한, A 는아무런피해도입지않는다. 그결과, A 는자신이 B 보다더부자라는바로그이유만으로원하기만하면 B 를먹어치울것이다. A 와 C 가 B 와 D 를약탈하는것은결코소유권에의해서가아니라힘의권리에의해서이다. 소유권에의해서는두이웃 A 와 C 는상인 B 와 D 나마찬가지로아무것도할

이욕구라는것은외부존재와의관련에서생각하면 〈권리〉 가되며, 우리 자신과의관련에서생각하면 〈의무〉 가된다.

우리는먹고자려는욕구가있다. 그러나우리가수면과영양에필요한 물품들을마련하는것은권리이며, 자연이필요로할때그것들을사용하는것은의무이다.

우리는살기위해노동하려는욕구가있다. 그러나그것은권리이자또한의무이다.

우리는아내와아이들을사랑하는욕구를갖는다. 그러나그들의보호자이자버팀목이되는것은의무이며, 그들에게서다른누구보다더사랑받는것은권리이다. 부부사이의정절은정의이며, 간통은반사회적인범죄인것이다.

우리는생산물물다른이의생산물과교환하려는욕구를갖는다. 그러나교환이서로대등하게이루어져야한다는것은권리이다. 그리고우리는생산하기에앞서서소비해야만하므로, 만일모든것이우리에게달려있다면, 우리가소비를한다음에곧생산에매진해야한다는것은의무이리라. 자살은기만적인파산인것이다.

우리는이성의빛에따라우리의과업을다하고자하는욕구를갖는다. 그러나우리가우리의자유의지를보유하는것은권리이다. 다른사람의자유의지를존중하는것은의무이다.

우리는동료들에게존중받고자하는욕구를가진다. 그러나우리가그들의칭찬에값하는것은의무이며, 우리가우리의업적에따라평가받는것은권리이다.

자유는상속의권리나유언의권리와전혀어긋나지않는다. 자유는평등이이권리들에의해침해당하지않도록감시하는것으로만족할때이다. 자유는우리에게말한다. 〈두유산사이에서선택하라. 다가질수는없다〉 라고. 양도, 한사限嗣 상속, 양자결연, 그리고감히말하자면 〈성직 계승권 coadjutoreries〉 따위와관련된모든입법들은다시만들어져야한다.

자유는경쟁을장려하며그것을파괴하지않는다. 사회적평등속에서 경쟁은대등한조건들아래서이루어져야할때이다. 포상은경쟁그자체에주어질뿐승자도패자도있을수없다.

자유는자기희생을찬양하고자기희생에따른고통을높이평가한다. 그러나자유가자기희생을반드시필요로하는것은아니다. 사회적균형을 유지하는데는정의만으로충분하다. 자기희생은필요이상의행위이다. 그렇지만, 〈나는내몸을바친다〉 라고말할수있는이에게복이있도다.⁷

⁷ 「평등주의자 l'Egalitaire」라는제목으로첫호를출판한어느월간지는자기희생을평등의원리로내세우고있다. 이것은온갖개념들을혼동시키는일이다. 자기희생그자체는최고도의불평등을전제로한다. 자기희생에서평등을구하는것은평등이자연에반한다는사실을인정하는것이니말이다. 평등은정의에, 엄밀한권리에, 소유자자신이내세우는

고 〈복리의평등〉이란평등한수단으로써노동자들이달성해야할몫이다.

2. 법은사실들에대한과학에서유래하는것으로서필연성그자체에의존하기때문에결코독립성과충돌하지않는다는것.

3. 개개인상호간의 〈독립성〉 즉사적의성의자주성은재능과능력의차이에서유래하는것으로서, 법의한계안에서는아무위험없이존속할수있다는것.

4. 〈비례균형〉은물질의영역이아니라지능과감정의영역에서만인정되는것으로서, 정의및사회적평등을침해하지않고도준수될수있다는것.

공유제와소유의중합이라할수있는이제 3 의사회형태를우리는 〈자유〉⁶라고부를것이다.

자유 의성격을 규정하는데에서 우리는 공유제와 소유를 무차별적으로 결합시키지는 않는다. 그것은 불합리한 절충주의 이리라. 우리는 분석적 방법을 통해 그것들 각각에서 진실한 것, 자연의 요구와 사회성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을 찾아내고 나아가 이질적인 요소들을 제거한다. 그러면 그 결과물은 인류 사회의 자연적 형태에 적합한 어떤 표현을 제시해준다. 그것이 바로 자유이다.

자유는 평등이다. 왜냐하면 자유는 사회 상태 안에서만 존재하는데 평등을 넘어서서는 사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는 아나키이다. 왜냐하면 자유는 의지의 통치를 용납하지 않으며 단지 법의 권위, 즉 필연의 권위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자유는 무한한 다양성이다. 왜냐하면 자유는 법의 한계 내에서는 모든 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자유는 비례 균형이다. 왜냐하면 자유는 공적에 대한 야망과 영예에 대한 경쟁에 모든 여지를 남겨놓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쿠쟁씨를 본받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원리는 진실이다. 우리의 원리는 훌륭하고 사회적이다. 그러므로 거기서 모든 결론을 얻기를 두려워 말자.〉

인간에게 있는 〈사회성〉은 성찰을 통해 〈정의〉가 되고, 능력들의 맞물림을 통해 〈형평〉이 되며, 〈자유〉를 그 정식으로 삼는다. 사회성은 도덕의 참된 원리이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원리이자 규준이다. 사회성은 철학이 탐구해 오고 종교가 강화해 온 보편적 동기이며, 인간의 이기심에의 해밀려났으나 그렇다고 순수 이성에 의해서는 결코 보완되지 않는 보편적 동기이다. 〈의무〉와 〈권리〉는 우리들 안에서 욕구로부터 생겨나는바,

⁶ libertas(자유), liberare(해방하다), libratio(해방), libra(저울, 리브르 [화폐 단위-울긴이]), 이 모든 표현들의 어원은 동일하다. 자유란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잡는 일이다.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균형을 잡는 것, 즉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수준에 놓는 것이다.

수 없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빼앗지도, 서로를 파괴하지도 못하며, 서로 상대방을 희생시켜 부자가 될 수도 없다. 침탈 행위를 낳는 것은 바로 강자의 권리에 의해서인 것이다.

그런데 제조업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임금을 인하하는 것도, 부유한 상인이나 돈 많은 지주가 자기들의 생산물을 원하는 값에 파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강자의 권리에 의해서이다. 기업가는 노동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당신 노동력을 사든 말든 내 자유이듯이, 당신이 다른 데에 가서 일하든 말든 당신 자유이다. 나는 그만큼만 지불할 것이다.〉 상인은 고객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든 말든 지하시오. 내가 내 상품을 팔든 안 팔든 내 자유이듯이, 당신이 당신 돈을 쓰든 말든 당신 자유요. 나는 그만큼을 원하오.〉 그러면 누가 양보해야 하는가? 가장 약한 쪽이다.

따라서 힘이 없이는 소유는 소유에 대해서 무기력하다. 힘이 없다면, 소유가 불로 소득에 의해 증대될 수 없으니 말이다. 결국, 힘이 없는 소유는 무용지물이다.

〈역사적 해설〉 식민도국의 설탕과 토착민의 설탕의 문제는 우리에게 이 소유의 불가능성에 대한 놀라운 사례를 보여준다. 두 산업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토착기업인은 식민업자에 의해 파산당할 것이다. 사탕무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탕수수에 세금을 매겨야만 한다. 한쪽의 소유를 유지하려면, 다른 한쪽의 소유를 침해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실상 사람들이 가장 덜 관심을 두어 온 점이기도 한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즉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소유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두 산업이 시장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 비례세금을 매겨 보라. 그러면 〈최고가격 maximum〉이 등장할 것이며 소유에 이 중으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즉, 당신이 매긴 세금은 한편으로 상업의 자유를 훼손하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 소유자들 사이의 평등을 무시하게 된다. 사탕무 쪽의 손해를 보상해 주라. 그러면 당신은 납세자의 소유를 침해하게 된다. 여러 품질의 담배를 재배하듯이, 국민의 세금을 들여 두 품질의 작물을 재배해 보라. 그러면 당신은 어느 한 종류의 소유를 파괴하게 된다. 이마지막 내기가 가장 단순하고 최선의 방책일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을 여기에 끌어들이려면, 능란한 정신과 관대한 의지가 합쳐져야 하는데, 이는 오늘 날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경쟁, 즉 상업의 자유 -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환되는 소유 - 는 여전히 오래도록 우리의 상업 입법의 기초가 될 것이며, 이상업 입법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유형의 민법과 일체의 통치를 다 포괄할 것이다. 그런데 경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한 경기장에서 결투이며, 그 결투에서 권리란 무기에 의해 판가름나는 것이 아닌가.

〈누가 거짓 증언을 하는가, 피고인가 증인인가?〉 라고 야만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말했다. 〈그들을 싸우게 하라. 이긴 자가 옳다〉 라고 한층 더 야만적인 우리의 판사님께서 대답한다.

〈우리들중누가이웃에게향료를팔것인가?〉 〈그것을가게에내놓도록하자〉 라고경제학자는외친다. 가장기민한자, 가장교활한자가가장정직한자이며가장효능한상인이리라.

이것이바로나폴레옹법전의정신이다.

열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소유는평등을부정하기때문이다.

이명제에대한설명은앞의명제들에대한요약이다.

1. 경제법의원리는 〈생산물은생산물에의해서만살수있다〉 는것이다. 소유는효용을생산할때에만옹호될수있는것이며아무것도생산하지못한다면그순간부터비난의대상이된다.

2. 〈노동이생산물에의해균형을이루어야한다〉 는것은경제의법칙이다. 소유에의해생산이그가치보다더많은비용이든다는것은엄연한사실이다.

3. 또다른경제법칙. 즉, 〈자본이주어질경우, 생산은더이상자본의규모에의해측정되는것이아니라생산력에의해측정된다〉 . 그런데소유는노동에대한고려없이소득이늘자본에비례할것을요구하므로, 이런점에서소유는원인과결과사이의이대등한관계를인정하지않는다.

4. 와 5. 명주를짓는누에와마찬가지로노동자는결코자신을위해서생산하는것이아니다. 소유는두배의생산을요구하면서도그것을얻기는커녕, 노동자를헐벗게하고죽여버린다.

6. 자연은인간개개인에게하나의이성, 하나의정신, 하나의의지만을주었다. 그런데소유는한인간에게복수의투표권을부여하면서그의정신도복수성複數性을 띠는다고가정한다.

7. 효용을재생산하지않는모든소유는파괴행위이다. 소유는소비에임하든, 저축에임하든, 자본화에임하든, 〈무효용〉 을남으며불모와죽음의원인이된다.

8. 자연권의충족은일종의등식과도같다. 달리말하자면, 한물건에대한권리는반드시이물건에대한점유에의해충족되는법이다. 따라서자유에대한권리와자유로운인간조건사이에, 아버지가될권리와부성사이에, 안전에대한권리와사회보장사이에하나의균형, 즉등식이성립한다. 그러나불로수득권과이불로수득의실현사이에있는등식이성립하지않는다. 왜냐하면불로수득이실현됨에따라서그불로수득은제 2 의불로수득에대한권리를놓고, 제 2 의불로수득은제 3 의불로수득에대한권리를

르므로국왕의의지를과학적이고참된법률로대체하는일을가차없는투쟁없이성취될수없으며, 이러한끊임없는대체야말로소유다음으로역사의가장강력한요인이자정치운동들의가장비옥한요인이되었다. 이러한사례들은너무나많고너무나명백하기때문에여기서일일이열거할필요조차없으리라.

그런데소유는필연적으로전제, 자의적인통치, 음탕한의지의지배를낳는다. 이것이야말로진정소유의본질이기때문에, 소유를극복하려면소유란무엇인가를상기해보는것만으로충분하며우리주변에서일어나는일들을떠올려보는것만으로충분하다. 소유란 〈사용〉 하고 〈남용〉 하는권력이다. 따라서만일통치가하나의경제적행위라면, 만일통치가생산과소비를, 노동과생산물의배분을유일한목적으로삼는것이라면, 어떻게통치와더불어소유가가능할수있겠는가? 만일재화가소유물이라면, 어떻게소유자가국왕, 전제적인국왕, 그들의후천적능력에비례하는국왕이아니란말인가? 그리고만일개개소유자가자신의소유영역내에서지고의주권자라면, 자기영지의전영역에서불가침의왕이라면, 어떻게소유자들의통치가혼란과혼동이아니란말인가?

제 3 절제 3 의사회형태의결정 — 결론

따라서소유를토대로하는어떤통치도, 어떤공적경제도, 어떤행정도가능하지않다.

공유제는 〈평등〉 과 〈법 loi〉 를추구한다. 반면에소유는이성의자주성및개인적공적의산물로서, 모든사물에대한 〈독립성〉 과 〈비례균형 proportionnalité〉 을원한다.

그러나획일성을규범으로삼고평준화를평등으로여기는공유제는전제적이되고또부당하게된다. 반면에소유는그전제專制와침해에의해곧압제적이고비사회적으로변한다.

공유제와소유는선善을원한다. 그러나그두가지가각각낳는것은악이다. 왜그런가? 그것은이두가지가서로배타적이기때문이며제각기사회적요소들을무시하고있기때문이다. 즉공유제는독립성과비례균형을무시하는반면, 소유는평등과법을존중하지않는다.

그런데만일우리가평등, 법, 독립성, 비례균형이라는이네가지원리에토대를둔사회를머릿속에그려본다면, 다음과같은사실들을알게된다.

1. 평등은어떤경우라도정의와형평을침해하지않는다는것. 물론이때평등이란 〈조건들의평등〉 즉 〈수단들〉 의평등만을의미한다. 그리

의의견도그것이입증될때에만고려대상이되는만큼, 어느누구도자신의 의지로이성을대체할수없으며그누구도왕이아니다.

입법과정치의자료가되는모든것은과학의대상이지의견의대상이 아니다. 입법권은이성에만, 방법론적으로인정되고입증된이성에만속한다. 어떤권력에라도거부권이나제재권을부여하는것은압제의절정이다. 정의와합법성, 이두가지는수학적진리만큼이나우리의동의여부와는무관한사항이다. 강제되기위해서는인식되는것만으로충분하다. 인식되기위해서는그저고찰하고연구하기만하면된다. 그런데인민이주권자가아니라면, 입법권이인민에게서나오는것이아니라면, 인민이란과연무엇인가? 인민은법의수호자이다. 인민은〈집행권〉이다. 시민은누구나〈이것은진실이다. 저것이옳다〉라고말할수있다. 그러나그의확신은그자신만을강제할따름이다. 그가선언한진실이법이되기위해서는그진실이인정받아야만한다. 그러면법을인정한다는것은무엇인가? 그것은수학또는형이상학의작업을검증하는것이다. 요컨대그것은경험을반복하고, 현상을관찰하며, 사실을입증하는것이다. 오직국민만이〈명령하고결정하노라〉고말할수있다.

지금까지내가말한모든것은사실기준관념과는정반대되는것이며, 따라서내가현재의정치적논의를뒤집고자하는것으로보이리라고자인한다. 그러나나로서는하나의역설에서부터출발했기때문에, 진정옳게추론을전개하자면매순간마다역설들을만날수밖에없었으며마침내역설들로끝을맺을수밖에없었다는것을독자들이이해해주기바랄따름이다. 게다가나는, 입법자의붓대신에입법의칼이다시시민들의수중에들어간다면, 시민의자유에어떤위험이닥칠지를알지못한다. 집행권은본질적으로의지의영역에속하기때문에너무나많은수입자에게위탁되어서는안되는것이다. 인민의진정한주권이바로이런것이다.⁵

소유자, 도둑, 영웅, 주권자 (이모두는사실동의어이다) 는자신의지를법률인양강요하지만어떤모순도느끼지않고어떤통제도받지않는다. 즉그는자신이입법권이자동시에집행권이라고주장하는것이다. 그

낯은식으로끝없이이어질것이기때문이다. 소유는그대상과절대로조응하지못하므로, 자연이나이성에어긋나는권리이다.

9. 마지막으로, 소유는그자체로는존재하지않는다. 소유는발생하고행동하기위해서어떤대외적인요인, 즉〈무력〉과〈사취〉를필요로한다. 달리말하자면, 소유는결코소유와대등하지않다. 그것은부정否定이고, 허위이며, 〈무無〉이다.

⁵ 만일이와같은생각이언젠가사람들의머릿속에침투해들어간다면, 이는대의정부나연설가들의폭압에의해서일것이다. 옛날에과학, 생각, 말등은하나의동일한표현속에 섞여있었다. 즉, 생각과학식이깊은사람을가리키기위해, 말이빠르고언변이좋은사람이라는표현이사용되었다. 그후부터말은추상작용에의해과학과이성으로부터떨어져나갔다. 이러한추상은, 논리학자들이지적하듯이, 조금씩사회에서실현되었다. 그결과, 오늘날말을아끼는여러부류의학자들이있는가하면, 말의과학에서는전혀학자라고할수없는언변가들이있다. 그리하여철학자는이미학자가아니다. 그는언변가이다. 입법자나시인들은옛날에는학식이깊고숭고한사람들이었다. 오늘날이들은언변가이다. 언변가는소리나는초인종, 아주가냘픈마찰에도끝없이소리를내는종이다. 언변가에게서, 물흐르는듯한담화는언제나사상의빈곤과정비례한다. 언변가들이세상을지배한다. 이들이우리를소스라치게하고, 우리를진력나게하며, 우리를강탈하고, 우리의피를빨고, 우리를조롱한다. 학자들은어떤가. 그들은입을다물고있다. 그들이한마디라도하려하면, 누군가곧말을차단한다. 그들은그저쓰기만하면되는것이다.

제 5 장 정의와 불의의 관념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 그리고 통치와 권리의 원리에 대한 규정

소유는 불가능하다.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유를 혐오하면서
서도 그것을 원한다. 우리의 사고는 평등에 매달려 있으나 그것을 실현할 줄
을 모른다.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의지 사이의 이뿌리 깊은 반목을 누가 우리
에게 설명해 줄 것인가? 정의와 사회의 가장 신성한 원리가 되어 버린 이 불길
한 오류의 원인을 누가 보여 줄 것인가?

내가 감히 나서서 바이며, 그것에 성공하길 원한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정의를 침해하였는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
선 정의란 무엇인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실, 즉 정치의 과학은 주권자의 의지, 다수자의 의견, 대중의 의지와는 완전
히 별개의 것임을 깨닫는다. 국왕, 대신, 사법관, 인민은 의지 체意志體로
서는 과학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눈여겨 볼 만 한 가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 태어났다면, 그에 대한 아버지의 권
위는 그가 이성으로 양육하고 교육을 끝마친 후 아버지와 동류가 되는 바로 그
날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사실, 진정한 우두머리나 진정한 국왕은 증명된 진
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정치란 하나의 과학이지 농간이 아니라는 사실, 입
법자의 기능은 마침내 진실에 대한 방법론적 탐구로 귀착된다는 사실, 이
러한 사실들을 인간은 마침내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인간의 권위는 그 사회가 도달한
지적 발전의 수준과 반비례한다. 그리고 이 권위의 있음직한 지속 기간은 아
마도 진정한 통치, 즉 과학에 따른 통치에 대한 소간 일반적인 열망에 의거
해서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힘의 권리와 책략의 권리가 정의의 점점적 광범
위해지는 결정적 앞에서 위축되어 마침내 평등 안에서 소멸되어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지의 주권은 이성의 주권 앞에 몸을 굽히고 마침내 과학
적 사회주의 안에서 소멸될 것이다. 소유와 왕정은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무너져 왔다. 인간이 평등 안에서 정의를 찾듯이, 사회는 아나키 anarchie
안에서 질서를 찾는다.

〈아나키〉, 즉 주인이나 주권자의 부재, 우리가 하루하루 접근해 가는
통치 형태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을 기준으로 삼고 인간의 의
지를 법칙으로 삼는 뿌리 깊은 습관에 의해 아나키를 마치 무질서의 절정이
자 혼동의 표현인 양 여기고 있다. 17 세기 파리의 한 부르주아에 대한 이야
기가 있다. 이 순박한 사람은 베네치아에는 국왕이 없다는 말을 듣더니 놀라
움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이우스팡스 러운 말에 포복 절도하여 죽을 지경이
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편견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즉,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우리는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우두머리를 원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 소책자 한 권을 가지고 있는데, 열렬한 공산주의자인 이저자
는 마치 또 한 명의 마라 (Marat, 1743~179, 프랑스 대혁명기의 민중 선동
가-윙킨이) 인양 독재를 꿈꾸고 있다. 우리들 중 가장 앞선 자들은 주권자들
의 수가 가능한 한 많기를 바라는 자들일 뿐이며, 따라서 국민 방위군의 충성
을 확보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열렬한 소망이다. 아마도 곧 누군가는 이 시민
군을 찬양한 나머지 〈모두가 왕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에
게 답할 것이다. 아무도 왕이 아니라고. 우리는 좋은 싫든 한 동아리를 이루
고 있을 뿐이라고. 내정에 관한 모든 문제는 각도별 통계 자료를 토대로 해결
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정에 관한 모든 문제는 국제적 통계에 따라 처리될 사
항이다. 통치 과학은 응당 학문 아카데미의 한 분야에 속해야 하며, 수상이
마땅히 그 상임 비서를 맡아야 한다. 그리고 시민이면 누구나 아카데미에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모든 시민이 다 입법자 인 셈이다. 그러나 그 누구

을만한참주들도있었던것이다. 왕정이유일하게가능한통치형태일때, 그것은좋은것일수도있다. 그러나그것은결코정당할수없다. 세습도선발도보통선거도종교나시대의축성祝聖도왕정을정당화하지는못한다. 군주제, 과두제, 민주제등어떤외파를걸치고있더라도왕권, 즉인간에의한인간의통치는불법이며불합리하다.

인간은자신의욕구를가장신속하고가장완벽하게만족시키기위해〈규준規準〉을찾는다. 태초에이규준은인간에게살아움직이는것이며눈에보이는것이고손으로만져지는것이었다. 그것은곧그의아버지이자그의주인이며그의왕이었다. 인간이무지하면할수록지도자에대한그의복종과신뢰는절대적이된다. 그러나규준에따르는것, 즉성찰과추론에의해그규준을발견하는것을자신의법칙으로삼는인간은자기우두머리의명령에대해이성적으로추론한다. 그런데이러한추론은권위에대한저항이며불복종의시작이다. 인간이주권자의의지의근거를따지기시작할때, 바로이때부터인간은저항하기시작한다. 국왕이명령을했기때문에복종하는것이아니라국왕이그명령의근거를입증했기때문에복종하는것이라면, 이때부터인간은어떤권위도인정하려하지않으며스스로를자기의왕으로삼은것이라고확언할수있다. 인간을다스리려하면서도그러한권위의전거로다수자의존중만을들고나오는우두머리는불행할지라. 왜냐하면조만간소수자가다수자로될것이고, 따라서이신중하지못한전제자는쫓겨날것이며그가많은모든법령들은철회될것이니말이다.

사회가계몽됨에따라국왕의권위는줄어든다. 이것은역사가어김없이입증하는사실이다. 국민들이처음탄생했을때, 인간은추론하고성찰해야아무소용이없었다. 방법도원리도몰랐으며이성을활용할줄조차몰랐기때문에, 인간은자신이올바르게사물을보고있는지아니면속고있는지조차알지못했다. 당시왕들의권위는엄청났기때문에어떤기성학설도이를거역하려들지않았다. 그러나점차적으로경험은습관을낳고습관은관례를낳았다. 그러고나서관례는격률로입안되고원리로확립되었다. 달리말하자면관례는이제법률로표현되었으며살아있는법률인국왕도이제이를준수해야만했다. 이윽고관례와법률들의수효가부쩍늘어나고군주의의지가일반의지에의해말하자면휘감겨버리는시대가왔다. 왕좌에오를때, 국왕은관례와상례에따라통치할것이며자신은이제스스로법을만드는사회의집행권력에불과할따름이라고선서해야만했다.

이때까지는모든일이본능적인방식에따라, 말하자면당사자들도모르는사이에이루어졌다. 그러나이러한추세의피할것없는결말을보자.

몸소배우고관념들을습득하는능력에의해인간은마침내〈과학〉의관념, 즉사물의현실에일치하며관찰에의해얻어지는인식의체계에도달하게된다. 따라서인간은과학을, 즉무기물의체계, 유기물의체계, 인간정신의체계, 세계의체계를탐구한다. 어찌인간이마찬가지로사회의체계를탐구하지않을수있겠는가? 그러나이시점에이르면인간은정치적인

제 1 부

제 1 절 인간과동물의도덕감각에관하여

철학자들은중중인간의지능과동물의지능을구별해주는명확한구분선이무엇인가라는문제를거론해왔다. 철학자들은그들이따라야만했던유일한방침인관찰에이르기전에습관대로커다란어리석음을내보이곤했다. 이끝없는논쟁에종지부를찍은이는철학이라고는조금도내세우지않는검허한학자, 즉프레데릭퀴비에 (Georges-Frédéric Cuvier, 1773~1848, 박물학자·옮긴이) 였다. 퀴비에에는아주단순한구분, 그러나그자체만으로도하나의체계보다값진명철한구분을보여주었다. 즉그는〈지능〉으로부터〈본능〉을떼어낸것이다.

그러나지금껏아무도다음과같은문제는제기하지않았다. 즉〈인간과야수의도덕감각은본질적으로다른것인가, 아니면정도의차이일뿐인가?〉

만일옛날에어떤이가이명제의뒷부분을감하지지했다면, 그의주장은도덕과종교에상처를입히는파렴치하고신성모독적인일로보였을것이다. 교회법정과세속법정은이구동성으로그에게유죄판결을내렸을것이다. 얼마나끔찍한말투로이불경스러운역설을단죄했겠는가! 사람들은다음과같이외쳤으리라. 〈양심, 양심이라는이인간의명예는그에게만주어진것이다. 정의와불의, 공덕과죄과라는관념은인간의고귀한특권이다. 세속의취향에맞서고선과악을구별하는숭고한능력, 자유와정의에의해점점신을닦아갈수있는이숭고한능력은만물의영장인인간에게고유한것이다. …아니, 덕이라는성스러운이미지는인간의마음속에만심어져있는것이다.〉 이것은감정으로가득차있으나사실아무의미가없는말이다.

인간은이성적이고사회적인동물 (zôon logikon kai politikon) 이라고아리스토텔레스는말했다. 이정의는그후에나온다른어떤정의들

보다 낫다. 그러나 나는 <인간은 기관器官들의 힘에 말미암은 지능이다> 라는 보날(L. de Bonald, 1754~1840, 프랑스의 정치저술가-유킴이) 씨의 유명한 정의도 무조건 배제하지는 않는다. 비록 이 정의가 미지의 것에 의해 기지의 것을, 즉 지능에 의해 살아있는 존재를 설명하고 나아가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인 동물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이중의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인간은 따라서 사회를 이루고 사는 동물이다. 사회를 말하는 자는 관계의 총화,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체계를 말한다. 그런데 체계란 특정한 조건들 아래에서만 존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 사회의 조건들은 무엇이며, <법칙들>은 무엇인가?

인간들 사이의 <권리>란 무엇이고,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 학파의 철학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신성한 본능이고, 영원한 천상의 목소리이며, 자연이 준 가르침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밝히는 빛이며,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진 법칙이다; 그것은 양심의 외침이고, 이성의 명령이며, 감정의 영감이고, 감각의 취향이다; 그것은 타인 속의 자기애, 즉 계명된 이기심이다; 그것은 어떤 내재적 관념이고, 순수 이성애 뿌리를 둔 실천이성의 정언 명령이다; 그것은 정념의 인력이다 등등. 이 모든 말이 몇 지게 보이는 만큼, 진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은 무의미하다. 우리가 이러한 미사여구를 열 페이지나 늘어놓더라도 (수많은 책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단 한 줄도 진척되지 않는다.

<정의는 공통의 효용> 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들어 반복에 불과하다. 샤를 콩트 씨는 자신의 『입법론』에서 <공공 행복이 입법자의 목적이어야만 한다는 원리는 어떤 뛰어난 이성애 의해서도 부정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 원리를 표명하고 증명했을 때라도, 환자의 치료가의 사의 목적이 라고 말함으로써 의학이 진보하지 않는 것처럼 입법도 진보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 않는가.

다른 길을 택하도록 하자. <권리>란 사회를 규율하는 원리들의 총화이다. 인간에게 정의란 이 원리들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이다.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사회적 본능을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를 나타내 보이는 것은 사회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일정한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간들 서로 간의 행위를 관찰한다면, 인간이 언제 사회를 이루고, 언제 사회를 이루지 않는가를 쉽사리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 추론함으로써 법칙을 얻을 수 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경우들로부터 출발하자.

자식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자식을 먹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어머니는 자식과 함께 사회를 이룬다. 그녀는 좋은 어머니이다. 아이를 버리는 어머니는 사회적 본능 (모성애는 사회적 본능의 수많은 형태 중 하나이다)에 충실하지 못하다. 그녀는 자연을 저버린 어머니이다.

돌발 사태에 대처하는 것이 바로 우두머리이다.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자신의 지능으로 무리의 본능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우두머리이다. 숙고하고 판단하고 이끄는 것이 바로 우두머리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두머리의 현명한 신중함이 전체의 최대 이익을 위해 무리의 관행을 통제하는 것이다.

천성적으로 사회를 이루고 사는 인간 역시 천성적으로 우두머리를 따른다. 애초에 이 우두머리는 아버지이고, 족장이며, 원로 즉 경험자이자 현자이며, 그 자질은 따라서 성찰과 지능의 자질이다. 인류는 다른 사회적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본능, 타고난 능력, 일반적인 관념, 감정과 이성의 범주 따위를 지니고 있다. 우두머리, 입법자, 왕들은 결코 무엇 하나 발명하지도 구상하지도 예견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얻은 경험에 따라, 그러나 늘 의견과 믿음에 순응하면서 사회를 이끌 뿐이다.

도덕이나 역사의 문제에 자신의 선동가적인 어두운 기질을 끌어들이면서, 인류는 원칙적으로 우두머리도 국왕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확인하는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왕정, 그리고 절대왕정도 민주정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아주 오래된 통치 형태이다. 사람들은 태고적부터 영웅들, 산적들, 편력 기사들이 왕관을 차지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왕정과 전제라는 두 가지를 혼동한다. 그러나 왕정은 인간의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소극적 공유제의 시기에도 존속했다. 반면에 영웅주의 및 그것이 낳은 전제는 정의의 관념의 첫 번째 형태 즉 힘의 통치와 더불어 시작되었을 뿐이다. 공적을 서로 비교해보아 최강자가 최적자라고 판단된 후부터 연장자는 최강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만 했으며, 왕정은 전제적이 된 것이다.

왕정의 자생적, 본능적 기원, 말하자면 왕정의 생리학적 기원은 태초부터 왕정에 초인간적인 성격을 부여했다. 인간은 왕을 신과 결부시켰으며, 신으로부터 최초의 왕들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왕가의 신성한 계보, 신들의 화신, 구세주의 설화가 생겼다. 여기에서 지금도 그 기이한 주창자들이 버티고 있는 왕권 신수설이 생겨났다.

왕권은 원래 선발에 의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인간이 거의 생산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점유하고 있지 않던 시기에는 세습의 관념을 낳고 아버지의 왕권을 아들에게 보장할 정도로 소유의 힘이 막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땅을 갈고 도시를 세웠을 때, 여러 가지 직능들이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독차지되었다. 여기에서 왕위 세습과 성직 세습이 생겼다. 여기에서 가장 일상적인 직업들에까지도 세습의 원리가 적용되는 일이 생겨났다. 여기에서 신분들의 구별, 서열에 따른 오만함, 평민의 비참함이 생겨났다. 이로써 내가 앞에서가 산상 속의 원리에 대해 말한 것, 즉 공식을 메우고 미완의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자연이 마련해 준 방식이 확립된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의 야욕에 의해 횡령자, 왕위 <찬탈자> 따위가 출현했으며, 어떤 이는 참주 tyran 라고 불려야 할 필요가 생겨났다. 그러나 이 명칭들에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 혐오스러운 왕들이 있었던 만큼, 참

리카 Res Publica 란공적인사물을말한다. 즉, 공적인사물을원하는자는누구나자신이공화주의자라고말할수있다. 국왕들역시공화주의자이다. 그러면! 당신은민주주의자입니까? 아니다. 뭐요! 당신은왕정주의자입니까? 아니다. 입헌주의자요? 천만의말씀. 그러면당신의귀족주의자입니까? 천만에. 당신은혼합정체를원합니까? 더욱아니다. 그러면당신은윙니까? 나는아나키스트 anarchiste 요. 알았습니다. 당신은빈정대고있군요. 이것은정부를거냥한말이군요. 결코아니오. 당신은막나의진솔하고도심사숙고한신념고백을들었다. 나는질서를아주사랑하지만그말이뜻하는바그대로아나키스트이다. 내말을들어보라.

사회를이루고사는동물들의세계에서, 새끼들의유약성은이미힘을가진어미들에게새끼들이복종해야할당연한이치가된다. 그리고동물특유의의식구조를보여주는습성이라는것에의해권력은최고참에게돌아간다. 비록이최고참이점점힘을잃고허약해진다고할지라도말이다. 사회가한우두머리의통솔아래있을때는거의언제나우두머리는사실상무리중의최고참이다. 나는거의언제나라고말한다. 왜냐하면기존질서가거칠정정들에의해교란될수도있기때문이다. 그렇게되면권위가다른이에게넘어간다. 그러면이권위는처음에는무력으로시작된후에공이어마찬가지로습성에의해유지되는것이다. 야생마는무리를지어다닌다. 이들에게는선두에서달리는우두머리가있으며, 공격과도주의신호를해주는그우두머리를민고따른다.

〈우리가기르는양은우리를따른다. 그러나양은또한자신이태어난무리를따른다. 양은인간에게서‘자기무리의우두머리’를불뿐이다. …가축들에게인간은그들사회의일원에지나지않는다. 인간에게요구되는기술은자신이가축들에게무리의일원으로받아들여지게하는것뿐이다. 지능이가축보다우수한인간은얼마안가서가축의우두머리가된다. 따라서인간은뷔퐁 (G. Buffon, 1707~1788, 프랑스의박물학자-오킨이) 이말했듯이, 이동물들의자연상태를바꾸어놓는것이아니라사실이자연상태를이용하는것이다. 달리말하자면, ‘사회성을가지고태어난’동물들을발견하고는, 그것들을‘길들이고’한동아리가되고그우두머리가되는것이다. 이렇게, 동물들의가축화는하나의특별한경우요, 단순한변모에지나지 않으며, ‘사회성’에의해정해진결과일뿐이다. 모든가축은그본성에서‘사회적인’동물이다. …〉 (플루랑, 『프레데릭퀴비에의관찰에대한분석적요약』)

사회성을지닌동물은〈본능적으로〉우두머리를따른다. 그러나퀴비에가빠뜨리고넘어간말, 즉이우두머리의역할은〈지능〉에의한것이라는사실을지적해두자. 우두머리는무리에게한동아리를이루는법, 자기지휘아래단결하는법, 번식하는법, 도망치거나영수하는법을가르치지않는다. 우두머리는자기를따르는무리역시이모든점을자기와마찬가지로잘알고있다는사실을이해한다. 그러나자신이쌓아온경험에의해

만일내가익사할위험에처한사람을구하러물속에뛰어든다면, 나는그의형제이자그의동료이다. 만일내가그를구하기는커녕물속에쳐박아버린다면, 나는그의적이자그의살해범이다.

자선을베푸는자는혈벗은자를동료로대한다. 물론완벽한의미에서동료로대하는것이아니라그와나누는금액정도로만동료로대하는것이기능하지만말이다. 자신이생산하지않은것을무력이나교활한것으로빼앗는자는자기자신에게서사회성을파괴하는자이다. 그는강도이다.

길에누워있는나그네를일으켜세우고, 상처를치료해주며, 기운을복돋아주고, 돈을나누어주는사마리아인은그렇게함으로써자신이그의동료이자이웃이라고선언하는것이다. 돌아보지않고나그네를지나쳐버리는사제는그나그네에게동료일수없으며적으로남는다.

이모든경우에서인간은자신의동료에대한내면적인인력에의해, 은근한공감에의해이끌린다. 이것이그로하여금함께사랑하고, 함께즐기고, 함께슬퍼하게한다. 따라서이인력에저항하려면자연에어긋나는어떤의지의힘이필요하다.

그러나이모든것이인간과동물들사이에어떤뚜렷한차이를이루어내지는않는다. 동물들의경우도, 새끼의연약함이어미의마음을떠나지않는한, 즉새끼들을어미에게결함시키지는한, 목숨을걸고새끼들을보호한다. 마치조국을위해목숨을바치는우리영웅들을생각나게할정도로용기를발휘하면서말이다. 어떤동물들은사냥감을쫓아서로모이고, 먹이를나누기위해서로찾고서로부른다 (어떤사람이표현한바에따르면, 서로초대한다). 위험이닥치면동물들은서로돕고, 서로보호하며, 서로에게알린다. 코끼리는도랑에빠진동료가빠져나오도록돕는다. 암소들은이리떼의습격을막기위해둥글게진陳을짜고뿔을위로쳐들며어린새끼들을가운데넣어보호한다. 말이나돼지는어느한마리가고통스럽게울부짖을때구하러달려간다. 동물들이서로짖을이루고, 수컷이암컷을어루만지며, 서로에게충실히대하는광경을내가어찌다묘사하라! 그러나공정을기하기위해서, 동물들사이의사교, 우애, 사랑을보여주는이감동적인우화가동물들이먹을것때문에서로싸우고수컷이나암컷을서로차지하려고이빨을드러내고물어뜯는일을방해하지는않는다는사실을덧붙여두자. 동물들은우리인간들과아주흡사하다.

사회적본능은인간에게나동물에게나많은적든존재한다. 인간과동물의본성은같은것이다. 인간은보다필연적으로더욱즐기차게결합한다. 동물은고립에더강하게버티는듯하다. 인간에게사회적욕구는더긴급하고더복잡하다. 짐승에게사회적욕구는덜뿌리깊고, 덜다양하며, 덜요구되는듯하다. 한마디로말해서사회를이루는것은인간의경우중과개체의보존을목적으로하나, 동물의경우에는종의보존이훨씬더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자신에게만 유일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그 무엇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회적 본능, 도덕 감각은 인간에게나 동물에게나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이 해하는 몇몇 자선과 정의와 헌신 따위의 행동을 두고 인간 스스로 신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이 동물적인 충동에 따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선량하고 애정 깊고 동정심 많으며 올바르다. 또한 우리는 성을 잘 내고 먹 것을 탐내고 사치를 즐기려고 집이 세다. 즉 우리는 동물과 같다. 우리의 가장 고결한 덕도 결국에는 본능의 맹목적인 충동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시성 諡聖과 신격화의 근거가 바로 이런 것이라니!

그러나 우리들 즉 두 발 두 손 을 가진 동물과 다른 생물들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차이점은 무엇인가?

철학도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즉, 그 차이는 우리가 우리의 사회성을 의식하는 데 반해서 동물은 그들의 사회성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사회적 본능의 작동에 대해 성찰하고 추론하는 데 반해서 동물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있다고 말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사회적 본능 (우리는 이것을 정의라고 부른다) 에 저항하는 것이 우선 타인에게, 다음에 우리 자신에게 해로운 일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듯 보이는 성찰과 추론의 능력에 의해서이다. 이기적인 인간, 도둑, 살인자, 즉 사회의 배신자들이 자연에 대해 죄를 짓고 있으며 또 고의로 악을 행할 때에는 타인과 자기 자신에게 죄가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이성이다. 우리와 같은 인간 존재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사회적 본능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성인 것이다. 양심의 가책, 징벌 및 형벌의 정의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지능의 차이를 입증하는 것일 뿐, 결코 정서 affections 의 차이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치를 따지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여자를 고르고 집을 선택하는 등의 아주 자질구레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이치를 따지니 말이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이치를 따진다. 우리의 추론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무데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외계의 현상들에 대해 얻은 지식이 그 현상들의 원인이나 법칙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듯이, 성찰은 우리의 본능을 일깨움으로써 우리의 감각적 특질을 계발해 주는 것이지만 그 성격 자체를 바꾸어 놓지는 않는다. 성찰은 우리에게 도덕성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 도덕성을 바꾸거나 수정하지는 않는다. 실수를 저지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품는 불만, 불의를 보고 우리가 느끼는 분노, 응분의 징벌이나 마땅한 보상이라는 관념 따위는 성찰의 결과이나 본능이나 정념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의무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 (나는 배타적 지능이라고 말할지는

에서는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덕에 관한 공론의 모든 모호성과 법률학의 수많은 모순들이 나온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서 음유시인들이 그토록 찬미해 마지 않던 힘의 권리와 책략의 권리는 그리스와 로마의 모든 입법들에 영감을 불어넣었으며, 오늘날 우리의 습속과 법령들에까지 전해져 있다. 그리스도교는 이 점에서 아무것도 바꾸어 놓지 않았다. 그렇다고 복음을 비난하지는 말자. 성직자들도 잘못 인도되기는 법학자들과 마찬가지로였으며 설명할 줄도 이해할 줄도 몰랐으니 말이다. 도덕에 관한 문제에 대한 공의회와 교황들의 무지는 고대 법학자나 전당포업자의 무지와 맞먹었다. 권리, 정의, 사회에 대한 이 심각한 무지는 교회들 죽이고 그 가르침을 영원히 더럽히는 것이었다. 로마 교회들과 여타 그리스도 교회들의 불충은 너무나 명백하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시했다. 모두가 도덕과 교회의 문제에서 길을 잃었다. 모두가 거짓되고 모순되며 불의와 살기로 가득 찬 말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교회는 신과 인간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리라. 자신의 무오류를 선언하고 자신의 도덕성을 더럽힌 교회 말이다. 개신교자 매님들도 몸을 낮추어야 하리라. ... 그러면 미망에서 깨어났지만 여전히 신앙이 깊고 너그러운 인민이 알아서 신중하게 행동 하리니 말이다.⁴

권리의 발달은, 소유가 그 여러 가지 형태들을 통해 밟아 온 것과 같은 단계를 그 여러 가지 표현 양태들을 통해서 밟아 왔다. 도처에서 정의가 도둑질을 쫓아내어 점점 더 좁은 한계 안에 그것을 가두어 넣는 것이 보인다. 지금까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정복, 불평등에 대한 평등의 정복은 본능에 의해서 고현실의 필요에 의해서만 달성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지닌 사교성의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성찰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봉건적인 혼동에 빠지고 말 것이다. 우리의 지성에 의해서 영광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무능력에 의해서 비참한 심연에 빠질 것인가.

소유의 두 번째 결과는 전제專制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전제는 합법적인 권위라는 관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전제의 자연적 원인들을 들추어냄으로써 합법적인 권위의 원리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통치 형태를 택할 것인가? 아! 그런 것을 묻다니! 당신은 공화주의자로 군요 라고 필경 나의 젊은 독자들 중 하나가 답할 것이다. 공화주의자, 그렇다. 그러나 이 말은 아무것도 분명히 나타내지 않는다. 레스푸블

⁴ 『사도행전』에는 <나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써 산다> 라고 적혀 있다. 이 말은 그는 자신의 노동에 의해서 산다는 뜻이다. 그런데 로마가 톨릭 사제들은 소유에 의해서 살기를 좋아했다. 대지주이자 영주였던 수도원장과 주교들에 맞선 중세 사치도시들의 투쟁은 잘 알려져 있다. 성직자의 불로소득을 옹호하려는 교황의 파문 사례도 마찬가지로 잘 알려져 있다. 오늘날에도 프랑스 성직자들의 공식 기구는 여전히 성직자의 보수는 임금이 아니라 원래 성직자의 소유였으나 1789 년에 제 3 신분에게서 빼앗아 간 재산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주장한다. 성직자는 자신의 생계를 노동의 권리에서가 아니라 불로소득권에서 찾기를 원한다.

굴을 붉히기는 했지만 어느 날 다음과 같은 말을 입밖으로 흘렸다고 전해진다. <내가 무기를 손에 잡고 있을 때, 왜 법률 같은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자신의 도덕 감각과 야망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 자기의 폭력을 영웅과 도적의 처세훈으로 정당화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힘의 권리에서 인간의 인간에 대한 착취, 달리 말하자면 노예제나 고리대금업이 나온다. 정복자가 피정복민에게 부과하는 공납 그리고 염세鹽稅, 국왕특전, 부역, 소작료, 집세 등등 다양한 세금들, 한마디로 말해서 소유가 바로 힘의 권리에서 나온다.

힘의 권리에 뒤이어서, 정의의 두 번째 표현 형태라 할 수 있는 책략의 권리가 나타났다. 이것은 사실이 분야에서 그다지 숨쉴 기회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만 했던 고대의 영웅들이 아주 달가워하지 않던 권리이다. 이것도 여전히 힘에 바탕을 둔 권리였지만, 육체적 능력으로서의 힘에서 심리적 능력으로서의 힘으로 변용된 형태의 권리였다. 교활한 언술로 적을 속이는 기술은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물론 강자는 늘 자신이 신의를 지키고 뽐내긴 했지만 말이다. 당시에 약속을 지키고 서약을 준수하는 것은 당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표현의 문제였다. 12 표법(기원전 451년에 공포된 로마 최초의 성문법-율건이)에는 <허가언명하는 대로 법이 있으라(Uti lingua nuncupassit, ita jus esto)> 라고 적혀 있다. 책략, 좀 더 낮게 말하자면 배신이고 대로마의 정치의 태반을 이루고 있었다. 비코(Vico, 1668~1774, 이탈리아의 역사가, 철학자-율건이)는 여러 예들 중에서 도덕이나 중세 몽테스키외역시 거론했던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로마인들은 사회 또는 국가에 해당하는 키비타스 civitas 라는 말의 도적으로 사용하면서 카르타고인들에게 그들의 재산과 <도시>를 보호해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카르타고인들은 이것을 실제적인 도시 즉 우르브스 urbs 로 이해하고는 성벽을 쌓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약을 위반했다는 구실로 로마인들의 침략을 받았다. 로마인들로서는 이 점에서 자신들이 영웅시대의 권리를 따르고 있을 뿐이지 애매한 문구로 적을 습격하여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벌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공업, 상업 및 은행의 이익은 책략의 권리에서 나온다. 거래에서의 사기행각, <재능> 또는 <천재성>이라는 미명으로 장식되어 있으나 고도의 속임수나 기만으로 보아야 마땅할 온갖 장광설들, 마지막으로 모든 종류의 사회적 불평등들,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책략의 권리에서 나온다.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도둑질에서는 힘과 책략이 다른 어떤 도움 없이도 골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허용된 도둑질에서는 힘과 책략이 어떤 유용한 생산물의 형태로 몸을 숨기고는 희생자들을 강탈하기 위한 병참 도구로서 그 생산물을 이용한다.

폭력과 책략의 직접적인 사용은 아주 일찍부터 만장일치로 비난받아 왔다. 그러나 여태껏 어떤 국민도 재능, 노동 및 점유와 결합된 형태의 도둑질

않는다. 왜냐하면 동물도 마찬가지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감정을 느끼며, 무리들 중 하나가 공격을 당하면 함께 덤벼들기 때문이다), 즉 선과 악에 대한 의식은 도덕성에 관한 인간과 동물 사이의 차이를 이루어 내지는 못한다.

제 2 절 사회성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단계에 대하여

나는 앞에서 내가 말한 사실, 즉 인류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 중 하나를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로서 여금 사회를 이루게 하는 힘인 공감의 인력은 그 본질상 맹목적이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앞선 권리들을 존중하지도 그렇다고 공격이나 우선권을 구별하지도 않고 항상 그때그때의 충동에 빠져들곤 한다. 그것은 부르는 사람이면 누구나 따라가는 잡종개와도 같다. 그것은 남자를 보면 누구나 빠라고 부르고 여자를 보면 누구나 유모로 여기는 젖먹이 아이와도 같다. 그것은 자기 종족과의 교류를 박탈당하고 고립 속에서 동료에게 달라붙는 생물과도 같다. 사회적 본능의 이러한 근본적 성격은 경박한 사람들의 우정을 참을 수 없고 싫어지게까지 만든다. 새 얼굴을 대할 때마다 낯을 빼앗기고, 덮어놓고 사근거리며, 찰나의 사귀기 때문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고귀한 정서를 저버리는 그런 경박한 사람들의 우정 말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결합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 속에 있다. 이 단계에서의 사교성은 우리와 닮은 존재를 생각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것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절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자기력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상호적이기는 하나 전달되지 않는다. 사랑, 친절, 연민, 동정 등,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대로 이름 붙일 수는 있으나 그 평가에 값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 어느 것도 인간을 동물보다 우위에 놓을 수 있을 만하지 않다.

사회성의 두 번째 단계는 정의의 한바, 우리는 이것을 <우리과 동등한 인격을 타인에게 인정하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감정의 차원에서 볼 때, 정의는 인간에게나 동물에게나 한결 같다. 그러나 인식의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인간만이 <정의로움>에 대한 완벽한 관념을 가질 수 있다. 물론 그것이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도덕성의 본질 자체를 바꾸어 놓을 수는 없지만 말이다. 우리는 곧 인간이 어떻게 동물들이 도달할 수 없는 사회성의 세 번째 단계에 이르는가를 보여 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나는 <사회, 정의, 평등>이라는 이 세 가지가 서로 동의어이고 서로 통하는 표현들이며 마땅히 서로 바꾸어 쓸 수도 있는 용어들이라는 사실을 형이상학적으로 논증해야만 한다.

난파선을피해약간의식량만을가지고겨우나룻배에올거탄어떤사람이파도에휩쓸리는것을보았을때, 나는그를구조해야만하는가? 그렇다. 나는구조에나서야만한다. 그렇지않으면나는그에대해반사회적대죄, 즉살인죄를범하는것이다.

그런데나는또한그와식량도나누어먹어야하는가?

이문제를해결하려면, 어조를바꾸어물어야한다. 즉, 만일사회가나룻배에대해의무를진다면, 사회는마찬가지로식량에대해서도의무를져야만하는가? 의문의여지가없다. 함께사회를이루는자의의무는절대적이다. 인간의사회적본능은인간에의한물건의선점보다앞서는것이며, 후자는전자에종속되는것이다. 점유행위가배타적으로인정되는것은모두에게동등한선점권이주어지는순간부터일뿐이다. 이경우에우리의의무감을희미하게만드는것은우리의예견능력인바, 이에견능력은우리로하여금다가올위험을두려워하게만들고우리를강탈행위에매달리게하며우리를도둑이나살인자로만든다. 동물은본능의의무를계산하는법이없으며, 하물며거기서생길수있는불편을염두에두지도않는다. 인간, 즉가장사회적인동물인인간에게지능이법에복종하지않을동기가되어버린다는것은참으로놀라운일이다. 인간은, 법의쓰임새는오로지인간을이롭게하는것이라고주장하는사회앞에거짓을늘어놓는다. 만일우리의신중함이우리의이기심을위한도구로만쓰인다면, 차라리신이우리에게서그신중함을다시앗아가는것이더나으리라.

<뭐라고!> 당신은말할것이다. <내가일해서얻은빵, 바로내빵을내가알지도못하고다시만날일도없으며아마도배는망덕으로보답할어떤낯선사람과나누어야만한다고! 이빵이적어도함께일해서얻은것이라면, 그사람이그빵을얻기위해무엇인가일을했다면, 그는자기몫을요구할수있을것이다. 그가힘을보탬만큼, 그는권리가있으니말이다. 그러나그가나에게어떤요구를한다는말인가? 우리는함께생산하지않았다. 그러니우리는함께먹지도않을것이다.>

이러한추론의오류는한생산자가다른생산자와반드시연결되어있는것은아니라는잘못된가정에서나오는것이다.

둘또는그이상의개인들사이에진정으로하나의사회가결성되고, 그기본원칙이승인되고기재되고서명되었다면, 그때부터그결과에서어떤어려움도있을수있다. 예컨대, 두사람이서로힘을합쳐서물고기를낚는가운데, 그중한사람이물고기를건져올리지못할지라도그가자기동료가낚은물고기에대한권리가있다는것은누구나다인정하고있다. 만일상인두명이함께회사를세우는경우, 그회사가운영되는동안손해와이익은공동의몫이다. 각자가자신을위해서가아니라회사를위해서생산했기때문에, 몫을나눌때, 고려되는것은생산자로서가아니라공동경영자로서이다. 이것이바로노예(농장주는노예에게지푸라기와쌀을준다) 나문명사회의노동자(자본가는노동자에게형편없는임금을준다) 가농장주나

라. 그러면나는즉시당신의콧대를꺼어놓으리라. 아니면, 두가지가동일한것이라고인정한다면, 나의논지가정확히옳다는것도인정하라. 그렇지않으면당신은지대와소작료를동시에폐지해야하리라.>

예수회신부의이무시무시한논박에대해몬탈트(Montalte, 『프로뱅시알』의저자인파스칼의별칭-웁긴이) 경은경종을울렸을것이며, 사회가위험에봉착해있고예수회신부들은사회외도대까지좁먹고있다고소리쳤을것이다.

사람들은흠친다. (14) 상인의이익이그의직능에따른정당한보수를초과할경우의상거래 commerce 에의해.

상거래의정의는아는바와같다. 그것은 <6 프랑의가치가나가는것을 3 프랑에사고, 3 프랑의가치가나가는것을 6 프랑에파는기술> 이다. 이렇게정의된거래와아메리카식도독질사이의차이점은교환되는가치들의상대적비율에, 즉이익의규모에있을뿐이다.

사람들은흠친다. (15) 자기의생산물에대해이익을남김으로써, 한직을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지나친보수를받음으로써.

일정한양의몫을소비자에게팔면서무게를잘때부대자루에손을넣어곡물한줌을덜어내는농부는도독질을하는것이다. 강의료는국가로부터받으면서출판업자를내세워그강의를다시일반인에게파는교수는도독질을하는것이다. 별불일없는일의대가로엄청난생산물을받는한직자는도독질을하는것이다. 관리든노동자든, 1 만크생산하고 4 만크받는자, 100 만크생산하고 1,000 만크받는자는도독질을하는것이다. 이책을출판하는편집자와이책의저자인나는책값어치의두배를받음으로써도독질을하는것이다.

요약해보자.

정의는고대의시인들이 <황금시대> 라불렀던소극적공유제에서벗어나자마자힘의권리가되기시작했다. 사회가구성되면, 능력의불평등이공적功績의관념을일깨우게되고, 형평에의거해서비단평판뿐만아니라물질적재산까지도개인의공적에비례시키고자하는착상이생겨난다. 그리고세상에서인정받는최초이자거의유일한공적이바로물리적인힘이기때문에, 가장공적이큰최우선자 aristos 로서최대의몫을차지할권리를가진자는가장힘센자 aristos 이다. 그러므로만일이권리가거부된다면, 그는당연히그것을힘으로빼앗는다. 여기에서부터모든물건에대한소유권을장악하는데까지는단한걸음만더디디면충분하다.

그리스인과로마인들이적어도전통에따라그들공화정최후의날까지보존했던것이바로이러한영웅시대의권리였다. 플라톤은자신의 『고르기아스』에서칼리클레스라는인물을소개하고있는데, 여기서칼리클레스는갖은기지를동원하여힘의권리를지지하고있는반면, 평등의옹호자 tou isou 인소크라테스는진지하게그를논박하고있다. 위대한폼페이우스(Pompeius, 기원전 1 세기경로마의장군-웁긴이) 는얼른얼

자본가들은 사회의 꽃이요 정직한 사람들의 화신이다. 도둑질도 적게하면 최선의 미덕이 되는가.³

사람들은 흠친다. (13) 지대, 소작료, 집세, 임대등에의해.

『프로뱅시알 Provinciales』의 저자 (17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블레즈 파스칼을 가리킨다-오킨이)는 예수회 신부 에스코바 Escobar 와 모하트라 Mohatra 계약을 거론하면서 17세기의 성실한 기독교인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에스코바는 말했다. <모하트라 계약이란 상품을 비싸게의 상으로 사서 즉시 같은 사람에게 현찰로 싸게 되파는 계약이다.> 에스코바는 이런 류의 사취를 정당화해주는 이유들을 찾아냈다. 파스칼을 비롯한 모든 안센과 교도들은 에스코바를 조롱했다. 그러나 에스코바 신부가 다음과 같은 논지를 그들에게 들이댄다면, 독설가 파스칼, 현학자 니콜 (P. Nicole, 1625~1695, 프랑스의 정치사상가, 신학자-오킨이), 불굴의 아르노 (A. Arnaud, 1560~1619, 프랑스의 법률가, 신학자-오킨이)는 과연 무어라고 말할까. <가옥 임대차 계약은 건물을 비싸게의 상으로 사서 일정한 기간 후에 같은 사람에게 싼 값으로 다시 파는 계약이다. 거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구매자는 첫 번째 판값과 두 번째 판값 사이의 차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가옥 임대차와 모하트라 계약이 동일하다는 것을 부인하

³ 고리대 또는 혹자의 완곡한 표현에 따르면 이자대부를 논한 저술가들을 검토해보는 것은 아주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일일 것이다. 신학자들은 항상 고리대와 싸워왔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토지와 가옥의 임대차는 정당하다고 인정해온바, 가옥의 임대차와 이자대부는 명백히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미묘한 차이로 미로에 빠져서 결국은 고리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갈피를 못잡게 되었다. 교회, 이도덕의 아성은 자기 교회의 순수성을 그토록 자랑삼기는 했지만, 소유와 고리대의 진정한 성격에 대해서는 영겁의 무지에 빠져버렸다. 교회는 심지어 높은 신부들의 입을 빌어 정말 개탄할 오류들을 공표했다.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차용은 결코 임대 계약과 동등하지 않다 (Non potest mutuum locationi ullo pacto comparari)> 라고 말했다. 보쉬에 Bossuet 에의하면, <지대의 설정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고리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식의 생각들로 어떻게 이자대부를 단죄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고리대를 정식으로 금하는 복음서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여기서 신학자들의 곤란은 극에 달한다. 이자대부와 집세를 조리게 동일시하는 경제학의 논증들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는 박할 수 없었던 이들 신학자는 더 이상 굳이 이자대부를 단죄하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복음서가 고리대를 금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고리대와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있는 모양이라고 말하는 데 그친다. 그러면 정작 <고리대란 무엇인가?> 이들, 국민의 스승들이,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헛말을 했을 리 없는> 복음서와 경제학적 논증들의 권위 사이에서 주춤거리는 것을 보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도 없다. 내가 보기에, 이른바 복음서 박사님들의 이 낡은 불충만 콧복음서에 더 없는 영광을 가져다주는 것도 없으리라. 살마시우스 Cl. Salmasius 는 대부이자 임차인인 둘을 동일시했으나, 곧 그로티우스, 푸엔데르프, 부를라마키 Burlamaqui, 볼프 Wolf, 하이네치우스 Heineccius 에 의해 <논박당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살마시우스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살마시우스의 이러한 동일시에 근거해서 일체의 불로수득은 부당하다고 결론짓는 다거나 이에 바탕을 두고 복음서의 평등을 입증하려 하는 거는, 이들은 정반대되는 결론을 끌어냈다. 그것은, 누구나 인정하듯 이 소작료와 집세가 허용되는 만큼 금전의 이자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인정한다면, 더 이상 고리대를 불릴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조금도 불경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율은 <환영幻影> 이요 <무無>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용주와 함께 생산에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동아리가 아닌 까닭에 생산물의 분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우리의 마차를 끄는 말이나 우리의 쟁기를 끄는 소는 우리와 함께 생산하나 우리와 한 동아리가 아니다. 우리가 생산물을 차지하며 말이나 소에게는 나누어주지 않는다. 우리가 부리는 동물이나 우리가 부리는 노동자는 이렇게 그쳐지가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이들에게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정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한 친절에 의해서일 뿐이다.¹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모두 한 동아리가 아니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앞의 두 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돌이켜보자. 즉,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를 원치 않을지라도, 일의 추세, 소비의 필요성, 생산의 법칙, 교환의 수학적 원리 등이 우리를 서로 결합시킨다. 이 규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소유자의 경우이다. 소유자는 자신의 불로수득권에 의해서 생산에 임하므로 그 누구와도 결합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누구도 그에게 나누어주어야 할 의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와도 자기의 생산물을 나누어야 할 의무가 없다. 소유자만을 예외로 하고,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해서 일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몸소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며, 서로 끊임없이 생산물과 용역을 교환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사회적 행위들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상업사회든 산업사회든 농업사회든 평등을 넘어서는 생각할 수 없다. 평등은 그 필수적인 존재 조건이다. 따라서 이 사회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서, 사회를 위배하는 일, 정의를 위배하는 일, 평등을 위배하는 일은 정확히 같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인간 모두에게 적용해보라. 그러면 지금이야기 한 바대로, 독자는 충분한 통찰력을 지니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나의 안내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한 사람이 어떤 발을 차지해서 이 발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만일 다른 사람도 그처럼 발을 차지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부당한 일이나 아니리라. 마찬가지로 그가 다른 곳으로 이 사할 요량으로 이 발은 그것과 대등한 다른 발과 교환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이나 아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다른 어떤 이로 하여금 자기 자리를 대신하게 하고는 그에게 <내가 쉬는 동안 나를 대신해 일해라> 라고 말한다면, 그는 부당하고 한 동아리가 아니면 <불균등> 하게 된다. 그는 소유자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생산물을 다른 사람들만큼, 아니 왕왕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게으름뱅이, 방탕아는 도둑놈이자 기생충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

¹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히브리어로 <정의를 행한다>, 그리스어로 <측은히 여긴다> (élémosinen, 여기서 프랑스어 aumône 이나 왔다), 라틴어로 <사랑 또는 자비를 행한다>, 프랑스어로 <자선을 베푸다> 라는 말에 해당한다. 이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 원래의 의미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의무를, 두 번째는 단지 동정을, 세 번째는 애정, 즉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를, 네 번째는 선의의 기쁨을 나타낸다.

것도주지말아야할것이다. 그러나그들도살아가야하는이상, 그들을감독하고일하게해야하는것이우리의의무이다.

사회성은감성적존재들사이의인력과같은것이다. 정의는성찰과인식을수반하는바로인력이다. 그런데우리는어떤일반적관념아래서, 어떤오성의범주안에서정의를인식하는가? 균등한양의범주안에서이다. 여기서정의에대한아주오래된정의定義가나왔다. 즉, 〈정의는평등이요불의는불평등이다 (Justum aequale est, injustum inaequale)〉.

그러면정의를실천한다는것은무엇인가? 그것은평등한노동조건아래서각자에게재산을평등하게나누는것이다. 즉그것은사회의일원으로행동하는것이다. 우리의이기심이아무리불평을늘어놓아도소용이없다. 명백한증거와필연앞에서는어떤평계도있을수없다.

선점권이란무엇인가? 그것은노동자들이나타남에따라노동자들사이에서땅을나누는자연적인방식이다. 이권리는일반이익앞에서사라지며, 이일반이익은말하자면사회적이익이므로또한선점자의이익이된다.

노동의권리란무엇인가? 그것은요구되는조건들을충족시킴으로써자기몫의재산을얻어낼수있는권리이다. 요컨대그것은사회의권리이며평등권이다.

관념과본능이결합한산물인정의는인간이느낄수있고관념을가질수있게되는즉시인간안에모습을드러낸다. 여기서사람들은정의를내재적이고원초적인감정이라고여겼으나이는논리적으로보나시간순서로보나잘못된견해이다. 그러나감정의능력과지능의능력에서태어난정의는굳이말하자면그잡다한구성에의해내게는 〈자아 moi〉 의통일성과단일성의가장강력한증거들중하나로보인다. 이는마치청각과시각이섞인다고해서반은청각적이고반은시각적인양면감각이만들어질수없듯이, 유기체가그자체로는이와같은혼합물을생산하지못하기때문에더욱그러하다.

정의는그이중적특성으로인해, 우리가제 2, 3, 4 장에서보아온모든논증들에대해우리가결정적으로옳다는것을입증해준다. 한편으로 〈정의〉의관념은사회의관념과동일하고사회는응당평등을내포하기때문에, 소유를옹호하기위해고안된모든변의근저에서어김없이평등이발견된다. 왜냐하면, 소유는그것이정의롭고사회적인것일때에만옹호될수있고소유란불평등에다름아닌만큼, 소유가사회와합치된다는것을증명하기위해서는불의가정의이고불평등이평등이라는모순된명제들을주장하지않을수없기때문이다. 다른한편으로정의의두번째요소인평등의개념은사물에대한수학적비율에따라우리에게주어졌기때문에, 노동, 생산및소비에필요한균형을파괴하는소유즉노동자들사이의재산의불균등분배는불가능할수밖에없다.

오디세우스, 솔론, 시논, 야곱에서도이츠 Deutz 에이르는고대및근대의유대인들, 보헤미아인들, 아랍인들에의해실행되었것들이다. 루이 13 세와루이 14 세의치세에서는도박에서숙임수를써도불명예스러운일이아니었다. 이것은어떤의미에서규칙의일부였으며, 많은정직한이들이운명의장난을교묘한사기로바로잡는일을조금도주저하지않았다. 심지어오늘날도어디서나 〈장사를할줄안다〉 는것, 즉상대를속인다는것이농민들에게서나크고작은장사에서아주중중받는장점으로통한다. 이것은너무나당연한듯이받아들여져서, 피해를입은사람조차별로원망을늘어놓지않을정도이다. 우리정부가복권의폐지를얼마나내려하지않으면서받아들였는지는잘알려져있다. 정부는그것이마치소유어떤치명타인듯이받아들였던것이다. 소매치기, 사기꾼, 야바위꾼은특히교묘한손놀림, 교묘한재기, 뽐내는장광설, 기발한피를십분이용한다. 이들은이따금씩탐욕에미끼를던지는것이다. 그리하여물리적강압에대해서보다는지능에대해훨씬관대한우리의형법은위에서언급한네종류의도둑질을두번째범주로분류하여명예형이아니라그저경범죄정도로처리해야한다고민었다. 지금이라면이법은유물론적이고무신론적이라고비난받을것이다.

사람들은흠친다. (12) 고리대에의해.

복음서가나온이래그토록혐오의대상이되고그토록엄하게단죄되어온이부류의도둑질은금지된도둑질과허용된도둑질사이의과도기적형태를이룬다. 따라서그것은그모호한성격으로인해법률이나도덕의문제에서많은모순들을, 긍정인, 재정가, 장사치등에의해야주교묘하게이용되는많은모순들을불러일으키고있다. 말하자면, 10, 12, 15% 로저당을잡고돈을빌려주는고리대업자는발각되면무거운벌금을물지만, 대부가아니라교환또는할인이라는명목으로같은이자를받는은행가는국왕의특권에의해보호받고있다. 그러나은행가와고리대업자사이의차이는실로명목적인것이다. 동산이나부동산을담보로돈을빌려주는고리대업자와 마찬가지로, 은행가도지폐를담보로돈을빌려준다. 고리대업자와 마찬가지로은행가는이자를먼저받는다. 고리대업자와마찬가지로은행가는담보가소멸될경우, 즉은행권이변제되지않는경우, 차용자에대해상환청구권을갖는다 (이경우은행가는정확히말하자면돈을판매하는자가아니라돈을빌려주는자이다). 물론고리대는대부기간이 1 년, 2 년, 3 년, 9 년또는그이상일수있지만, 은행가는단기대부만한다. 그러나대부기간의차이나증서형식의다양함이계약의성격을바꾸지는못한다. 국가나회사를상대로 3, 4, 5% 의이자로자금을투자하는자본가들에대해말하자면, 이들즉은행가나고리대업자들보다어느정도적은고리대를받는

〈흠치다 voler〉라는 프랑스 동사의 어원은 더욱의 미심장하다. voler 또는 faire la vole 은 사람의 손바닥을 뜻하는 라틴어 vola 에서 온 말로, 카드 놀이에서 모든 패를 다 따내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도둑 voleur 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최대의 몫을 얻은 수혜자와 같은 것이다. 아마도 이 voler 라는 동사는 voleurs 의 은어에서 생겨나서 일상어로 통용되다가 마침내 법률 용어로까지 쓰이게 된 듯하다.

도둑질은 수많은 방식으로 행해진다. 입법자들은 이 방식들을 그 흉악성이나 공헌도의 정도에 따라 아주 교묘하게 구분하고 분류했는데, 이는 도둑질들 중에서 어떤 것은 치하하고 어떤 것은 응징하기 위함이었다.

사람들은 흠친다. (1) 거리에서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2) 혼자서 또는 무리를 지어, (3) 가택 침입에 의해, (4) 사취에 의해, (5) 거짓 파산에 의해, (6) 공문서 또는 사문서 변조에 의해, (7) 화폐 위조 등에 의해.

위의 부류는 무력이나 공개적인 사기 행위에 의해 자기 직분을 행사하는 모든 도둑들, 즉 강도, 산적, 해적, 즉 육상과 해상 도둑 등등을 다 포괄하고 있다. 고대의 영웅들은 이 칭호들을 일종의 영예로 여겼으며, 자신의 직업을 돈벌이로서만이 아니라 고귀한 것으로 생각했다. 니므롯, 테세우스, 이아손과 아르고호號의 용사들, 입다, 다윗, 카쿠스, 로물루스, 클로비스와 메로빙거 왕조의 왕들, 로베르 기스키르, 탕크레드 드 오토빌, 보에몽 등 대다수 노르만족의 영웅들, 이들 모두는 산적이요 도둑이었다. 도둑이지닌 영웅적 특성은 호라티우스(Horatius, 기원전 65~8, 로마의 시인-울긴이) 가 아킬레우스에 대해 말한 다음의 시구에 잘 나타나 있다.

그가 타고 난 권리를 부인하고, 무기에 모든 권리를 부여하라.

(Jura neget sibi nata, nihil non arroget armis)²

그것은 또한 야콥의 유언장 (『창세기』, 제 48 장) 에도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다윗에게, 그리스도교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적용했던 바로 그 유언이다 (모든 것에 맞서는 그의 손 <Manus ejus contra omnes>). 그의 손이 모든 것을 흠치고 몽땅 차지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도둑 즉 고대의 무장한 강자는 죽을 때까지 추적당한다. 그의 직업은 법령에 따라 금고형에서 교수형에 이르기까지 체형이나 명예형으로 다스려진다.

사람들은 흠친다. (8) 협잡에 의해, (9) 사기에 의해, (10) 배임에 의해, (II) 도박이나 복권에 의해.

도둑질의 이 두 번째 부류는 젊은 이들의 기백과 창의력을 예리하게 다듬기 위해 루크르고스의 법령에서 장려되었던 것들이다. 이 부류의 도둑질은

² 나의 권리, 그것은 나의 창이자 나의 방패이다. 브로사르 Brossard 장군은 아킬레우스처럼 말했다. <나는 나의 창과 방패로 포도주와 황금과 여자를 얻었노라.> (호라티우스의 『시문집 Ars poetica』 의 제 122 절에 실린 구절-울긴이)

그리하여 모든 인간은 서로 결합되어 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정의의 부여받고 있으며 누구나 평등하다. 그렇다면 사랑이나 우정과 같은 남다른 감정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인가?

이것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조금 전에 나는 내가 구하려나 설수 있는 위험에 처한 어떤 사람의 경우를 가정했다. 이제 나는 목숨이 위태로운 두 사람에게 동시에 구원을 요청받았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나는 다른 한 사람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둔 채 혈연, 우정, 사귄다는 존중심 등에 끌려서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도록 허용되고 또 심지어 그렇게 하도록 요청받는 것인가? 그렇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전체 사회 안에는 우리들 각자에게 개개인만큼이나 많은 개별 사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성이라는 바로 그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형성된 친근성의 순서에 따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 앞서서 자기 부모, 아이들, 친구, 동료 등을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면 이 선호성의 바탕은 무엇인가?

재판관이 그의 친구와 그의 적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할 경우가 있다. 그는 이 경우에 <가장 먼자> 보다 <가장 가까운자> 를 선호해서 그와 정반대의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아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자기 친구의 불의를 선택한다면, 그는 사회 계약을 어긴 자기 친구의 불충에 공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말하자면 자기 친구와 함께 사회 전체에 맞서서 동맹을 맺는 셈이다. 편애의 효력은 사랑, 존중, 신뢰, 친밀감과 같이 우리에게 고유한 개인적인 관계들의 경우에만 작동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적용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버지는 이웃의 아이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자기 아이에게 뛰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관의 경우 권리의 인증이 개인적일 수도 임의적일 수도 없다. 어떤 자에게 손해라 끼치면서 다른 자를 도와준다는 것은 그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커다란 사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말하자면 동심원 모양으로 개별 사회들을 구성한다는 이 이론은 여러 종류의 사회적인 무들이 서로 간의 대립과 갈등을 낳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 즉 고대 비극의 주요 소재가 되었던 문제들을 푸는 열쇠를 제공한다.

동물의 경우 정의는 어떤 의미에서 소극적이다. 약자를 지키고, 사냥에 나서고, 무리 지어 약탈하고, 공동 방어에 나서고 이따금씩 개별적으로 돕는 경우를 제외하면, 동물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일어서지 못하는 병든 동물, 함정에 빠진 어설픈 동물은 치료도 받지 못하고 먹을 것도 얻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 치료하거나 궁지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병상에서 치료를 받는다거나 수용소에서 음식을 제공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물들의 자기 무리에 대한 무관심은 자원의 부족에서 뿐만 아니라 지능이 모

자라는데서 생긴다. 인간들사이에서나타나는친근성의차이는동물에게서도찾아볼수있다. 동물들은습성, 좋은이웃관계, 같은혈연에서생기는애정을간직하고있으며이것보다저것을더좋아하는선호성을보이기도한다. 우리와비교해볼때, 동물의기억은허약하고, 감정은막연하며, 지능은거의백지상태이다. 그러나사물을식별하는힘은동물에게도존재하는바, 이점으로볼때동물에대한인간의우월성은전적으로우리의오성에서나오는것이다.

폭넓은기억력과깊은판단력을가진우리인간은사회적본능이우리에게일깨워준행위들을더늘리고서로결합시킬줄을안다. 우리는그기억력과판단력을더효율적으로다듬으며권리의정도와타월성에맞추어배분할줄안다. 짐승도사회를이루고살며정의를실행할줄알지만성찰이나사변이없이본능에몸을내맡긴다. 동물의〈자아〉는사회적감정을평등의관념에결합시킬줄을모른다. 그도그렇것이평등이라는관념은추상적이라서동물에게는빠져있는것이다. 그반면에, 사회는평등한배분율의미한다는원리에서출발하는우리인간은추론의능력에의해서우리가가진권리들의규칙에대해이해하고동의할수있다. 우리는우리의판단력을더밀고나가기도한다. 그러나이모든것에서우리의의식은아주작은역할만을하고있다. 이사실은, 우리와지능이아주비슷한어떤동물들에게서희미한미광처럼나타날뿐인권리의관념이어떤미개인들의경우이와비슷한수준으로나타나지만플라톤이나프랭클린 Flanklin 과같은이들의경우최고의수준으로나타난다는점에서입증된다. 개인들에게나타나는도덕감각의발달이나국민들에게나타나는법률의진보를추적해보라. 그러면정의나입법적완결성이라는관념은어느경우에나지능과정비례함을알수있다. 철학자들이단순하다고민는정의롭다는관념은실제로는매우복잡하다. 그관념은한편으로는사회적본능에의해주어지며다른한편으로는타인과대등한공적이라는관념에의해주어진다. 죄의식이정의가유린되었다는자각과의지적선택이라는관념에의해주어지듯이말이다.

요약해보자. 본능은그본능에대한지식에의해전혀수정되지않는다. 그리고우리가지금까지관찰해온여러가지사회의사실들은동물적사회성에속하는것이다. 우리는정의, 즉평등의이치아래인식된사회성이무엇인가를알고있다. 우리를동물에서떼어놓을수있는것은아무것도없다.

공유제는억압과예종이다. 인간은기꺼이의무의계율을준수하고자하며, 자기조국에봉사하고자기친구들을따르고자한다. 그러나인간은자기가좋아하는일을자기가원할때자기가원하는만큼하고자한다. 인간은자기시간을자유롭게선용하고필요한것만따르기를원하며우정, 여가, 학습등을스스로선택하길원한다. 인간은명령에의해서가아니라이성에의해서봉사하길원한다. 굴종적인의무감에의해서가아니라이기심에서스스로희생하길원한다. 공유제는본질적으로우리의능력의자유로운행사에, 우리의가장고결한성향에, 우리의가장내밀한감정에어긋나는것이다. 공유제를개별이성밋의지의요구와타협시키고자하는사람들이생각해내는그어떤것도그저늘같은미명아래내용을바꾸는데그칠뿐이다. 그런데우리가진리를추구한다면, 우리는말장난을피해야만한다.

따라서공유제는의식의자율성과평등을침해한다. 정신과심정의자발성및행동과사상에서의자유의지를훼손함으로써의식의자율성이침해당하는것이며, 노동과태만, 재능과우둔, 심지어악덕과덕망을대등하게취급함으로써평등이침해당하는것이다. 요컨대, 소유가축적하고자하는경쟁심에의해불가능하듯이, 공유제는게으르고자하는경쟁심에의해불가능한것이다.

II. 한편, 소유는배제권과불로수득권에의해평등을침해하며, 전체에의해자유의를침해한다. 소유가가져오는첫번째결과와앞의세장에서충분히논의했으므로, 여기서는최종적인비교대조를통해소유가도둑질과완벽하게일치한다는사실을입증하는것으로만족하자.

도둑 voleur 은라틴어로 fur 또는 latro 라고한다. 앞의말은그리스어 phôr, pherô(〈나는가져간다〉) 에서나왔고라틴어 fero 에해당한다. 뒤의말은 lathroô(〈나는강탈한다〉) 에서나온말로그어원은 léthô, 즉라틴어로는 lateo(〈나는숨는다〉) 이다. 그리스어에는또한 kleptô(〈나는훔친다〉) 에서온 kleptês 가있으며, kaluptô(〈나는숨긴다〉), (〈나는감춘다〉) 와어원을같이한다. 이러한어원론에따르자면, 도둑의관념은자신의것이아닌어떤물건을어떤방법으로든지숨기고가져가고빼앗는사람을가리킨다.

히브리인들은바로이관념을 gannab 이라는말로표현하는데, 이는동사 gannab(〈떼어두다〉, 〈전용하다〉) 에서나왔다. 십계명의여덟번째계율, lo thi-gnob(〈도둑질하지말라〉) 는〈아무것도너를위해서간직하지말라〉, 〈너를위해아무것도남기지말라〉는뜻이다. 이는말하자면유명한사도아나니아 Anania 가그랬던것처럼(신약, 『사도행전』 5 장 1~11 절에나오는이야기-옮긴이), 한사회에입회하면서자기가가진모든것을다가지고오겠다고약속해놓고는비밀리에일부를남겨두는인간의행위를가리키는것이다.

된 어떤 신조예의해서라기보다는 소유에 대한 불타는 혐오감에 의해 이끌린 바뵈프주의자들(프랑스대혁명당시 〈평등자의 음모〉를 꾸민 그라쿠스 바뵈프 G. Babeuf 의 추종자들-웁긴이)은 자신들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몰락했다. 공유제와 불평등을 하나로 합쳐버린 생시몽주의자들은 가장 행렬처럼 지나가 버렸다. 오늘날 사회가 봉착한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또 다시 암초에 부딪쳐 난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기한 노릇이다! 계획적인 공유제, 즉 소유에 대한 심사숙고한 부정적 정의 소유라는 편견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서 구상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모든 이론들의 근저에서 다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소유이다.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물론 자기것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공동체 자체가 소유자, 그것도 재산만이 아니라 인격과 의지의 소유자인 것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부과한 하나의 조건에 지나지 않아야 할 노동이 공유제 아래서 인간에 대한 격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격률이 되는 것, 성찰에 따르는 지와는 양립할 수 없는 수동적 복종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 겉으로는 명철해 보이지만 만질수록 투성이 일수밖에 없는 규칙들을 지키는 데서 어떤 불평도 용납되지 않는 것, 인간의 생명, 재능, 모든 능력들이 다 국가의 소유물로 되고 국가가 그것을 일반 이익에 맞도록 원하는 대로 사용 할 권리를 갖는 것, 개별 단체들은 그 단체들의 능력이나 특성에 대한 호·불호에 관계 없이 철저히 금지되는 것(개별 단체들을 허용한다는 것은 대공유제안에 소공유제들을, 따라서 소유들을 도입하는 것이니 말이다), 의무에서 가아나라선의에서, 규정예의해서가 아니라 충고예의해서 이기는 하지만, 강자가 약자의 일을 떠맡아야만 하고, 부당하게 여겨지더라도 근면한 자가 게으른 자의 일을 떠맡아야만 하며, 불합리해보일지라도 민활한 자가 우직한 자의 일을 떠맡아야만 하는 것, 인간이 자신의 〈자아〉, 자발성, 천분, 애정 등을 집어 던지고 공동 생활의 위업과 완고함 앞에서 미천하게 자신을 낮추어야만 하는 것 — 지금 열거한 모든 현상은 소유의 준엄성이라는 이 원리에 의한 것이다.

공유제는 불평등이다. 그러나 그것은 소유가 불평등이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에서 그러하다. 소유는 약자에 대한 강자의 착취이다. 그러나 공유제는 강자에 대한 약자의 착취이다. 소유제의 경우, 조건들의 불평등은 물리적인 또는 지적인 힘, 사건들, 우연 또는 〈행운〉의 힘, 기존 소유의 힘 등 어떤 이름을 지니고 있든 간에 힘의 결과이다. 공유제의 경우, 불평등은 재능과 노동의 범용성을 소유제에서의 힘만큼 널리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 이유해한 등식은 양식 있는 자들을 분노케 하며 공격 있는 자들의 불평을 산다. 왜냐하면 약자를 돕는 것이 강자의 의무일 수는 있다 할지라도, 강자는 자신의 아량으로 그리하려 할 뿐이며 자신과 필적되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노동과 임금의 조건에서 평등케 하라. 그러나 공동과업에서의 불성실에 대한 서로간의 의심으로 그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라.

제 3 절 사회성의 세 번째 단계에 대하여

독자들은 아마 내가 제 3 장에서 적성의 다양성과 본업에 대해 말할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으리라. 인간들 사이에 재능과 능력의 총화는 누구나 같으며 인간의 천성은 모두 유사하다. 지금 이대로의 우리 모두는 시인이자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예술가이자 장인이자 농사꾼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에 동일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한 사회 안에서는 이 인간과 저 인간 사이에, 한 인간 안에서는 이 능력과 저 능력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동일한 능력에서의 이 다양한 정도의 차이, 특정 작업에 대한 이 재능의 우월성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우리 사회의 토대 자체를 이루고 있다. 지능과 천부의 재능이 자연에 의해 그토록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토록 커다란 축복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라는 유기체는 어떤 특정 재능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개개 노동자는 자기 직능에 전념함으로써 충분히 자기 동료들이 이룩한 작업과 발견들을 누리 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지식을 얻 제 나 얻을 수 있다. 자연의 이 단순하지만 현명한 보살핌에 의해서 노동자는 자기의 작업에만 고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마음의 해동료들과 결합하기에 앞서서 생각의 해동료들과 맺어져 있다. 따라서 그에게는 사랑이 지능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동물들의 사회는 이와 같지 않다. 어떤 종이든 개개 동물의 적성들은 아주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그 양적 측면에서 서로 대등하며, 그 적성들이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강도의 측면에서도 서로 대등하다. 먹이를 찾는 다거나, 적을 피한다거나, 구멍을 판다거나, 동지를 쫓는 다거나, 개개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이 하는 모든 것을 할 줄 안다. 동물들은 몸이 자유롭게 고기력이 왕성한 한 자기 이웃의 도움을 기다리지도요 구하지도 않으며, 그 이웃도 마찬가지이다.

한 동 아리가 되어 사는 동물들은 서로 이웃을 이루기는 하지만 그들 사이에 어떤 생각의 나눔이나 어떤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 동물은 모두가 같은 것을 하고, 아무것도 배우거나 머릿속에 담아 두지 않으며,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느끼며 서로 접촉할 뿐, 결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은 다른 인간과 관념, 감정, 생산물, 용역 따위를 끊임 없이 교환한다. 사회에서 습득되고 실행되는 모든 것이 그에게 필요하다. 이 엄청난 분량의 생산물과 관념들 중에서 각자가 홀로 행하고 홀로 얻어야 할 것은 마치 태양 앞에 있는 원자만큼이나 아주 적은 양이다. 인간은 사회에 의해서 만 인간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힘들 사이의 조화와 균형에 의해서만 존립할 수 있다.

동물에게 사회는 〈단순한〉 양태를 띠지만, 인간에게 사회는 〈복잡한〉 양태를 띤다. 동물과 동물을 이어주는 바로 그 본능에 의해 인간은 인간

과이어진다. 그러나 인간의 결합은 동물의 그것과 다르다. 도덕성의 차이를 낳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결합양태의 차이이다.

나는 소유를 사회상태의 토대로 간주하는 바로 그 법칙들에 의해 그리고 경제학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어찌면지나 칠정도로 장황하게 입증하였다. 즉 그 사실은, 조건들의 불평등은 누가 무엇을 먼저 점유했다는 점에 의해서도, 재능, 용역, 근면성, 능력 따위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는 점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건들의 평등이 자연권, 자유, 생산의 법칙, 물리적 천성의 한계, 그리고 사회의 원리 그 자체의 필연적인 결과라 할지라도, 이 평등이 <차별> 과 <대변> 의 한계 너머로 사회적 감정이 비등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선행이나 사랑이라는 정신상태는 그 한계를 넘어서나. 경제가 그 균형을 달성했을 때, 영혼은 자기 고유의 정의를 누리기 시작하며 인간 정서는 한없는 애정 속에서 꽃을 피운다.

이때에 사회적 감정은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새로운 성격을 띤다. 그것은 강자에게는 관용의 기쁨으로, 대등한 자들 사이에서는 진솔한 우정으로, 약자에게는 감탄과 감사의 행복으로 나타난다.

힘과 용기와 재능이 우월한 인간은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사회에 빚지고 있으며, 사회가 없다면 그 자신도 있을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이 사회의 최말단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 이상, 그것만으로도 사회가 자신에게 해줄 바를 다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인간은 자기 능력의 탁월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인간에게서 영예와 존중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은 바로 인간이 몸소 인류에게 바치는 자발적인 존중심이며 자신은 자연의 도구일 뿐이라는 자각이다. 인간이 자신을 구별하고 나아가 자신을 높여서 동물들은 도달할 수 없는 사회적 도덕성의 일정한 단계에 이르는 것은 굳이 말하자면 바로 이러한 심정과 정신의 동시적이고 백, 즉 위대한 존재에 대한 참된 갈망에 의해서이다. 헤라클레스는 괴물들을 때려눕히고 강도들을 징벌하여 그리스를 구했으며, 오르페우스는 천하고 거친 펠라스고이인들을 교화시켰지만, 이들은 공로의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여기에 가장 고상한 시적 창조가 있으며, 여기에 가장 고상한 정의와 미덕의 표현이 있다.

현신의 기쁨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만일 인간 사회를 굳이 그리스 비극의 공연에 비교한다면, 나는 숭고한 정신과 위대한 영혼의 무리가 <제 1 연행> 을 맡고 사소하고 미천한 무리가 <제 2 연> 을 맡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뒤의 무리는 힘들기만 하고 보잘 것 없는 역할을, 그러나 다수에서 오는 효과나 배역의 전체적인 조화로 보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떠맡고 있다. 그들은 앞의 무리가 구상한 역할을 상연한다. 그들은 앞의 무리에 이끌려가면서도 앞의 무리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앞의 무리에게 찬사를 보내고 갈채와 경탄을 아끼지 않는다.

감사에는 숭배와 열광이 뒤따른다.

에 의해, 인간은 만일 평등이 사회의 필요조건이라면, 공유제는 예종의 첫 번째 유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모든 것을 헤겔의 정식에 의해서 설명하자면,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사교성의 첫 번째 양태이자 첫 번째 결정체인 공유제는 사회 발전의 첫 번째 항, 즉 테제 (Thesis, 正) 이다. 공동체의 모순된 표현인 소유는 두 번째 항, 즉 안티테제 (Antithesis, 反) 를 이룬다. 그러면 세 번째 항, 즉 신테제 (Synthesis, 合) 를 찾는 일이 남는바, 우리는 이를 해결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신테제는 테제와 안티테제의 수정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다. 따라서 테제와 안티테제의 특성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사회성에 적대적인 요소들을 거기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은 그 두 요소를 결합하면 인간적 결합의 참된 형태를 얻을 수 있으리라.

제 2 절 공유제와 소유의 특징들

I. 그 누구든 소유나 공유제 없이는 사회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될 것이다. 한 없이 개탄할 이유로 인해 소유는 생명력을 얻어왔다. 공유제의 불합리한 점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 비판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유제를 멀리하도록 하는데 그리 많은 웅변을 필요하지 않았다. 공유제가 가져온 치유할 수 없는 부당성들, 그 동조자에게나 반대자에게가 한 폭력, 인간의 의지에 부과한 철의 명에, 인간의 의식에 가한 도덕적 고문, 사회에 불어넣은 무기력증,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유롭고 활동적이며 이성적이고 속박에서 벗어난 인간의 개성을 잃어 맨 공유제의 그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확일성이 일반인의 양식을 일깨우고 마침내 공유제를 가차 없이 단죄하게 만든 것이다.

공유제를 옹호 할 양으로 흔히 거론되는 인물들과 실례들은 오히려 공유제와 어긋나 보인다. 예컨대 플라톤의 공산주의 공화국은 노예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루쿠르고스 (Lukourgos, 기원전 9 세기 스파르타의 전설적인 입법자-웅건이) 의 공화국은, 주인을 위해서 모든 생산을 짊어지고 오로지 체력 단련과 전쟁에만 전념하는 노예들에 의해 움직였다. 장자크 루소 역시 공유제와 평등을 혼동하여 노예제가 없으면 조건들의 평등도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말했다. 원시 교회의 공유제들은 그 첫 세기의 끝까지도 버티지 못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원 안으로 숨어들었다. 파라과이에서 예수회 신부들이 시도한 공유제에서 흑인들의 처지는 방문객의 눈에 노예들만 큼이나 비참해 보였다. 신참자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량한 신부님들도 랑을 파고 담장을 쌓아야만 했던 것이 사실이다. 명료하게 정식화

물이라고 표현해도 되리라) 이라고 이름 붙인다. 본능은 정열과 열광을 낳는다. 그러나 지능은 범죄와 타락을 낳는다.

자신의 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인간은 자기 자신의 관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찰도 이용한다. 인간은 경험들을 기록하고 연대기를 보존한다. 따라서 개인에게나 종족에게나 지능이 발전한다. 동물들 사이에는 어떤 지식의 전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각 개체의 기억은 그 개체와 더불어 사라진다.

따라서 만일 성찰이라는 말로 <우리의 본능을 지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항구적인 성향>을 뜻하지 않는 한, 우리를 동물과 구별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찰이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인간이 본능에 복종하는 한, 인간은 자기가 한 일을 의식하지 못한다. 만일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본능만을 추동력으로 삼는다면, 인간에게는 어떤 오류도, 어떤 악도, 어떤 무질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물주는 우리에게 성찰의 힘을 부여했는데, 이는 우리의 본능이 지능으로 변화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성찰과 그 결과로 생기는 인식은 몇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는 우리의 본능이 성찰에 의해 인도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사고하는 능력이 우리를 우리의 천성이나 우리의 목적과는 어긋나게 행동하도록 만든다. 즉,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악을 저지르기도 하며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한다.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주는 본능과 우리를 악에 빠뜨리는 성찰, 이 두 가지가 선과 악에 관한 지식으로 대체되어, 그로 인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취하고 저것은 피할 수 있게 되는 그 날까지 말이다.

이렇게, 악 즉 오류와 그 결과들은 본능과 성찰이라는 두 적대적인 능력이 뒤섞여 태어난 첫 번째 아이이다. 선 즉 진리는 그 두 번째의 불가피한 결실임에 틀림이 없다. 비유를 계속하자면, 악은 두 개의 상반되는 힘 사이의 근친상간의 소산이다. 선은 그 두 힘의 신성하고 신비스러운 결합에 의해 조만간 태어날 적자嫡子 이리라.

추론 능력의 소산인 소유는 대조적인 것들을 통해 더욱 견고해진다. 그런데 성찰과 추론이 자발성보다나중에 나타나고, 관찰이 감각보다나중에 나타나며, 경험이 본능보다나중에 나타나듯이, 소유는 공유제 communauté 보다나중에 나타난다. 공유제라는 단순한 형태의 결사는 사교성의 필연적 목적이나 본원적 약동이며, 사교성이 모습을 드러내고 자리를 잡는 자발적인 운동이다. 그것은 인간 문명의 첫 번째 단계이다. 법학자들이 <소극적 공유제>라 부르는 이러한 사회 상태 안에서 인간은 인간에게 접근하고, 서로 대지의 결실과 동물의 젖과 고기를 나눈다. 인간이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는 한 소극적으로 물 수밖에 없는 이 공유제는 노동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것으로 되어간다. 그러나 바로 이때 사상의 자율성에 의해, 그리고 최선과 최악에 대한 가공할 추론 능력

그러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평등이다. 선행은 압제로 변질되고, 찬미는 노예근성으로 변질된다. 그러나 우애는 평등의 딸이다. 오, 나의 친구들이여! 시샘이나 영예가 없이 내가 당신들 옆에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평등이 우리를 하나로 결합시키고 운명이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주면 좋으련만. 내가 당신들 중 누구에게 가장 큰 존경심을 바쳐야 할지를 고민하기 전에 그냥 죽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우애는 사람들의 동심 童心에 아주 값진 것이다. 관용, 감사(여기서 나쁜 뛰어난 능력에게 바치는 찬미에서 나오는 것만을 감사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애는 내가 <형평 équité>² 즉 <사회적 비례 배분>이라 부르는 어떤 특유의 정서에서 나오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조들이다. 형평이 정의의 좌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의는 항상 형평을 토대로 삼음으로써 그것에 존중을 덧붙여 서마침내는 인간에게서 사회성의 세 번째 단계를 구성한다.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자를 돕고 그들을 우리와 대등한 위치로 끌어 올리는 일, 우리가 강자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존중과 영예를 바치는 일, 우리가 비록 교환의 대가로서나마 우리 이웃, 우리 친구, 우리와 동등한 자들에게서 받은 것에 대해 그들에게 감사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동시에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형평에 의해 서이다. 형평은 이성 과정의 예의 해 이상적인 상태로 고양된 사회성이다. 그가 장통상적인 특징은 <우아함> 또는 <예의바름> 인바, 이는 몇몇 민족들의 경우 그것만으로도 사회적인 의무 대부분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짐승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다. 짐승들은 사랑하고 서로 집착하고 무엇인가에 대한 편애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존중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짐승들에게서 관용도 찬미도 예의바름도 찾아볼 수 없다.

이 감정은 지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능은 그 자체로서 계산하고 추산하고 수지를 따지지만 결코 사랑하지 않으며, 보기는 하지만 느끼지 못하니 말이다. 정의가 사회적 본능과 성찰의 혼합물인 것처럼, 형평은 정의와 취향 혼합물, 내가 원하는 식으로 표현하자면 평가하고 이념화하는 능력의 혼합 생산물이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사회성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인 이 혼합물은 우리의 복합적인 소통양식에 의해 결정된다. 이 소통양식 안에서는 불평등, 아니 더 적절히 말하자면 능력의 차이와 기능의 전문화에 의해 일하는 자들이 점점 서로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만큼 더 사회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² 여기서 형평이라는 말은 라틴인들이 <후마니타스 humanitas>라고 부르는 것, 즉 인간에게 고유한 종류의 사회성을 의미한다. <휴머니티 humanité>는 모두에게 온화하고 상냥한 것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고 지위들, 미덕들, 능력들을 구별할 줄 안다. 그것은 사회적 공감과 따뜻한 사랑을 나타내는 본배적 정의이다.

이것이바로보호하면서도억압하는힘이협오스러울수밖에없는이유이다. 이것이바로경탄할예술작품과더없이조야한산업생산물같은으로평가하는천치같은무지가더없이경멸을자아내는이유이다. 이것이바로 <나는네게지불했다> <나는네게아무것도빚진것이없다> 라고말하면서승리를뽐내는오만불손한범용이더없이협오스러운이유이다.

<사회성>, <정의>, <형평>, 이것은그삼중의단계에서우리로하여금우리동료들과의소통을추구하게하는본능적인능력에대한정확한정의定義이다. 이본능적능력의물리적표현형태는 <자연및노동의생산물에서의형평> 이라는정식으로나타난다.

사회성의이세가지단계는서로를지지하고또서로를가정한다. 정의없는형평은존재하지않으며, 정의없는사회는무의미하다. 만일내가재능에보답하기위해갑의생산물을빼앗아서올에게준다면, 그것은갑을부당하게약탈한것일뿐갑의재능을겉맞게평가한것이아니다. 만일내가사회에서내동료보다더많은몫을차지한다면, 우리는진정한한동아리가아니다. 정의란, 무게를달고길이를 잴수있는유형의물질들을배분하는데참여하는것을허용함으로써나타나는사회성이다. 반면에형평이란측정될수없는물질, 즉정의와존중을동반하는정의이다.

여기서몇가지결론이도출된다.

(1) 우리가우리마음대로한사람에게다른사람보다더많이, 그것도상상할수있는최대한으로우리의존중을표현할수있다고할지라도, 우리는우리마음대로공동재산에서더많은몫을그에게줄수는없다. 왜냐하면우리에게는정의의무가형평의무에앞서며, 전자가늘후자보다앞서나아가야만하기때문이다. 형제의죽음과남편의죽음사이에서선택하도록폭군에의해강요당한여인이남편은다시맛이할수있지만형제는그럴수없다는구실로남편을저버린다면, 그녀는아마도옛사람들에게는칭송을받았을지도모른다. 그러나내가보기에, 이여인은그녀안에있는형평의감정에따르기는했지만정의를저버렸으므로악행을범한것이다. 왜냐하면부부의사회는우애의사회보다당연히더긴밀하며이웃의목숨이곧우리에게속한것은아니기때문이다.

마찬가지원리에의해서, 임금의불평등이재능의불평등을구실로법적으로허용될수는없다. 왜냐하면재산의분배는정의에속한문제로서경제의영역일뿐경탄의영역이아니기때문이다.

끝으로증여, 유산및상속에대해말하자면, 사회는가족의애정과사회고유의권리두가지에동시에이끌린나머지사랑과호의가정의를침범하도록허용해서는안된다. 오랫동안아버지의일에협력해온이들이아버지의일을물려받기에그누구보다더적합하다고믿는다는것은흡족한일이다. 마찬가지로한창작업에임하다가갑작스럽게죽음을맞게된한시민이그의천직에대한자연적취향과애정으로미루어불태후계자를정하기에가장적합하며그후계자에게온갖유산들중선택하도록할수있다고믿는

이박박한관찰자가, 우리를동물과구별해주는성찰이라는것을 <우리자신의변화를고찰하는능력> 으로정의하고있음을 주목하라. 내가자연주의철학자의엄격한정식을가능한최선을다해보충함으로써이해시키고자하는점이바로이것이다.

동물이획득한지능은동물이본능적으로수행하는작업들을결코바꾸어놓지못한다. 지능은이작업들을방해할수있는어떤이기치못한사건들에대처하기위해서주어진것에지나지않는다. 이와는반대로, 인간에게서본능적행동은끊임없이성찰된행동으로변한다. 이리하여인간은본능적으로사회적이기도하지만또한매일같이추론과선택에의해사회적이된다. 태초에인간은본능에의해자기의말을창조했다.¹ 인간은영감에의해시인이되었다. 오늘날인간은문법을하나의과학으로, 시를하나의예술로만든다. 인간은자발적인, 굳이말하자면본능적인어떤관념에의해신의존재를믿고내세를믿는다. 그리고인간은이관념을차례로기괴한것, 우스꽝스러운것, 우아한것, 위로를주는것, 끔찍스러운것등여러형태로표현해왔다. 19 세기의경박한무신앙 impiété 이조소를퍼붓곤했던이다양한숭배형태들은종교적감정이언명한언어들이다. 인간은언젠가자기의사념이갈구하는이신이고연무엇인가를, 자기의영혼이갈망하는내세에대해그가진정원하는것이무엇인가를스스로납득하게되리라.

인간은자신의본능에의해이룩한이모든것을소중히여기지않으며경멸한다. 혹시소중히여긴다면, 그것은자신이이룩한것으로서가아니라자연이이룩한것으로이다. 여기서태초의발견자들의의미를덮고있는망각이생겨난다. 여기서종교에대한우리들의무관심과종교적의례에대한경멸이생겨난다. 인간은성찰과추론의산물만을높이평가한다. 본능에의해만들어진더없이멋진작품들이인간의눈에는우연한 <습득물> 로만보일뿐이다. 인간은지능에의해만들어진작품들에 <발견물> (아니창조

¹ 언어의기원의문제는프레데릭퀴비에가제시한본능과지능의구별에의해해결된다. 언어는결코미리계획된자의적이거나인습적인고안물이아니고, 의사소통이나계시로신의해주어진것이아니다. 언어는, 법집이꿀벌의본능적이고무의식적인창조물인것처럼, 인간의본능적이고무의식적인창조물이다. 이런의미에서언어는인간의이성의소산이아니므로인간의작품이아니라고말할수있다. 게다가언어의메커니즘은거기서성찰이하는역할이적으면적을수록더욱완벽하고정교하게보일것이다. 이것은문헌학에의해확립된가장진기하고가장확고부동한사실들중의하나이다. 특히베르그만 F. G. Bergmann 의라틴어논문 (스트라스부르, 1839) 을보라. 여기서박식한저자는발음의맹아가어떻게감각에서발생하는가, 언어가어떻게연속적인세단계를거치며발전하는가, 자신의언어를창조할본능적인능력을가지고태어난인간이어떻게자신의이성이발달함에따라이능력을잃게되었는가, 언어에대한연구가어떻게참된박물학, 즉하나의과학이될수있는가를설명하고있다. 오늘날프랑스에는남다른재능과깊은철학을지닌일류문헌학자들이여럿있다. 이겸허한학자들은일반인에게는거의알려지지않은학문을만들어내고, 무시당하는연구에일생을헌신하며, 다른이들이찬사를원하는만큼이나주조심스럽게찬사를떨리고있는듯이보인다.

지필요들을한꺼번에만족시키기어렵다는사실은바로의지의전제專制와그에따르는형량의첫번째원인이다. 다른한편으로, 인간은자신의생산물을끓임없이교환해야할필요가있다. 그러나여러종류의가치들을균형있게평가할능력이없기때문에인간은그저어렵으로만, 즉자신의열정이나번덕에따라판단하는것으로만족한다. 그리하여인간은부정직한거래에몸을내맡기게되고, 그결과언제나풍요와빈곤을낳는다. 이렇게인류의가장큰죄악들은인류가자신의사회성을잘못행사한데서, 인류가그토록자랑삼던정의를그토록개탄할정도로무지하게행사한데서나오는것이다. 정의의실천은하나의과학이며, 그것의발견과전파는우리의권리와의무에대해우리를계도해줌으로써조만간사회적무질서를중식시킬것이다.

우리의본능에대한이점진적이고고통스러운교육, 우리의자생적인지각에서서서히눈치채지 못하는사이에성찰된인식으로변해가는과정은동물들에게서는절대찾아볼수없다. 동물들의본능은고정불변이며, 또한계도의여지가없기때문이다.

동물들에게서본능과지능을분명하게구별해낸프레데릭퀴비에의말을들어보자. <본능은감수성, 피자극성, 지능과마찬가지로원초적이고고유한힘이다. 걸려들었던뱀을알고피하는여우와늑대, 인간의말뜻마디를알아듣고인간을따르는개와말은‘지능’에의해그렇게하는것이다. 남은음식물을숨겨놓는개, 벌집을만드는꿀벌, 둥지를짓는새는‘본능’에의해그렇게할뿐이다. 인간에게도본능이존재한다. 젓먹이가태어나자마자젖을빨는것은어떤특유의본능에의해서이다. 그러나인간에게서거의모든것은지능에의해이루어지며, 지능이본능을보충한다. 동물은이와정반대이다. 동물의경우, 본능이지능의보충물로주어지는것이다.> (플루랑 Flourens, 『프레데릭퀴비에의관찰에대한분석적요약』)

<우리는, 동물의‘감각중추’에, 일상적이고우연적인감각들이이레명령하는대로, 행동을촉발하는생득적이고항구적인이미지나감각들이존재한다는사실을인정할때에만본능에대한명확한관념을얻을수있다. 동물의행동을유발하는것은언제나일종의꿈또는환영이다. 본능과관련된모든것에서우리는동물들을일종의최면술에걸린존재로취급할수있다.> (프레데릭퀴비에, 『동물계입문』)

이렇게지능과본능이정도의차이가있을뿐인간에게나동물에게나 공통된것이라면, 인간을구별짓는것은무엇인가? 퀴비에에따르면, 그것은 <성찰>, 즉 <우리자신을되돌아봄으로써우리자신의변화를지적으로고찰하는능력>이다.

이러한말은명쾌하지않으며설명을요구한다.

동물들에게지능이있다고인정한다면, 마찬가지로어느정도든성찰력이있다고인정해야만한다. 왜냐하면전자는후자없이존재하지못하며, 퀴비에자신도여러예를들어그것을증명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다는것역시흡족한일이다. 그러나그렇다고해서사회는단한사람에게만이익이돌아가는어떤자본과산업의집중도, 어떤노동의독점도어떤침탈도허용해서는안된다.³

(2) 형평과정의, 사회는같은부류의개체들과의관계에서만살아있는생명체로존재할수있다. 이것들은한종에서다른종에게로, 예컨대이리에게서염소에게로, 염소에게서인간에게로, 인간에게서신에게로, 하물며신에게서인간에게로는발생하지않는다. 정의, 형평, 사랑등을최고존재에게부여하는것은일종의순수한신인동형론이다. 그리고정의, 인자, 공휼등우리가신에게부여하는여타의형용어들은우리의목도서에서삭제되어야한다. 신은신과의관계에서만정의롭고, 공정하며선하다고간주될수있다. 그런데신은고독한유일자이다. 따라서신은선량, 형평, 정의와같은사회적감정들을체험할수없다. 양치는목동은자신의양과개에대해서정의롭다고말할수있는가? 아니다. 그러나만일그가생후 6 개월된새끼양에게서 2 살난숫양에게서만큼이나많은양털을깎으려한다면, 그가강아지에게어미개에게맡겨져야할양들을돌보는일을요구한다면, 사람들은그가부당하다고말하는것이아니라미치광이라고말하리라. 인간과동물사이에애정은있을수있으나사회는있을수없기때문이다. 인간은동물을 <물건>으로서, 구태여말하자면 <감정이있는물건>으로서 사랑하나 <인격>으로서사랑하지는않는다. 따라서철학이미신이우리에게가져다준열정들을신의관념에서제거해버렸다면, 그다음에는우리의자유분방한신앙심이신에게가져다준이러한덕성마저제거해야할것이다.⁴

만일신이이땅에내려와우리과더불어살게되더라도, 신이우리과함께어울리지않는한, 우리는신을사랑할수없으리라. 신이무엇이든부를생산하지않는한, 신에게아무것도줄수없으리라. 신이우리의잘못을입증하지않는한, 아무도신의말에귀를기울일수없으리라. 신이자신의위력을우리에게내보이지않는한, 아무도신을찬미할수없으리라. 우리의

³ <적에게서빼앗은전리품 12 개를아킬레우스와아작스에게나누어주거나분배해야만했다고가정해보자. 만일두사람이평등했다면, 전리품역시산술적으로평등했을것이다. 즉아킬레우스가 6 개, 아작스가 6 개를가졌을것이다. 그런데만일이산술적인평등에따른다면, 테르시토스역시아킬레우스와대등한몫을받을것이다. 이는더없이부당하고패색한일이리라. 그러면이러한불공정을피하기위해사람들의가치를비교하고그가치에따라할당된몫을준다고하자. 즉아킬레우스가아작스보다두배의가치가나간다고하면아킬레우스의몫은 8, 아작스의몫은 4 가될것이다. 여기에산술적인평등이아니라비례적인평등이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분배적정의라고부른것은바로이러한공분의비교 rationum 이다. 그것은기하학적비율에의해결정된다.> (톨리에, 『법령별프랑스법』).

⁴ 남녀간에는사랑, 정념, 습관의유대등, 원하는모든것이존재할수있으나진실로사회는존재하지않는다. 남자와여자는동료를이루지않는다. 남자와여자사이에성별의차이는종의차이에의해동물들사이에생기는것과같은자연적차이를낳는다. 따라서나오는오늘날여성해방이라 불리는것에갈채를보내기는커녕, 이러한극단적이일이일어난다면, 차라리어성을가두어버릴것이다.

존재와관련된모든감정적, 경제적, 지적법칙들은우리가신을다른사람들과마찬가지로대하라고, 즉이성과정의와형평에따라대하라고명하고있다. 여기서내가언은결론은만일신이인간과직접적인교섭에들어가려면그가곧인간이되어야만한다는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왕들의신이이미지이자신의의지의집행자라할지라도, 왕들이우리에게서사랑과부와복종과영예를얻으려면그들스스로우리처럼노동하고, 우리와교제를나누며, 자신들의지출에맞추어생산하고, 종복과함께의논하며, 몸소큰일들을해내야만할것이다. 하물며, 어떤이들이주장하는것처럼만일국왕들이국가의공무원이라면, 그들에게돌아가야하는사랑은그들의개인적다정함여부에따라측정될것이고, 그들에게복종해야할의무는그들이내리는명령의권위에따라측정될것이며, 왕실의경비는시민의수로나는사회적생산의총액에의해측정되어야할것이다.

이렇게, 법률학, 경제학, 심리학등모든것이우리에게평등의법칙을부여한다. 권리와 의무, 재능과노동에따른보상, 사랑과열정의약동, 이모든것이균정한척도에의해미리정해지며수와균형에의존한다. 조건들의평등, 이것이야말로사회들의원리이고, 보편적연대성, 이것이야말로이원리의재가이다.

조건들의평등은우리의정념과우리의무지탐에한번도실현된적이없다. 그런데이법칙에대한우리의반발은조건들의평등을더욱더필요한것으로만든다. 이것은역사에의해늘입증된바이며, 일련의사건들에의해우리에게알려진바이다. 사회는등식等式에서등식으로진전한다. 제국들에서발생하는혁명은경제학자들의눈에는때로는서로공제되는대수적인양들의약분으로만, 때로는시간의불가피한작용에의해나타나는어떤미지수의등장으로만보일뿐이다. 수량은역사의섭리이다. 물론인류의진보에는다른요인들이있다. 인민을들고일어나게만드는수많은내밀한원인들중에서, 소유에맞선프롤레타리아들의주기적인소요보다더강력하고, 더규정적이며, 더알아차리기쉬운것은없다. 인구가증대할때면어김없이배제와침해의원리에따라몸을움직이는이소유는모든혁명들의발생원리이자결정요인이었다. 종교전쟁과정복전쟁들은, 인종의말살에까지이르지않았을경우에는, 그저우연한교란으로그쳤으며즉시인구의산술적인증대로보상되었다. 이것이바로소유가갖는축적의힘이며, 이것이바로사회의퇴폐와사멸의법칙이다.

중세의피렌체를보라. 겔프파 (Guelfes, 교황파-웁긴이) 와기벨린파 (Gibelins, 황제파-웁긴이) 라는이름으로잘알려진, 그러나실은무장한채서로싸우는하층민과소유자귀족계급에지나지않는, 두파벌사이

하기때문이다. 그리고이고립, 이합리적이기심, 요컨대이의견의개인주의는경험의관찰에의해진리가입증되지않는한오래도록지속될것이다.

다음의마지막비교는이모든사실을한층명백하게보여줄것이다.

만일꿀벌무리의맹목적이나합일적이고조화된본능에돌연성찰과추론이첨가된다면, 이작은사회는더이상지속되지못할것이다. 우선, 꿀벌들은틀림없이무엇인가새로운작업방식을, 예컨대벌집구멍들을원형으로또는사각형으로바꾸려는시도를할것이다. 온갖방식과구상이다동원될것이다. 마침내오랜경험의결과기하학적지식의도움을얻어육각형모형이가장좋다고입증될때까지말이다. 그다음, 반란이일어날것이다. 수벌에게는자기가먹을것은자기가마련하라고요구할것이며, 여왕벌에게는당신도일하라고요구할것이다. 일벌들사이에는질투심이생기고, 불화가폭발하며, 각자는자기만을위해생산하게되고, 마침내벌집은버려지고꿀벌들은멸종할것이다. 약이마치이꽃밭에숨어있는뱀처럼꿀벌공화국에스며들것이다. 그것도꿀벌공화국의영예가되었어야할것들, 즉성찰과추론에의해서말이다.

그러므로도덕적악, 즉우리를사로잡고있는문제의경우사회의무질서는당연히우리의성찰하는능력에의해설명된다. 빈곤, 범죄, 폭동, 전쟁등은조건들의불평등을그원인으로하며, 조건들의불평등은소유에서유래한다. 소유는이기심에서나오고, 이기심은개인의의식에서생기며, 개인의의식은이성의전제專制에서직접유래한다. 인간은범죄나야만에서출발했던것이아니라, 어리숙함과무지와무경험에서출발했다. 인간이부여받은본능들은절대적이기는하나추론이라는조건아래놓여있다. 따라서인간은처음에는조금밖에사고하지못하며잘못추론하곤한다. 다음에인간은이잘못된추론의덕에조금씩자기생각을고치고자기이성을완성해나간다. 그것은하찮은일에자신의모든것을바치고난후곧후회하며눈물짓는야만인의모습이다. 그것은자신의장자상속권을붉은떡과팔죽과바꾸고나서곧거래를취소하려하는에서 Esau 의모습이다 (구약『창세기』 25 장 21~34 절-웁긴이). 그것은, 자신도고용주도평등이없다면임금은늘불충분할수밖에없다는사실을깨닫지못하기때문에불완전고용상태로일하면서끊임없이임금인상을요구하는문명화된사회의노동자의모습이다. 나아가그것은자기유산을지키다죽은나봇 Naboth 의모습이고 (구약『열왕기』 상편 21 장-웁긴이), 노예가되느니할복자살을택한카토 (Marcus Cato, 기원전 93~46, 로마의정치인으로카이사르의전제에맞서싸우다자살했다-웁긴이) 의모습이며, 사상의자유를지키기위해독배를마신소크라테스의모습이다. 그것은자유를요구한 1789 년의제 3 신분제의모습이며, 곧생산수단과임금의평등을요구하는인민의모습일것이다.

인간은사회적으로태어난다. 달리말하면, 인간은자신의모든관계에서평등과정의를갈구하나그와동시에독립성과칭송을원한다. 이어러가

이루든 동물들이 수행하는 작업은 그들의 특성을 낱알이 드러내주고 있다. 꿀벌의 무리가 성질도 같고 가치도 대등한 개개 꿀벌들로 이루어져 있듯이, 꿀벌집은 모양도 크기도 완전히 똑같은 춤춤히 반복되는 구멍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인간의 지능은 사회적 운명과 개인적 필요를 동시에 계산에 넣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양새를 띠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주 당연한 결과이지만 인간의 의지 역시 아주 각양각색이다. 꿀벌의 의지는 항구적이고 단일한 모양새를 띤다. 그것은 꿀벌을 이끄는 본능이고 정불변하며, 이유 일한 본능이 동물의 삶, 행복 및 존재 전체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재능은 다양하고, 이성도 불확실하며, 따라서 의지도 각양각색이고 막연하다. 인간은 사회를 추구한다. 그러나 인간은 규제와 단조로움을 피한다. 인간은 모방을 잘하기는 하지만 자기만의 생각을 중시하고 자기의 작업에 열중한다.

만일 인간이 꿀벌과 마찬가지로 이미 정해진 재능과 특정 사물에 대한 완벽한 이해력을,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기능들에 대한 선천적 인지식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찰하고 추론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사회는 저절로 조직될 것이다. 이 사람은 발을 갈고, 저 사람은 집을 짓고, 어떤 이는 쇠붙이를 버리고, 또 어떤 이는 옷을 만들고, 누구는 물건을 가게에 쟁이고, 또 누구는 물건의 분배를 떠맡을 것이다. 자기가 노동해야 하는 까닭을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맡은 몫보다 일을 더했느냐 덜했느냐를 염두에 두지도 않으면서, 개개인은 명령에 따르고, 생산물을 가져다주고, 임금 받고, 시간이나 면설 것이다. 인간은 이 모든 일을 아무런 타산 없이, 누구도 질투하지 않고, 감독관에게 어떤 불평도 늘어놓지 않고 행할 것이며, 감독관은 어떤 부당 행위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국왕들은 통치하나 군림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군림한다는 것은 보나파르트 Bonaparte 가 말했듯이 사육당하는 〈소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자가 모두 맡은 바 위치 안에 있으므로 국왕들은 어떤 명령을 내릴 필요도 없을 것이며, 권위자나 조연자의 역할보다는 차라리 결집의 중심 지역 할 것이다. 여기에는 토피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공동체는 존재할지 모르나, 성찰되고 자유로이 수용되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만 숨씨를 발휘할 수 있다. 인간은 성찰한다. 그도 그럴 것이 관찰하고 경험한다는 것은 곧 성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추론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은 추론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은 성찰함으로써 스스로에게 한 상을 만들고, 추론함으로써 잘못을 범한다.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믿고, 옳고 집이 되며, 자기의 견해를 맹신하고, 자기를 존중하며 남을 멸시한다. 이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고립된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이성을 부정해야만, 달리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만 다수에게 복종할 수 있는데, 이는 불가능

의 다름으로 늘 찢겨진 이상인과 중개업자의 공화국을 보라. 피렌체는 은행가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 빛에 쪼들려 몰락하지 않았는가.⁵

고대의 로마를 보라. 로마는 건국이 후 고리대에서 달리다가, 그래도 전 세계가 그비참한 프롤레타리아들에게 〈노동〉을 제공해주는 동안 잠시 번영했으나, 대외적으로 평온한 시기에는 내란으로 피투성이가 되고, 결국 인민의 왕성한 정력과 더불어 마지막 남은 도덕 감각까지 잃게 되자 쓰러져 죽지 않았는가. 카르타고, 내부 경쟁에 의해 끊임없이 분열된 상업과 금전의 도시 카르타고를 보라. 티르, 시돈, 예루살렘, 니네베, 바빌론, 무역 경쟁으로 인해, 아니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판로 부족으로 인해 차례로 몰락한 이들도 시를 보라. 잘 알려진 수많은 사례들은 만일 인민이, 만일 프랑스가 그 힘찬 함성을 내지 않으면서 소유제도의 폐지를 선언하지 않는다면 어떤 운명이 현대 국가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는가?

여기서 나의 작업을 끝마쳐야 하리라. 나는 가난한 자의 권리를 입증했으며, 부자의 횡령을 보여주었다. 이제 나는 정의의 요구한다. 물론 판결의 집행은 나의 몫이 아니다. 만일 부당한 향유를 몇 년 더 늘릴 필요로 어떤이가, 평등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니 평등을 조직해야만 한다고, 그것도 아무런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평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정당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즉, 피억압자에 대한 배려는 장관들의 공혹스러움에 우선한다고. 그리고 조건들의 평등은 원초적인 법칙이며 공공 경제와 입법도 여기에 의존한다고. 노동의 권리, 그리고 재산의 균등한 분배에 대한 권리는 권력의 근심 걱정 앞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법전의 모순들을 조정한다거나 하물며 정부의 실책에 괴로워하는 것은 결코 프롤레타리아의 몫이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정치적 평등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스스로를 개혁하는 것은 바로 시민적·행정적 권력 체계의 몫이다. 공공연한 악행은 비난받아야 하며 또 근절되어야만 한다. 입법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신이 잘 모른다는 것을 명백한 불의에 대한 핑계로 삼아서 안된다. 바로 잡는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정의, 사법, 권리의 인정, 프롤레타리아의 복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재판관이여, 집행관이여, 당신들은 경찰의 동정에 신경을 쓰고, 나아가 공화국의 통치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으리라.

또한 나는 나의 독자들 중 어느 누구라도 내가 파괴할 줄은 알지만 건설할 줄은 모른다고 나를 비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평등의 원리를 입증함으로써 나는 사회라는 건물의 초석을 놓았다. 그리고 나는 그 이상의 일을 해냈다. 나는 정치와 입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따라야 할 절차의 실례를 보여주었다. 과학자 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그 원리 이상의 것은 알지 못하고, 오늘날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남다른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고 뽐낼 만

⁵ 미슐레 Michelet 씨는 콜레주-드-프랑스에서의 강연에서, 〈코시모 데 메디치 Cosimo de Medici 의 금고는 페렌체의 자유의 무덤이다〉라고 말했다.

한치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내게로 오라. 그러면 당신에 게진실을 가르쳐 주겠노라〉 고 외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사적인 의견, 자신의 열정적인 확신을 마치 진실인양 착각한다. 이들은 진실이라는 것에 대해 대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사회에 대한 과학은 모든 다른 인간과 관련된 과학들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미완의 상태이다. 사회가 포괄하는 문제들의 깊이와 다양성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 우리는 이 과학의 ABC 에 겨우 도달 해 있다. 우리가 아직은 체계들 système 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줄곧 사실들의 문제를 토론에서의 다수결로 대체한다는 사실이 이 증거이다. 어떤 문법 학회는 언어학의 문제를 다수결 투표로 해결했다. 우리의 회들에서의 토의도, 비록 그 결과가 그리 치명적이지는 않 더라도, 여전히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진실한 저 술가의 과업은 사기꾼과 거짓말쟁이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상상이나 강령이 아니라 논증에만 만족하도록 교육하는 일이다. 과학 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서 우선 과학의 대상을 결정하고 그 방법과 원리를 발견해야만 한다. 과학을 짓누르는 갖가지 편견들을 물리쳐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 19 세기의 사명이다.

나로서는 그렇게 하기로 다짐해 왔다. 앞으로 도 나는 나의 파괴 작업에 충실할 것이며, 폐허와 잔해 더미 속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나설 것이다. 나는 일을 어중간하게 끝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만일 언약의 궤에 손을 댄다면 내가 그 뚜껑을 벗겨 내는 데에만 만족하지 않으리 라고 믿어도 좋다. 불의라는 성역을 둘러싼 신비를 벗겨 내야 하고 낡은 언약 의 석판을 부숴 버려야 하며, 모든 낡은 숭배 대상들을 짐승의 먹이로 던져 버 려야 한다. 정치학 전체의 요약판이자 20 여 입법 회기의 상징인 헌장 憲章 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한 통치자의 오만이자 고대의 지혜의 축소판이라 할 법 전이 쓰였다. 아, 그런데! 이 헌장, 이 법전 중에서 어떤 한 조항도 남지 않 으리라. 박학한 학자님들은 지금부터라도 방침을 정해서 재건을 준비해 야 하리라.

그러나 오류를 파괴하는 일은 응당 그 반대 진리를 전제하는 것인 만큼, 나는 정치학의 첫 번째 문제, 오늘날 모든 지성을 사로잡고 있는 다음의 문제 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글을 끝맺을 수가 없다. 〈소유가 폐지되면, 사회 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공유제 communauté 인가?〉

제 2 부

제 1 절 우리의 오류의 원인들에 대하여: 소유의 기 원

인간 사회의 참된 형태를 확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미리 해결해야만 한다. 즉, 소유는 우리의 자연적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확립 되었는가? 동물들에게서는 그리도 확고한 사회적 본능이 왜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가? 사회를 위해 태어난 인간이 왜 아직도 한 동아리를 이루지 못하는가?

나는 인간이 〈복잡한 방식으로〉 결합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물론 적 합한 표현은 아닐지라도, 이 표현으로 내가 특징 짓고자 하는 사실 자체, 즉 재능과 능력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진실이다. 그 러니 이 재능과 능력들이 그 한 없는 다양함으로 인해 의지의 무한한 다양함 을 낳는다는 사실, 이로 인해 성격, 경향, 군이 말하자면 〈자아〉 의 형태가 불가피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따라서 지능의 영 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유의 영역에서도 개인들만큼이나 많은 유형들, 머 릿수만큼이나 많은 독창성들이 존재하며, 그것들의 기질, 성향이 가지각 색의 생각들로 채색되어서 반드시 서로 일치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인간은 그 천성과 본능에 의해 사회에 속하도록 미리 운 명지어져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개성은 늘 변화무쌍하고 다양하기 해서 사회 와 대립한다.

동물들의 사회에서 모든 개체는 어김없이 똑같은 일들을 해 낸다. 동 일한 천성이 그들을 이끌고, 동일한 의지가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 짐 승들의 사회는, 그 모양이 둥글든 꺾쇠형이든,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늘 완전히 똑같은 원자들의 집합체인 것이다. 그들의 개성은 일률적이며, 따 라서 단 하나의 자아가 그들 모두를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다. 홀로 든 사회를